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273-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01 서론	1
1. 발간목적	3
2. 법적근거	3
3. 자료수집과정	4
4. 자료분석	4
5. 주요내용	5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7
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10
3.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12
4.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13
5. 노인학대 유형	14
6.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15
7. 경제적 학대 현황	17
8.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9.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10. 재학대 현황	22
PART 03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5
1. 노인학대 신고접수	27
1) 전체 신고접수	27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29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33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39
5) 신고자 유형	39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42
PART 04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45
1. 현장조사	47
2. 사례판정	49

**PART 05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59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61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61
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62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70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70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71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71
7) 학대발생장소	72
8) 학대발생빈도	79
9) 학대지속기간	80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81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 원인)	83

PART 06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85

1. 노인학대 상담	87
1) 월별 상담횟수	87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88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90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92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94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96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96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97

PART 07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99

1. 학대피해노인 현황	101
1)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101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01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02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03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04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05

Contents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105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6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12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12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13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13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11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16
2. 학대행위자 현황	118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18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18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20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29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30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31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132

PART 08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133

1. 경제적 학대 현황	135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35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8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39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40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40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41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42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2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43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43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145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147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48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49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50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51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52
3. 시설학대 현황	153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53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56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8
4) 시설학대 학대유형	159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60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61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62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3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64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65
4. 재학대 현황	166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66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168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0
4) 재학대 사례판정	171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72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73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74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75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76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77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77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79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79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0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181

Contents

PART 0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83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85
1) 보호노인 현황	185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186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86
4) 보호노인 가구형태	187
5) 보호노인 주거형태	187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188
7) 보호노인 치매여부	189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189
9) 퇴소 후 거주 현황	189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19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91
PART 10 부 록	193
1.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5~2024년)	195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95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96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198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99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200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201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02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203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204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5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206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07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9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10
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12
3.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13

Contents(Table)

[표 3-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7
[표 3-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8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9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31
[표 3-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33
[표 3-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39
[표 3-7] 신고자 유형 I	39
[표 3-8]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41
[표 3-9]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41
[표 3-10] 신고접수 경로	42
[표 3-11] 신고접수 유형	42
[표 3-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43
[표 4-1] 현장조사	47
[표 4-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47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49
[표 4-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51
[표 4-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57
[표 4-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58
[표 5-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61
[표 5-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62
[표 5-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62
[표 5-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69
[표 5-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70
[표 5-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70
[표 5-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1
[표 5-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71
[표 5-9] 학대발생장소	72
[표 5-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72
[표 5-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78
[표 5-12] 학대발생빈도	79
[표 5-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79

Contents(Table)

[표 5-14] 학대지속기간	80
[표 5-15] 학대행위자 원인	81
[표 5-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82
[표 5-17] 가족-환경 원인	83
[표 6-1] 월별 상담횟수	87
[표 6-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88
[표 6-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90
[표 6-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92
[표 6-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94
[표 6-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96
[표 6-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97
[표 7-1]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101
[표 7-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대 분포	101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02
[표 7-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03
[표 7-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04
[표 7-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05
[표 7-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105
[표 7-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105
[표 7-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6
[표 7-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6
[표 7-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12
[표 7-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12
[표 7-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13
[표 7-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13
[표 7-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114
[표 7-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115
[표 7-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115
[표 7-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16
[표 7-19] 학대피해노인 중독유형	116
[표 7-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16



[표 7-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대 분포	118
[표 7-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18
[표 7-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20
[표 7-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20
[표 7-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126
[표 7-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127
[표 7-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127
[표 7-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28
[표 7-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28
[표 7-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29
[표 7-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표 7-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표 7-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30
[표 7-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31
[표 7-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132
[표 7-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132
[표 8-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35
[표 8-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8
[표 8-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39
[표 8-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40
[표 8-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40
[표 8-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41
[표 8-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42
[표 8-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2
[표 8-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43
[표 8-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45
[표 8-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46
[표 8-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47
[표 8-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48
[표 8-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49
[표 8-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50

Contents(Table)

[표 8-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51
[표 8-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52
[표 8-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53
[표 8-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56
[표 8-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8
[표 8-21] 시설학대 학대유형	159
[표 8-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60
[표 8-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61
[표 8-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62
[표 8-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63
[표 8-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3
[표 8-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64
[표 8-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65
[표 8-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66
[표 8-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169
[표 8-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0
[표 8-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171
[표 8-33]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72
[표 8-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73
[표 8-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74
[표 8-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75
[표 8-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75
[표 8-38]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76
[표 8-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77
[표 8-40]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77
[표 8-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78
[표 8-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79
[표 8-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80
[표 8-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0
[표 8-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181
[표 9-1] 보호노인 현황	185



[표 9-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85
[표 9-3] 보호노인 결혼 유형	186
[표 9-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86
[표 9-5] 보호노인 가구형태	187
[표 9-6] 보호노인 주거형태	187
[표 9-7] 보호노인 학대 유형	188
[표 9-8] 보호노인 치매여부	189
[표 9-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189
[표 9-10] 퇴소 후 거주 현황	189
[표 9-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190
[표 9-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91
[표 10-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95
[표 10-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96
[표 10-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198
[표 10-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99
[표 10-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00
[표 10-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201
[표 10-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02
[표 10-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203
[표 10-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204
[표 10-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5
[표 10-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206
[표 10-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07
[표 10-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9
[표 10-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10
[표 10-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211

Contents(Pictur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10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11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12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13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13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15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16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17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18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0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21
[그림 2-18] 재학대 현황	22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 유형	22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3
[그림 3-1] 전체 신고건수 비율	27
[그림 3-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27
[그림 3-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8
[그림 3-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30
[그림 3-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2
[그림 3-6] 신고자 유형 I	39
[그림 3-7] 신고자 유형 II	41
[그림 3-8] 신고접수 유형	42
[그림 3-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43
[그림 3-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43
[그림 4-1] 사례판정 결과	50



[그림 4-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57
[그림 4-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58
[그림 5-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61
[그림 5-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62
[그림 5-3] 학대발생장소	72
[그림 5-4] 학대발생빈도	79
[그림 5-5] 학대지속기간	80
[그림 5-6] 학대행위자 원인	81
[그림 5-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82
[그림 5-8] 가족-환경 원인	83
[그림 6-1] 월별 상담횟수	87
[그림 6-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89
[그림 6-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91
[그림 6-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93
[그림 6-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95
[그림 7-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대 분포	101
[그림 7-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03
[그림 7-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04
[그림 7-4] 학대행위자 연령대 분포	118
[그림 7-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20
[그림 8-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37
[그림 8-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8
[그림 8-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39
[그림 8-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40
[그림 8-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40
[그림 8-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41
[그림 8-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42
[그림 8-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45
[그림 8-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45
[그림 8-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46
[그림 8-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47

Contents(Picture)

[그림 8-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48
[그림 8-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49
[그림 8-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50
[그림 8-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51
[그림 8-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52
[그림 8-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8
[그림 8-18] 시설학대 학대유형	159
[그림 8-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61
[그림 8-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62
[그림 8-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65
[그림 8-22] 기관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167
[그림 8-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0
[그림 8-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171
[그림 8-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72
[그림 8-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73
[그림 8-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74
[그림 8-28]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76
[그림 8-29]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76
[그림 8-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78
[그림 8-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79
[그림 8-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0
[그림 9-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86
[그림 9-2] 보호노인 가구형태	187
[그림 9-3] 보호노인 주거형태	188
[그림 9-4] 보호노인 학대 유형	188
[그림 10-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195
[그림 10-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197
[그림 10-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198
[그림 10-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199
[그림 10-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200
[그림 10-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201



[그림 10-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02
[그림 10-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203
[그림 10-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204
[그림 10-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205
[그림 10-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206
[그림 10-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08
[그림 10-13] 연도별 학대행위자(학대피해노인 본인) 추이	208
[그림 10-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209
[그림 10-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210
[그림 10-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211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 노인학대 신고 접수

🔍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¹⁾,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1) 경찰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른 노인학대 통보와 신고로 인한 수치가 포함됨

■ 현장조사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인 사례는 학대사례에서 제외됨

🔍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는 일반사례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행위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학대사례는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으로 판정된 사례임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의 상담은 일반상담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가구형태

🔍 노인독거 가구

학대피해노인이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건강상태

Q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Q ADL/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용어정리

Q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Q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Q 보호자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22,746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22,746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7,167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내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시설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만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학대판정이 요구되어 증거 충분 여부에 따라 학대판정기준이 변경됨(2024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이면 "학대사례"로 '잠재'이면 "잠재사례"로 분류됨
 - ** 그 외 학대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접수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함

-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22,746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21,936건 → 22,746건) 하였음
 - 일반사례²⁾는 15,579건(68.5%)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14,911건 → 15,579건)
 - 학대사례³⁾는 7,167건(31.5%)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7,025건 → 7,167건)
- 학대사례 7,167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603건(22.4%)**, **서울특별시 758건(10.6%)**, **부산광역시 628건(8.8%)**의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으로 분류함. 비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등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함

- 노인학대 사례 7,167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004건(14.0%)**이며 **비신고의무자는 6,163건(86.0%)**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8% 감소(1,044건 → 1,004건)
 -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5,981건 → 6,163건)

2) 일반사례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사례는 일반사례에 포함됨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은 '23.7.1.부터,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은 '24.1.1.부터 적용됨

3)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경로 인지 유형

신고접수 경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또는 112 신고 등으로 분류함

- 신고접수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4,671건(65.2%)**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자체접수 2,173건(30.3%), 시청 114건(1.6%), 행정복지센터 81건(1.1%) 등이 있음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앱을 통한 신고, 신고자의 기관 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함

- 신고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서신⁴⁾을 통한 접수가 5,105건(71.2%)**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전화 1,775건(24.8%), 대면 217건(3.0%), 온라인 70건(1.0%)이 있음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함

-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6,428건(89.7%)**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타 기관 안내”가 216건(3.0%),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186건(2.6%)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0.8% 감소(954건 → 946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5.3% 증가(5,208건 → 5,482건)

4) 112 이관 시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유형 구분 시 서신으로 분류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장조사란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하며,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2024년 전체 학대사례 7,167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7,080건(98.8%)**임
※ 현장조사 건수 : '20년(6,152건) - '21년(6,696건) - '22년(6,703건) - '23년(6,898건) - '24년(7,080건)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전체 학대사례 7,167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39,684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5회로 나타남

🔍 사례판정

사례판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함

- 2024년 전체 학대사례 7,167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14건(1.6%), 비응급 사례가 4,905건(68.4%), 잠재 사례가 2,148건(30.0%)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⁵⁾의 경우 전년 대비 31.7% 감소(167건 → 114건)
 - 비응급 사례⁶⁾의 경우 전년 대비 7.5% 증가(4,561건 → 4,905건)
 - 잠재 사례⁷⁾의 경우 전년 대비 6.5% 감소(2,297건 → 2,148건)
-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는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순이고, 잠재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하며, 2024년 학대사례 7,167건 중 **재학대 건수는 812건(11.3%)**으로 여성피해노인이 662명(81.5%), 남성피해노인이 150명(18.5%)으로 나타남

※ 재학대 건수 : '20년(614건) - '21년(739건) - '22년(817건) - '23년(759건) - '24년(812건)

5) 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6) 비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함

7) 잠재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 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2024년 학대 유형 건수는 10,932건⁸⁾임

- **신체적 학대 4,797건(43.9%), 정서적 학대 4,784건(43.8%), 방임 610건(5.6%), 경제적 학대 298건(2.7%), 성적 학대 272건(2.5%), 자기방임 131건(1.2%), 유기 40건(0.4%)**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유형 10,932건 중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 여성 3,772건(78.6%), 남성 1,025건(21.4%)
 - 정서적 학대 : 여성 3,790건(79.2%), 남성 994건(20.8%)
 - 방임 : 여성 412건(67.5%), 남성 198건(32.5%)
 - 경제적 학대 : 여성 209건(70.1%), 남성 89건(29.9%)
 - 성적 학대 : 여성 220건(80.9%), 남성 52건(19.1%)
 - 자기방임 : 여성 66건(50.4%), 남성 65건(49.6%)
 - 유기 : 여성 27건(67.5%), 남성 13건(32.5%)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자기방임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성적, 방임, 유기는 80대에서 높게 나타남
- **신체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 아들 - 기관”, 정서적 학대는 “배우자 - 아들 - 딸”이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⁹⁾ - 아들 - 딸”** 순으로 나타남. 또한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기관 - 배우자)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배우자)

8)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9)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사례 7,167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323건(88.2%)**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생활시설 595건¹⁰⁾(8.3%), 기타 70건(1.0%), 병원 66건(0.9%), 공공장소 61건(0.9%), 이용시설 52건(0.7%) 순으로 나타남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4.0% 증가(6,079건 → 6,323건)
 - 생활시설의 경우 전년 대비 4.2% 증가(571건 → 595건)
 - 기타의 경우 전년 대비 20.5% 감소(88건 → 70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은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으로 구분되며,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보통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며, 학대상담의 경우 학대상담방법과 학대상담과정에 따라 분류함

- 전체 신고접수 건수 22,746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237,519회**
 - 학대상담 횟수 178,780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24.9회
- 일반상담 횟수* 58,739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3.8회
 - * 일반상담 횟수는 시설 또는 병원사례이면서 사례판정이 '잠재'인 사례의 상담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 전년 대비 상담 횟수는 **5.3% 증가**(225,589회 → 237,519회)
 - 학대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5.5% 증가(169,423회 → 178,780회)
 - 일반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4.6% 증가(56,166회 → 58,739회)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78,780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따른 분류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 **전화상담의 경우 120,682회(67.5%)**로 전년 대비 6.7% 증가(113,092회 → 120,682회)
- **방문상담의 경우 39,684회(22.2%)**로 전년 대비 2.4% 감소(40,678회 → 39,684회)

10)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과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78,780회에 대한 상담과정에 따른 분류로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 상담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진행상담 124,429회(69.6%)**, 사후관리 40,340회(22.6%), 접수상담 7,169회(4.0%), 종결상담 6,842회(3.8%) 순으로 나타남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연계, 법률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7,167명에 대해 **총 249,547회로 한 사례당 평균 34.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135,064회(54.1%)**, **정보제공서비스 89,339회 (35.8%)**, **복지서비스연계 20,270회(8.1%)**, **보호서비스 2,494회(1.0%)**, **의료서비스연계 1,793회(0.7%)**, **법률서비스연계 587회(0.2%)**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7,881명에 대해 **총 43,205회로 한 사례당 평균 5.5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23,821회(55.1%)**, **정보제공서비스 17,522회(40.6%)**, **복지서비스연계 1,651회(3.8%)**, **의료서비스연계 156회(0.4%)**, **법률서비스연계 55회(0.1%)**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피해노인은 7,167명으로 여성이 5,491명(76.6%), 남성이 1,676명(23.4%)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여성노인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신체적 1,025건(42.1%) - 정서적 994건(40.8%) - 방임 198건(8.1%)
 -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3,790건(44.6%) - 신체적 3,772건(44.4%) - 방임 412건(4.8%)
-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2,984명(41.6%), 80대 1,972명(27.5%), 60대 1,812명(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 및 동거가족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및 동거가족 형태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동거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 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을 의미함. 다만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4,683건(65.3%), 배우자 없음이 2,484건(34.7%)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7,167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5,223명(72.9%)이며, 비동거는 1,944명(27.1%)으로 나타남
 -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7,477명이며,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3,747명(50.1%)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841명(24.6%), 딸 608명(8.1%), 손자녀 442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886명(40.3%), 자녀동거가가구가 2,057명(28.7%), 노인독거가가구가 1,057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피해노인의 7,167명 중 수급자는 1,143명(15.9%)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는 초졸이 2,421명(33.8%)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1,733명(24.2%), 무학이 1,404명(19.6%) 순으로 나타나 초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Q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유형 등이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임

- **질병유형**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등이 있음
 - 전체 학대피해노인 7,167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5,727명(79.9%)으로, 고혈압 1,464명(25.6%), 당뇨병 885명(15.5%), 관절염 724명(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7,167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596명(8.3%)으로 신체장애 340명(57.0%), 정신장애 256명(43.0%)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으로는 우울장애 184명(30.9%), 지체장애 146명(24.5%), 청각장애 86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치매정도**는 크게 치매진단과 치매의심¹¹⁾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721명(24.0%)으로 치매진단 1,159명(16.2%), 치매의심 562명(7.8%)으로 나타남
-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 7,167명 중 84명(1.2%)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78명(92.9%)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로 구분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함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을 통해 파악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3.7~75.6% 수준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경우 71.0~74.4% 수준으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남

11) 치매진단이란 의학적 검사를 통해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치매의심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것을 의미

Q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5,912명(82.5%)**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 485명(6.8%), 자영업자 225명(3.1%), 서비스·판매 종사자 214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현황

Q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행위자는 7,881명¹²⁾으로 **남성이 5,523명(70.1%), 여성이 2,358명(29.9%)**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7,881명 중 배우자가 3,053명으로 38.7%에 해당함
 - 학대행위자 유형이 배우자이면서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2,652명(86.9%)이며, 전체 남성 행위자 5,523명 중 약 48.0%를 차지함
-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2,734명(3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남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70세 이상 2,362명(42.8%) - 60대 944명(17.1%) - 50대 939명(17.0%)
 - 여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60대 799명(33.9%) - 50대 620명(26.3%) - 70세 이상 372명(15.8%)
- 한편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총 3,723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수의 47.2%에 해당됨

Q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하며, 친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전체 학대행위자 7,881명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3,053명(38.7%), 아들 2,082명(26.4%), 기관 1,334명(16.9%)의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뒤,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짐
 -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6,081명(77.2%)**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¹³⁾인 경우는 131명(1.7%)이며 **전년 대비 20.6% 감소(165건 → 131건)**

12)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13)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 사례에 해당함

Q 결혼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5,033명(63.9%), 배우자 없음은 2,848명(36.1%)**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초혼이 4,499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 1,953명(24.8%)으로 가장 많았음

Q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행위자의 7,881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94명(10.1%)**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572명(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674명(21.2%)으로 나타남

Q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며,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758명(60.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문직 830명(10.5%), 단순 노무 종사자 717명(9.1%), 서비스·판매종사자 641명(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Q 건강상태

학대행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장애유형, 중독유형 등이 있으며,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학대행위자 7,881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1,123명(14.2%)**으로 **정신장애 817명(72.8%), 신체장애 306명(27.2%)**으로 나타남
 - 신체장애 현황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136명(12.1%), 청각장애 72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신장애 현황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309명(27.5%), 우울장애 278명(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신장애의 경우 2023년에는 우울장애(293명)-정신분열(270명) 순이었으나, 2024년 정신분열-우울장애 순으로 변경됨
- 학대행위자의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행위자 중 **951명(12.1%)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898명(94.4%), 도박중독이 37명(3.9%), 약물 사용장애가 16명(1.7%)**으로 나타남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1

서론



서론

01 |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개¹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02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하였음

14) 이 중 경남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03 |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04 |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한 연도별 변화('15년~'24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기존에는 사례판정 값이 '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되면 학대사례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사례에 국한하여 사례판정 값이 '응급', '비응급'인 경우에만 학대사례로 분류된다.

05 | 주요내용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적을 담고 있다.

분 류	내 용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재학대 건수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건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및 경로 인지 유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 사례판정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 노인학대 상담 횟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현황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연령대, 학대유형, 결혼유형,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노인학대 주요 사례분석 결과	•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현황 • 시설학대 현황 • 재학대 현황	
기타실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진행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노인학대 주요통계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 🔍 (학대사례) 7,167건, 전년 대비 **2.0% 증가**(’23년 7,025건 → ’24년 7,167건)
- 🔍 (일반사례) 15,579건, 전년 대비 **4.5% 증가**(’23년 14,911건 → ’24년 15,579건)
- 🔍 (전체사례) 22,746건, 전년 대비 **3.7% 증가**(’23년 21,936건 → ’24년 22,74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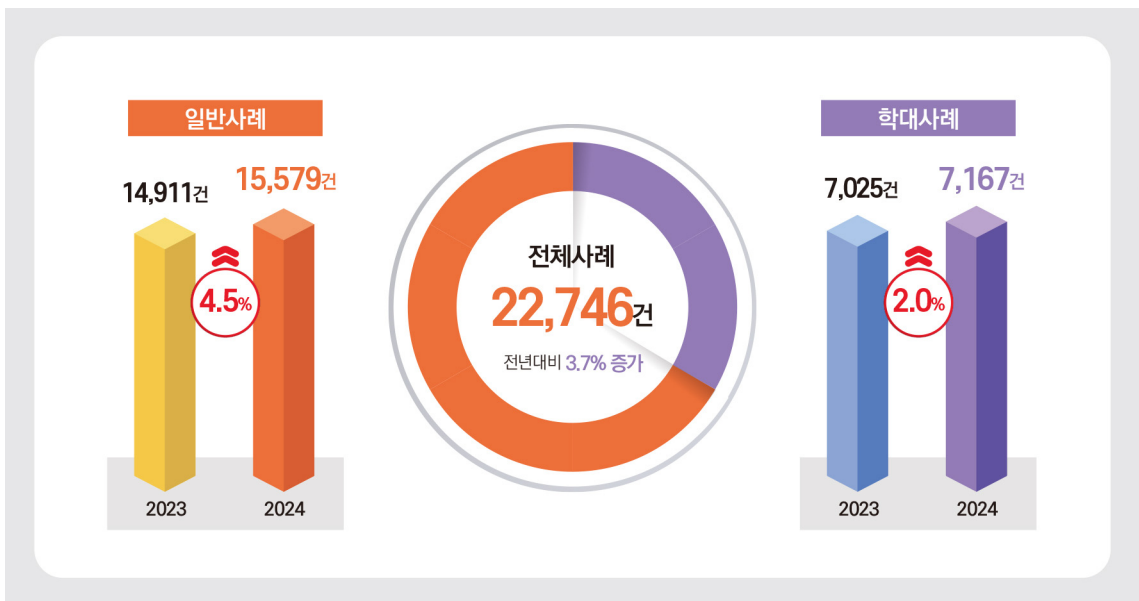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0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1,004명, 전년 대비 3.8% 감소('23년 1,044명 → '24년 1,004명)

-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전년 대비 8.8% 증가('23년 320명 → '24년 348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년 대비 7.2% 증가('23년 167명 → '24년 179명)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전년 대비 38.9% 감소('23년 18명 → '24년 11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전년 대비 38.5% 감소('23년 13명 → '24년 8명)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년 대비 14.6% 감소('23년 48명 → '24년 41명)
-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전년 대비 6.3% 감소('23년 64명 → '24년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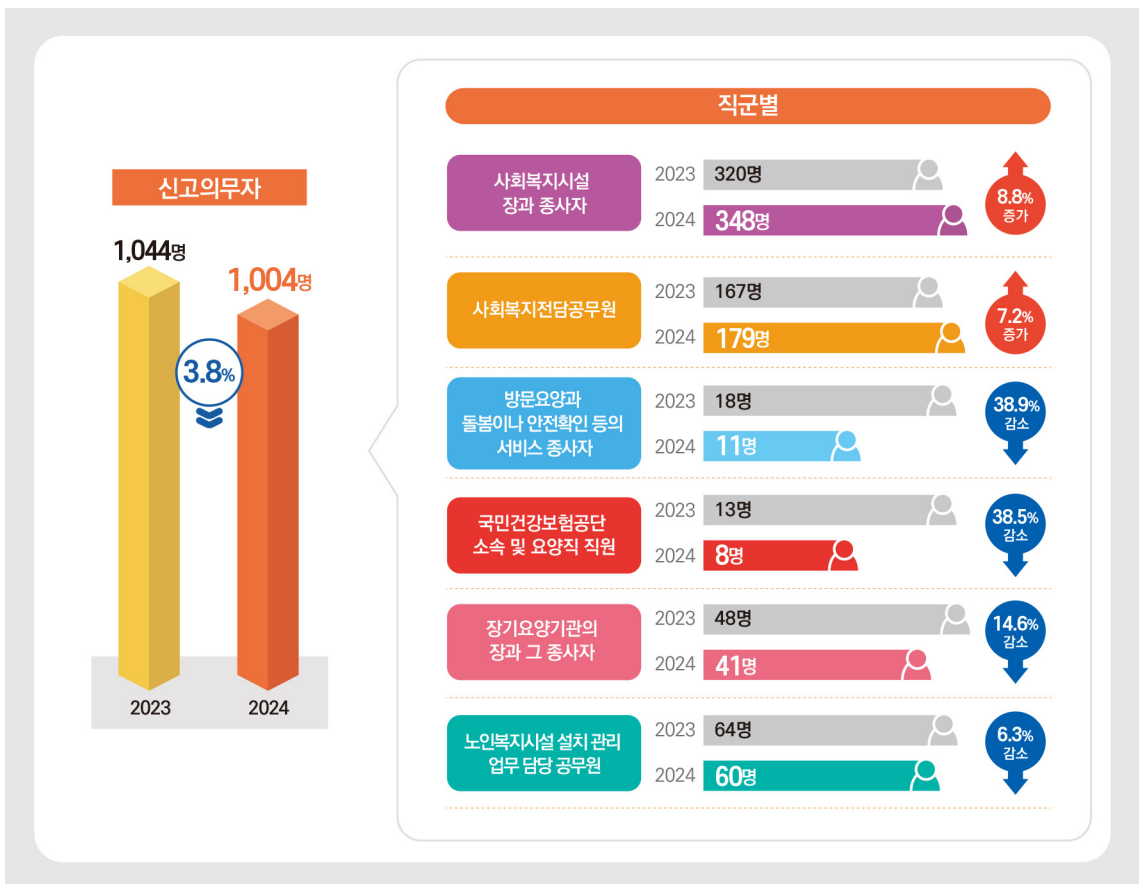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6,163명, 전년 대비 **3.0% 증가**(’23년 5,981명 → ’24년 6,163명)

- 경찰 전년 대비 7.9% 증가(’23년 4,586명 → ’24년 4,950명)
-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전년 대비 6.7% 감소(’23년 343명 → ’24년 320명)
- 학대피해노인 본인 전년 대비 16.0% 감소(’23년 344명 → ’24년 2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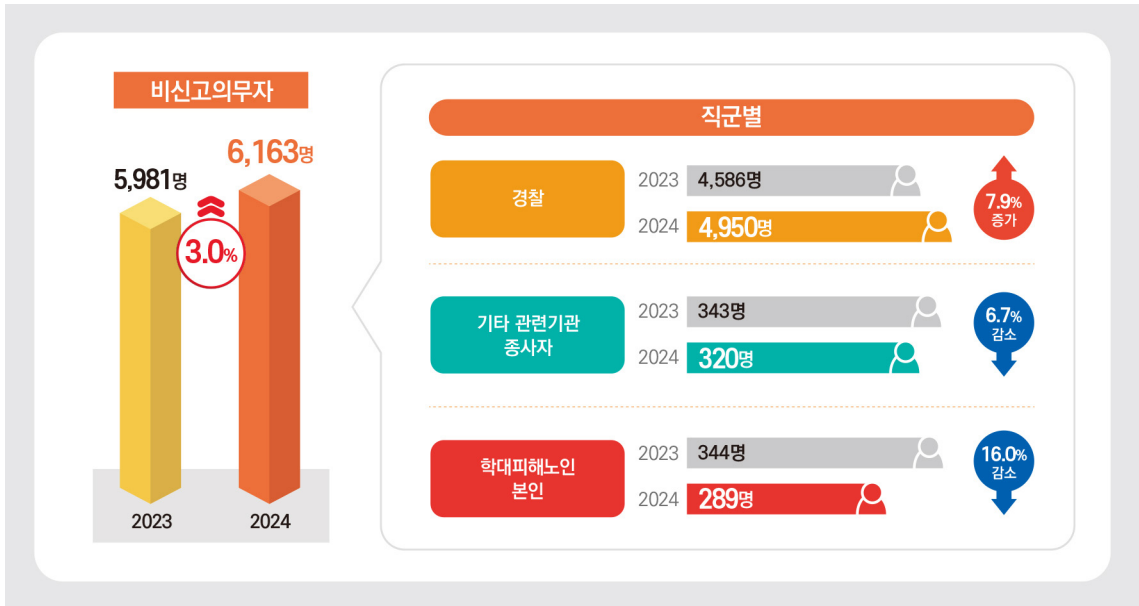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03 |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 🔍 (학대피해노인) 7,167명, 전년 대비 **2.0% 증가**(’23년 7,025명 → ’24년 7,167명)
 - 남성: 1,676명(23.4%) / 여성: 5,491명(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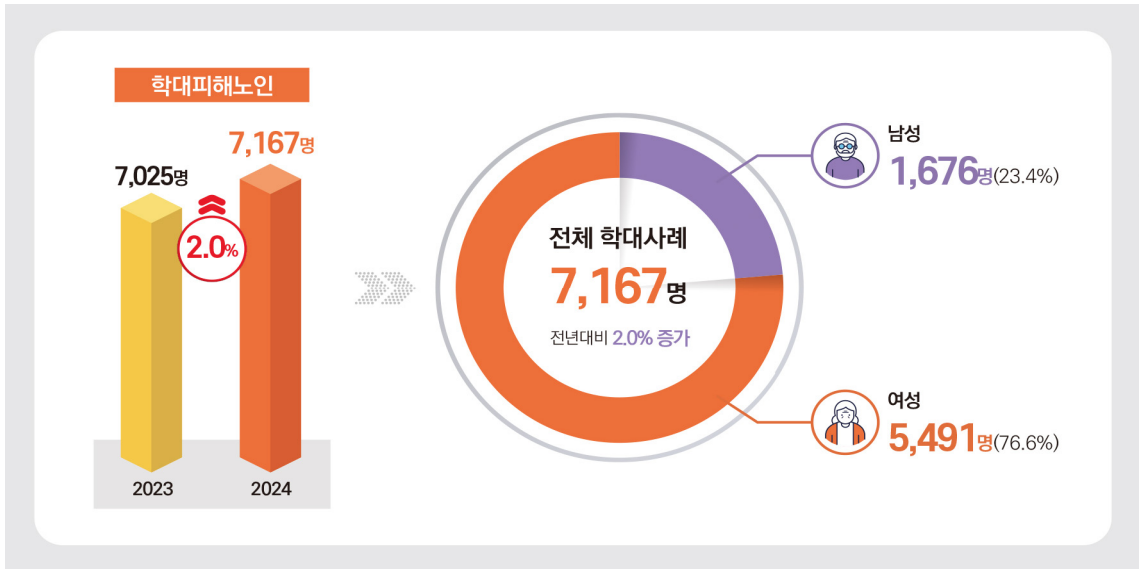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 🔍 (가구형태) “노인부부 - 자녀동거” 순이며,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비율 모두 증가
 - 노인부부(’23년 39.0% → ’24년 40.3%)
 - 자녀동거(’23년 28.2% → ’24년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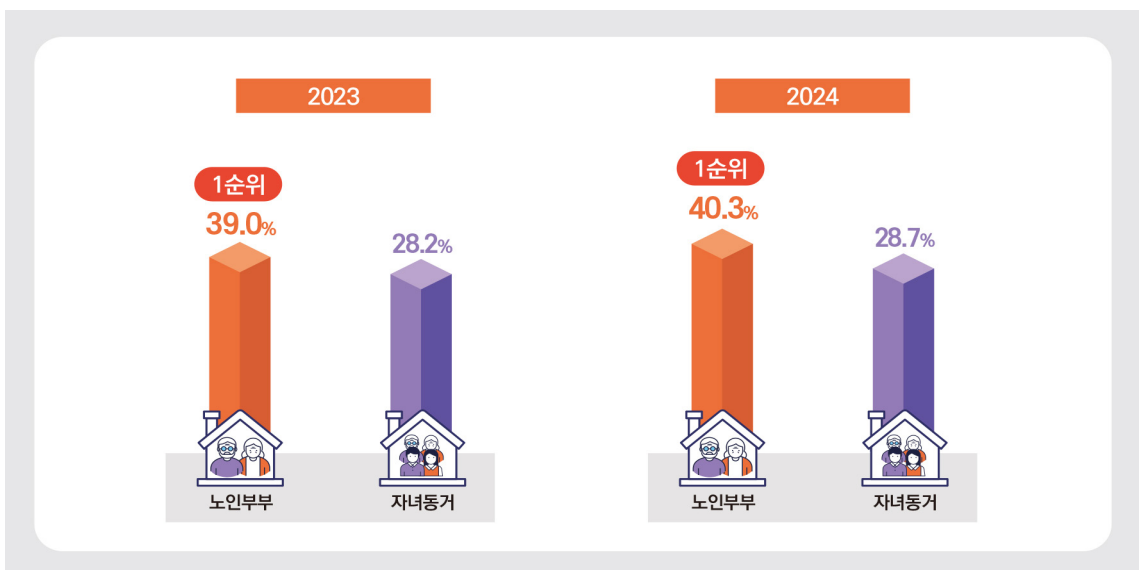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04 |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학대행위자) 7,881명, 전년 대비 0.2% 감소('23년 7,900명 → '24년 7,881명)

– 남성: 5,523명(70.1%) / 여성: 2,358명(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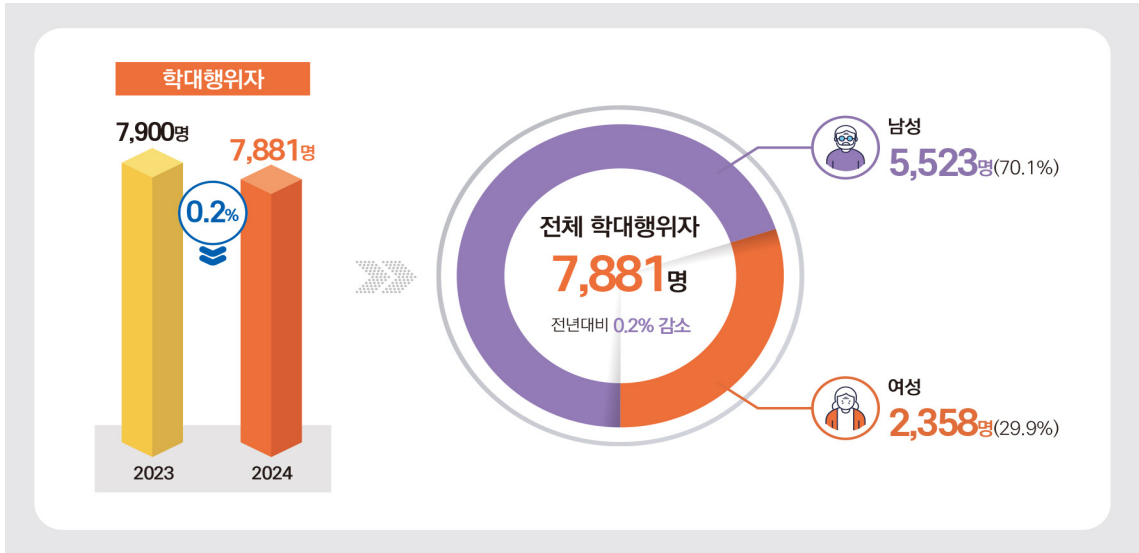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 (행위자 유형) “배우자 – 아들” 순이면서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비율 증가

– 배우자('23년 35.8% → '24년 38.7%)

– 아들('23년 26.3% → '24년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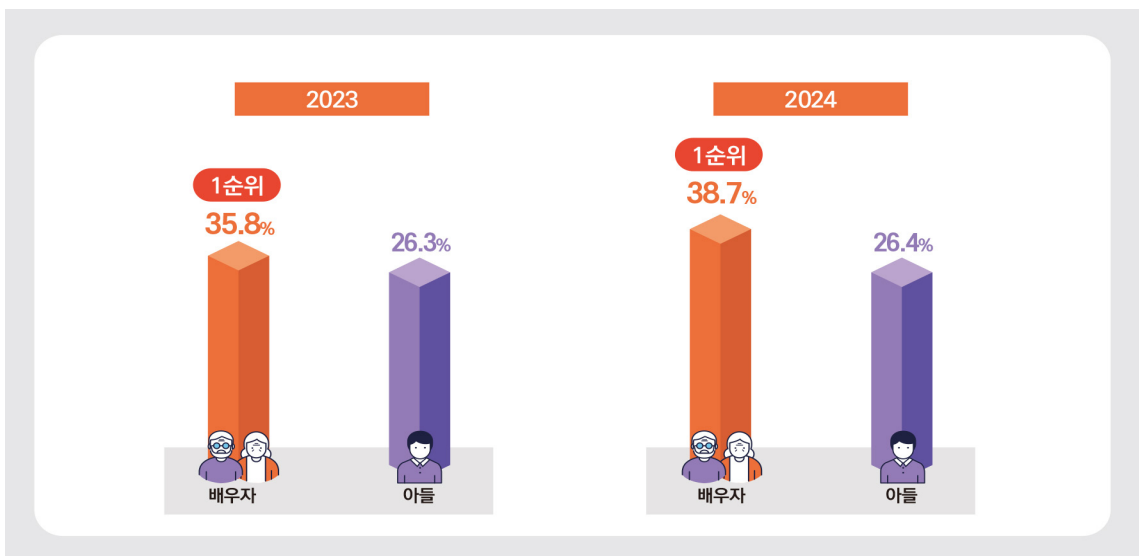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05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유형) 10,932건, 전년 대비 **2.8% 증가**(’23년 10,638건 → ’24년 10,932건)

-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경제적 학대(2.7%), 성적 학대(2.5%), 자기방임(1.2%), 유기(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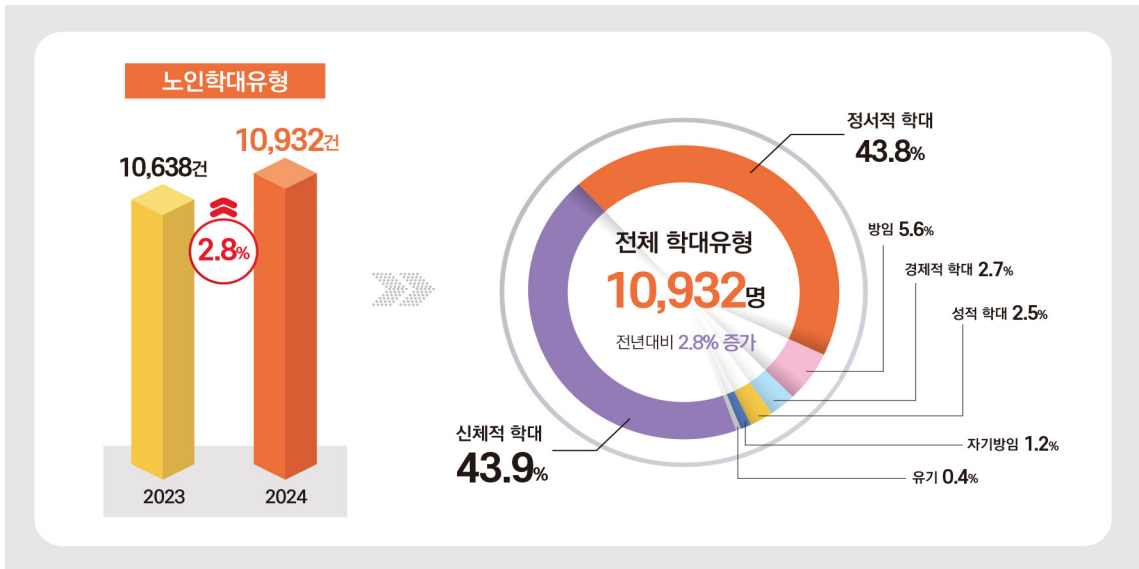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 (가정) 정서적 학대(47.3%), 신체적 학대(45.3%), 방임(2.7%), 경제적 학대(2.4%) 등
- (생활시설) 신체적 학대(32.4%), 방임(32.4%), 성적 학대(18.4%), 정서적 학대(11.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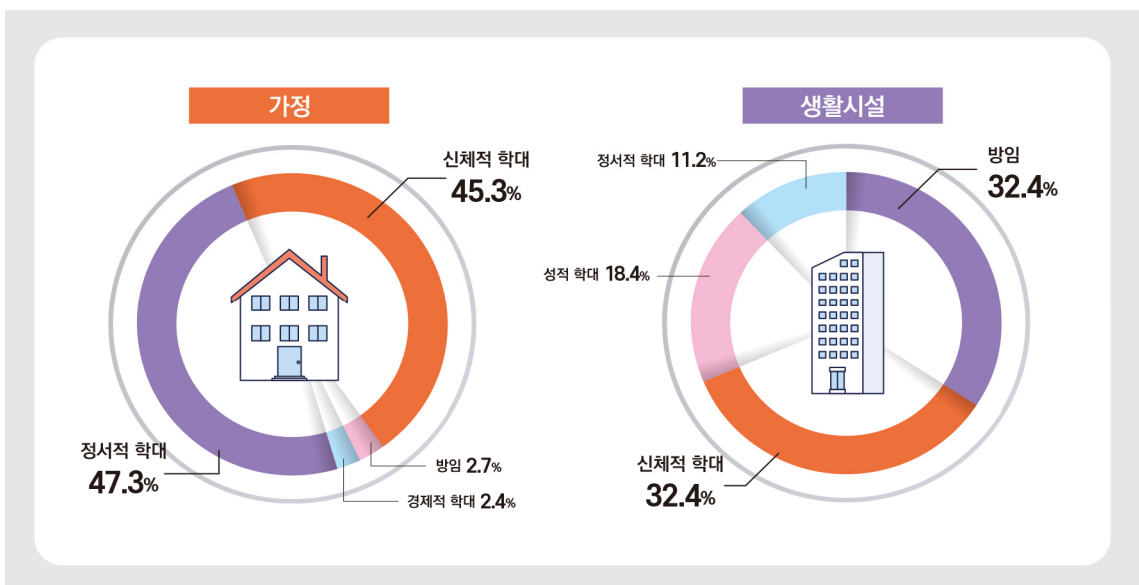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06 |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 (학대발생장소) 가정 6,323건(88.2%), 생활시설 595건(8.3%), 병원 66건(0.9%) 등

- 생활시설 전년 대비 4.2% 증가('23년 571건 → '24년 595건)
- 이용시설 전년 대비 51.9% 감소('23년 108건 → '24년 5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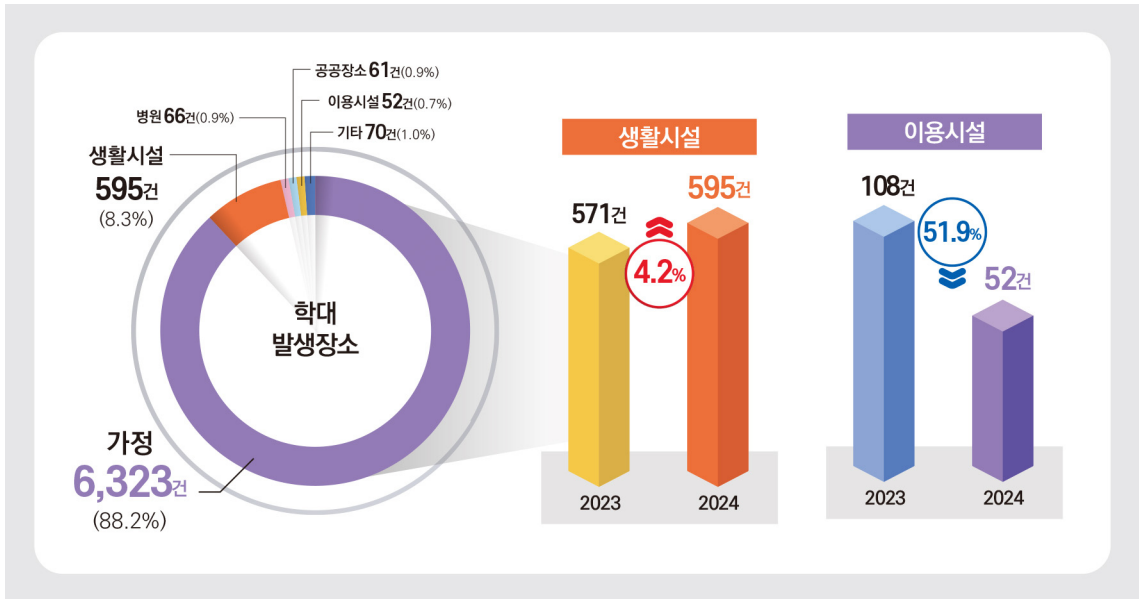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 (학대발생빈도)

- 6개월에 한 번 이상 전년 대비 17.5% 증가('23년 845건 → '24년 993건)
- 일회성 전년 대비 4.9% 증가('23년 1,533건 → '24년 1,608건)

🔍 (학대지속기간)

- 일회성 전년 대비 8.3% 증가('23년 1,425건 → '24년 1,543건)
- 1개월 미만 전년 대비 19.9% 감소('23년 302건 → '24년 2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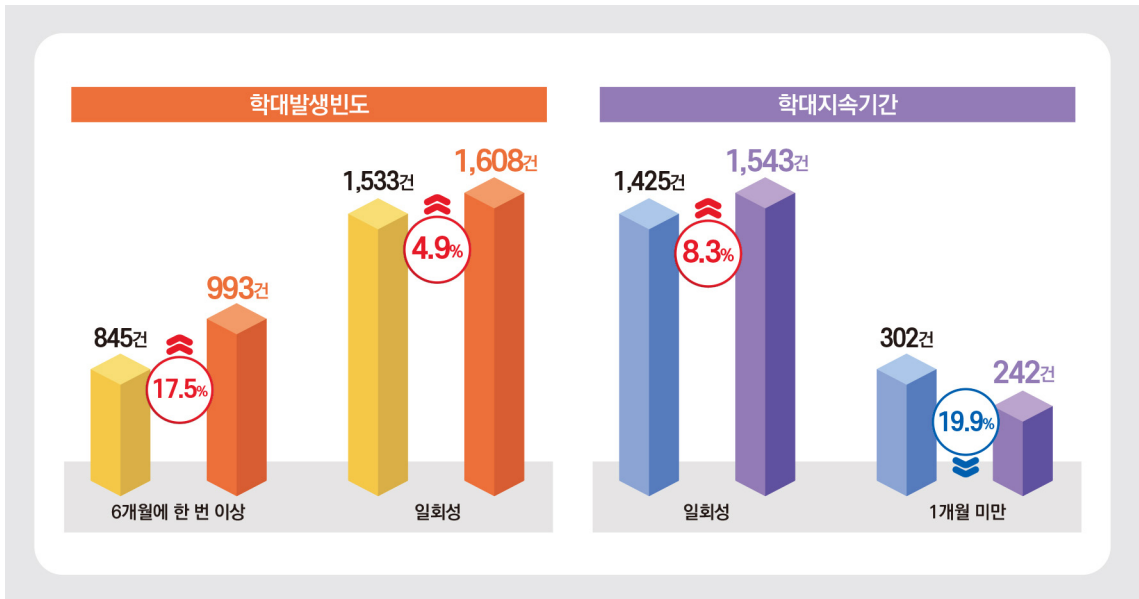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07 | 경제적 학대 현황

🔍 (경제적 학대) 298명, 전년 대비 **15.3% 감소**(’23년 352명 → ’24년 298명)

- 남성: 89명(29.9%) / 여성: 209명(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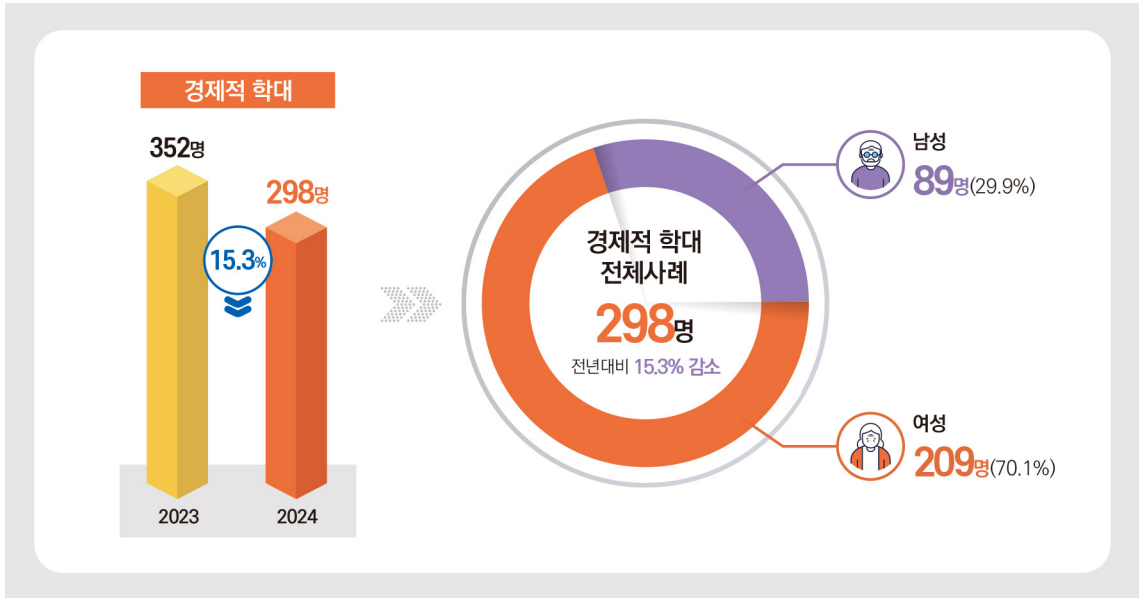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23.6% 감소**(’23년 305건 → ’24년 233건)
- (시설) 전년 대비 **41.5% 증가**(’23년 41건 → ’24년 58건)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8.4%), 배우자(15.9%), 딸(12.6%)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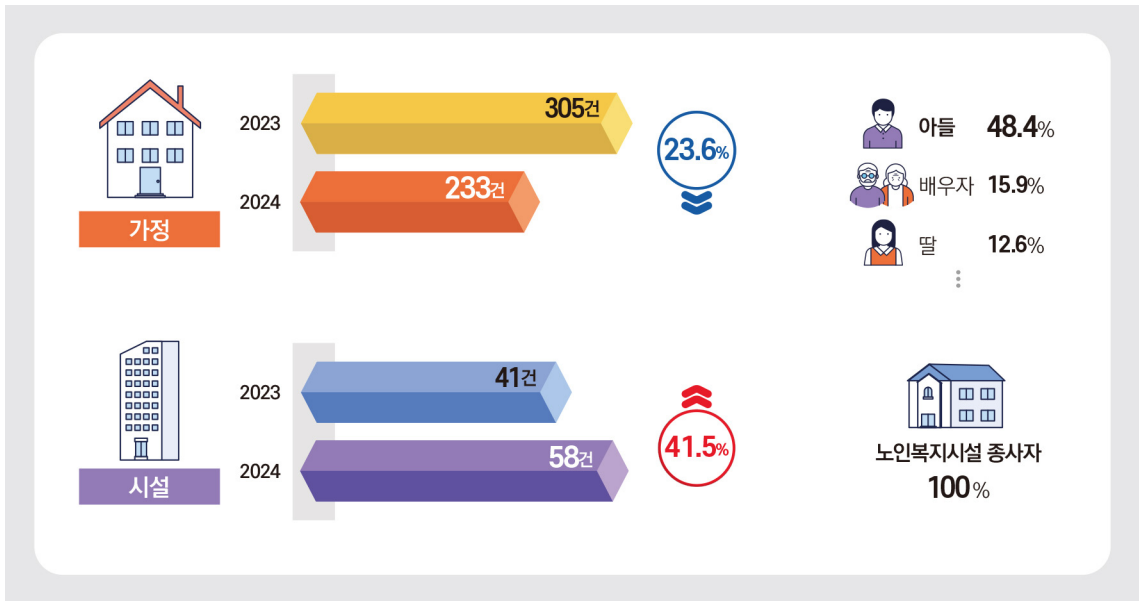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8 |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 (학대피해노인 中 치매진단) 1,159명, 전년 대비 **4.5% 감소**(’23년 1,214명 → ’24년 1,159명)
- 남성: 310명(26.7%) / 여성: 849명(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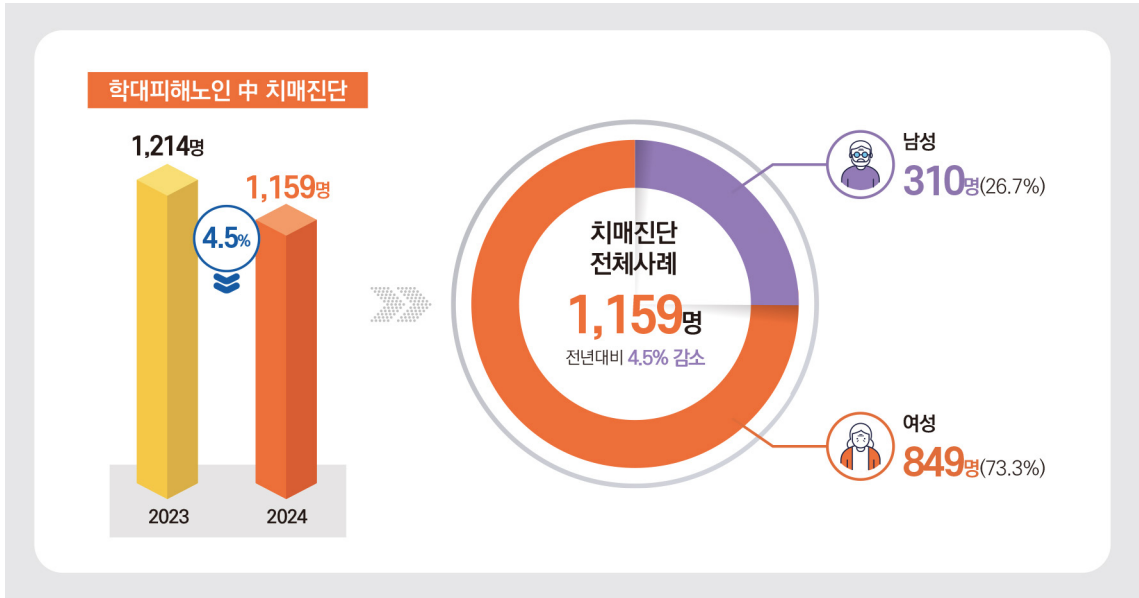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1.4% 감소**(’23년 573건 → ’24년 565건)
- (시설) 전년 대비 **0.9% 감소**(’23년 547건 → ’24년 542건)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39.5%), 배우자(24.4%), 딸(15.6%)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99.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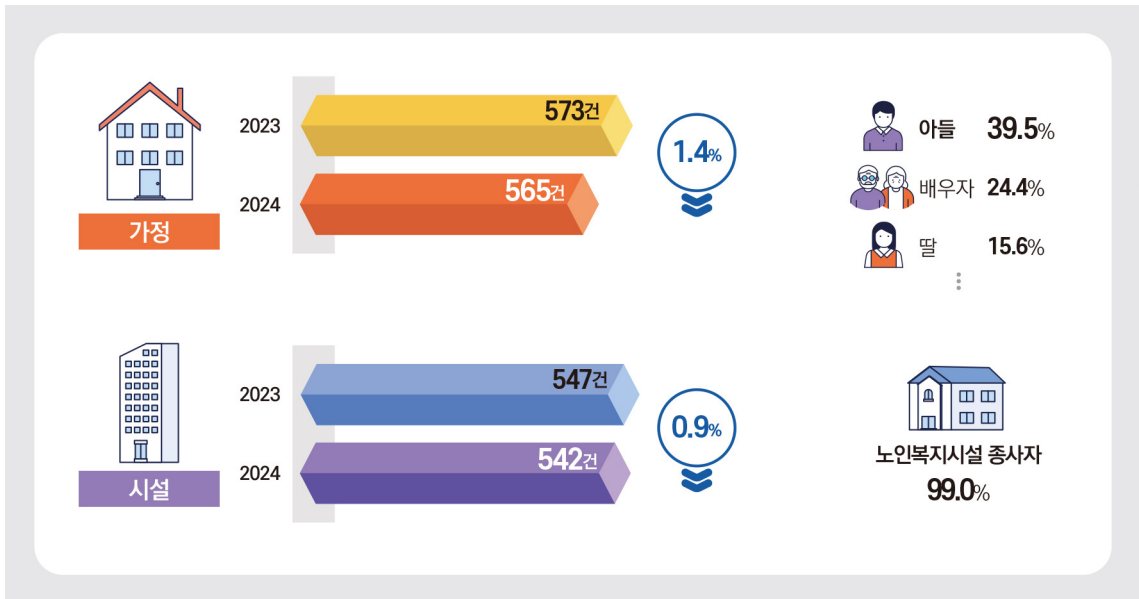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9 |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시설학대) 647명, 전년 대비 4.7% 감소('23년 679명 → '24년 647명)

- 남성: 176명(27.2%) / 여성: 471명(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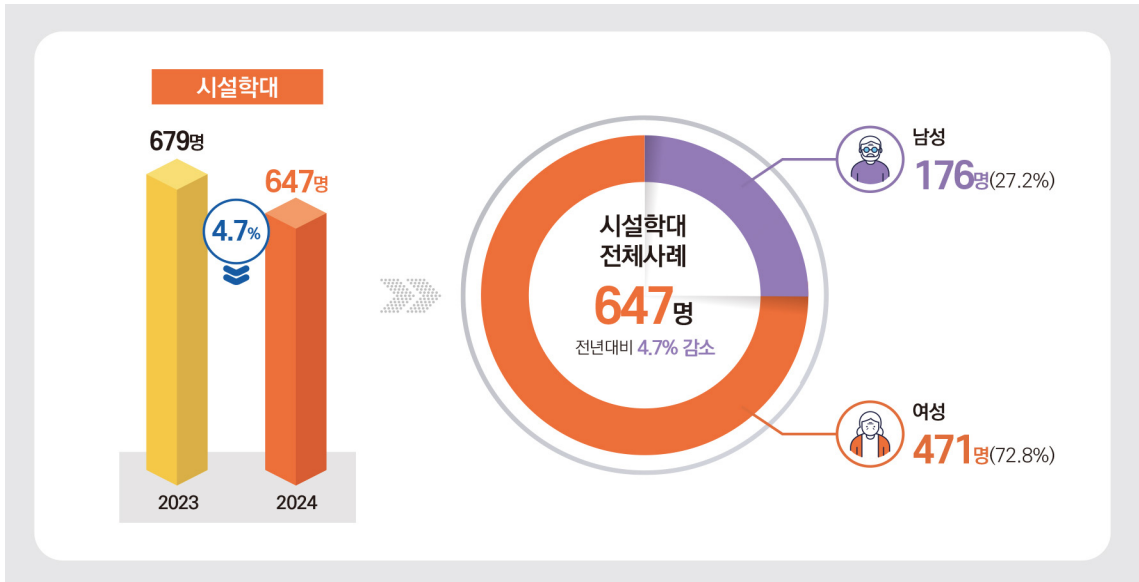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447명(69.1%), 비신고의무자 200명(30.9%)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31.1%),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1.6%) 등

- (비신고의무자) 친족(19.8%), 타인(6.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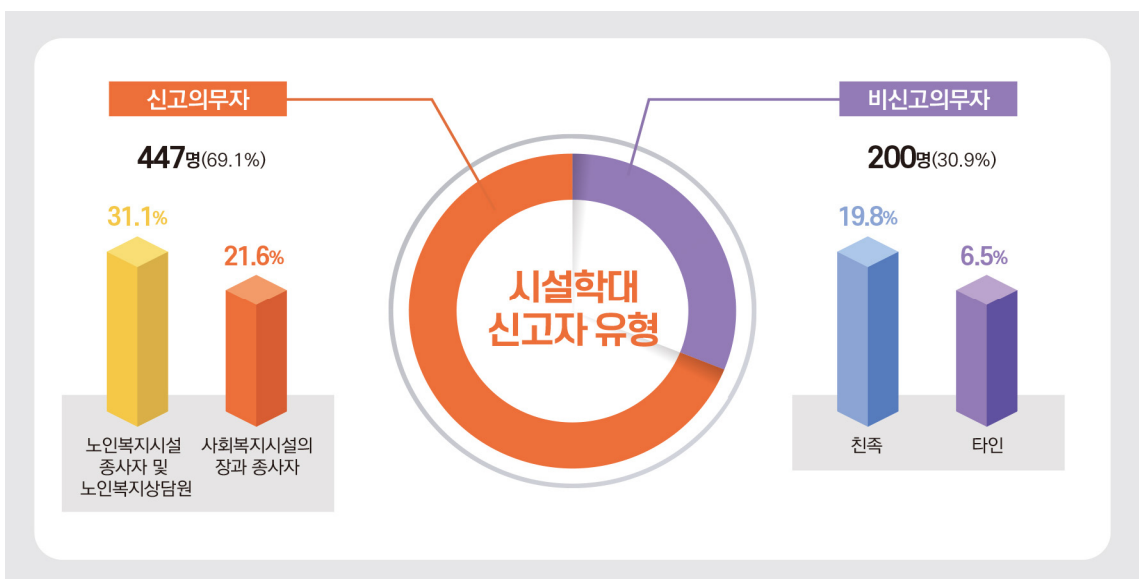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10 | 재학대 현황

🔍 (재학대) 812건, 전년 대비 0.5%p 증가('23년 759건 → '24년 812건)

- 남성: 150명(18.5%) / 여성: 662명(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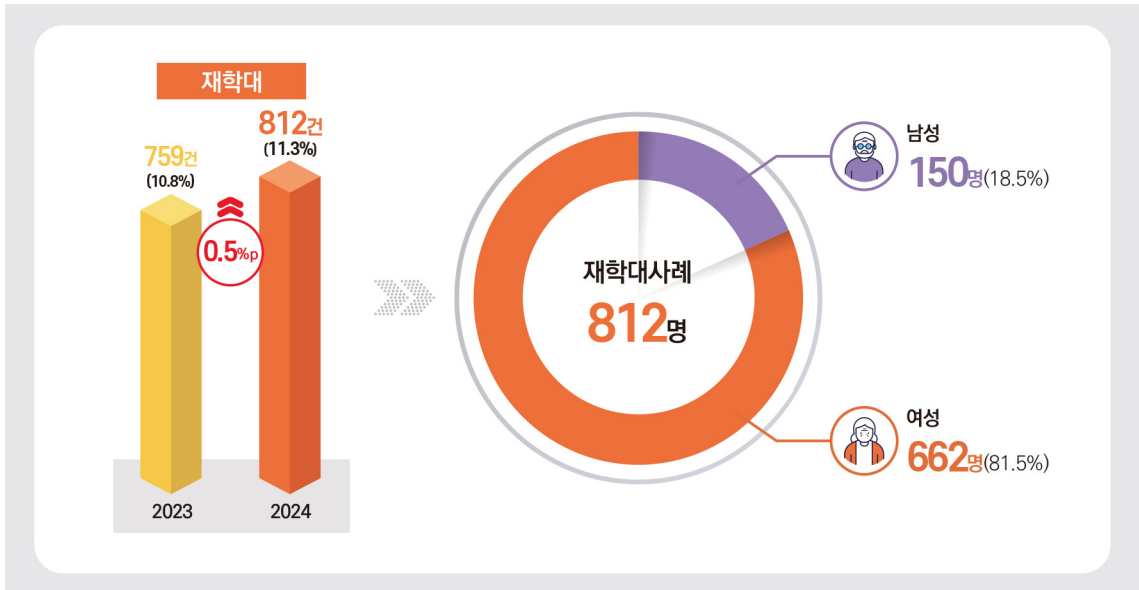


그림 2-18 재학대 현황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66명(8.1%), 비신고의무자 746명(91.9%)

- (비신고의무자) 경찰(74.0%), 학대피해노인(7.1%) 등

-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3.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1.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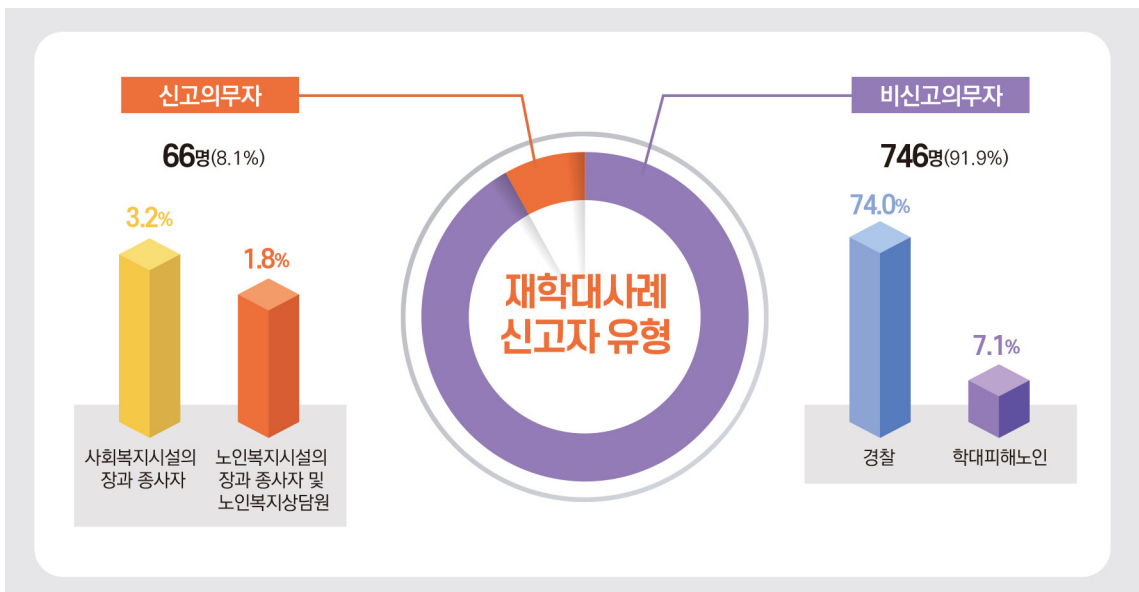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 유형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7.1% 증가**(’23년 745건 → ’24년 798건)
- (시설) 전년 대비 **33.3% 감소**(’23년 6건 → ’24년 4건)

🔍 (학대행위자)

- (가정) 배우자(44.2%), 아들(38.2%), 딸(7.2%)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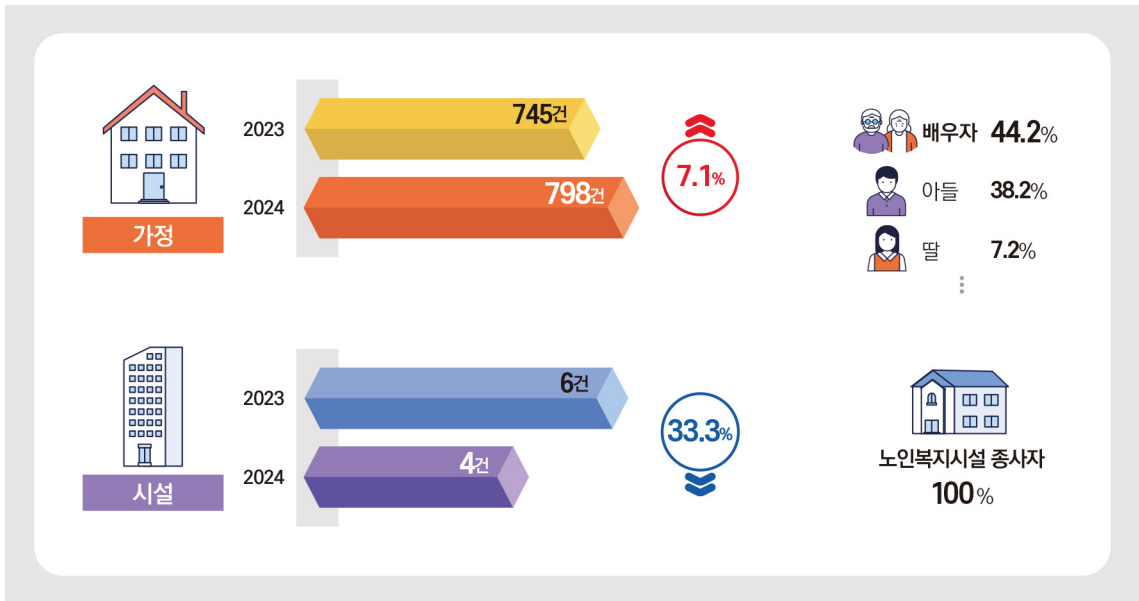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3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표 3-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7,167	15,579	22,746	812
비 율	31.5	68.5	100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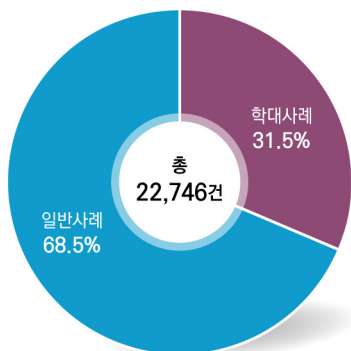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 신고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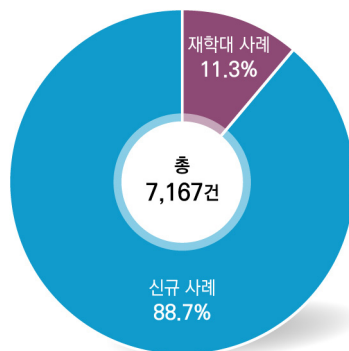


그림 3-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표 3-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544	7.6	919	5.9	1,463	6.4
2월	519	7.2	930	6.0	1,449	6.4
3월	513	7.2	1,218	7.8	1,731	7.6
4월	617	8.6	1,227	7.9	1,844	8.1
5월	639	8.9	1,188	7.6	1,827	8.0
6월	587	8.2	1,290	8.3	1,877	8.3
7월	707	9.9	1,436	9.2	2,143	9.4
8월	655	9.1	1,277	8.2	1,932	8.5
9월	640	8.9	1,606	10.3	2,246	9.9
10월	659	9.2	1,829	11.7	2,488	10.9
11월	542	7.6	1,556	10.0	2,098	9.2
12월	545	7.6	1,103	7.1	1,648	7.2
계	7,167	100	15,579	100	22,7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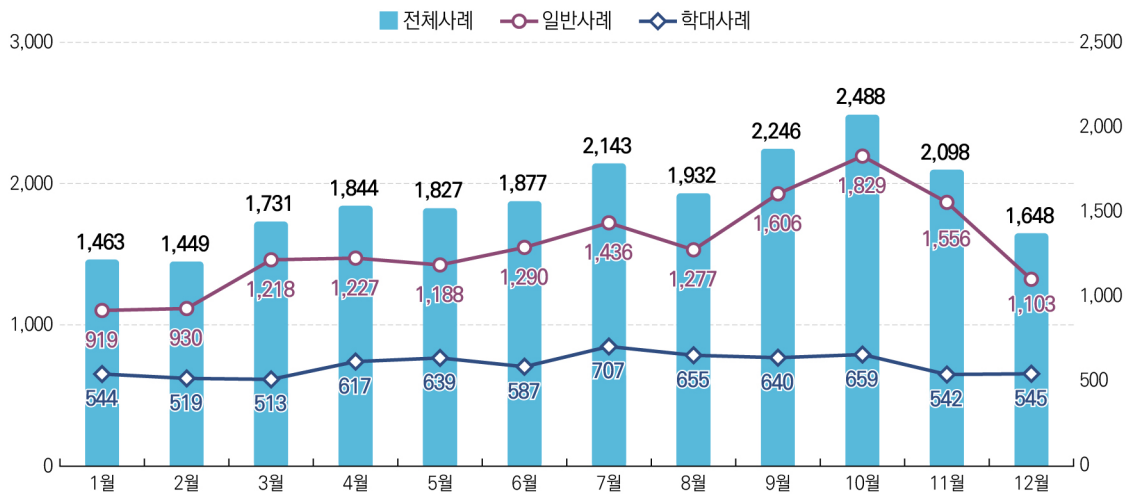


그림 3-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214	21.7	774	78.3	988	100
	서울북부	152	19.4	630	80.6	782	100
	서울서부	257	29.2	624	70.8	881	100
	서울동부	135	16.7	674	83.3	809	100
	소계	758	21.9	2,702	78.1	3,460	100
부산	부산중부	233	36.9	398	63.1	631	100
	부산동부	159	23.7	511	76.3	670	100
	부산서부	236	34.2	454	65.8	690	100
	소계	628	31.5	1,363	68.5	1,991	100
대구	대구남부	180	34.2	347	65.8	527	100
	대구북부	204	35.5	370	64.5	574	100
	소계	384	34.9	717	65.1	1,101	100
인천	인천	177	32.4	369	67.6	546	100
	인천서부	324	71.8	127	28.2	451	100
	소계	501	50.3	496	49.7	997	100
광주		204	45.3	246	54.7	450	100
대전		91	13.2	599	86.8	690	100
울산		167	32.7	343	67.3	510	100
경기	경기동부	293	44.3	369	55.7	662	100
	경기북부	525	50.8	509	49.2	1,034	100
	경기서부	249	39.6	379	60.4	628	100
	경기남부	226	38.2	365	61.8	591	100
	경기북서부	310	49.9	311	50.1	621	100
	소계	1,603	45.3	1,933	54.7	3,536	100
강원	강원	124	30.9	277	69.1	401	100
	강원동부	151	32.4	315	67.6	466	100
	강원남부	89	20.5	346	79.5	435	100
	소계	364	28.0	938	72.0	1,302	100
충북	충북	180	15.0	1,022	85.0	1,202	100
	충북북부	70	21.7	252	78.3	322	100
	소계	250	16.4	1,274	83.6	1,524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충남	충남	200	51.8	186	48.2	386	100
	충남남부	115	41.4	163	58.6	278	100
	소계	315	47.4	349	52.6	664	100
전북	전북	140	49.3	144	50.7	284	100
	전북서부	159	26.2	449	73.8	608	100
	소계	299	33.5	593	66.5	892	100
전남	전남동부	151	40.4	223	59.6	374	100
	전남서부	186	32.0	396	68.0	582	100
	소계	337	35.3	619	64.7	956	100
경북	경북동부	176	32.6	364	67.4	540	100
	경북북부	160	23.3	527	76.7	687	100
	경북서부	161	36.8	277	63.2	438	100
	경북남부	129	27.7	337	72.3	466	100
	소계	626	29.4	1,505	70.6	2,131	100
경남	경남	343	37.8	565	62.2	908	100
	경남서부	165	22.7	561	77.3	726	100
	소계	508	31.1	1,126	68.9	1,634	100
제주	제주시	80	14.0	492	86.0	572	100
	서귀포시	52	15.5	284	84.5	336	100
	소계	132	14.5	776	85.5	908	100
계		7,167	31.5	15,579	68.5	22,7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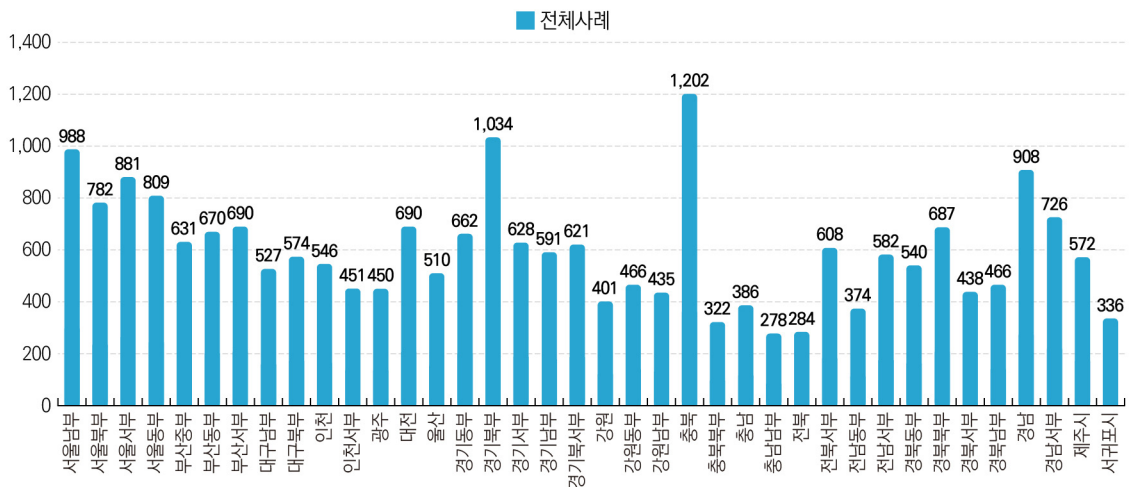


그림 3-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 신고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2,806,433	518,450	18.5	988	1.9
	서울북부	1,838,367	398,510	21.7	782	2.0
	서울서부	2,371,216	460,487	19.4	881	1.9
	서울동부	2,315,812	436,201	18.8	809	1.9
	소계	9,331,828	1,813,648	19.4	3,460	1.9
부산	부산중부	1,004,919	244,917	24.4	631	2.6
	부산동부	1,420,839	328,117	23.1	670	2.0
	부산서부	840,840	207,542	24.7	690	3.3
	소계	3,266,598	780,576	23.9	1,991	2.6
대구	대구남부	1,324,971	260,350	19.6	527	2.0
	대구북부	1,038,658	232,906	22.4	574	2.5
	소계	2,363,629	493,256	20.9	1,101	2.2
인천	인천	1,544,117	277,275	18.0	546	2.0
	인천서부	1,476,893	256,094	17.3	451	1.8
	소계	3,021,010	533,369	17.7	997	1.9
광주		1,408,422	246,980	17.5	450	1.8
대전		1,439,157	259,245	18.0	690	2.7
울산		1,098,049	188,702	17.2	510	2.7
경기	경기동부	2,860,335	515,375	18.0	662	1.3
	경기북부	2,202,750	408,281	18.5	1,034	2.5
	경기서부	2,618,640	443,866	17.0	628	1.4
	경기남부	3,816,975	521,511	13.7	591	1.1
	경기북서부	2,195,985	380,570	17.3	621	1.6
	소계	13,694,685	2,269,603	16.6	3,536	1.6
강원	강원	468,361	115,129	24.6	401	3.5
	강원동부	492,562	133,157	27.0	466	3.5
	강원남부	556,843	136,684	24.5	435	3.2
	소계	1,517,766	384,970	25.4	1,302	3.4
충북	충북	1,100,527	213,877	19.4	1,202	5.6
	충북북부	490,650	135,310	27.6	322	2.4
	소계	1,591,177	349,187	21.9	1,524	4.4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 신고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충남	충남	1,990,098	343,281	17.2	386	1.1
	충남남부	537,161	177,668	33.1	278	1.6
	소계	2,527,259	520,949	20.6	664	1.3
전북	전북	930,832	215,032	23.1	284	1.3
	전북서부	807,858	224,231	27.8	608	2.7
	소계	1,738,690	439,263	25.3	892	2.0
전남	전남동부	1,028,498	268,989	26.2	374	1.4
	전남서부	760,321	217,503	28.6	582	2.7
	소계	1,788,819	486,492	27.2	956	2.0
경북	경북동부	848,499	220,076	25.9	540	2.5
	경북북부	399,492	135,934	34.0	687	5.1
	경북서부	740,825	163,968	22.1	438	2.7
	경북남부	542,568	139,249	25.7	466	3.3
	소계	2,531,384	659,227	26.0	2,131	3.2
경남	경남	2,506,141	495,774	19.8	908	1.8
	경남서부	722,239	208,556	28.9	726	3.5
	소계	3,228,380	704,330	21.8	1,634	2.3
제주	제주시	488,348	85,251	17.5	572	6.7
	서귀포시	182,020	41,734	22.9	336	8.1
	소계	670,368	126,985	18.9	908	7.2
계		51,217,221	10,256,782	20.0	22,746	2.2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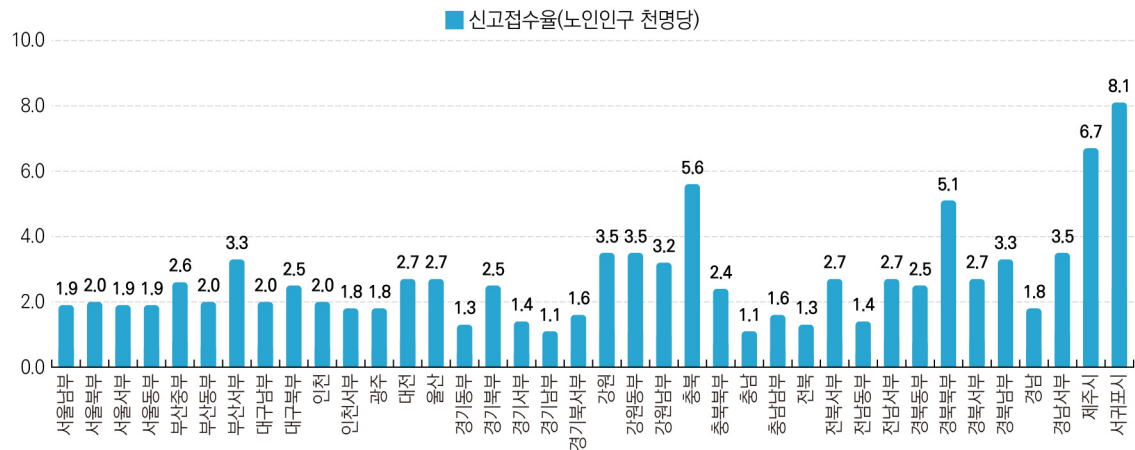


그림 3-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3-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서울	종로구	18	0.3
	중구	12	0.2
	용산구	6	0.1
	성동구	19	0.3
	광진구	19	0.3
	동대문구	28	0.4
	중랑구	33	0.5
	성북구	27	0.4
	강북구	28	0.4
	도봉구	28	0.4
	노원구	41	0.6
	은평구	54	0.8
	서대문구	19	0.3
	마포구	33	0.5
	양천구	50	0.7
	강서구	71	1.0
	구로구	24	0.3
	금천구	34	0.5
	영등포구	24	0.3
	동작구	31	0.4
	관악구	71	1.0
	서초구	9	0.1
	강남구	21	0.3
	송파구	26	0.4
	강동구	32	0.4
	소계	758	10.6
부산	중구	8	0.1
	서구	25	0.3
	동구	37	0.5
	영도구	57	0.8
	부산진구	110	1.5
	동래구	20	0.3
	남구	42	0.6
	북구	30	0.4
	해운대구	54	0.8
	사하구	86	1.2
	금정구	30	0.4
	강서구	22	0.3
	연제구	17	0.2

구 분		건 수	비 율
	수영구	15	0.2
	사상구	66	0.9
	기장군	9	0.1
	소계	628	8.8
대구	중구	5	0.1
	동구	105	1.5
	서구	52	0.7
	남구	42	0.6
	북구	33	0.5
	수성구	21	0.3
	달서구	73	1.0
	달성군	44	0.6
	군위군	9	0.1
	소계	384	5.4
인천	중구	31	0.4
	동구	14	0.2
	미추홀구	41	0.6
	연수구	26	0.4
	남동구	61	0.9
	부평구	103	1.4
	계양구	50	0.7
	서구	147	2.1
	강화군	24	0.3
	옹진군	4	0.1
	소계	501	7.0
광주	동구	30	0.4
	서구	42	0.6
	남구	45	0.6
	북구	60	0.8
	광산구	27	0.4
	소계	204	2.8
대전	동구	18	0.3
	중구	12	0.2
	서구	18	0.3
	유성구	33	0.5
	대덕구	8	0.1
	기타*	2	0.0
	소계	91	1.3
울산	중구	51	0.7
	남구	47	0.7
	동구	25	0.3
	북구	27	0.4

구 분		건 수	비 율
경기	울주군	17	0.2
	소계	167	2.3
	수원시	80	1.1
	성남시	125	1.7
	의정부시	80	1.1
	안양시	47	0.7
	부천시	99	1.4
	광명시	36	0.5
	평택시	28	0.4
	동두천시	34	0.5
	안산시	46	0.6
	고양시	155	2.2
	과천시	2	0.0
	구리시	69	1.0
	남양주시	203	2.8
	오산시	19	0.3
	시흥시	31	0.4
	군포시	25	0.3
	의왕시	9	0.1
	하남시	35	0.5
	용인시	105	1.5
	파주시	71	1.0
	이천시	13	0.2
	안성시	20	0.3
	김포시	46	0.6
	화성시	33	0.5
	광주시	28	0.4
	양주시	75	1.0
	포천시	46	0.6
	여주시	5	0.1
	연천군	4	0.1
	가평군	17	0.2
	양평군	17	0.2
	소계	1,603	22.4
강원	춘천시	93	1.3
	원주시	58	0.8
	강릉시	92	1.3
	동해시	23	0.3
	태백시	4	0.1
	속초시	19	0.3
	삼척시	4	0.1
	홍천군	7	0.1
	횡성군	-	-

구 분		건 수	비 율
	영월군	2	0.0
	평창군	14	0.2
	정선군	11	0.2
	철원군	5	0.1
	화천군	4	0.1
	양구군	2	0.0
	인제군	13	0.2
	고성군	6	0.1
	양양군	7	0.1
	소계	364	5.1
충북	청주시	135	1.9
	충주시	40	0.6
	제천시	11	0.2
	보은군	8	0.1
	옥천군	5	0.1
	영동군	5	0.1
	진천군	22	0.3
	괴산군	2	0.0
	음성군	14	0.2
	단양군	3	0.0
	증평군	5	0.1
	소계	250	3.5
충남	천안시	39	0.5
	공주시	27	0.4
	보령시	22	0.3
	아산시	47	0.7
	서산시	35	0.5
	논산시	21	0.3
	계룡시	12	0.2
	당진시	25	0.3
	금산군	2	0.0
	부여군	19	0.3
	서천군	9	0.1
	청양군	3	0.0
	홍성군	5	0.1
	예산군	7	0.1
	태안군	5	0.1
	소계	278	3.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7	0.5
	소계	37	0.5
전북	전주시	88	1.2
	군산시	44	0.6
	익산시	61	0.9

구 분		건 수	비 율
	정읍시	16	0.2
	남원시	14	0.2
	김제시	18	0.3
	완주군	17	0.2
	진안군	6	0.1
	무주군	-	-
	장수군	8	0.1
	임실군	4	0.1
	순창군	3	0.0
	고창군	11	0.2
	부안군	9	0.1
	소계	299	4.2
전남	목포시	57	0.8
	여수시	27	0.4
	순천시	44	0.6
	나주시	25	0.3
	광양시	18	0.3
	담양군	1	0.0
	곡성군	9	0.1
	구례군	6	0.1
	고흥군	22	0.3
	보성군	5	0.1
	화순군	3	0.0
	장흥군	2	0.0
	강진군	6	0.1
	해남군	36	0.5
	영암군	5	0.1
	무안군	17	0.2
	함평군	5	0.1
	영광군	14	0.2
	장성군	14	0.2
	완도군	10	0.1
	진도군	9	0.1
	신안군	2	0.0
	소계	337	4.7
경북	포항시	96	1.3
	경주시	60	0.8
	김천시	73	1.0
	안동시	79	1.1
	구미시	40	0.6
	영주시	37	0.5
	영천시	26	0.4
	상주시	24	0.3

구 분		건 수	비 율
	문경시	29	0.4
	경산시	52	0.7
	의성군	15	0.2
	청송군	5	0.1
	영양군	3	0.0
	영덕군	10	0.1
	청도군	9	0.1
	고령군	5	0.1
	성주군	12	0.2
	칠곡군	20	0.3
	예천군	18	0.3
	봉화군	8	0.1
	울진군	5	0.1
	울릉군	-	-
	소계	626	8.7
경남	창원시	134	1.9
	진주시	59	0.8
	통영시	32	0.4
	사천시	24	0.3
	김해시	63	0.9
	밀양시	4	0.1
	거제시	17	0.2
	양산시	80	1.1
	의령군	-	-
	함안군	3	0.0
	창녕군	5	0.1
	고성군	5	0.1
	남해군	10	0.1
	하동군	8	0.1
	산청군	35	0.5
	함양군	21	0.3
	거창군	5	0.1
	합천군	3	0.0
	소계	508	7.1
제주	제주시	80	1.1
	서귀포시	52	0.7
	소계	132	1.8
계		7,16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3-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응급	102	-	10	-	-	1	-	1	-	114
	89.5	-	8.8	-	-	0.9	-	0.9	-	100
비응급	4,122	29	556	1	51	60	5	38	43	4,905
	84.0	0.6	11.3	0.0	1.0	1.2	0.1	0.8	0.9	100
잠재	2,099	-	-	-	-	-	-	22	27	2,148
	97.7	-	-	-	-	-	-	1.0	1.3	100
계	6,323	29	566	1	51	61	5	61	70	7,167
	88.2	0.4	7.9	0.0	0.7	0.9	0.1	0.9	1.0	100

5) 신고자 유형

표 3-7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1,004	6,163	7,167
14.0	8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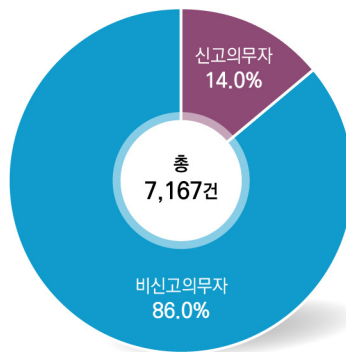


그림 3-6 신고자 유형 I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표 3-8 신고자 유형II(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 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 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장기 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 의 구급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근무 하는 사회 복무 요원	
15	11	283	2	40	179	41	2	1	-	2	-	-	8	9	60	348	3	1,004
1.5	1.1	28.2	0.2	4.0	17.8	4.1	0.2	0.1	-	0.2	-	-	0.8	0.9	6.0	34.7	0.3	100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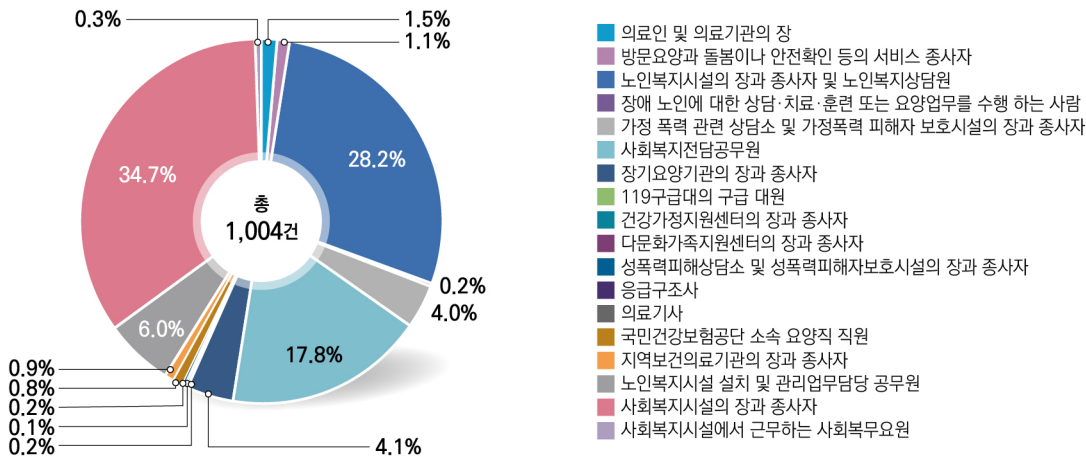


그림 3-7 신고자 유형II

표 3-9 신고자 유형III(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¹⁵⁾	타인 ¹⁶⁾	관련기관 ¹⁷⁾	
289	2	448	154	5,270	6,163
4.7	0.0	7.3	2.5	85.5	100

15)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6)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7)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됨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표 3-10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2	16	43	4,671	10	2	5	-	114	9	2,173	14	9	81	18	7,167
0.0	0.2	0.6	65.2	0.1	0.0	0.1	-	1.6	0.1	30.3	0.2	0.1	1.1	0.3	100

나. 신고접수 유형

표 3-11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¹⁸⁾	온라인	전 화	계
217	5,105	70	1,775	7,167
3.0	71.2	1.0	2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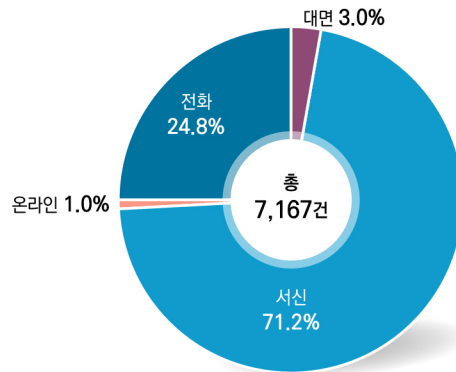


그림 3-8 신고접수 유형

18) 112 등 연계기관에서 의뢰한 '노인학대 의심 사례통보서' 등 문서로 신고된 유형이 서신 신고에 해당됨

다. 신고 경로 인지 유형

표 3-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구 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6	25	946	5	1	7	14	1,004
	0.6	2.5	94.2	0.5	0.1	0.7	1.4	100
비신고 의무자	62	161	5,482	109	92	55	202	6,163
	1.0	2.6	89.0	1.8	1.5	0.9	3.3	100
계	68	186	6,428	114	93	62	216	7,167
	0.9	2.6	89.7	1.6	1.3	0.9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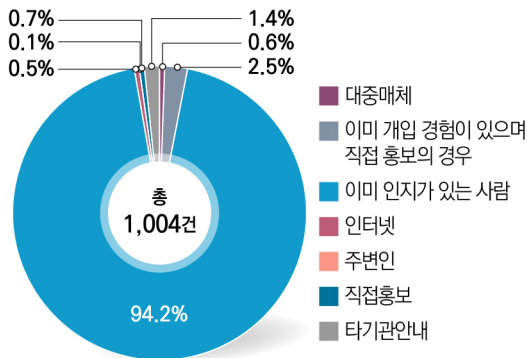


그림 3-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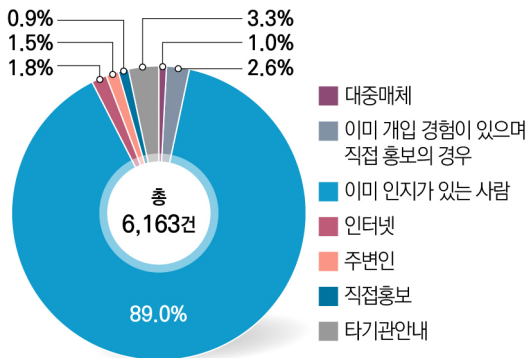


그림 3-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4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01 | 현장조사

표 4-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7,167	7,080	98.8

* 현장조사를 노인학대로 신고접수 된 사례 ('24년)22,746건 중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방문조사 하는 것을 의미함. 이 중 학대사례판정(7,167건)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98.8%**였으며 방문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비율은 1.2%**로 나타남

** 노인학대사례판정의 현장조사 **미실시(1.2%) 사유**는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 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학대피해노인의 현장조사 거부, 기관 내방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표 4-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건,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214	214	100	1,007	4.7
	서울북부	152	152	100	992	6.5
	서울서부	257	257	100	1,139	4.4
	서울동부	135	135	100	979	7.3
	소계	758	758	100	4,117	5.4
부산	부산중부	233	231	99.1	1,608	6.9
	부산동부	159	159	100	445	2.8
	부산서부	236	236	100	872	3.7
	소계	628	626	99.7	2,925	4.7
대구	대구남부	180	180	100	1,039	5.8
	대구북부	204	199	97.5	615	3.0
	소계	384	379	98.7	1,654	4.3
인천	인천	177	177	100	1,018	5.8
	인천서부	324	304	93.8	679	2.1
	소계	501	481	96.0	1,697	3.4
광주		204	204	100	707	3.5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대전	91	89	97.8	769	8.5
	울산	167	161	96.4	1,316	7.9
경기	경기동부	293	287	98.0	1,010	3.4
	경기북부	525	525	100	1,170	2.2
	경기서부	249	249	100	910	3.7
	경기남부	226	218	96.5	422	1.9
	경기북서부	310	308	99.4	772	2.5
	소계	1,603	1,587	99.0	4,284	2.7
강원	강원	124	124	100	1,834	14.8
	강원동부	151	150	99.3	1,287	8.5
	강원남부	89	89	100	947	10.6
	소계	364	363	99.7	4,068	11.2
충북	충북	180	165	91.7	967	5.4
	충북북부	70	64	91.4	440	6.3
	소계	250	229	91.6	1,407	5.6
충남	충남	200	198	99.0	1,462	7.3
	충남남부	115	114	99.1	364	3.2
	소계	315	312	99.0	1,826	5.8
전북	전북	140	140	100	678	4.8
	전북서부	159	157	98.7	879	5.5
	소계	299	297	99.3	1,557	5.2
전남	전남동부	151	151	100	562	3.7
	전남서부	186	178	95.7	1,380	7.4
	소계	337	329	97.6	1,942	5.8
경북	경북동부	176	176	100	2,054	11.7
	경북북부	160	160	100	1,141	7.1
	경북서부	161	161	100	1,434	8.9
	경북남부	129	129	100	1,874	14.5
	소계	626	626	100	6,503	10.4
경남	경남	343	343	100	883	2.6
	경남서부	165	165	100	1,755	10.6
	소계	508	508	100	2,638	5.2
제주	제주시	80	79	98.8	703	8.8
	서귀포시	52	52	100	1,571	30.2
	소계	132	131	99.2	2,274	17.2
계		7,167	7,080	98.8	39,684	5.5

02 | 사례판정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서울	서울남부	-	-	194	90.7	20	9.3	214	100
	서울북부	1	0.7	51	33.6	100	65.8	152	100
	서울서부	3	1.2	148	57.6	106	41.2	257	100
	서울동부	1	0.7	5	3.7	129	95.6	135	100
	소계	5	0.7	398	52.5	355	46.8	758	100
부산	부산중부	3	1.3	205	88.0	25	10.7	233	100
	부산동부	8	5.0	122	76.7	29	18.2	159	100
	부산서부	3	1.3	183	77.5	50	21.2	236	100
	소계	14	2.2	510	81.2	104	16.6	628	100
대구	대구남부	-	-	131	72.8	49	27.2	180	100
	대구북부	4	2.0	78	38.2	122	59.8	204	100
	소계	4	1.0	209	54.4	171	44.5	384	100
인천	인천	1	0.6	49	27.7	127	71.8	177	100
	인천서부	7	2.2	223	68.8	94	29.0	324	100
	소계	8	1.6	272	54.3	221	44.1	501	100
광주		10	4.9	184	90.2	10	4.9	204	100
대전		2	2.2	69	75.8	20	22.0	91	100
울산		6	3.6	150	89.8	11	6.6	167	100
경기	경기동부	-	-	268	91.5	25	8.5	293	100
	경기북부	10	1.9	386	73.5	129	24.6	525	100
	경기서부	2	0.8	34	13.7	213	85.5	249	100
	경기남부	2	0.9	53	23.5	171	75.7	226	100
	경기북서부	5	1.6	293	94.5	12	3.9	310	100
	소계	19	1.2	1,034	64.5	550	34.3	1,603	100
강원	강원	4	3.2	99	79.8	21	16.9	124	100
	강원동부	-	-	59	39.1	92	60.9	151	100
	강원남부	-	-	68	76.4	21	23.6	89	100
	소계	4	1.1	226	62.1	134	36.8	364	100
충북	충북	2	1.1	167	92.8	11	6.1	180	100
	충북북부	1	1.4	45	64.3	24	34.3	70	100
	소계	3	1.2	212	84.8	35	14.0	250	100
충남	충남	5	2.5	161	80.5	34	17.0	200	100
	충남남부	5	4.3	105	91.3	5	4.3	115	100
	소계	10	3.2	266	84.4	39	12.4	315	100
전북	전북	-	-	127	90.7	13	9.3	140	100
	전북서부	10	6.3	107	67.3	42	26.4	159	100
	소계	10	3.3	234	78.3	55	18.4	299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전남	전남동부	8	5.3	143	94.7	-	-	151	100
	전남서부	-	-	145	78.0	41	22.0	186	100
	소계	8	2.4	288	85.5	41	12.2	337	100
경북	경북동부	-	-	61	34.7	115	65.3	176	100
	경북북부	2	1.3	133	83.1	25	15.6	160	100
	경북서부	1	0.6	129	80.1	31	19.3	161	100
	경북남부	1	0.8	60	46.5	68	52.7	129	100
	소계	4	0.6	383	61.2	239	38.2	626	100
경남	경남	-	-	263	76.7	80	23.3	343	100
	경남서부	1	0.6	125	75.8	39	23.6	165	100
	소계	1	0.2	388	76.4	119	23.4	508	100
제주	제주시	1	1.3	35	43.8	44	55.0	80	100
	서귀포시	5	9.6	47	90.4	-	-	52	100
	소계	6	4.5	82	62.1	44	33.3	132	100
계		114	1.6	4,905	68.4	2,148	30.0	7,1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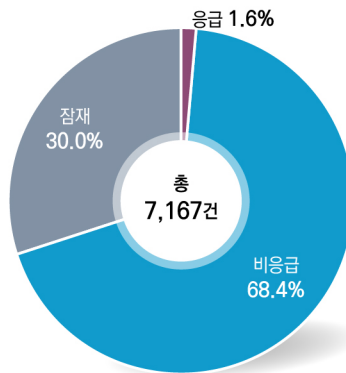


그림 4-1 사례판정 결과

표 4-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서울	종로구	-	-	6	33.3	12	66.7	18	100
	중구	-	-	4	33.3	8	66.7	12	100
	용산구	-	-	-	-	6	100	6	100
	성동구	-	-	1	5.3	18	94.7	19	100
	광진구	-	-	2	10.5	17	89.5	19	100
	동대문구	-	-	10	35.7	18	64.3	28	100
	중랑구	-	-	-	-	33	100	33	100
	성북구	-	-	5	18.5	22	81.5	27	100
	강북구	-	-	10	35.7	18	64.3	28	100
	도봉구	-	-	12	42.9	16	57.1	28	100
	노원구	1	2.4	14	34.1	26	63.4	41	100
	은평구	1	1.9	36	66.7	17	31.5	54	100
	서대문구	-	-	12	63.2	7	36.8	19	100
	마포구	-	-	19	57.6	14	42.4	33	100
	양천구	1	2.0	27	54.0	22	44.0	50	100
	강서구	1	1.4	44	62.0	26	36.6	71	100
	구로구	-	-	22	91.7	2	8.3	24	100
	금천구	-	-	29	85.3	5	14.7	34	100
	영등포구	-	-	19	79.2	5	20.8	24	100
	동작구	-	-	30	96.8	1	3.2	31	100
	관악구	-	-	68	95.8	3	4.2	71	100
	서초구	-	-	9	100	-	-	9	100
	강남구	-	-	17	81.0	4	19.0	21	100
	송파구	1	3.8	2	7.7	23	88.5	26	100
	강동구	-	-	-	-	32	100	32	100
	소계	5	0.7	398	52.5	355	46.8	758	100
부산	중구	1	12.5	6	75.0	1	12.5	8	100
	서구	-	-	21	84.0	4	16.0	25	100
	동구	-	-	33	89.2	4	10.8	37	100
	영도구	-	-	42	73.7	15	26.3	57	100
	부산진구	1	0.9	98	89.1	11	10.0	110	100
	동래구	2	10.0	14	70.0	4	20.0	20	100
	남구	1	2.4	34	81.0	7	16.7	42	100
	북구	-	-	28	93.3	2	6.7	30	100
	해운대구	2	3.7	40	74.1	12	22.2	54	100
	사하구	1	1.2	68	79.1	17	19.8	86	100
	금정구	-	-	26	86.7	4	13.3	30	100
	강서구	-	-	17	77.3	5	22.7	22	100
	연제구	2	11.8	14	82.4	1	5.9	17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 재		계	
	수영구	2	13.3	10	66.7	3	20.0	15	100
	사상구	2	3.0	53	80.3	11	16.7	66	100
	기장군	-	-	6	66.7	3	33.3	9	100
	소계	14	2.2	510	81.2	104	16.6	628	100
대구	중구	1	20.0	3	60.0	1	20.0	5	100
	동구	1	1.0	39	37.1	65	61.9	105	100
	서구	1	1.9	26	50.0	25	48.1	52	100
	남구	-	-	32	76.2	10	23.8	42	100
	북구	1	3.0	8	24.2	24	72.7	33	100
	수성구	-	-	14	66.7	7	33.3	21	100
	달서구	-	-	55	75.3	18	24.7	73	100
	달성군	-	-	30	68.2	14	31.8	44	100
	군위군	-	-	2	22.2	7	77.8	9	100
	소계	4	1.0	209	54.4	171	44.5	384	100
인천	중구	-	-	8	25.8	23	74.2	31	100
	동구	-	-	4	28.6	10	71.4	14	100
	미추홀구	1	2.4	11	26.8	29	70.7	41	100
	연수구	-	-	4	15.4	22	84.6	26	100
	남동구	-	-	21	34.4	40	65.6	61	100
	부평구	4	3.9	74	71.8	25	24.3	103	100
	계양구	1	2.0	38	76.0	11	22.0	50	100
	서구	2	1.4	93	63.3	52	35.4	147	100
	강화군	-	-	18	75.0	6	25.0	24	100
	옹진군	-	-	1	25.0	3	75.0	4	100
	소계	8	1.6	272	54.3	221	44.1	501	100
광주	동구	1	3.3	27	90.0	2	6.7	30	100
	서구	-	-	40	95.2	2	4.8	42	100
	남구	4	8.9	41	91.1	-	-	45	100
	북구	4	6.7	54	90.0	2	3.3	60	100
	광산구	1	3.7	22	81.5	4	14.8	27	100
	소계	10	4.9	184	90.2	10	4.9	204	100
대전	동구	-	-	12	66.7	6	33.3	18	100
	중구	-	-	9	75.0	3	25.0	12	100
	서구	1	5.6	14	77.8	3	16.7	18	100
	유성구	1	3.0	29	87.9	3	9.1	33	100
	대덕구	-	-	3	37.5	5	62.5	8	100
	기타*	-	-	2	100	-	-	2	100
	소계	2	2.2	69	75.8	20	22.0	91	100
울산	중구	1	2.0	45	88.2	5	9.8	51	100
	남구	3	6.4	42	89.4	2	4.3	47	100
	동구	1	4.0	22	88.0	2	8.0	25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북구	-	-	26	96.3	1	3.7	27	100
	울주군	1	5.9	15	88.2	1	5.9	17	100
	소계	6	3.6	150	89.8	11	6.6	167	100
경기	수원시	1	1.3	10	12.5	69	86.3	80	100
	성남시	-	-	114	91.2	11	8.8	125	100
	의정부시	2	2.5	61	76.3	17	21.3	80	100
	안양시	-	-	7	14.9	40	85.1	47	100
	부천시	2	2.0	15	15.2	82	82.8	99	100
	광명시	-	-	2	5.6	34	94.4	36	100
	평택시	-	-	13	46.4	15	53.6	28	100
	동두천시	-	-	32	94.1	2	5.9	34	100
	안산시	-	-	10	21.7	36	78.3	46	100
	고양시	5	3.2	143	92.3	7	4.5	155	100
	과천시	-	-	-	-	2	100	2	100
	구리시	-	-	50	72.5	19	27.5	69	100
	남양주시	3	1.5	142	70.0	58	28.6	203	100
	오산시	-	-	2	10.5	17	89.5	19	100
	시흥시	-	-	4	12.9	27	87.1	31	100
	군포시	-	-	6	24.0	19	76.0	25	100
	의왕시	-	-	-	-	9	100	9	100
	하남시	-	-	25	71.4	10	28.6	35	100
	용인시	-	-	97	92.4	8	7.6	105	100
	파주시	-	-	69	97.2	2	2.8	71	100
	이천시	-	-	11	84.6	2	15.4	13	100
	안성시	-	-	6	30.0	14	70.0	20	100
	김포시	-	-	45	97.8	1	2.2	46	100
	화성시	1	3.0	12	36.4	20	60.6	33	100
	광주시	-	-	26	92.9	2	7.1	28	100
	양주시	3	4.0	63	84.0	9	12.0	75	100
	포천시	1	2.2	35	76.1	10	21.7	46	100
	여주시	-	-	4	80.0	1	20.0	5	100
	연천군	-	-	4	100	-	-	4	100
	가평군	1	5.9	10	58.8	6	35.3	17	100
	양평군	-	-	16	94.1	1	5.9	17	100
	소계	19	1.2	1,034	64.5	550	34.3	1,603	100
강원	춘천시	4	4.3	78	83.9	11	11.8	93	100
	원주시	-	-	42	72.4	16	27.6	58	100
	강릉시	-	-	53	57.6	39	42.4	92	100
	동해시	-	-	3	13.0	20	87.0	23	100
	태백시	-	-	2	50.0	2	50.0	4	100
	속초시	-	-	1	5.3	18	94.7	19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삼척시	-	-	-	-	4	100	4	100
	홍천군	-	-	5	71.4	2	28.6	7	100
	횡성군	-	-	-	-	-	-	-	-
	영월군	-	-	1	50.0	1	50.0	2	100
	평창군	-	-	13	92.9	1	7.1	14	100
	정선군	-	-	10	90.9	1	9.1	11	100
	철원군	-	-	3	60.0	2	40.0	5	100
	화천군	-	-	2	50.0	2	50.0	4	100
	양구군	-	-	2	100	-	-	2	100
	인제군	-	-	9	69.2	4	30.8	13	100
	고성군	-	-	1	16.7	5	83.3	6	100
	양양군	-	-	1	14.3	6	85.7	7	100
	소계	4	1.1	226	62.1	134	36.8	364	100
충북	청주시	-	-	125	92.6	10	7.4	135	100
	충주시	-	-	27	67.5	13	32.5	40	100
	제천시	1	9.1	9	81.8	1	9.1	11	100
	보은군	1	12.5	7	87.5	-	-	8	100
	옥천군	-	-	5	100	-	-	5	100
	영동군	-	-	5	100	-	-	5	100
	진천군	1	4.5	20	90.9	1	4.5	22	100
	괴산군	-	-	-	-	2	100	2	100
	음성군	-	-	7	50.0	7	50.0	14	100
	단양군	-	-	2	66.7	1	33.3	3	100
	증평군	-	-	5	100	-	-	5	100
	소계	3	1.2	212	84.8	35	14.0	250	100
충남	천안시	2	5.1	31	79.5	6	15.4	39	100
	공주시	1	3.7	24	88.9	2	7.4	27	100
	보령시	-	-	21	95.5	1	4.5	22	100
	아산시	1	2.1	34	72.3	12	25.5	47	100
	서산시	-	-	27	77.1	8	22.9	35	100
	논산시	1	4.8	20	95.2	-	-	21	100
	계룡시	-	-	12	100	-	-	12	100
	당진시	-	-	22	88.0	3	12.0	25	100
	금산군	-	-	2	100	-	-	2	100
	부여군	1	5.3	17	89.5	1	5.3	19	100
	서천군	-	-	8	88.9	1	11.1	9	100
	청양군	2	66.7	1	33.3	-	-	3	100
	홍성군	-	-	5	100	-	-	5	100
	예산군	1	14.3	6	85.7	-	-	7	100
	태안군	-	-	5	100	-	-	5	100
	소계	9	3.2	235	84.5	34	12.2	278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	2.7	31	83.8	5	13.5	37	100
	소계	1	2.7	31	83.8	5	13.5	37	100
전북	전주시	-	-	83	94.3	5	5.7	88	100
	군산시	-	-	27	61.4	17	38.6	44	100
	익산시	9	14.8	44	72.1	8	13.1	61	100
	정읍시	-	-	10	62.5	6	37.5	16	100
	남원시	-	-	12	85.7	2	14.3	14	100
	김제시	-	-	14	77.8	4	22.2	18	100
	완주군	-	-	16	94.1	1	5.9	17	100
	진안군	-	-	5	83.3	1	16.7	6	100
	무주군	-	-	-	-	-	-	-	-
	장수군	-	-	7	87.5	1	12.5	8	100
	임실군	-	-	2	50.0	2	50.0	4	100
	순창군	-	-	2	66.7	1	33.3	3	100
	고창군	1	9.1	5	45.5	5	45.5	11	100
	부안군	-	-	7	77.8	2	22.2	9	100
	소계	10	3.3	234	78.3	55	18.4	299	100
전남	목포시	-	-	39	68.4	18	31.6	57	100
	여수시	1	3.7	26	96.3	-	-	27	100
	순천시	3	6.8	41	93.2	-	-	44	100
	나주시	-	-	21	84.0	4	16.0	25	100
	광양시	1	5.6	17	94.4	-	-	18	100
	담양군	-	-	1	100	-	-	1	100
	곡성군	1	11.1	8	88.9	-	-	9	100
	구례군	-	-	6	100	-	-	6	100
	고흥군	-	-	22	100	-	-	22	100
	보성군	2	40.0	3	60.0	-	-	5	100
	화순군	-	-	3	100	-	-	3	100
	장흥군	-	-	2	100	-	-	2	100
	강진군	-	-	6	100	-	-	6	100
	해남군	-	-	32	88.9	4	11.1	36	100
	영암군	-	-	5	100	-	-	5	100
	무안군	-	-	13	76.5	4	23.5	17	100
	함평군	-	-	5	100	-	-	5	100
	영광군	-	-	9	64.3	5	35.7	14	100
	장성군	-	-	14	100	-	-	14	100
	완도군	-	-	6	60.0	4	40.0	10	100
	진도군	-	-	7	77.8	2	22.2	9	100
	신안군	-	-	2	100	-	-	2	100
	소계	8	2.4	288	85.5	41	12.2	337	100
경북	포항시	-	-	34	35.4	62	64.6	96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경주시	-	-	25	41.7	35	58.3	60	100
	김천시	-	-	66	90.4	7	9.6	73	100
	안동시	1	1.3	64	81.0	14	17.7	79	100
	구미시	-	-	27	67.5	13	32.5	40	100
	영주시	-	-	31	83.8	6	16.2	37	100
	영천시	-	-	12	46.2	14	53.8	26	100
	상주시	-	-	19	79.2	5	20.8	24	100
	문경시	1	3.4	25	86.2	3	10.3	29	100
	경산시	1	1.9	14	26.9	37	71.2	52	100
	의성군	-	-	13	86.7	2	13.3	15	100
	청송군	-	-	1	20.0	4	80.0	5	100
	영양군	-	-	3	100	-	-	3	100
	영덕군	-	-	1	10.0	9	90.0	10	100
	청도군	-	-	3	33.3	6	66.7	9	100
	고령군	-	-	-	-	5	100	5	100
	성주군	-	-	9	75.0	3	25.0	12	100
	칠곡군	-	-	14	70.0	6	30.0	20	100
	예천군	1	5.6	14	77.8	3	16.7	18	100
	봉화군	-	-	8	100	-	-	8	100
	울진군	-	-	-	-	5	100	5	100
	울릉군	-	-	-	-	-	-	-	-
	소계	4	0.6	383	61.2	239	38.2	626	100
경남	창원시	-	-	102	76.1	32	23.9	134	100
	진주시	1	1.7	38	64.4	20	33.9	59	100
	통영시	-	-	22	68.8	10	31.3	32	100
	사천시	-	-	14	58.3	10	41.7	24	100
	김해시	-	-	47	74.6	16	25.4	63	100
	밀양시	-	-	4	100	-	-	4	100
	거제시	-	-	12	70.6	5	29.4	17	100
	양산시	-	-	66	82.5	14	17.5	80	100
	의령군	-	-	-	-	-	-	-	-
	함안군	-	-	3	100	-	-	3	100
	창녕군	-	-	3	60.0	2	40.0	5	100
	고성군	-	-	4	80.0	1	20.0	5	100
	남해군	-	-	8	80.0	2	20.0	10	100
	하동군	-	-	6	75.0	2	25.0	8	100
	산청군	-	-	33	94.3	2	5.7	35	100
	함양군	-	-	21	100	-	-	21	100
	거창군	-	-	4	80.0	1	20.0	5	100
	합천군	-	-	1	33.3	2	66.7	3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소계	1	0.2	388	76.4	119	23.4	508	100
제주	제주시	1	1.3	35	43.8	44	55.0	80	100
	서귀포시	5	9.6	47	90.4	-	-	52	100
	소계	6	4.5	82	62.1	44	33.3	132	100
계		114	1.6	4,905	68.4	2,148	30.0	7,16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4-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신체적 학대	86	42.0	3,561	45.7	1,150	39.1	4,797	43.9
정서적 학대	69	33.7	3,270	42.0	1,445	49.2	4,784	43.8
성적 학대	12	5.9	236	3.0	24	0.8	272	2.5
경제적 학대	7	3.4	199	2.6	92	3.1	298	2.7
방임	22	10.7	451	5.8	137	4.7	610	5.6
자기방임	5	2.4	59	0.8	67	2.3	131	1.2
유기	4	2.0	13	0.2	23	0.8	40	0.4
계	205	100	7,789	100	2,938	100	10,93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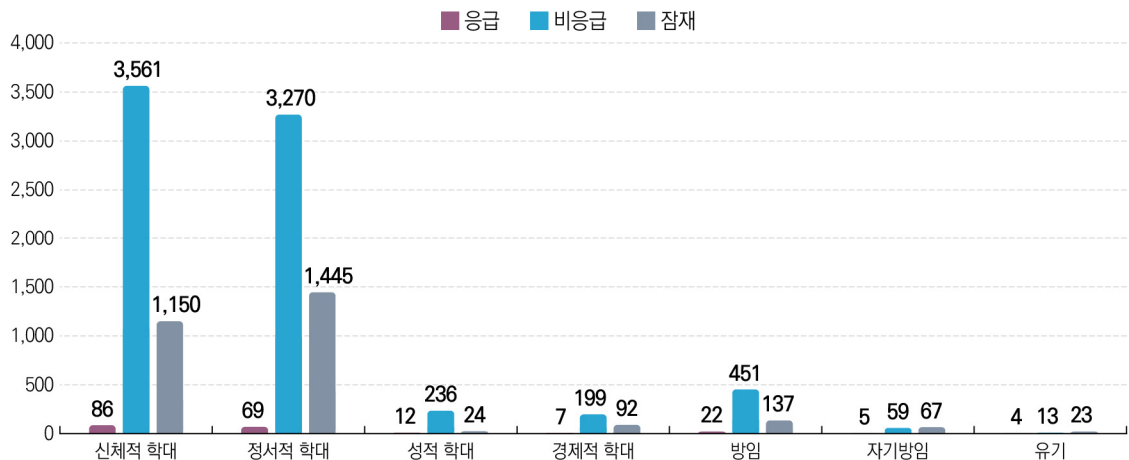


그림 4-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4-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응 급		비용급		잠 재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7	6.1	168	3.4	114	5.3	289	4.0
학대행위자 본인	1	0.9	1	0.0	-	-	2	0.0
친족 ¹⁹⁾	9	7.9	321	6.5	118	5.5	448	6.3
타인 ²⁰⁾	3	2.6	108	2.2	39	1.8	150	2.1
관련기관 ²¹⁾	68	59.6	3,566	72.7	1,640	76.4	5,274	73.6
신고의무자	26	22.8	741	15.1	237	11.0	1,004	14.0
계	114	100	4,905	100	2,148	100	7,1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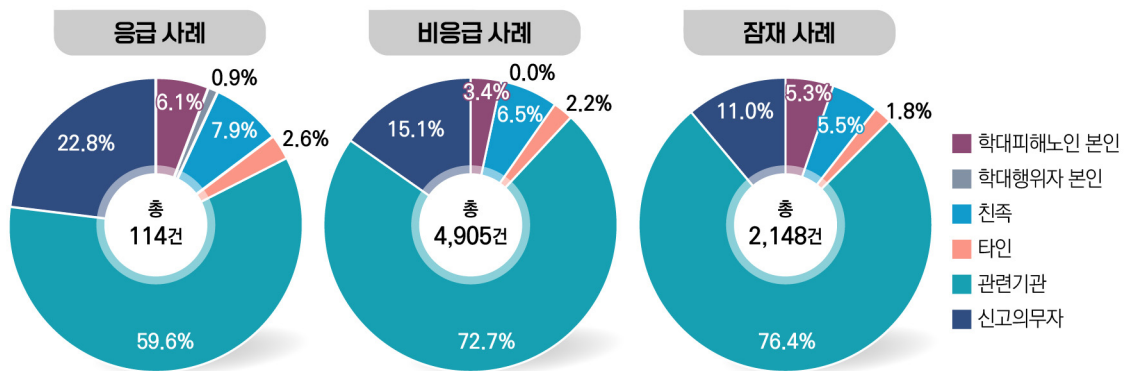


그림 4-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19)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20)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21)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PART 05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01 |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표 5-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1,058	864	93	68	200	73	23	4,788	7,167
14.8	12.1	1.3	0.9	2.8	1.0	0.3	6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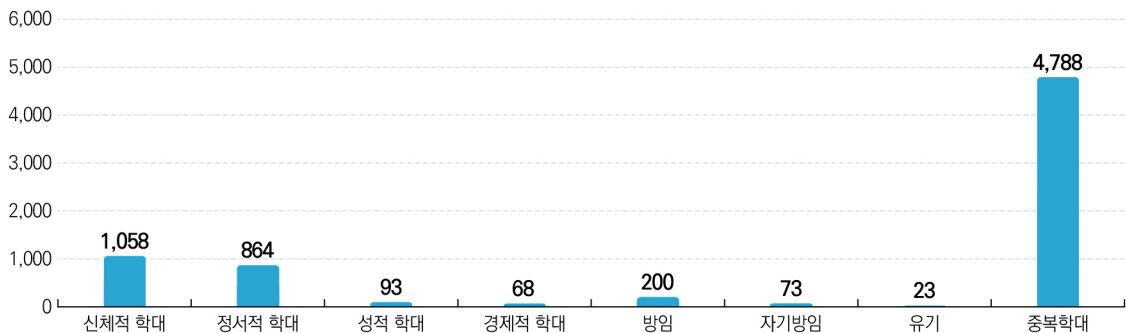


그림 5-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표 5-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43.9	43.8	2.5	2.7	5.6	1.2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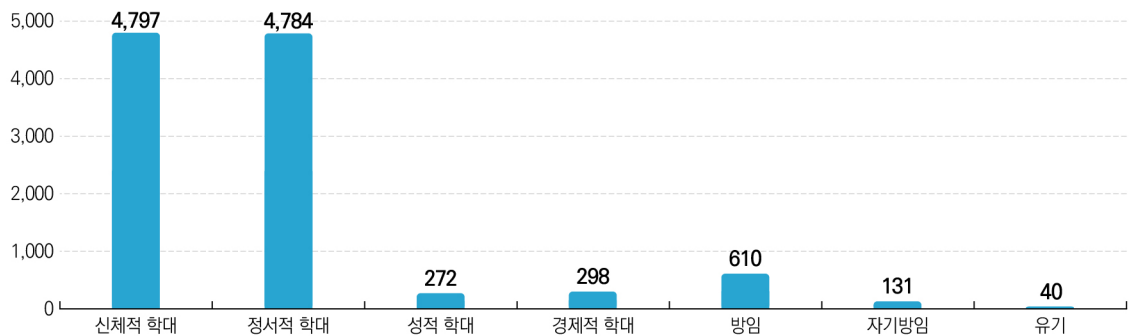


그림 5-2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표 5-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Ⅱ(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서울	종로구	11	39.3	16	57.1	-	-	-	-	1	3.6	-	-	-	-	28	100
	중구	9	42.9	12	57.1	-	-	-	-	-	-	-	-	-	-	21	100
	용산구	2	33.3	3	50.0	1	16.7	-	-	-	-	-	-	-	-	6	100
	성동구	12	42.9	14	50.0	-	-	-	-	1	3.6	-	-	1	3.6	28	100
	광진구	15	53.6	12	42.9	-	-	-	-	1	3.6	-	-	-	-	28	100
	동대문구	20	39.2	24	47.1	1	2.0	4	7.8	2	3.9	-	-	-	-	51	100
	중랑구	24	46.2	23	44.2	-	-	1	1.9	2	3.8	-	-	2	3.8	52	100
	성북구	19	38.0	26	52.0	-	-	4	8.0	1	2.0	-	-	-	-	50	100
	강북구	17	37.8	23	51.1	-	-	3	6.7	2	4.4	-	-	-	-	45	100
	도봉구	21	38.9	27	50.0	-	-	5	9.3	1	1.9	-	-	-	-	54	100
	노원구	35	43.8	39	48.8	1	1.3	4	5.0	1	1.3	-	-	-	-	80	100
	은평구	38	40.4	50	53.2	1	1.1	1	1.1	3	3.2	-	-	1	1.1	94	100
	서대문구	16	44.4	19	52.8	1	2.8	-	-	-	-	-	-	-	-	36	100
	마포구	24	41.4	27	46.6	-	-	1	1.7	2	3.4	2	3.4	2	3.4	58	100
	양천구	43	43.4	46	46.5	1	1.0	2	2.0	6	6.1	-	-	1	1.0	99	100
	강서구	51	40.8	62	49.6	2	1.6	2	1.6	4	3.2	2	1.6	2	1.6	125	100
	구로구	22	50.0	22	50.0	-	-	-	-	-	-	-	-	-	-	44	100
	금천구	16	32.7	27	55.1	1	2.0	-	-	5	10.2	-	-	-	-	49	100
	영등포구	20	51.3	18	46.2	-	-	-	-	1	2.6	-	-	-	-	39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동작구	25	47.2	27	50.9	1	1.9	-	-	-	-	-	-	-	-	53	100
	관악구	56	47.1	63	52.9	-	-	-	-	-	-	-	-	-	-	119	100
	서초구	8	47.1	8	47.1	-	-	1	5.9	-	-	-	-	-	-	17	100
	강남구	16	47.1	17	50.0	-	-	-	-	-	-	1	2.9	-	-	34	100
	송파구	20	52.6	15	39.5	-	-	-	-	3	7.9	-	-	-	-	38	100
	강동구	25	49.0	26	51.0	-	-	-	-	-	-	-	-	-	-	51	100
	소계	565	43.5	646	49.7	10	0.8	28	2.2	36	2.8	5	0.4	9	0.7	1,299	100
부산	중구	7	43.8	8	50.0	-	-	1	6.3	-	-	-	-	-	-	16	100
	서구	19	46.3	21	51.2	-	-	-	-	1	2.4	-	-	-	-	41	100
	동구	26	40.0	36	55.4	-	-	2	3.1	1	1.5	-	-	-	-	65	100
	영도구	37	42.5	45	51.7	1	1.1	1	1.1	3	3.4	-	-	-	-	87	100
	부산진구	83	43.2	99	51.6	1	0.5	5	2.6	3	1.6	1	0.5	-	-	192	100
	동래구	12	40.0	14	46.7	-	-	1	3.3	3	10.0	-	-	-	-	30	100
	남구	34	45.3	41	54.7	-	-	-	-	-	-	-	-	-	-	75	100
	북구	25	45.5	27	49.1	-	-	1	1.8	2	3.6	-	-	-	-	55	100
	해운대구	36	39.1	48	52.2	1	1.1	3	3.3	3	3.3	-	-	1	1.1	92	100
	사하구	58	44.3	68	51.9	-	-	1	0.8	2	1.5	2	1.5	-	-	131	100
	금정구	17	37.8	22	48.9	-	-	2	4.4	3	6.7	1	2.2	-	-	45	100
	강서구	11	29.7	19	51.4	1	2.7	1	2.7	5	13.5	-	-	-	-	37	100
	연제구	10	38.5	13	50.0	-	-	-	-	2	7.7	1	3.8	-	-	26	100
	수영구	10	41.7	12	50.0	-	-	-	-	-	-	2	8.3	-	-	24	100
	사상구	49	45.4	54	50.0	1	0.9	2	1.9	2	1.9	-	-	-	-	108	100
	기장군	4	28.6	6	42.9	-	-	1	7.1	2	14.3	-	-	1	7.1	14	100
	소계	438	42.2	533	51.3	5	0.5	21	2.0	32	3.1	7	0.7	2	0.2	1,038	100
대구	중구	2	28.6	3	42.9	-	-	-	-	-	-	2	28.6	-	-	7	100
	동구	68	44.2	75	48.7	1	0.6	2	1.3	2	1.3	6	3.9	-	-	154	100
	서구	38	46.9	40	49.4	-	-	-	-	2	2.5	1	1.2	-	-	81	100
	남구	30	42.9	35	50.0	-	-	2	2.9	3	4.3	-	-	-	-	70	100
	북구	23	45.1	23	45.1	-	-	1	2.0	2	3.9	2	3.9	-	-	51	100
	수성구	12	36.4	17	51.5	1	3.0	-	-	3	9.1	-	-	-	-	33	100
	달서구	44	37.9	62	53.4	1	0.9	6	5.2	2	1.7	-	-	1	0.9	116	100
	달성군	33	47.8	30	43.5	-	-	1	1.4	5	7.2	-	-	-	-	69	100
	군위군	6	40.0	6	40.0	1	6.7	1	6.7	1	6.7	-	-	-	-	15	100
	소계	256	43.0	291	48.8	4	0.7	13	2.2	20	3.4	11	1.8	1	0.2	596	100
인천	중구	22	47.8	22	47.8	-	-	1	2.2	1	2.2	-	-	-	-	46	100
	동구	6	31.6	8	42.1	-	-	2	10.5	2	10.5	1	5.3	-	-	19	100
	미추홀구	15	26.3	23	40.4	2	3.5	6	10.5	10	17.5	1	1.8	-	-	57	100
	연수구	13	38.2	17	50.0	-	-	2	5.9	2	5.9	-	-	-	-	34	100
	남동구	26	29.5	44	50.0	2	2.3	3	3.4	11	12.5	2	2.3	-	-	88	100
	부평구	72	47.7	67	44.4	2	1.3	1	0.7	6	4.0	2	1.3	1	0.7	151	100
	계양구	36	48.6	27	36.5	2	2.7	4	5.4	3	4.1	1	1.4	1	1.4	74	100
	서구	96	47.3	99	48.8	-	-	3	1.5	5	2.5	-	-	-	-	203	100
	강화군	16	41.0	16	41.0	3	7.7	-	-	3	7.7	1	2.6	-	-	39	100
	옹진군	2	20.0	4	40.0	-	-	2	20.0	2	20.0	-	-	-	-	10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소계	304	42.2	327	45.4	11	1.5	24	3.3	45	6.2	8	1.1	2	0.3	721	100
광주	동구	22	55.0	17	42.5	-	-	-	-	1	2.5	-	-	-	-	40	100
	서구	32	61.5	18	34.6	-	-	1	1.9	-	-	1	1.9	-	-	52	100
	남구	28	46.7	28	46.7	-	-	1	1.7	1	1.7	2	3.3	-	-	60	100
	북구	45	61.6	24	32.9	-	-	2	2.7	1	1.4	1	1.4	-	-	73	100
	광산구	24	55.8	12	27.9	3	7.0	2	4.7	2	4.7	-	-	-	-	43	100
	소계	151	56.3	99	36.9	3	1.1	6	2.2	5	1.9	4	1.5	-	-	268	100
대전	동구	14	42.4	14	42.4	-	-	3	9.1	2	6.1	-	-	-	-	33	100
	중구	10	41.7	11	45.8	-	-	2	8.3	1	4.2	-	-	-	-	24	100
	서구	15	44.1	15	44.1	1	2.9	1	2.9	1	2.9	-	-	1	2.9	34	100
	유성구	8	18.6	8	18.6	23	53.5	1	2.3	2	4.7	1	2.3	-	-	43	100
	대덕구	6	37.5	7	43.8	-	-	2	12.5	-	-	1	6.3	-	-	16	100
	기타*	2	50.0	2	50.0	-	-	-	-	-	-	-	-	-	-	4	100
	소계	55	35.7	57	37.0	24	15.6	9	5.8	6	3.9	2	1.3	1	0.6	154	100
울산	중구	34	40.0	44	51.8	-	-	2	2.4	5	5.9	-	-	-	-	85	100
	남구	38	45.2	43	51.2	1	1.2	2	2.4	-	-	-	-	-	-	84	100
	동구	16	39.0	23	56.1	-	-	-	-	2	4.9	-	-	-	-	41	100
	북구	21	44.7	24	51.1	-	-	1	2.1	1	2.1	-	-	-	-	47	100
	울주군	15	46.9	14	43.8	-	-	-	-	2	6.3	-	-	1	3.1	32	100
	소계	124	42.9	148	51.2	1	0.3	5	1.7	10	3.5	-	-	1	0.3	289	100
경기	수원시	48	49.0	45	45.9	2	2.0	-	-	3	3.1	-	-	-	-	98	100
	성남시	95	52.5	75	41.4	1	0.6	2	1.1	6	3.3	2	1.1	-	-	181	100
	의정부시	49	51.0	29	30.2	3	3.1	2	2.1	7	7.3	5	5.2	1	1.0	96	100
	안양시	29	46.0	25	39.7	1	1.6	-	-	5	7.9	2	3.2	1	1.6	63	100
	부천시	56	41.5	70	51.9	3	2.2	2	1.5	3	2.2	1	0.7	-	-	135	100
	광명시	25	48.1	26	50.0	-	-	-	-	-	-	1	1.9	-	-	52	100
	평택시	22	57.9	13	34.2	-	-	-	-	3	7.9	-	-	-	-	38	100
	동두천시	26	51.0	21	41.2	-	-	-	-	3	5.9	-	-	1	2.0	51	100
	안산시	35	59.3	24	40.7	-	-	-	-	-	-	-	-	-	-	59	100
	고양시	120	49.0	108	44.1	2	0.8	5	2.0	8	3.3	1	0.4	1	0.4	245	100
	과천시	1	33.3	2	66.7	-	-	-	-	-	-	-	-	-	-	3	100
	구리시	47	56.0	36	42.9	-	-	1	1.2	-	-	-	-	-	-	84	100
	남양주시	120	52.4	91	39.7	2	0.9	3	1.3	13	5.7	-	-	-	-	229	100
	오산시	14	63.6	6	27.3	-	-	-	-	1	4.5	1	4.5	-	-	22	100
	시흥시	13	30.2	24	55.8	2	4.7	1	2.3	2	4.7	1	2.3	-	-	43	100
	군포시	15	45.5	17	51.5	-	-	1	3.0	-	-	-	-	-	-	33	100
	의왕시	6	50.0	6	50.0	-	-	-	-	-	-	-	-	-	-	12	100
	하남시	17	44.7	19	50.0	-	-	1	2.6	1	2.6	-	-	-	-	38	100
	용인시	75	51.4	50	34.2	6	4.1	1	0.7	13	8.9	1	0.7	-	-	146	100
	파주시	56	49.6	50	44.2	2	1.8	-	-	5	4.4	-	-	-	-	113	100
	이천시	11	57.9	6	31.6	1	5.3	-	-	1	5.3	-	-	-	-	19	100
	안성시	12	42.9	16	57.1	-	-	-	-	-	-	-	-	-	-	28	100
	김포시	36	54.5	27	40.9	-	-	1	1.5	2	3.0	-	-	-	-	66	100
	화성시	19	44.2	14	32.6	-	-	1	2.3	7	16.3	1	2.3	1	2.3	43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광주시	20	47.6	15	35.7	1	2.4	1	2.4	3	7.1	1	2.4	1	2.4	42	100
	양주시	49	54.4	34	37.8	1	1.1	3	3.3	3	3.3	-	-	-	-	90	100
	포천시	36	63.2	16	28.1	1	1.8	-	-	1	1.8	2	3.5	1	1.8	57	100
	여주시	3	50.0	1	16.7	-	-	-	-	1	16.7	1	16.7	-	-	6	100
	연천군	3	37.5	4	50.0	1	12.5	-	-	-	-	-	-	-	-	8	100
	가평군	14	66.7	6	28.6	-	-	-	-	-	-	-	-	1	4.8	21	100
	양평군	16	61.5	9	34.6	-	-	-	-	1	3.8	-	-	-	-	26	100
	소계	1,088	50.7	885	41.2	29	1.4	25	1.2	92	4.3	20	0.9	8	0.4	2,147	100
강원	춘천시	63	37.3	30	17.8	1	0.6	28	16.6	38	22.5	8	4.7	1	0.6	169	100
	원주시	26	33.8	29	37.7	8	10.4	5	6.5	9	11.7	-	-	-	-	77	100
	강릉시	48	33.8	49	34.5	7	4.9	2	1.4	30	21.1	6	4.2	-	-	142	100
	동해시	14	51.9	9	33.3	-	-	1	3.7	3	11.1	-	-	-	-	27	100
	태백시	2	40.0	2	40.0	-	-	-	-	1	20.0	-	-	-	-	5	100
	속초시	10	45.5	9	40.9	-	-	-	-	1	4.5	-	-	2	9.1	22	100
	삼척시	3	50.0	3	50.0	-	-	-	-	-	-	-	-	-	-	6	100
	홍천군	4	44.4	3	33.3	-	-	-	-	2	22.2	-	-	-	-	9	100
	횡성군	-	-	-	-	-	-	-	-	-	-	-	-	-	-	-	-
	영월군	1	33.3	2	66.7	-	-	-	-	-	-	-	-	-	-	3	100
	평창군	10	41.7	12	50.0	2	8.3	-	-	-	-	-	-	-	-	24	100
	정선군	10	58.8	7	41.2	-	-	-	-	-	-	-	-	-	-	17	100
	철원군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화천군	3	42.9	4	57.1	-	-	-	-	-	-	-	-	-	-	7	100
	양구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인제군	4	22.2	11	61.1	-	-	1	5.6	1	5.6	1	5.6	-	-	18	100
	고성군	5	45.5	5	45.5	-	-	1	9.1	-	-	-	-	-	-	11	100
	양양군	6	66.7	3	33.3	-	-	-	-	-	-	-	-	-	-	9	100
	소계	214	38.4	183	32.9	18	3.2	38	6.8	86	15.4	15	2.7	3	0.5	557	100
충북	청주시	93	41.3	89	39.6	25	11.1	2	0.9	14	6.2	2	0.9	-	-	225	100
	충주시	25	36.8	31	45.6	2	2.9	2	2.9	6	8.8	2	2.9	-	-	68	100
	제천시	7	36.8	6	31.6	1	5.3	-	-	4	21.1	-	-	1	5.3	19	100
	보은군	6	46.2	6	46.2	-	-	1	7.7	-	-	-	-	-	-	13	100
	옥천군	4	44.4	5	55.6	-	-	-	-	-	-	-	-	-	-	9	100
	영동군	4	50.0	3	37.5	-	-	-	-	1	12.5	-	-	-	-	8	100
	진천군	8	20.5	6	15.4	12	30.8	2	5.1	11	28.2	-	-	-	-	39	100
	괴산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음성군	7	33.3	12	57.1	-	-	-	-	-	-	2	9.5	-	-	21	100
	단양군	2	50.0	1	25.0	-	-	-	-	-	-	1	25.0	-	-	4	100
	증평군	3	42.9	3	42.9	1	14.3	-	-	-	-	-	-	-	-	7	100
	소계	161	38.6	164	39.3	41	9.8	7	1.7	36	8.6	7	1.7	1	0.2	417	100
충남	천안시	23	37.7	26	42.6	1	1.6	3	4.9	5	8.2	2	3.3	1	1.6	61	100
	공주시	20	50.0	13	32.5	-	-	1	2.5	5	12.5	1	2.5	-	-	40	100
	보령시	20	52.6	14	36.8	-	-	-	-	3	7.9	1	2.6	-	-	38	100
	아산시	26	36.1	26	36.1	2	2.8	3	4.2	9	12.5	6	8.3	-	-	72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서산시	24	42.9	28	50.0	1	1.8	1	1.8	1	1.8	-	-	1	1.8	56	100
	논산시	16	47.1	12	35.3	-	-	3	8.8	2	5.9	1	2.9	-	-	34	100
	계룡시	1	8.3	-	-	-	-	-	-	11	91.7	-	-	-	-	12	100
	당진시	22	55.0	17	42.5	-	-	-	-	-	-	1	2.5	-	-	40	100
	금산군	-	-	1	33.3	-	-	1	33.3	1	33.3	-	-	-	-	3	100
	부여군	14	45.2	16	51.6	-	-	-	-	1	3.2	-	-	-	-	31	100
	서천군	8	66.7	4	33.3	-	-	-	-	-	-	-	-	-	-	12	100
	청양군	3	50.0	3	50.0	-	-	-	-	-	-	-	-	-	-	6	100
	홍성군	5	62.5	3	37.5	-	-	-	-	-	-	-	-	-	-	8	100
	예산군	4	36.4	3	27.3	1	9.1	-	-	2	18.2	1	9.1	-	-	11	100
	태안군	4	44.4	4	44.4	-	-	-	-	1	11.1	-	-	-	-	9	100
	소계	190	43.9	170	39.3	5	1.2	12	2.8	41	9.5	13	3.0	2	0.5	433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4	39.3	31	50.8	1	1.6	3	4.9	2	3.3	-	-	-	-	61	100
	소계	24	39.3	31	50.8	1	1.6	3	4.9	2	3.3	-	-	-	-	61	100
전북	전주시	67	44.4	68	45.0	9	6.0	2	1.3	5	3.3	-	-	-	-	151	100
	군산시	32	51.6	26	41.9	-	-	2	3.2	1	1.6	1	1.6	-	-	62	100
	익산시	48	44.9	32	29.9	14	13.1	-	-	12	11.2	-	-	1	0.9	107	100
	정읍시	13	52.0	9	36.0	1	4.0	-	-	2	8.0	-	-	-	-	25	100
	남원시	12	52.2	10	43.5	-	-	-	-	1	4.3	-	-	-	-	23	100
	김제시	13	44.8	10	34.5	3	10.3	1	3.4	2	6.9	-	-	-	-	29	100
	완주군	10	33.3	15	50.0	3	10.0	-	-	2	6.7	-	-	-	-	30	100
	진안군	3	30.0	6	60.0	-	-	-	-	1	10.0	-	-	-	-	10	100
	무주군	-	-	-	-	-	-	-	-	-	-	-	-	-	-	-	-
	장수군	6	42.9	7	50.0	-	-	-	-	1	7.1	-	-	-	-	14	100
	임실군	2	40.0	2	40.0	-	-	-	-	1	20.0	-	-	-	-	5	100
	순창군	3	50.0	3	50.0	-	-	-	-	-	-	-	-	-	-	6	100
	고창군	4	30.8	6	46.2	1	7.7	-	-	2	15.4	-	-	-	-	13	100
	부안군	5	45.5	3	27.3	1	9.1	1	9.1	1	9.1	-	-	-	-	11	100
	소계	218	44.9	197	40.5	32	6.6	6	1.2	31	6.4	1	0.2	1	0.2	486	100
전남	목포시	32	45.1	20	28.2	1	1.4	3	4.2	8	11.3	6	8.5	1	1.4	71	100
	여수시	21	50.0	20	47.6	-	-	1	2.4	-	-	-	-	-	-	42	100
	순천시	24	36.4	39	59.1	-	-	-	-	3	4.5	-	-	-	-	66	100
	나주시	11	35.5	8	25.8	3	9.7	4	12.9	5	16.1	-	-	-	-	31	100
	광양시	14	43.8	16	50.0	-	-	-	-	1	3.1	1	3.1	-	-	32	100
	담양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곡성군	5	35.7	8	57.1	1	7.1	-	-	-	-	-	-	-	-	14	100
	구례군	3	30.0	6	60.0	-	-	1	10.0	-	-	-	-	-	-	10	100
	고흥군	12	37.5	20	62.5	-	-	-	-	-	-	-	-	-	-	32	100
	보성군	1	16.7	5	83.3	-	-	-	-	-	-	-	-	-	-	6	100
	화순군	1	20.0	3	60.0	-	-	1	20.0	-	-	-	-	-	-	5	100
	장흥군	-	-	2	100	-	-	-	-	-	-	-	-	-	-	2	100
	강진군	2	28.6	4	57.1	-	-	-	-	1	14.3	-	-	-	-	7	100
	해남군	19	46.3	17	41.5	2	4.9	-	-	3	7.3	-	-	-	-	41	100
	영암군	1	16.7	2	33.3	2	33.3	-	-	1	16.7	-	-	-	-	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무안군	10	45.5	10	45.5	-	-	-	-	2	9.1	-	-	-	-	22	100
	함평군	1	16.7	3	50.0	-	-	1	16.7	1	16.7	-	-	-	-	6	100
	영광군	4	22.2	8	44.4	2	11.1	1	5.6	3	16.7	-	-	-	-	18	100
	장성군	8	40.0	11	55.0	-	-	-	-	1	5.0	-	-	-	-	20	100
	완도군	3	23.1	3	23.1	3	23.1	-	-	2	15.4	2	15.4	-	-	13	100
	진도군	4	44.4	5	55.6	-	-	-	-	-	-	-	-	-	-	9	100
	신안군	2	66.7	1	33.3	-	-	-	-	-	-	-	-	-	-	3	100
	소계	179	39.1	212	46.3	14	3.1	12	2.6	31	6.8	9	2.0	1	0.2	458	100
경북	포항시	41	30.4	61	45.2	1	0.7	3	2.2	26	19.3	3	2.2	-	-	135	100
	경주시	26	30.2	29	33.7	1	1.2	19	22.1	10	11.6	1	1.2	-	-	86	100
	김천시	39	36.8	35	33.0	10	9.4	-	-	20	18.9	2	1.9	-	-	106	100
	안동시	48	36.9	63	48.5	3	2.3	8	6.2	4	3.1	4	3.1	-	-	130	100
	구미시	24	40.0	26	43.3	2	3.3	4	6.7	4	6.7	-	-	-	-	60	100
	영주시	18	30.0	32	53.3	1	1.7	6	10.0	3	5.0	-	-	-	-	60	100
	영천시	16	34.8	14	30.4	12	26.1	-	-	4	8.7	-	-	-	-	46	100
	상주시	18	46.2	16	41.0	-	-	2	5.1	2	5.1	1	2.6	-	-	39	100
	문경시	22	52.4	19	45.2	-	-	-	-	1	2.4	-	-	-	-	42	100
	경산시	41	42.7	37	38.5	6	6.3	3	3.1	9	9.4	-	-	-	-	96	100
	의성군	6	26.1	10	43.5	-	-	1	4.3	5	21.7	-	-	1	4.3	23	100
	청송군	4	44.4	4	44.4	-	-	-	-	1	11.1	-	-	-	-	9	100
	영양군	3	50.0	3	50.0	-	-	-	-	-	-	-	-	-	-	6	100
	영덕군	6	35.3	8	47.1	2	11.8	-	-	-	-	1	5.9	-	-	17	100
	청도군	5	31.3	7	43.8	-	-	1	6.3	3	18.8	-	-	-	-	16	100
	고령군	4	44.4	5	55.6	-	-	-	-	-	-	-	-	-	-	9	100
	성주군	11	45.8	11	45.8	1	4.2	-	-	1	4.2	-	-	-	-	24	100
	칠곡군	17	54.8	6	19.4	1	3.2	-	-	7	22.6	-	-	-	-	31	100
	예천군	15	50.0	13	43.3	-	-	-	-	1	3.3	-	-	1	3.3	30	100
	봉화군	7	43.8	7	43.8	-	-	1	6.3	-	-	1	6.3	-	-	16	100
	울진군	2	25.0	3	37.5	-	-	1	12.5	-	-	2	25.0	-	-	8	100
	울릉군	-	-	-	-	-	-	-	-	-	-	-	-	-	-	-	-
	소계	373	37.7	409	41.4	40	4.0	49	5.0	101	10.2	15	1.5	2	0.2	989	100
경남	창원시	104	47.3	106	48.2	1	0.5	4	1.8	3	1.4	1	0.5	1	0.5	220	100
	진주시	32	43.2	17	23.0	7	9.5	5	6.8	5	6.8	5	6.8	3	4.1	74	100
	통영시	23	46.0	24	48.0	-	-	2	4.0	-	-	1	2.0	-	-	50	100
	사천시	17	50.0	12	35.3	-	-	2	5.9	3	8.8	-	-	-	-	34	100
	김해시	45	45.5	46	46.5	1	1.0	3	3.0	4	4.0	-	-	-	-	99	100
	밀양시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거제시	14	48.3	13	44.8	-	-	1	3.4	1	3.4	-	-	-	-	29	100
	양산시	66	48.5	59	43.4	-	-	9	6.6	2	1.5	-	-	-	-	136	100
	의령군	-	-	-	-	-	-	-	-	-	-	-	-	-	-	-	-
	함안군	1	25.0	3	75.0	-	-	-	-	-	-	-	-	-	-	4	100
	창녕군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고성군	3	50.0	2	33.3	-	-	-	-	1	16.7	-	-	-	-	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남해군	7	53.8	4	30.8	1	7.7	-	-	1	7.7	-	-	-	-	13	100
	하동군	6	50.0	5	41.7	-	-	1	8.3	-	-	-	-	-	-	12	100
	산청군	21	31.3	25	37.3	16	23.9	-	-	5	7.5	-	-	-	-	67	100
	함양군	15	60.0	2	8.0	5	20.0	1	4.0	2	8.0	-	-	-	-	25	100
	거창군	4	50.0	3	37.5	-	-	1	12.5	-	-	-	-	-	-	8	100
	합천군	1	33.3	-	-	-	-	1	33.3	-	-	1	33.3	-	-	3	100
	소계	365	46.0	327	41.2	31	3.9	30	3.8	29	3.7	8	1.0	4	0.5	794	100
제주	제주시	53	41.7	58	45.7	2	1.6	4	3.1	3	2.4	5	3.9	2	1.6	127	100
	서귀포시	39	39.8	47	48.0	1	1.0	6	6.1	4	4.1	1	1.0	-	-	98	100
	소계	92	40.9	105	46.7	3	1.3	10	4.4	7	3.1	6	2.7	2	0.9	225	100
계		4,797	43.9	4,784	43.8	272	2.5	298	2.7	610	5.6	131	1.2	40	0.4	10,932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5-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 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 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100	0.9
	노인을 폭행한다.	3,427	31.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2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140	1.3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75	0.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4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038	9.5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1	0.0
	소계	4,797	43.9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5	0.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189	1.7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54	0.5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3	0.1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4,277	39.1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28	0.3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4	0.0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204	1.9
	소계	4,784	43.8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212	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60	0.5
	소계	272	2.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24	2.0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60	0.5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4	0.1
	소계	298	2.7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93	1.8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1	0.2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108	1.0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81	0.7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129	1.2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51	0.5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3	0.0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24	0.2
	소계	610	5.6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131	1.2
	소계	131	1.2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40	0.4
	소계	40	0.4
계		10,93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5-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신체적 학대	1,025	3,772	4,797
	21.4	78.6	100
정서적 학대	994	3,790	4,784
	20.8	79.2	100
성적 학대	52	220	272
	19.1	80.9	100
경제적 학대	89	209	298
	29.9	70.1	100
방임	198	412	610
	32.5	67.5	100
자기방임	65	66	131
	49.6	50.4	100
유기	13	27	40
	32.5	67.5	100
계	2,436	8,496	10,932
	22.3	77.7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표 5-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1,348	1,112	979	727	439	164	27	1	4,797
	28.1	23.2	20.4	15.2	9.2	3.4	0.6	0.0	100
정서적 학대	1,325	1,123	976	792	396	143	26	3	4,784
	27.7	23.5	20.4	16.6	8.3	3.0	0.5	0.1	100
성적 학대	30	30	41	50	69	37	13	2	272
	11.0	11.0	15.1	18.4	25.4	13.6	4.8	0.7	100
경제적 학대	47	61	61	62	47	16	4	-	298
	15.8	20.5	20.5	20.8	15.8	5.4	1.3	-	100
방임	43	59	87	145	156	89	25	6	610
	7.0	9.7	14.3	23.8	25.6	14.6	4.1	1.0	100
자기방임	22	30	35	25	11	6	2	-	131
	16.8	22.9	26.7	19.1	8.4	4.6	1.5	-	100
유기	5	4	9	12	7	3	-	-	40
	12.5	10.0	22.5	30.0	17.5	7.5	-	-	100
계	2,820	2,419	2,188	1,813	1,125	458	97	12	10,932
	25.8	22.1	20.0	16.6	10.3	4.2	0.9	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 5-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1	2,416	1,306	48	315	22	136	32	189	332	4,797
	0.0	50.4	27.2	1.0	6.6	0.5	2.8	0.7	3.9	6.9	100
정서적 학대	-	2,327	1,481	45	375	27	123	46	232	128	4,784
	-	48.6	31.0	0.9	7.8	0.6	2.6	1.0	4.8	2.7	100
성적 학대	-	38	6	-	1	-	-	1	29	197	272
	-	14.0	2.2	-	0.4	-	-	0.4	10.7	72.4	100
경제적 학대	1	38	119	9	28	2	15	6	18	62	298
	0.3	12.8	39.9	3.0	9.4	0.7	5.0	2.0	6.0	20.8	100
방임	4	30	147	7	61	-	1	5	9	346	610
	0.7	4.9	24.1	1.1	10.0	-	0.2	0.8	1.5	56.7	100
자기방임	128	-	3	-	-	-	-	-	-	-	131
	97.7	-	2.3	-	-	-	-	-	-	-	100
유기	-	5	19	-	13	-	-	2	-	1	40
	-	12.5	47.5	-	32.5	-	-	5.0	-	2.5	100
계	134	4,854	3,081	109	793	51	275	92	477	1,066	10,932
	1.2	44.4	28.2	1.0	7.3	0.5	2.5	0.8	4.4	9.8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5-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독거	475	562	27	99	155	110	16	1,444
	32.9	38.9	1.9	6.9	10.7	7.6	1.1	100
노인 부부	2,237	2,191	40	54	36	9	5	4,572
	48.9	47.9	0.9	1.2	0.8	0.2	0.1	100
손자녀 동거	154	155	-	14	4	1	2	330
	46.7	47.0	-	4.2	1.2	0.3	0.6	100
자녀·손자녀 동거	137	147	-	9	4	1	1	299
	45.8	49.2	-	3.0	1.3	0.3	0.3	100
자녀 동거	1,391	1,505	18	78	109	7	7	3,115
	44.7	48.3	0.6	2.5	3.5	0.2	0.2	100
기타	403	224	187	44	302	3	9	1,172
	34.4	19.1	16.0	3.8	25.8	0.3	0.8	100
계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43.9	43.8	2.5	2.7	5.6	1.2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7) 학대발생장소

표 5-9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6,323	566	29	1	51	61	5	61	70	7,167
88.2	7.9	0.4	0.0	0.7	0.9	0.1	0.9	1.0	100

* 본 현황은 학대발생장소 기준으로 분류한 수치이며, 학대행위자가 병원 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 수치임(예: 개인 간병인 등)



그림 5-3 학대발생장소

표 5-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서울	종로구	18	100	-	-	-	-	-	-	-	-	-	-	18	100
	중구	12	100	-	-	-	-	-	-	-	-	-	-	12	100
	용산구	6	100	-	-	-	-	-	-	-	-	-	-	6	100
	성동구	19	100	-	-	-	-	-	-	-	-	-	-	19	100
	광진구	18	94.7	1	5.3	-	-	-	-	-	-	-	-	19	100
	동대문구	28	100	-	-	-	-	-	-	-	-	-	-	28	100
	중랑구	32	97.0	-	-	-	-	-	-	-	-	1	3.0	33	100
	성북구	27	100	-	-	-	-	-	-	-	-	-	-	27	100
	강북구	27	96.4	1	3.6	-	-	-	-	-	-	-	-	28	100
	도봉구	27	96.4	-	-	-	-	-	-	-	-	1	3.6	28	100
	노원구	40	97.6	1	2.4	-	-	-	-	-	-	-	-	41	100
	은평구	52	96.3	1	1.9	-	-	1	1.9	-	-	-	-	54	100
	서대문구	19	100	-	-	-	-	-	-	-	-	-	-	19	100
	마포구	33	100	-	-	-	-	-	-	-	-	-	-	33	100
	양천구	49	98.0	1	2	-	-	-	-	-	-	-	-	50	100
	강서구	67	94.4	2	2.8	-	-	1	1.4	-	-	1	1.4	71	100
구로구	23	95.8	-	-	-	-	1	4.2	-	-	-	-	24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금천구	29	85.3	5	14.7	-	-	-	-	-	-	-	-	34	100
	영등포구	22	91.7	-	-	-	-	1	4.2	-	-	1	4.2	24	100
	동작구	31	100	-	-	-	-	-	-	-	-	-	-	31	100
	관악구	65	91.5	5	7.0	-	-	-	-	1	1.4	-	-	71	100
	서초구	9	100	-	-	-	-	-	-	-	-	-	-	9	100
	강남구	18	85.7	1	4.8	-	-	-	-	1	4.8	1	4.8	21	100
	송파구	25	96.2	-	-	-	-	-	-	-	-	1	3.8	26	100
	강동구	32	100	-	-	-	-	-	-	-	-	-	-	32	100
	소계	728	96.0	18	2.4	-	-	4	0.5	2	0.3	6	0.8	758	100
부산	중구	7	87.5	-	-	-	-	1	12.5	-	-	-	-	8	100
	서구	25	100	-	-	-	-	-	-	-	-	-	-	25	100
	동구	37	100	-	-	-	-	-	-	-	-	-	-	37	100
	영도구	57	100	-	-	-	-	-	-	-	-	-	-	57	100
	부산진구	105	95.5	3	2.7	-	-	-	-	-	-	2	1.8	110	100
	동래구	20	100	-	-	-	-	-	-	-	-	-	-	20	100
	남구	42	100	-	-	-	-	-	-	-	-	-	-	42	100
	북구	30	100	-	-	-	-	-	-	-	-	-	-	30	100
	해운대구	53	98.1	-	-	-	-	-	-	1	1.9	-	-	54	100
	사하구	85	98.8	-	-	-	-	1	1.2	-	-	-	-	86	100
	금정구	28	93.3	1	3.3	-	-	-	-	1	3.3	-	-	30	100
	강서구	21	95.5	1	4.5	-	-	-	-	-	-	-	-	22	100
	연제구	16	94.1	-	-	-	-	-	-	1	5.9	-	-	17	100
	수영구	15	100	-	-	-	-	-	-	-	-	-	-	15	100
	사상구	64	97.0	2	3.0	-	-	-	-	-	-	-	-	66	100
	기장군	7	77.8	-	-	-	-	-	-	-	-	2	22.2	9	100
	소계	612	97.5	7	1.1	-	-	2	0.3	3	0.5	4	0.6	628	100
대구	중구	5	100	-	-	-	-	-	-	-	-	-	-	5	100
	동구	100	95.2	2	1.9	-	-	-	-	2	1.9	1	1.0	105	100
	서구	48	92.3	-	-	-	-	-	-	-	-	4	7.7	52	100
	남구	41	97.6	-	-	-	-	-	-	-	-	1	2.4	42	100
	북구	30	90.9	1	3.0	-	-	-	-	-	-	2	6.1	33	100
	수성구	19	90.5	2	9.5	-	-	-	-	-	-	-	-	21	100
	달서구	69	94.5	-	-	-	-	-	-	1	1.4	3	4.1	73	100
	달성군	40	90.9	3	6.8	-	-	-	-	-	-	1	2.3	44	100
	군위군	8	88.9	-	-	-	-	-	-	-	-	1	11.1	9	100
	소계	360	93.8	8	2.1	-	-	-	-	3	0.8	13	3.4	384	100
인천	중구	26	83.9	1	3.2	-	-	-	-	3	9.7	1	3.2	31	100
	동구	14	100	-	-	-	-	-	-	-	-	-	-	14	100
	미추홀구	33	80.5	6	14.6	1	2.4	1	2.4	-	-	-	-	41	100
	연수구	23	88.5	1	3.8	1	3.8	-	-	-	-	1	3.8	26	100
	남동구	52	85.2	8	13.1	-	-	-	-	1	1.6	-	-	61	100
	부평구	95	92.2	3	2.9	3	2.9	-	-	1	1.0	1	1.0	103	100
	계양구	45	90.0	1	2.0	-	-	2	4.0	1	2.0	1	2.0	50	100
	서구	138	93.9	9	6.1	-	-	-	-	-	-	-	-	147	100
	강화군	19	79.2	4	16.7	-	-	-	-	-	-	1	4.2	24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웅진군	3	75.0	1	25.0	-	-	-	-	-	-	-	-	4	100
	소계	448	89.4	34	6.8	5	1.0	3	0.6	6	1.2	5	1.0	501	100
광주	동구	29	96.7	-	-	-	-	1	3.3	-	-	-	-	30	100
	서구	42	100	-	-	-	-	-	-	-	-	-	-	42	100
	남구	43	95.6	-	-	-	-	-	-	2	4.4	-	-	45	100
	북구	57	95.0	1	1.7	-	-	-	-	1	1.7	1	1.7	60	100
	광산구	23	85.2	1	3.7	-	-	1	3.7	-	-	2	7.4	27	100
	소계	194	95.1	2	1.0	-	-	2	1.0	3	1.5	3	1.5	204	100
대전	동구	17	94.4	1	5.6	-	-	-	-	-	-	-	-	18	100
	중구	11	91.7	1	8.3	-	-	-	-	-	-	-	-	12	100
	서구	16	88.9	-	-	1	5.6	1	5.6	-	-	-	-	18	100
	유성구	9	27.3	2	6.1	-	-	22	66.7	-	-	-	-	33	100
	대덕구	8	100	-	-	-	-	-	-	-	-	-	-	8	100
	기타*	2	100	-	-	-	-	-	-	-	-	-	-	2	100
	소계	63	69.2	4	4.4	1	1.1	23	25.3	-	-	-	-	91	100
울산	중구	49	96.1	2	3.9	-	-	-	-	-	-	-	-	51	100
	남구	46	97.9	-	-	-	-	1	2.1	-	-	-	-	47	100
	동구	23	92.0	1	4.0	-	-	-	-	-	-	1	4.0	25	100
	북구	26	96.3	1	3.7	-	-	-	-	-	-	-	-	27	100
	울주군	16	94.1	1	5.9	-	-	-	-	-	-	-	-	17	100
	소계	160	95.8	5	3.0	-	-	1	0.6	-	-	1	0.6	167	100
경기	수원시	77	96.3	2	2.5	1	1.3	-	-	-	-	-	-	80	100
	성남시	121	96.8	2	1.6	1	0.8	1	0.8	-	-	-	-	125	100
	의정부시	74	92.5	4	5.0	-	-	1	1.3	1	1.3	-	-	80	100
	안양시	44	93.6	2	4.3	-	-	-	-	-	-	1	2.1	47	100
	부천시	97	98.0	1	1.0	-	-	-	-	1	1.0	-	-	99	100
	광명시	36	100	-	-	-	-	-	-	-	-	-	-	36	100
	평택시	23	82.1	5	17.9	-	-	-	-	-	-	-	-	28	100
	동두천시	32	94.1	2	5.9	-	-	-	-	-	-	-	-	34	100
	안산시	44	95.7	1	2.2	-	-	-	-	1	2.2	-	-	46	100
	고양시	145	93.5	9	5.8	1	0.6	-	-	-	-	-	-	155	100
	과천시	2	100	-	-	-	-	-	-	-	-	-	-	2	100
	구리시	69	100	-	-	-	-	-	-	-	-	-	-	69	100
	남양주시	185	91.1	14	6.9	3	1.5	-	-	-	-	1	0.5	203	100
	오산시	18	94.7	-	-	-	-	-	-	1	5.3	-	-	19	100
	시흥시	28	90.3	2	6.5	-	-	-	-	-	-	1	3.2	31	100
	군포시	25	100	-	-	-	-	-	-	-	-	-	-	25	100
	의왕시	9	100	-	-	-	-	-	-	-	-	-	-	9	100
	하남시	32	91.4	2	5.7	1	2.9	-	-	-	-	-	-	35	100
	용인시	78	74.3	25	23.8	1	1.0	1	1.0	-	-	-	-	105	100
	파주시	64	90.1	7	9.9	-	-	-	-	-	-	-	-	71	100
	이천시	11	84.6	2	15.4	-	-	-	-	-	-	-	-	13	100
	안성시	19	95.0	1	5.0	-	-	-	-	-	-	-	-	20	100
	김포시	39	84.8	6	13.0	-	-	1	2.2	-	-	-	-	46	100
	화성시	25	75.8	6	18.2	1	3.0	-	-	1	3.0	-	-	33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광주시	25	89.3	3	10.7	-	-	-	-	-	-	-	-	28	100
	양주시	64	85.3	10	13.3	-	-	1	1.3	-	-	-	-	75	100
	포천시	43	93.5	3	6.5	-	-	-	-	-	-	-	-	46	100
	여주시	5	100	-	-	-	-	-	-	-	-	-	-	5	100
	연천군	4	100	-	-	-	-	-	-	-	-	-	-	4	100
	가평군	17	100	-	-	-	-	-	-	-	-	-	-	17	100
	양평군	16	94.1	1	5.9	-	-	-	-	-	-	-	-	17	100
	소계	1,471	91.8	110	6.9	9	0.6	5	0.3	5	0.3	3	0.2	1,603	100
강원	춘천시	54	58.1	36	38.7	1	1.1	-	-	-	-	2	2.2	93	100
	원주시	44	75.9	11	19.0	-	-	-	-	2	3.4	1	1.7	58	100
	강릉시	42	45.7	50	54.3	-	-	-	-	-	-	-	-	92	100
	동해시	22	95.7	1	4.3	-	-	-	-	-	-	-	-	23	100
	태백시	4	100	-	-	-	-	-	-	-	-	-	-	4	100
	속초시	19	100	-	-	-	-	-	-	-	-	-	-	19	100
	삼척시	4	100	-	-	-	-	-	-	-	-	-	-	4	100
	홍천군	6	85.7	1	14.3	-	-	-	-	-	-	-	-	7	100
	횡성군	-	-	-	-	-	-	-	-	-	-	-	-	-	-
	영월군	2	100	-	-	-	-	-	-	-	-	-	-	2	100
	평창군	12	85.7	2	14.3	-	-	-	-	-	-	-	-	14	100
	정선군	11	100	-	-	-	-	-	-	-	-	-	-	11	100
	철원군	5	100	-	-	-	-	-	-	-	-	-	-	5	100
	화천군	2	50.0	-	-	-	-	-	-	1	25.0	1	25.0	4	100
	양구군	2	100	-	-	-	-	-	-	-	-	-	-	2	100
	인제군	13	100	-	-	-	-	-	-	-	-	-	-	13	100
	고성군	6	100	-	-	-	-	-	-	-	-	-	-	6	100
	양양군	7	100	-	-	-	-	-	-	-	-	-	-	7	100
	소계	255	70.1	101	27.7	1	0.3	-	-	3	0.8	4	1.1	364	100
충북	청주시	106	78.5	27	20.0	-	-	2	1.5	-	-	-	-	135	100
	충주시	31	77.5	8	20.0	-	-	-	-	-	-	1	2.5	40	100
	제천시	7	63.6	4	36.4	-	-	-	-	-	-	-	-	11	100
	보은군	8	100	-	-	-	-	-	-	-	-	-	-	8	100
	옥천군	5	100	-	-	-	-	-	-	-	-	-	-	5	100
	영동군	4	80.0	-	-	-	-	1	20.0	-	-	-	-	5	100
	진천군	8	36.4	14	63.6	-	-	-	-	-	-	-	-	22	100
	괴산군	2	100	-	-	-	-	-	-	-	-	-	-	2	100
	음성군	14	100	-	-	-	-	-	-	-	-	-	-	14	100
	단양군	3	100	-	-	-	-	-	-	-	-	-	-	3	100
	증평군	5	100	-	-	-	-	-	-	-	-	-	-	5	100
	소계	193	77.2	53	21.2	-	-	3	1.2	-	-	1	0.4	250	100
충남	천안시	36	92.3	1	2.6	1	2.6	-	-	-	-	1	2.6	39	100
	공주시	22	81.5	4	14.8	-	-	-	-	-	-	1	3.7	27	100
	보령시	21	95.5	1	4.5	-	-	-	-	-	-	-	-	22	100
	아산시	41	87.2	4	8.5	1	2.1	-	-	1	2.1	-	-	47	100
	서산시	33	94.3	-	-	-	-	-	-	-	-	2	5.7	35	100
	논산시	19	90.5	2	9.5	-	-	-	-	-	-	-	-	21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계룡시	1	8.3	11	91.7	-	-	-	-	-	-	-	-	12	100
	당진시	23	92.0	-	-	1	4.0	1	4.0	-	-	-	-	25	100
	금산군	2	100	-	-	-	-	-	-	-	-	-	-	2	100
	부여군	17	89.5	1	5.3	-	-	-	-	-	-	1	5.3	19	100
	서천군	9	100	-	-	-	-	-	-	-	-	-	-	9	100
	청양군	3	100	-	-	-	-	-	-	-	-	-	-	3	100
	홍성군	5	100	-	-	-	-	-	-	-	-	-	-	5	100
	예산군	4	57.1	3	42.9	-	-	-	-	-	-	-	-	7	100
	태안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소계	240	86.3	28	10.1	3	1.1	1	0.4	1	0.4	5	1.8	278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6	97.3	-	-	1	2.7	-	-	-	-	-	-	37	100
	소계	36	97.3	-	-	1	2.7	-	-	-	-	-	-	37	100
전북	전주시	69	78.4	13	14.8	-	-	3	3.4	2	2.3	1	1.1	88	100
	군산시	40	90.9	-	-	-	-	-	-	3	6.8	1	2.3	44	100
	익산시	43	70.5	16	26.2	-	-	2	3.3	-	-	-	-	61	100
	정읍시	14	87.5	1	6.3	-	-	-	-	-	-	1	6.3	16	100
	남원시	14	100	-	-	-	-	-	-	-	-	-	-	14	100
	김제시	17	94.4	1	5.6	-	-	-	-	-	-	-	-	18	100
	완주군	12	70.6	5	29.4	-	-	-	-	-	-	-	-	17	100
	진안군	6	100	-	-	-	-	-	-	-	-	-	-	6	100
	무주군	-	-	-	-	-	-	-	-	-	-	-	-	-	-
	장수군	8	100	-	-	-	-	-	-	-	-	-	-	8	100
	임실군	4	100	-	-	-	-	-	-	-	-	-	-	4	100
	순창군	3	100	-	-	-	-	-	-	-	-	-	-	3	100
	고창군	11	100	-	-	-	-	-	-	-	-	-	-	11	100
	부안군	8	88.9	-	-	-	-	-	-	1	11.1	-	-	9	100
	소계	249	83.3	36	12.0	-	-	5	1.7	6	2.0	3	1.0	299	100
전남	목포시	52	91.2	1	1.8	-	-	2	3.5	2	3.5	-	-	57	100
	여주시	25	92.6	-	-	-	-	-	-	1	3.7	1	3.7	27	100
	순천시	44	100	-	-	-	-	-	-	-	-	-	-	44	100
	나주시	20	80.0	3	12.0	1	4.0	1	4.0	-	-	-	-	25	100
	광양시	18	100	-	-	-	-	-	-	-	-	-	-	18	100
	담양군	1	100	-	-	-	-	-	-	-	-	-	-	1	100
	곡성군	9	100	-	-	-	-	-	-	-	-	-	-	9	100
	구례군	5	83.3	-	-	-	-	-	-	-	-	1	16.7	6	100
	고흥군	21	95.5	-	-	-	-	-	-	-	-	1	4.5	22	100
	보성군	4	80.0	-	-	-	-	-	-	1	20.0	-	-	5	100
	화순군	3	100	-	-	-	-	-	-	-	-	-	-	3	100
	장흥군	2	100	-	-	-	-	-	-	-	-	-	-	2	100
	강진군	5	83.3	1	16.7	-	-	-	-	-	-	-	-	6	100
	해남군	30	83.3	1	2.8	1	2.8	-	-	4	11.1	-	-	36	100
	영암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무안군	16	94.1	-	-	-	-	-	-	1	5.9	-	-	17	100
	함평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영광군	11	78.6	1	7.1	1	7.1	-	-	1	7.1	-	-	14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장성군	13	92.9	-	-	-	-	-	-	-	-	1	7.1	14	100
	완도군	9	90.0	1	10.0	-	-	-	-	-	-	-	-	10	100
	진도군	8	88.9	-	-	-	-	-	-	1	11.1	-	-	9	100
	신안군	2	100	-	-	-	-	-	-	-	-	-	-	2	100
	소계	306	90.8	10	3.0	3	0.9	3	0.9	11	3.3	4	1.2	337	100
경북	포항시	69	71.9	1	1.0	24	25.0	1	1.0	1	1.0	-	-	96	100
	경주시	38	63.3	19	31.7	1	1.7	2	3.3	-	-	-	-	60	100
	김천시	32	43.8	36	49.3	-	-	-	-	1	1.4	4	5.5	73	100
	안동시	70	88.6	-	-	-	-	1	1.3	-	-	8	10.1	79	100
	구미시	34	85.0	1	2.5	-	-	3	7.5	-	-	2	5.0	40	100
	영주시	35	94.6	1	2.7	1	2.7	-	-	-	-	-	-	37	100
	영천시	13	50.0	11	42.3	-	-	1	3.8	1	3.8	-	-	26	100
	상주시	24	100	-	-	-	-	-	-	-	-	-	-	24	100
	문경시	27	93.1	-	-	-	-	-	-	-	-	2	6.9	29	100
	경산시	36	69.2	15	28.8	-	-	-	-	1	1.9	-	-	52	100
	의성군	14	93.3	-	-	-	-	1	6.7	-	-	-	-	15	100
	청송군	5	100	-	-	-	-	-	-	-	-	-	-	5	100
	영양군	3	100	-	-	-	-	-	-	-	-	-	-	3	100
	영덕군	10	100	-	-	-	-	-	-	-	-	-	-	10	100
	청도군	7	77.8	1	11.1	1	11.1	-	-	-	-	-	-	9	100
	고령군	5	100	-	-	-	-	-	-	-	-	-	-	5	100
	성주군	11	91.7	-	-	-	-	1	8.3	-	-	-	-	12	100
	칠곡군	6	30.0	13	65.0	-	-	1	5.0	-	-	-	-	20	100
	예천군	18	100	-	-	-	-	-	-	-	-	-	-	18	100
	봉화군	8	100	-	-	-	-	-	-	-	-	-	-	8	100
	울진군	5	100	-	-	-	-	-	-	-	-	-	-	5	100
	울릉군	-	-	-	-	-	-	-	-	-	-	-	-	-	-
	소계	470	75.1	98	15.7	27	4.3	11	1.8	4	0.6	16	2.6	626	100
경남	창원시	130	97.0	-	-	-	-	-	-	4	3.0	-	-	134	100
	진주시	34	57.6	22	37.3	-	-	-	-	1	1.7	2	3.4	59	100
	통영시	32	100	-	-	-	-	-	-	-	-	-	-	32	100
	사천시	23	95.8	-	-	1	4.2	-	-	-	-	-	-	24	100
	김해시	60	95.2	1	1.6	-	-	-	-	2	3.2	-	-	63	100
	밀양시	3	75.0	1	25.0	-	-	-	-	-	-	-	-	4	100
	거제시	17	100	-	-	-	-	-	-	-	-	-	-	17	100
	양산시	79	98.8	-	-	-	-	-	-	1	1.3	-	-	80	100
	의령군	-	-	-	-	-	-	-	-	-	-	-	-	-	-
	함안군	3	100	-	-	-	-	-	-	-	-	-	-	3	100
	창녕군	5	100	-	-	-	-	-	-	-	-	-	-	5	100
	고성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남해군	4	40.0	5	50.0	-	-	-	-	1	10.0	-	-	10	100
	하동군	8	100	-	-	-	-	-	-	-	-	-	-	8	100
	산청군	4	11.4	31	88.6	-	-	-	-	-	-	-	-	35	100
	함양군	3	14.3	16	76.2	1	4.8	1	4.8	-	-	-	-	21	100
	거창군	4	80.0	-	-	-	-	1	20.0	-	-	-	-	5	100

지역	시군구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제주	합천군	3	100	-	-	-	-	-	-	-	-	-	-	3	100
	소계	416	81.9	77	15.2	2	0.4	2	0.4	9	1.8	2	0.4	508	100
	제주시	70	87.5	4	5.0	-	-	1	1.3	5	6.3	-	-	80	100
	서귀포시	52	100	-	-	-	-	-	-	-	-	-	-	52	100
소계		122	92.4	4	3.0	-	-	1	0.8	5	3.8	-	-	132	100
계		6,323	88.2	595	8.3	52	0.7	66	0.9	61	0.9	70	1.0	7,16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5-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신체적 학대	4,395	7	286	-	10	22	4	36	37	4,797
	45.3	20.0	32.9	-	16.7	27.2	66.7	45.0	35.2	43.9
정서적 학대	4,582	1	100	1	8	11	1	33	47	4,784
	47.3	2.9	11.5	100	13.3	13.6	16.7	41.3	44.8	43.8
성적 학대	68	4	162	-	1	29	1	4	3	272
	0.7	11.4	18.6	-	1.7	35.8	16.7	5.0	2.9	2.5
경제적 학대	233	14	36	-	8	-	-	2	5	298
	2.4	40.0	4.1	-	13.3	-	-	2.5	4.8	2.7
방임	257	9	284	-	33	19	-	2	6	610
	2.7	25.7	32.7	-	55.0	23.5	-	2.5	5.7	5.6
자기방임	128	-	-	-	-	-	-	1	2	131
	1.3	-	-	-	-	-	-	1.3	1.9	1.2
유기	32	-	1	-	-	-	-	2	5	40
	0.3	-	0.1	-	-	-	-	2.5	4.8	0.4
계	9,695	35	869	1	60	81	6	80	105	10,9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8) 학대발생빈도

표 5-12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1,608	993	835	1,768	1,399	564	7,167
22.4	13.9	11.7	24.7	19.5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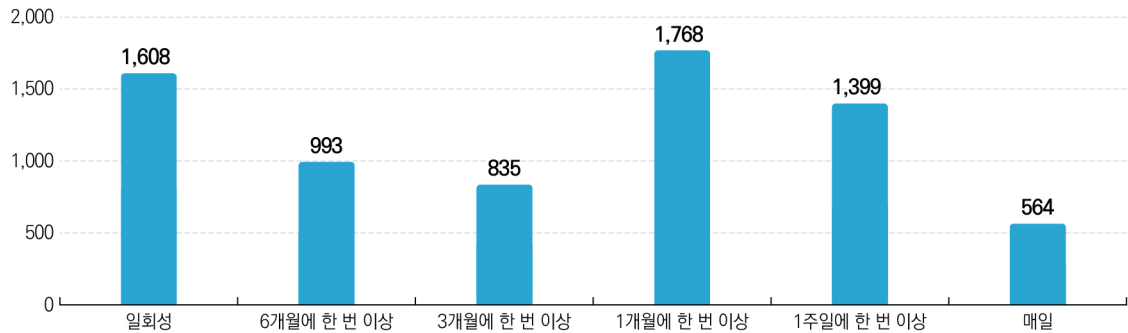


그림 5-4 학대발생빈도

표 5-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일회성	1,121	762	44	40	151	6	15	2,139
	52.4	35.6	2.1	1.9	7.1	0.3	0.7	100
6개월에 한 번 이상	737	698	5	39	7	7	3	1,496
	49.3	46.7	0.3	2.6	0.5	0.5	0.2	100
3개월에 한 번 이상	596	662	17	20	25	4	2	1,326
	44.9	49.9	1.3	1.5	1.9	0.3	0.2	100
1개월에 한 번 이상	1,258	1,413	26	102	77	12	3	2,891
	43.5	48.9	0.9	3.5	2.7	0.4	0.1	100
1주일에 한 번 이상	888	1,034	88	74	165	27	-	2,276
	39.0	45.4	3.9	3.3	7.2	1.2	-	100
매일	197	215	92	23	185	75	17	804
	24.5	26.7	11.4	2.9	23.0	9.3	2.1	100
계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43.9	43.8	2.5	2.7	5.6	1.2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9) 학대지속기간

표 5-14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543	242	1,074	2,261	2,047	7,167
21.5	3.4	15.0	31.5	2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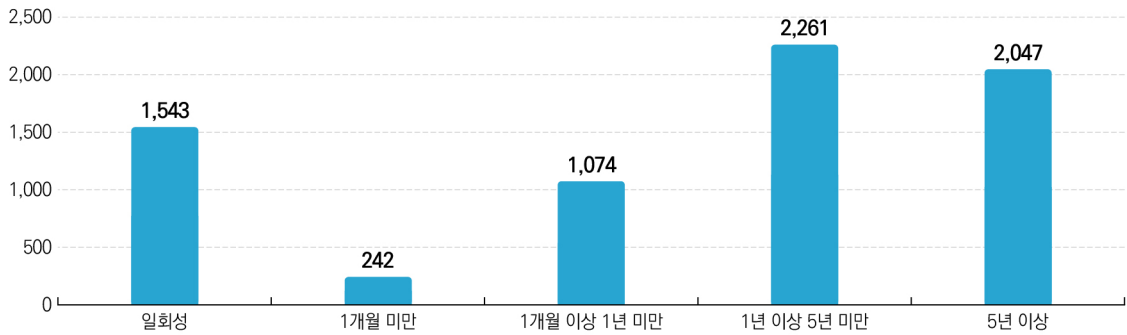


그림 5-5 학대지속기간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표 5-15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 ²²⁾	5,197	39.7
개인의 외적문제 ²³⁾	2,470	18.9
경제적 의존성	1,195	9.1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47	1.1
신체적 의존성	717	5.5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391	10.6
정신적 의존성	1,548	11.8
피해노인 부양부담	414	3.2
계	13,0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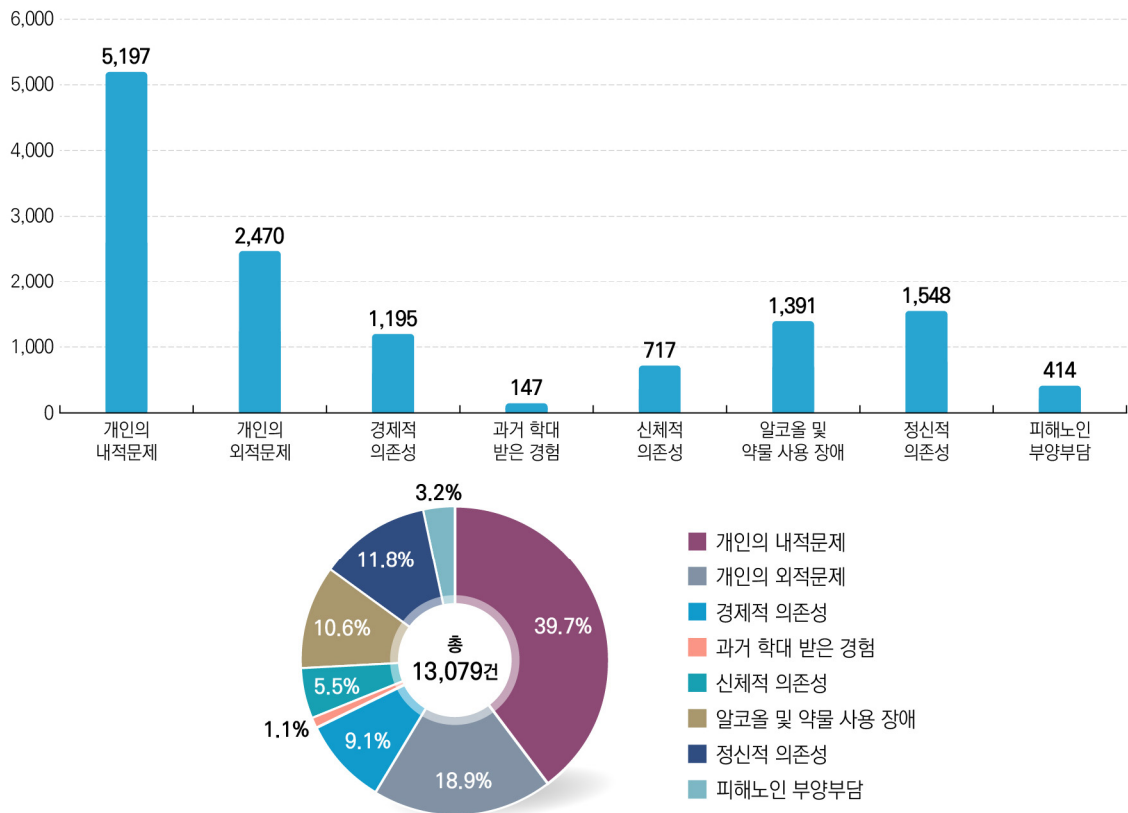


그림 5-6 학대행위자 원인

22)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됨

23) 개인의 외적인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이 해당됨

표 5-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3,534	1,174	107	58	216	89	19	5,197
	68.0	22.6	2.1	1.1	4.2	1.7	0.4	100
개인의 외적문제	1,631	594	33	28	131	43	10	2,470
	66.0	24.0	1.3	1.1	5.3	1.7	0.4	100
경제적 의존성	810	309	1	32	36	4	3	1,195
	67.8	25.9	0.1	2.7	3.0	0.3	0.3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03	31	-	1	11	1	-	147
	70.1	21.1	-	0.7	7.5	0.7	-	100
신체적 의존성	507	152	26	2	15	15	-	717
	70.7	21.2	3.6	0.3	2.1	2.1	-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046	328	2	1	5	8	1	1,391
	75.2	23.6	0.1	0.1	0.4	0.6	0.1	100
정신적 의존성	1,118	358	12	7	29	23	1	1,548
	72.2	23.1	0.8	0.5	1.9	1.5	0.1	100
피해노인 부양부담	210	84	28	7	79	-	6	414
	50.7	20.3	6.8	1.7	19.1	-	1.4	100
계	8,959	3,030	209	136	522	183	40	13,079
	68.5	23.2	1.6	1.0	4.0	1.4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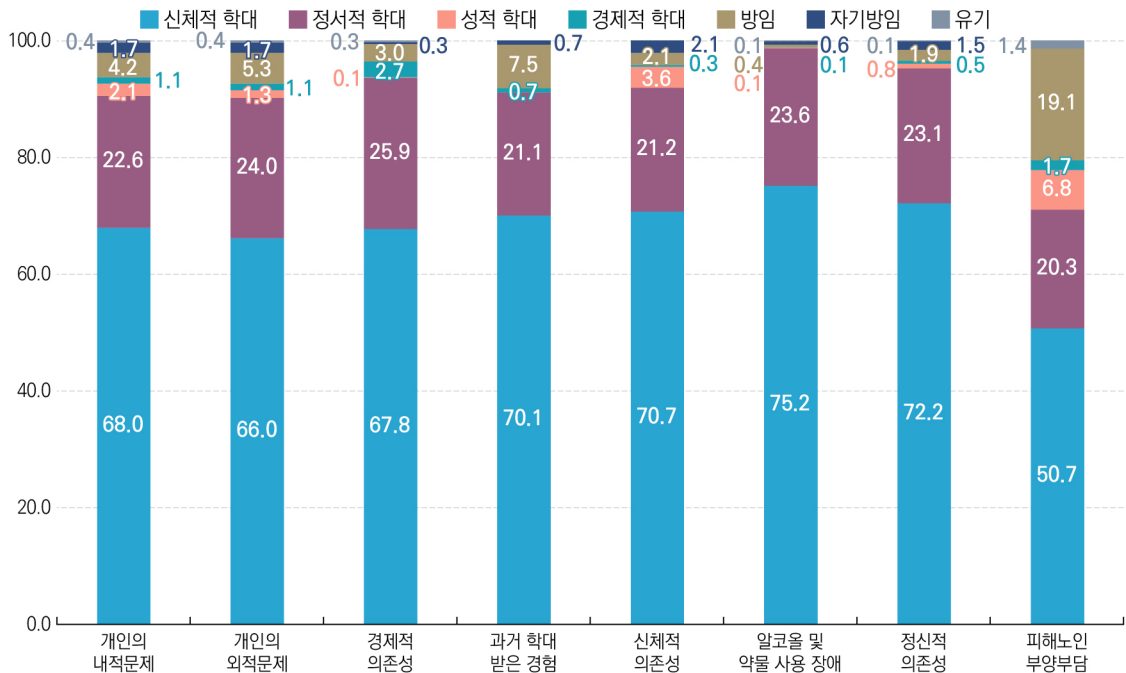


그림 5-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 원인)

표 5-17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피해노인-학대행위자 갈등	계
1,200	467	5,099	6,766
17.7	6.9	7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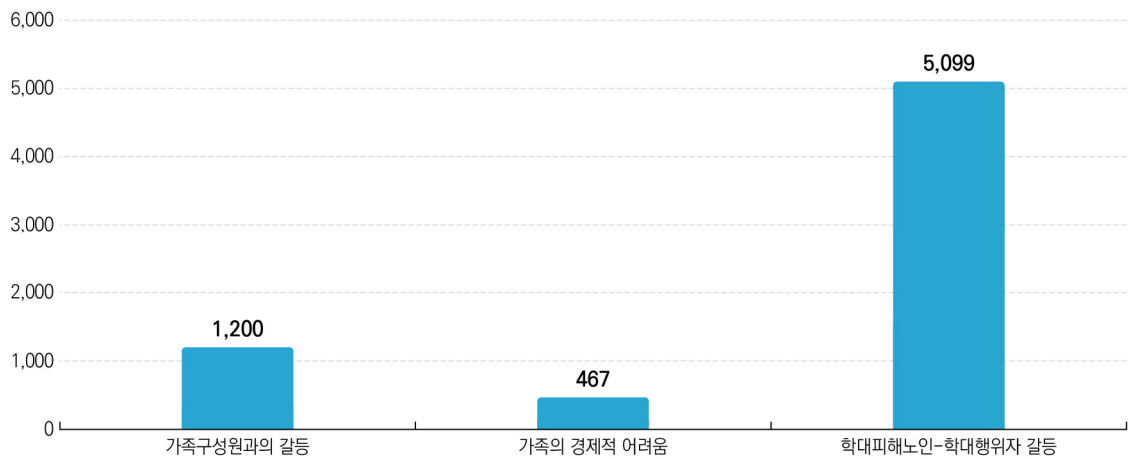


그림 5-8 가족 - 환경 원인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6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01 |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표 6-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체상담	
1월	14,462	8.1	4,867	8.3	19,329	8.1
2월	15,168	8.5	4,568	7.8	19,736	8.3
3월	13,454	7.5	4,647	7.9	18,101	7.6
4월	14,356	8.0	4,613	7.9	18,969	8.0
5월	15,027	8.4	4,499	7.7	19,526	8.2
6월	13,363	7.5	4,601	7.8	17,964	7.6
7월	17,249	9.6	5,191	8.8	22,440	9.4
8월	16,670	9.3	4,681	8.0	21,351	9.0
9월	14,125	7.9	5,213	8.9	19,338	8.1
10월	16,014	9.0	5,791	9.9	21,805	9.2
11월	14,443	8.1	4,979	8.5	19,422	8.2
12월	14,449	8.1	5,089	8.7	19,538	8.2
계	178,780	100	58,739	100	237,519	100

* 일반상담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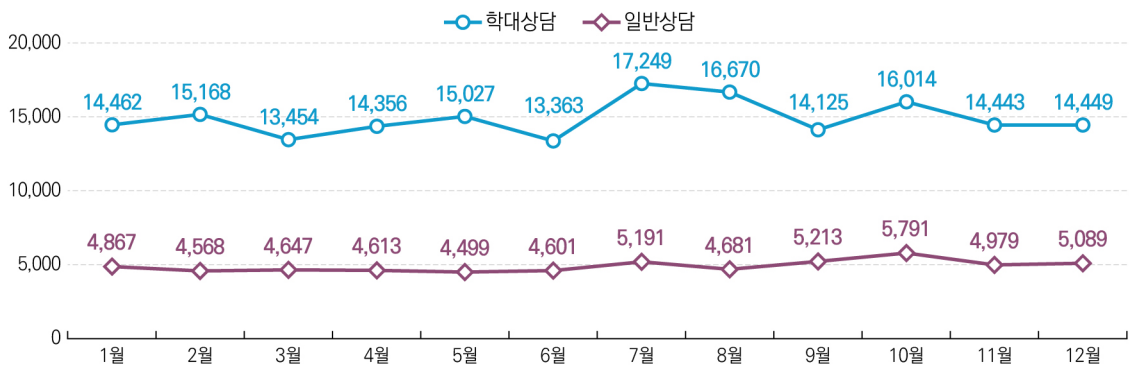


그림 6-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²⁴⁾에 따른 상담 구분

표 6-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3,371	2.8	1,007	2.5	60	2.0	360	3.3	85	6.2	681	21.7	5,564	3.1
	서울북부	3,929	3.3	992	2.5	22	0.7	246	2.2	34	2.5	504	16.1	5,727	3.2
	서울서부	2,969	2.5	1,139	2.9	19	0.6	350	3.2	57	4.2	160	5.1	4,694	2.6
	서울동부	3,335	2.8	979	2.5	39	1.3	214	2.0	16	1.2	640	20.4	5,223	2.9
	소계	13,604	11.3	4,117	10.4	140	4.7	1,170	10.7	192	14.0	1,985	63.4	21,208	11.9
부산	부산중부	4,408	3.7	1,608	4.1	218	7.4	367	3.3	9	0.7	190	6.1	6,800	3.8
	부산동부	3,027	2.5	445	1.1	64	2.2	162	1.5	9	0.7	41	1.3	3,748	2.1
	부산서부	2,461	2.0	872	2.2	46	1.6	261	2.4	3	0.2	56	1.8	3,699	2.1
	소계	9,896	8.2	2,925	7.4	328	11.1	790	7.2	21	1.5	287	9.2	14,247	8.0
대구	대구남부	3,369	2.8	1,039	2.6	122	4.1	202	1.8	11	0.8	17	0.5	4,760	2.7
	대구북부	4,231	3.5	615	1.5	118	4.0	254	2.3	96	7.0	141	4.5	5,455	3.1
	소계	7,600	6.3	1,654	4.2	240	8.1	456	4.2	107	7.8	158	5.0	10,215	5.7
인천	인천	4,212	3.5	1,018	2.6	63	2.1	385	3.5	10	0.7	-	-	5,688	3.2
	인천서부	3,224	2.7	679	1.7	34	1.2	526	4.8	-	-	2	0.1	4,465	2.5
	소계	7,436	6.2	1,697	4.3	97	3.3	911	8.3	10	0.7	2	0.1	10,153	5.7
	광주	4,090	3.4	707	1.8	39	1.3	215	2.0	34	2.5	18	0.6	5,103	2.9
	대전	1,732	1.4	769	1.9	105	3.6	457	4.2	4	0.3	-	-	3,067	1.7
	울산	3,219	2.7	1,316	3.3	83	2.8	261	2.4	2	0.1	2	0.1	4,883	2.7
경기	경기동부	1,847	1.5	1,010	2.5	48	1.6	583	5.3	30	2.2	7	0.2	3,525	2.0
	경기북부	7,421	6.1	1,170	2.9	69	2.3	737	6.7	6	0.4	2	0.1	9,405	5.3
	경기서부	4,218	3.5	910	2.3	39	1.3	490	4.5	32	2.3	2	0.1	5,691	3.2
	경기남부	2,509	2.1	422	1.1	7	0.2	373	3.4	8	0.6	76	2.4	3,395	1.9
	경기북서부	4,193	3.5	772	1.9	130	4.4	418	3.8	61	4.4	197	6.3	5,771	3.2
	소계	20,188	16.7	4,284	10.8	293	9.9	2,601	23.7	137	10.0	284	9.1	27,787	15.5
강원	강원	6,116	5.1	1,834	4.6	104	3.5	434	4.0	378	27.6	87	2.8	8,953	5.0
	강원동부	1,343	1.1	1,287	3.2	179	6.1	349	3.2	18	1.3	5	0.2	3,181	1.8
	강원남부	2,259	1.9	947	2.4	60	2.0	153	1.4	80	5.8	14	0.4	3,513	2.0
	소계	9,718	8.1	4,068	10.3	343	11.6	936	8.5	476	34.7	106	3.4	15,647	8.8
충북	충북	1,786	1.5	967	2.4	428	14.5	195	1.8	8	0.6	82	2.6	3,466	1.9
	충북북부	870	0.7	440	1.1	24	0.8	117	1.1	-	-	7	0.2	1,458	0.8
	소계	2,656	2.2	1,407	3.5	452	15.3	312	2.8	8	0.6	89	2.8	4,924	2.8
충남	충남	2,487	2.1	1,462	3.7	164	5.6	180	1.6	115	8.4	6	0.2	4,414	2.5
	충남남부	605	0.5	364	0.9	50	1.7	132	1.2	3	0.2	3	0.1	1,157	0.6
	소계	3,092	2.6	1,826	4.6	214	7.3	312	2.8	118	8.6	9	0.3	5,571	3.1

24) 학대사례(7,167건)에 대해 실시한 상담 횟수는 178,780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지역	기관명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전북	전북	2,382	2.0	678	1.7	74	2.5	140	1.3	5	0.4	24	0.8	3,303	1.8
	전북서부	2,501	2.1	879	2.2	11	0.4	147	1.3	3	0.2	5	0.2	3,546	2.0
	소계	4,883	4.0	1,557	3.9	85	2.9	287	2.6	8	0.6	29	0.9	6,849	3.8
전남	전남동부	2,724	2.3	562	1.4	63	2.1	218	2.0	2	0.1	4	0.1	3,573	2.0
	전남서부	4,931	4.1	1,380	3.5	47	1.6	153	1.4	4	0.3	19	0.6	6,534	3.7
	소계	7,655	6.3	1,942	4.9	110	3.7	371	3.4	6	0.4	23	0.7	10,107	5.7
경북	경북동부	2,195	1.8	2,054	5.2	104	3.5	256	2.3	16	1.2	2	0.1	4,627	2.6
	경북북부	3,874	3.2	1,141	2.9	48	1.6	132	1.2	30	2.2	29	0.9	5,254	2.9
	경북서부	3,316	2.7	1,434	3.6	16	0.5	217	2.0	41	3.0	24	0.8	5,048	2.8
	경북남부	2,114	1.8	1,874	4.7	65	2.2	397	3.6	2	0.1	22	0.7	4,474	2.5
	소계	11,499	9.5	6,503	16.4	233	7.9	1,002	9.1	89	6.5	77	2.5	19,403	10.9
경남	경남	6,729	5.6	883	2.2	12	0.4	326	3.0	1	0.1	22	0.7	7,973	4.5
	경남서부	3,923	3.3	1,755	4.4	75	2.5	350	3.2	122	8.9	39	1.2	6,264	3.5
	소계	10,652	8.8	2,638	6.6	87	2.9	676	6.2	123	9.0	61	1.9	14,237	8.0
제주	제주시	1,932	1.6	703	1.8	89	3.0	128	1.2	3	0.2	2	0.1	2,857	1.6
	서귀포시	830	0.7	1,571	4.0	12	0.4	76	0.7	33	2.4	-	-	2,522	1.4
	소계	2,762	2.3	2,274	5.7	101	3.4	204	1.9	36	2.6	2	0.1	5,379	3.0
계		120,682	100	39,684	100	2,950	100	10,961	100	1,371	100	3,132	100	178,7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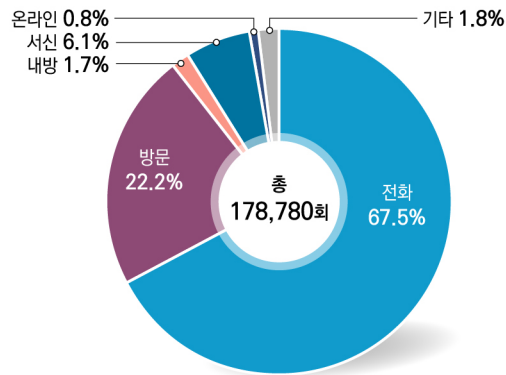


그림 6-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²⁵⁾에 따른 상담 구분

표 6-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214	3.0	3,978	3.2	170	2.5	1,202	3.0	5,564	3.1
	서울북부	152	2.1	4,227	3.4	137	2.0	1,211	3.0	5,727	3.2
	서울서부	257	3.6	3,382	2.7	262	3.8	793	2.0	4,694	2.6
	서울동부	135	1.9	3,977	3.2	122	1.8	989	2.5	5,223	2.9
	소계	758	10.6	15,564	12.5	691	10.1	4,195	10.4	21,208	11.9
부산	부산중부	233	3.3	4,629	3.7	267	3.9	1,671	4.1	6,800	3.8
	부산동부	159	2.2	3,040	2.4	161	2.4	388	1.0	3,748	2.1
	부산서부	236	3.3	2,930	2.4	136	2.0	397	1.0	3,699	2.1
	소계	628	8.8	10,599	8.5	564	8.2	2,456	6.1	14,247	8.0
대구	대구남부	180	2.5	2,850	2.3	148	2.2	1,582	3.9	4,760	2.7
	대구북부	204	2.8	3,707	3.0	180	2.6	1,364	3.4	5,455	3.1
	소계	384	5.4	6,557	5.3	328	4.8	2,946	7.3	10,215	5.7
인천	인천	177	2.5	2,201	1.8	159	2.3	3,151	7.8	5,688	3.2
	인천서부	324	4.5	2,724	2.2	305	4.5	1,112	2.8	4,465	2.5
	소계	501	7.0	4,925	4.0	464	6.8	4,263	10.6	10,153	5.7
	광주	204	2.8	2,944	2.4	259	3.8	1,696	4.2	5,103	2.9
	대전	91	1.3	1,988	1.6	98	1.4	890	2.2	3,067	1.7
	울산	167	2.3	3,813	3.1	168	2.5	735	1.8	4,883	2.7
경기	경기동부	293	4.1	2,543	2.0	164	2.4	525	1.3	3,525	2.0
	경기북부	525	7.3	5,433	4.4	559	8.2	2,888	7.2	9,405	5.3
	경기서부	249	3.5	4,073	3.3	268	3.9	1,101	2.7	5,691	3.2
	경기남부	226	3.2	2,512	2.0	222	3.2	435	1.1	3,395	1.9
	경기북서부	311	4.3	3,606	2.9	296	4.3	1,558	3.9	5,771	3.2
	소계	1,604	22.4	18,167	14.6	1,509	22.1	6,507	16.1	27,787	15.5
강원	강원	124	1.7	7,022	5.6	130	1.9	1,677	4.2	8,953	5.0
	강원동부	151	2.1	2,403	1.9	142	2.1	485	1.2	3,181	1.8
	강원남부	89	1.2	2,586	2.1	97	1.4	741	1.8	3,513	2.0
	소계	364	5.1	12,011	9.7	369	5.4	2,903	7.2	15,647	8.8
충북	충북	180	2.5	2,931	2.4	112	1.6	243	0.6	3,466	1.9
	충북북부	70	1.0	1,203	1.0	54	0.8	131	0.3	1,458	0.8
	소계	250	3.5	4,134	3.3	166	2.4	374	0.9	4,924	2.8
충남	충남	200	2.8	3,577	2.9	207	3.0	430	1.1	4,414	2.5
	충남남부	116	1.6	807	0.6	110	1.6	124	0.3	1,157	0.6
	소계	316	4.4	4,384	3.5	317	4.6	554	1.4	5,571	3.1
전북	전북	140	2.0	2,601	2.1	140	2.0	422	1.0	3,303	1.8
	전북서부	159	2.2	2,105	1.7	140	2.0	1,142	2.8	3,546	2.0
	소계	299	4.2	4,706	3.8	280	4.1	1,564	3.9	6,849	3.8

25) 학대상례(7,167건)에 대해 실시한 상담 횟수는 178,780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정으로는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이 있음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전남	전남동부	151	2.1	2,612	2.1	171	2.5	639	1.6	3,573	2.0
	전남서부	186	2.6	3,572	2.9	232	3.4	2,544	6.3	6,534	3.7
	소계	337	4.7	6,184	5.0	403	5.9	3,183	7.9	10,107	5.7
경북	경북동부	176	2.5	3,408	2.7	177	2.6	866	2.1	4,627	2.6
	경북북부	160	2.2	3,458	2.8	146	2.1	1,490	3.7	5,254	2.9
	경북서부	161	2.2	3,649	2.9	175	2.6	1,063	2.6	5,048	2.8
	경북남부	129	1.8	3,164	2.5	133	1.9	1,048	2.6	4,474	2.5
	소계	626	8.7	13,679	11.0	631	9.2	4,467	11.1	19,403	10.9
경남	경남	343	4.8	5,792	4.7	311	4.5	1,527	3.8	7,973	4.5
	경남서부	165	2.3	5,462	4.4	165	2.4	472	1.2	6,264	3.5
	소계	508	7.1	11,254	9.0	476	7.0	1,999	5.0	14,237	8.0
제주	제주시	80	1.1	2,111	1.7	69	1.0	597	1.5	2,857	1.6
	서귀포시	52	0.7	1,409	1.1	50	0.7	1,011	2.5	2,522	1.4
	소계	132	1.8	3,520	2.8	119	1.7	1,608	4.0	5,379	3.0
계		7,169	100	124,429	100	6,842	100	40,340	100	178,7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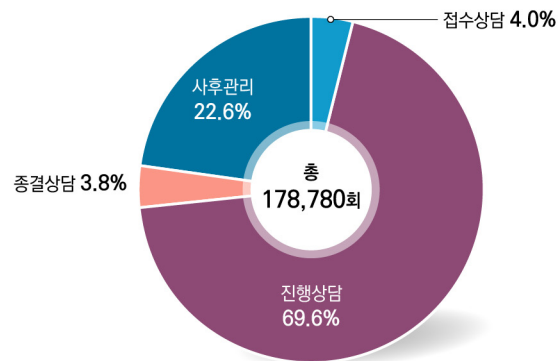


그림 6-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표 6-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5,564	3.1	3,281	5.6	8,845	3.7
	서울북부	5,727	3.2	2,997	5.1	8,724	3.7
	서울서부	4,694	2.6	2,085	3.5	6,779	2.9
	서울동부	5,223	2.9	4,468	7.6	9,691	4.1
	소계	21,208	11.9	12,831	21.8	34,039	14.3
부산	부산중부	6,800	3.8	2,288	3.9	9,088	3.8
	부산동부	3,748	2.1	1,368	2.3	5,116	2.2
	부산서부	3,699	2.1	916	1.6	4,615	1.9
	소계	14,247	8.0	4,572	7.8	18,819	7.9
대구	대구남부	4,760	2.7	1,288	2.2	6,048	2.5
	대구북부	5,455	3.1	1,640	2.8	7,095	3.0
	소계	10,215	5.7	2,928	5.0	13,143	5.5
인천	인천	5,688	3.2	1,295	2.2	6,983	2.9
	인천서부	4,465	2.5	795	1.4	5,260	2.2
	소계	10,153	5.7	2,090	3.6	12,243	5.2
	광주	5,103	2.9	1,216	2.1	6,319	2.7
	대전	3,067	1.7	3,281	5.6	6,348	2.7
	울산	4,883	2.7	992	1.7	5,875	2.5
경기	경기동부	3,525	2.0	1,306	2.2	4,831	2.0
	경기북부	9,405	5.3	2,334	4.0	11,739	4.9
	경기서부	5,691	3.2	2,420	4.1	8,111	3.4
	경기남부	3,395	1.9	2,050	3.5	5,445	2.3
	경기북서부	5,771	3.2	1,326	2.3	7,097	3.0
	소계	27,787	15.5	9,436	16.1	37,223	15.7
강원	강원	8,953	5.0	834	1.4	9,787	4.1
	강원동부	3,181	1.8	843	1.4	4,024	1.7
	강원남부	3,513	2.0	1,708	2.9	5,221	2.2
	소계	15,647	8.8	3,385	5.8	19,032	8.0
충북	충북	3,466	1.9	1,923	3.3	5,389	2.3
	충북북부	1,458	0.8	1,084	1.8	2,542	1.1
	소계	4,924	2.8	3,007	5.1	7,931	3.3
충남	충남	4,414	2.5	2,426	4.1	6,840	2.9
	충남남부	1,157	0.6	844	1.4	2,001	0.8
	소계	5,571	3.1	3,270	5.6	8,841	3.7
전북	전북	3,303	1.8	605	1.0	3,908	1.6
	전북서부	3,546	2.0	632	1.1	4,178	1.8
	소계	6,849	3.8	1,237	2.1	8,086	3.4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전남	전남동부	3,573	2.0	468	0.8	4,041	1.7
	전남서부	6,534	3.7	881	1.5	7,415	3.1
	소계	10,107	5.7	1,349	2.3	11,456	4.8
경북	경북동부	4,627	2.6	1,310	2.2	5,937	2.5
	경북북부	5,254	2.9	1,007	1.7	6,261	2.6
	경북서부	5,048	2.8	788	1.3	5,836	2.5
	경북남부	4,474	2.5	2,186	3.7	6,660	2.8
	소계	19,403	10.9	5,291	9.0	24,694	10.4
경남	경남	7,973	4.5	944	1.6	8,917	3.8
	경남서부	6,264	3.5	1,281	2.2	7,545	3.2
	소계	14,237	8.0	2,225	3.8	16,462	6.9
제주	제주시	2,857	1.6	1,237	2.1	4,094	1.7
	서귀포시	2,522	1.4	392	0.7	2,914	1.2
	소계	5,379	3.0	1,629	2.8	7,008	3.0
계		178,780	100	58,739	100	237,519	100

* 일반상담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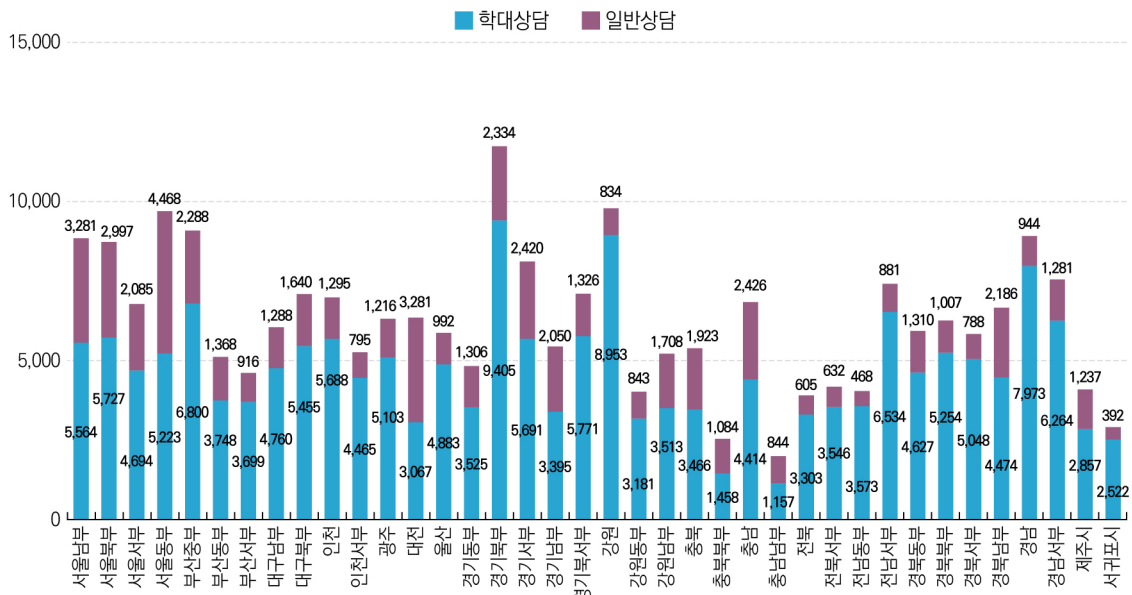


그림 6-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표 6-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단위: 회,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5,564	214	26.0	3,281	774	4.2
	서울북부	5,727	152	37.7	2,997	630	4.8
	서울서부	4,694	257	18.3	2,085	624	3.3
	서울동부	5,223	135	38.7	4,468	674	6.6
	소계	21,208	758	28.0	12,831	2,702	4.7
부산	부산중부	6,800	233	29.2	2,288	398	5.7
	부산동부	3,748	159	23.6	1,368	511	2.7
	부산서부	3,699	236	15.7	916	454	2.0
	소계	14,247	628	22.7	4,572	1,363	3.4
대구	대구남부	4,760	180	26.4	1,288	347	3.7
	대구북부	5,455	204	26.7	1,640	370	4.4
	소계	10,215	384	26.6	2,928	717	4.1
인천	인천	5,688	177	32.1	1,295	369	3.5
	인천서부	4,465	324	13.8	795	127	6.3
	소계	10,153	501	20.3	2,090	496	4.2
	광주	5,103	204	25.0	1,216	246	4.9
	대전	3,067	91	33.7	3,281	599	5.5
	울산	4,883	167	29.2	992	343	2.9
경기	경기동부	3,525	293	12.0	1,306	369	3.5
	경기북부	9,405	525	17.9	2,334	509	4.6
	경기서부	5,691	249	22.9	2,420	379	6.4
	경기남부	3,395	226	15.0	2,050	365	5.6
	경기북서부	5,771	310	18.6	1,326	311	4.3
	소계	27,787	1,603	17.3	9,436	1,933	4.9
강원	강원	8,953	124	72.2	834	277	3.0
	강원동부	3,181	151	21.1	843	315	2.7
	강원남부	3,513	89	39.5	1,708	346	4.9
	소계	15,647	364	43.0	3,385	938	3.6
충북	충북	3,466	180	19.3	1,923	1,022	1.9
	충북북부	1,458	70	20.8	1,084	252	4.3
	소계	4,924	250	19.7	3,007	1,274	2.4
충남	충남	4,414	200	22.1	2,426	186	13.0
	충남남부	1,157	115	10.1	844	163	5.2
	소계	5,571	315	17.7	3,270	349	9.4
전북	전북	3,303	140	23.6	605	144	4.2
	전북서부	3,546	159	22.3	632	449	1.4
	소계	6,849	299	22.9	1,237	593	2.1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상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남	전남동부	3,573	151	23.7	468	223	2.1
	전남서부	6,534	186	35.1	881	396	2.2
	소계	10,107	337	30.0	1,349	619	2.2
경북	경북동부	4,627	176	26.3	1,310	364	3.6
	경북북부	5,254	160	32.8	1,007	527	1.9
	경북서부	5,048	161	31.4	788	277	2.8
	경북남부	4,474	129	34.7	2,186	337	6.5
	소계	19,403	626	31.0	5,291	1,505	3.5
경남	경남	7,973	343	23.2	944	565	1.7
	경남서부	6,264	165	38.0	1,281	561	2.3
	소계	14,237	508	28.0	2,225	1,126	2.0
제주	제주시	2,857	80	35.7	1,237	492	2.5
	서귀포시	2,522	52	48.5	392	284	1.4
	소계	5,379	132	40.8	1,629	776	2.1
계		178,780	7,167	24.9	58,739	15,57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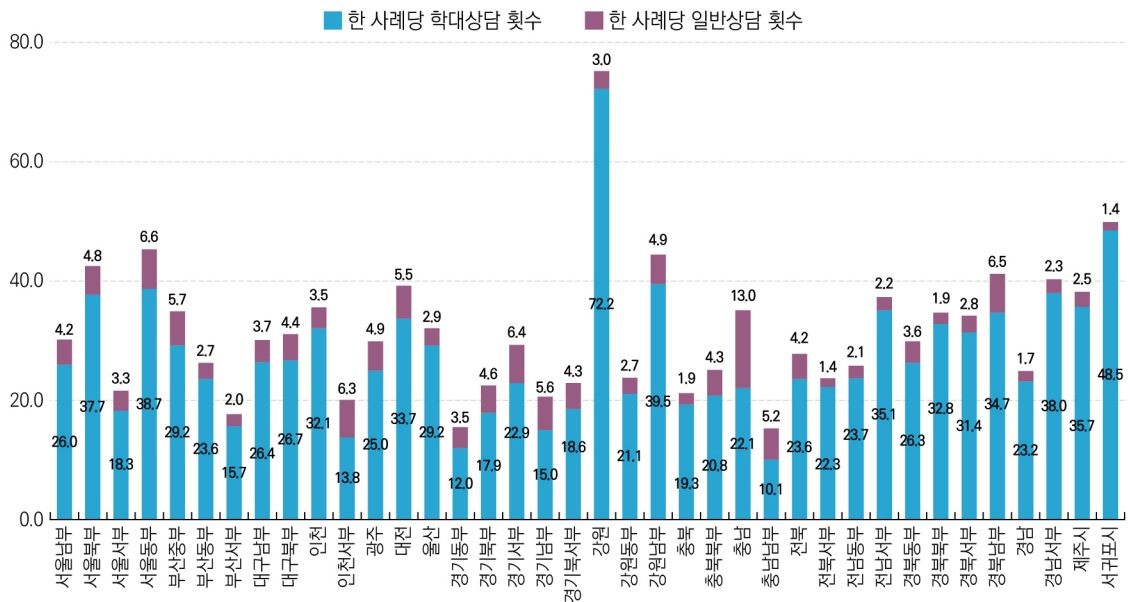


그림 6-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0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표 6-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69,611	27.9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227	0.1
	가족상담	14,751	5.9
	관련자 상담	47,970	19.2
	심리 및 기타검사	1,317	0.5
	위기개입 기술	335	0.1
	강점관점 개입 기술	853	0.3
	소계	135,064	54.1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99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52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165	0.1
	재가서비스 연결	170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4,604	1.8
	기타자원 연결	8,233	3.3
	후원 연결	1,476	0.6
	직접 후원	5,471	2.2
	소계	20,270	8.1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451	0.2
	법률소송 지원	42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94	0.0
	소계	587	0.2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83	0.0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428	0.2
	연계(방문간호)	189	0.1
	지원(이송 및 동행)	577	0.2
	지원(의료비 지급)	516	0.2
	소계	1,793	0.7
보호서비스	지킴이 연결	1,211	0.5
	시설보호	68	0.0
	일시보호	1,215	0.5
	소계	2,494	1.0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79,138	31.7
	재학대 예방교육	10,201	4.1
	소계	89,339	35.8
계		249,547	100

* 사후관리서비스 실적을 포함하면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의 총계는 263,143회임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표 6-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18,474	42.8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90	0.2
	가족상담	1,198	2.8
	관련자 상담	3,888	9.0
	심리 및 기타검사	171	0.4
	소계	23,821	55.1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6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3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61	0.1
	재가서비스 연결	18	0.0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453	1.0
	기타자원 연결	418	1.0
	직접 후원	682	1.6
	소계	1,651	3.8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37	0.1
	법률소송 지원	18	0.0
	소계	55	0.1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11	0.0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64	0.1
	연계(방문간호)	9	0.0
	지원(이송 및 동행)	47	0.1
	지원(의료비 지급)	25	0.1
	소계	156	0.4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13,686	31.7
	재학대 예방교육	3,836	8.9
	소계	17,522	40.6
계		43,205	100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실적을 포함하면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총계는 47,548회임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7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01 | 학대피해노인 현황

1)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7-1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인구수	비 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 율
남성	4,551,888	44.4	1,676	23.4
여성	5,704,894	55.6	5,491	76.6
계	10,256,782	100	7,167	10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12. 기준)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표 7-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피해노인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369	355	347	306	208	78	12	1	1,676
	22.0	21.2	20.7	18.3	12.4	4.7	0.7	0.1	100
여성	1,443	1,204	1,078	907	551	243	57	8	5,491
	26.3	21.9	19.6	16.5	10.0	4.4	1.0	0.1	100
계	1,812	1,559	1,425	1,213	759	321	69	9	7,167
	25.3	21.8	19.9	16.9	10.6	4.5	1.0	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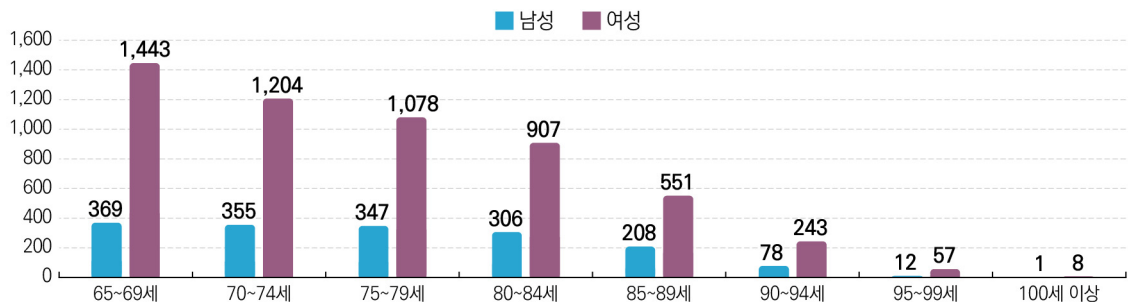


그림 7-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대 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47	22.0	167	78.0	214	100
	서울북부	17	11.2	135	88.8	152	100
	서울서부	51	19.8	206	80.2	257	100
	서울동부	28	20.7	107	79.3	135	100
	소계	143	18.9	615	81.1	758	100
부산	부산중부	50	21.5	183	78.5	233	100
	부산동부	47	29.6	112	70.4	159	100
	부산서부	61	25.8	175	74.2	236	100
	소계	158	25.2	470	74.8	628	100
대구	대구남부	31	17.2	149	82.8	180	100
	대구북부	46	22.5	158	77.5	204	100
	소계	77	20.1	307	79.9	384	100
인천	인천	46	26.0	131	74.0	177	100
	인천서부	88	27.2	236	72.8	324	100
	소계	134	26.7	367	73.3	501	100
광주		40	19.6	164	80.4	204	100
대전		19	20.9	72	79.1	91	100
울산		32	19.2	135	80.8	167	100
경기	경기동부	80	27.3	213	72.7	293	100
	경기북부	155	29.5	370	70.5	525	100
	경기서부	60	24.1	189	75.9	249	100
	경기남부	48	21.2	178	78.8	226	100
	경기북서부	74	23.9	236	76.1	310	100
	소계	417	26.0	1,186	74.0	1,603	100
강원	강원	35	28.2	89	71.8	124	100
	강원동부	42	27.8	109	72.2	151	100
	강원남부	26	29.2	63	70.8	89	100
	소계	103	28.3	261	71.7	364	100
충북	충북	33	18.3	147	81.7	180	100
	충북북부	18	25.7	52	74.3	70	100
	소계	51	20.4	199	79.6	250	100
충남	충남	38	19.0	162	81.0	200	100
	충남남부	28	24.3	87	75.7	115	100
	소계	66	21.0	249	79.0	315	100
전북	전북	27	19.3	113	80.7	140	100
	전북서부	33	20.8	126	79.2	159	100
	소계	60	20.1	239	79.9	299	100
전남	전남동부	38	25.2	113	74.8	151	100
	전남서부	45	24.2	141	75.8	186	100
	소계	83	24.6	254	75.4	337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경북	경북동부	39	22.2	137	77.8	176	100
	경북북부	39	24.4	121	75.6	160	100
	경북서부	39	24.2	122	75.8	161	100
	경북남부	28	21.7	101	78.3	129	100
	소계	145	23.2	481	76.8	626	100
경남	경남	77	22.4	266	77.6	343	100
	경남서부	38	23.0	127	77.0	165	100
	소계	115	22.6	393	77.4	508	100
제주	제주시	22	27.5	58	72.5	80	100
	서귀포시	11	21.2	41	78.8	52	100
	소계	33	25.0	99	75.0	132	100
계		1,676	23.4	5,491	76.6	7,167	100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표 7-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노인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남성	1,025	994	52	89	198	65	13	2,436
	42.1	40.8	2.1	3.7	8.1	2.7	0.5	100
여성	3,772	3,790	220	209	412	66	27	8,496
	44.4	44.6	2.6	2.5	4.8	0.8	0.3	100
계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43.9	43.8	2.5	2.7	5.6	1.2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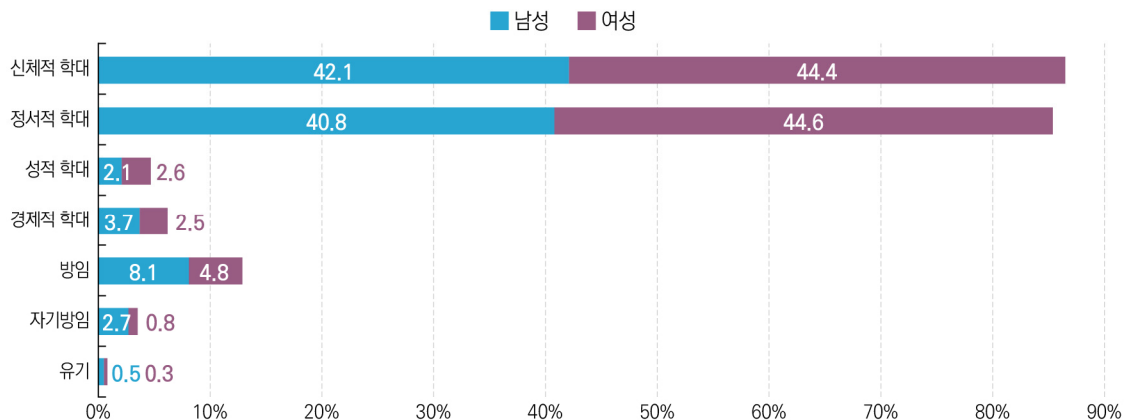


그림 7-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표 7-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노인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65~69세	1,348	1,325	30	47	43	22	5	2,820
	47.8	47.0	1.1	1.7	1.5	0.8	0.2	100
70~74세	1,112	1,123	30	61	59	30	4	2,419
	46.0	46.4	1.2	2.5	2.4	1.2	0.2	100
75~79세	979	976	41	61	87	35	9	2,188
	44.7	44.6	1.9	2.8	4.0	1.6	0.4	100
80~84세	727	792	50	62	145	25	12	1,813
	40.1	43.7	2.8	3.4	8.0	1.4	0.7	100
85~89세	439	396	69	47	156	11	7	1,125
	39.0	35.2	6.1	4.2	13.9	1.0	0.6	100
90~94세	164	143	37	16	89	6	3	458
	35.8	31.2	8.1	3.5	19.4	1.3	0.7	100
95~99세	27	26	13	4	25	2	-	97
	27.8	26.8	13.4	4.1	25.8	2.1	-	100
100세 이상	1	3	2	-	6	-	-	12
	8.3	25.0	16.7	-	50.0	-	-	100
계	4,797	4,784	272	298	610	131	40	10,932
	43.9	43.8	2.5	2.7	5.6	1.2	0.4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93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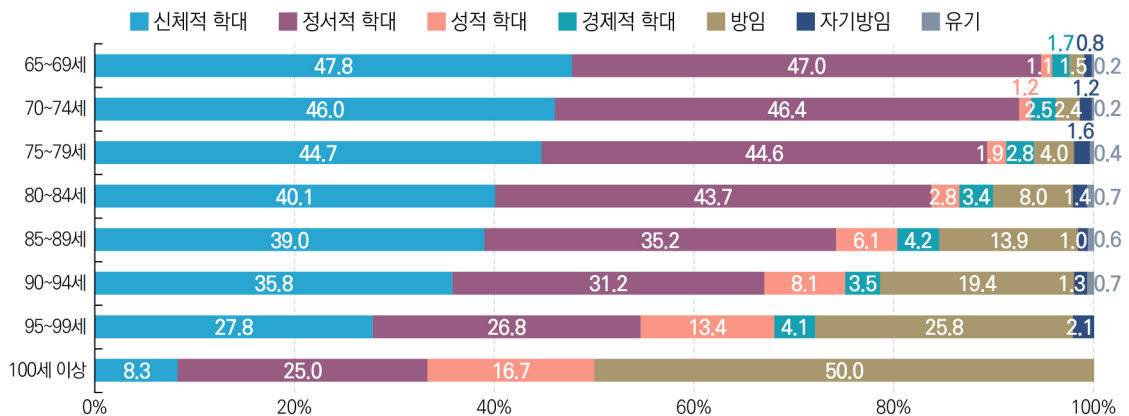


그림 7-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표 7-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4,128	57.6
	재혼	302	4.2
	사실혼	253	3.5
	소계	4,683	65.3
배우자 없음	사별	1,907	26.6
	이혼	410	5.7
	별거	73	1.0
	가출	6	0.1
	미혼	88	1.2
	소계	2,484	34.7
계		7,167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표 7-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5,223	1,944	7,167
72.9	27.1	100

표 7-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3,747	50.1
아들	1,841	24.6
딸	608	8.1
손자녀	442	5.9
시설	433	5.8
며느리	141	1.9
기타 동거인	101	1.4
병원	69	0.9
기타 친·인척	52	0.7
사위	43	0.6
계	7,477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동거자 수(7,477명)는 차이가 있음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7-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부부	2,886	40.3
자녀동거	2,057	28.7
노인독거	1,057	14.7
기 타	765	10.7
손자녀동거	206	2.9
자녀·손자녀동거	196	2.7
계	7,167	100

표 7-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서울	종로구	-	-	9	50.0	8	44.4	-	-	1	5.6	-	-	18	100
	중구	1	8.3	3	25.0	7	58.3	-	-	1	8.3	-	-	12	100
	용산구	1	16.7	3	50.0	2	33.3	-	-	-	-	-	-	6	100
	성동구	1	5.3	8	42.1	10	52.6	-	-	-	-	-	-	19	100
	광진구	1	5.3	10	52.6	6	31.6	1	5.3	-	-	1	5.3	19	100
	동대문구	4	14.3	14	50.0	8	28.6	-	-	1	3.6	1	3.6	28	100
	종량구	1	3.0	16	48.5	13	39.4	1	3.0	-	-	2	6.1	33	100
	성북구	3	11.1	12	44.4	10	37.0	-	-	1	3.7	1	3.7	27	100
	강북구	4	14.3	10	35.7	11	39.3	1	3.6	1	3.6	1	3.6	28	100
	도봉구	4	14.3	8	28.6	13	46.4	1	3.6	2	7.1	-	-	28	100
	노원구	4	9.8	18	43.9	14	34.1	2	4.9	1	2.4	2	4.9	41	100
	은평구	5	9.3	22	40.7	22	40.7	2	3.7	1	1.9	2	3.7	54	100
	서대문구	-	-	9	47.4	9	47.4	1	5.3	-	-	-	-	19	100
	마포구	3	9.1	14	42.4	9	27.3	2	6.1	5	15.2	-	-	33	100
	양천구	2	4.0	23	46.0	22	44.0	-	-	2	4.0	1	2.0	50	100
	강서구	12	16.9	24	33.8	27	38.0	1	1.4	2	2.8	5	7.0	71	100
	구로구	1	4.2	10	41.7	9	37.5	2	8.3	1	4.2	1	4.2	24	100
	금천구	3	8.8	10	29.4	12	35.3	1	2.9	1	2.9	7	20.6	34	100
	영등포구	4	16.7	13	54.2	7	29.2	-	-	-	-	-	-	24	100
	동작구	3	9.7	12	38.7	11	35.5	2	6.5	1	3.2	2	6.5	31	100
	관악구	1	1.4	24	33.8	24	33.8	5	7.0	4	5.6	13	18.3	71	100
	서초구	-	-	3	33.3	5	55.6	-	-	-	-	1	11.1	9	100
	강남구	1	4.8	9	42.9	5	23.8	1	4.8	3	14.3	2	9.5	21	100
	송파구	4	15.4	10	38.5	11	42.3	-	-	-	-	1	3.8	26	100
	강동구	3	9.4	18	56.3	11	34.4	-	-	-	-	-	-	32	100
	소계	66	8.7	312	41.2	286	37.7	23	3.0	28	3.7	43	5.7	758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부산	중구	1	12.5	1	12.5	4	50.0	-	-	1	12.5	1	12.5	8	100
	서구	2	8.0	15	60.0	5	20.0	2	8.0	1	4.0	-	-	25	100
	동구	4	10.8	21	56.8	10	27.0	1	2.7	-	-	1	2.7	37	100
	영도구	9	15.8	24	42.1	21	36.8	1	1.8	2	3.5	-	-	57	100
	부산진구	13	11.8	51	46.4	38	34.5	1	0.9	2	1.8	5	4.5	110	100
	동래구	5	25.0	10	50.0	4	20.0	1	5.0	-	-	-	-	20	100
	남구	3	7.1	26	61.9	10	23.8	-	-	3	7.1	-	-	42	100
	북구	5	16.7	14	46.7	8	26.7	3	10.0	-	-	-	-	30	100
	해운대구	9	16.7	24	44.4	17	31.5	-	-	2	3.7	2	3.7	54	100
	사하구	17	19.8	32	37.2	32	37.2	1	1.2	3	3.5	1	1.2	86	100
	금정구	8	26.7	9	30.0	7	23.3	1	3.3	2	6.7	3	10.0	30	100
	강서구	7	31.8	8	36.4	6	27.3	-	-	-	-	1	4.5	22	100
	연제구	4	23.5	5	29.4	7	41.2	-	-	-	-	1	5.9	17	100
	수영구	3	20.0	7	46.7	2	13.3	-	-	-	-	3	20.0	15	100
	사상구	8	12.1	29	43.9	24	36.4	3	4.5	1	1.5	1	1.5	66	100
	기장군	5	55.6	1	11.1	1	11.1	1	11.1	1	11.1	-	-	9	100
	소계	103	16.4	277	44.1	196	31.2	15	2.4	18	2.9	19	3.0	628	100
대구	중구	2	40.0	-	-	3	60.0	-	-	-	-	-	-	5	100
	동구	17	16.2	45	42.9	30	28.6	4	3.8	5	4.8	4	3.8	105	100
	서구	9	17.3	21	40.4	15	28.8	3	5.8	4	7.7	-	-	52	100
	남구	8	19.0	18	42.9	13	31.0	1	2.4	1	2.4	1	2.4	42	100
	북구	4	12.1	11	33.3	15	45.5	1	3.0	-	-	2	6.1	33	100
	수성구	4	19.0	8	38.1	7	33.3	-	-	1	4.8	1	4.8	21	100
	달서구	12	16.4	41	56.2	15	20.5	1	1.4	1	1.4	3	4.1	73	100
	달성군	7	15.9	25	56.8	7	15.9	1	2.3	1	2.3	3	6.8	44	100
	군위군	3	33.3	2	22.2	2	22.2	-	-	-	-	2	22.2	9	100
	소계	66	17.2	171	44.5	107	27.9	11	2.9	13	3.4	16	4.2	384	100
인천	중구	6	19.4	14	45.2	9	29.0	-	-	-	-	2	6.5	31	100
	동구	3	21.4	8	57.1	3	21.4	-	-	-	-	-	-	14	100
	미추홀구	12	29.3	8	19.5	11	26.8	2	4.9	1	2.4	7	17.1	41	100
	연수구	5	19.2	9	34.6	11	42.3	1	3.8	-	-	-	-	26	100
	남동구	17	27.9	18	29.5	19	31.1	-	-	1	1.6	6	9.8	61	100
	부평구	13	12.6	53	51.5	23	22.3	3	2.9	5	4.9	6	5.8	103	100
	계양구	9	18.0	24	48.0	7	14.0	-	-	5	10.0	5	10.0	50	100
	서구	5	3.4	73	49.7	45	30.6	8	5.4	5	3.4	11	7.5	147	100
	강화군	3	12.5	5	20.8	11	45.8	-	-	-	-	5	20.8	24	100
	옹진군	-	-	1	25.0	-	-	1	25.0	1	25.0	1	25.0	4	100
	소계	73	14.6	213	42.5	139	27.7	15	3.0	18	3.6	43	8.6	501	100
광주	동구	3	10.0	19	63.3	8	26.7	-	-	-	-	-	-	30	100
	서구	7	16.7	27	64.3	7	16.7	-	-	-	-	1	2.4	42	100
	남구	8	17.8	26	57.8	10	22.2	-	-	1	2.2	-	-	45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북구	13	21.7	24	40.0	18	30.0	3	5.0	1	1.7	1	1.7	60	100
	광산구	4	14.8	14	51.9	5	18.5	-	-	2	7.4	2	7.4	27	100
	소계	35	17.2	110	53.9	48	23.5	3	1.5	4	2.0	4	2.0	204	100
대전	동구	2	11.1	6	33.3	6	33.3	2	11.1	1	5.6	1	5.6	18	100
	중구	-	-	5	41.7	4	33.3	-	-	2	16.7	1	8.3	12	100
	서구	2	11.1	10	55.6	5	27.8	-	-	-	-	1	5.6	18	100
	유성구	1	3.0	2	6.1	4	12.1	2	6.1	-	-	24	72.7	33	100
	대덕구	1	12.5	1	12.5	4	50.0	-	-	-	-	2	25.0	8	100
	기타*	-	-	1	50.0	-	-	-	-	1	50.0	-	-	2	100
	소계	6	6.6	25	27.5	23	25.3	4	4.4	4	4.4	29	31.9	91	100
울산	중구	7	13.7	22	43.1	17	33.3	1	2.0	2	3.9	2	3.9	51	100
	남구	8	17.0	22	46.8	11	23.4	2	4.3	2	4.3	2	4.3	47	100
	동구	1	4.0	16	64.0	7	28.0	-	-	-	-	1	4.0	25	100
	북구	3	11.1	11	40.7	9	33.3	1	3.7	1	3.7	2	7.4	27	100
	울주군	1	5.9	10	58.8	5	29.4	-	-	-	-	1	5.9	17	100
	소계	20	12.0	81	48.5	49	29.3	4	2.4	5	3.0	8	4.8	167	100
경기	수원시	15	18.8	34	42.5	27	33.8	2	2.5	-	-	2	2.5	80	100
	성남시	14	11.2	64	51.2	34	27.2	3	2.4	2	1.6	8	6.4	125	100
	의정부시	11	13.8	27	33.8	25	31.3	5	6.3	4	5.0	8	10.0	80	100
	안양시	5	10.6	17	36.2	18	38.3	2	4.3	2	4.3	3	6.4	47	100
	부천시	7	7.1	45	45.5	37	37.4	5	5.1	2	2.0	3	3.0	99	100
	광명시	5	13.9	15	41.7	15	41.7	-	-	1	2.8	-	-	36	100
	평택시	5	17.9	8	28.6	13	46.4	-	-	-	-	2	7.1	28	100
	동두천시	4	11.8	18	52.9	9	26.5	-	-	-	-	3	8.8	34	100
	안산시	6	13.0	23	50.0	14	30.4	2	4.3	1	2.2	-	-	46	100
	고양시	18	11.6	66	42.6	51	32.9	7	4.5	4	2.6	9	5.8	155	100
	과천시	-	-	1	50.0	1	50.0	-	-	-	-	-	-	2	100
	구리시	7	10.1	34	49.3	23	33.3	2	2.9	1	1.4	2	2.9	69	100
	남양주시	12	5.9	84	41.4	70	34.5	9	4.4	7	3.4	21	10.3	203	100
	오산시	3	15.8	4	21.1	11	57.9	-	-	-	-	1	5.3	19	100
	시흥시	6	19.4	13	41.9	8	25.8	1	3.2	1	3.2	2	6.5	31	100
	군포시	1	4.0	12	48.0	12	48.0	-	-	-	-	-	-	25	100
	의왕시	-	-	4	44.4	5	55.6	-	-	-	-	-	-	9	100
	하남시	4	11.4	19	54.3	10	28.6	-	-	-	-	2	5.7	35	100
	용인시	9	8.6	38	36.2	27	25.7	1	1.0	1	1.0	29	27.6	105	100
	파주시	8	11.3	30	42.3	24	33.8	2	2.8	-	-	7	9.9	71	100
	이천시	1	7.7	5	38.5	3	23.1	2	15.4	-	-	2	15.4	13	100
	안성시	1	5.0	13	65.0	4	20.0	-	-	1	5.0	1	5.0	20	100
	김포시	2	4.3	23	50.0	11	23.9	1	2.2	3	6.5	6	13.0	46	100
	화성시	7	21.2	13	39.4	9	27.3	-	-	-	-	4	12.1	33	100
	광주시	1	3.6	12	42.9	7	25.0	2	7.1	2	7.1	4	14.3	28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양주시	4	5.3	31	41.3	19	25.3	5	6.7	2	2.7	14	18.7	75	100
	포천시	7	15.2	20	43.5	15	32.6	-	-	-	-	4	8.7	46	100
	여주시	1	20.0	1	20.0	3	60.0	-	-	-	-	-	-	5	100
	연천군	-	-	3	75.0	1	25.0	-	-	-	-	-	-	4	100
	가평군	2	11.8	11	64.7	4	23.5	-	-	-	-	-	-	17	100
	양평군	-	-	11	64.7	5	29.4	-	-	-	-	1	5.9	17	100
	소계	166	10.4	699	43.6	515	32.1	51	3.2	34	2.1	138	8.6	1,603	100
강원	춘천시	16	17.2	22	23.7	17	18.3	1	1.1	1	1.1	36	38.7	93	100
	원주시	13	22.4	9	15.5	22	37.9	1	1.7	2	3.4	11	19.0	58	100
	강릉시	9	9.8	16	17.4	16	17.4	1	1.1	-	-	50	54.3	92	100
	동해시	5	21.7	8	34.8	5	21.7	1	4.3	2	8.7	2	8.7	23	100
	태백시	3	75.0	1	25.0	-	-	-	-	-	-	-	-	4	100
	속초시	6	31.6	9	47.4	3	15.8	-	-	-	-	1	5.3	19	100
	삼척시	1	25.0	-	-	3	75.0	-	-	-	-	-	-	4	100
	홍천군	2	28.6	2	28.6	2	28.6	-	-	-	-	1	14.3	7	100
	횡성군	-	-	-	-	-	-	-	-	-	-	-	-	-	-
	영월군	1	50.0	-	-	-	-	-	-	1	50.0	-	-	2	100
	평창군	1	7.1	5	35.7	6	42.9	-	-	1	7.1	1	7.1	14	100
	정선군	1	9.1	3	27.3	6	54.5	-	-	-	-	1	9.1	11	100
	철원군	3	60.0	1	20.0	-	-	-	-	1	20.0	-	-	5	100
	화천군	1	25.0	1	25.0	2	50.0	-	-	-	-	-	-	4	100
	양구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인제군	4	30.8	6	46.2	2	15.4	-	-	1	7.7	-	-	13	100
	고성군	-	-	1	16.7	5	83.3	-	-	-	-	-	-	6	100
	양양군	3	42.9	-	-	4	57.1	-	-	-	-	-	-	7	100
	소계	70	19.2	85	23.4	93	25.5	4	1.1	9	2.5	103	28.3	364	100
충북	청주시	12	8.9	50	37.0	35	25.9	4	3.0	6	4.4	28	20.7	135	100
	충주시	6	15.0	17	42.5	9	22.5	-	-	-	-	8	20.0	40	100
	제천시	1	9.1	1	9.1	4	36.4	-	-	-	-	5	45.5	11	100
	보은군	1	12.5	7	87.5	-	-	-	-	-	-	-	-	8	100
	옥천군	1	20.0	1	20.0	3	60.0	-	-	-	-	-	-	5	100
	영동군	-	-	3	60.0	1	20.0	-	-	-	-	1	20.0	5	100
	진천군	1	4.5	2	9.1	2	9.1	1	4.5	1	4.5	15	68.2	22	100
	괴산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음성군	2	14.3	3	21.4	7	50.0	-	-	1	7.1	1	7.1	14	100
	단양군	2	66.7	1	33.3	-	-	-	-	-	-	-	-	3	100
	증평군	1	20.0	2	40.0	2	40.0	-	-	-	-	-	-	5	100
	소계	28	11.2	88	35.2	63	25.2	5	2.0	8	3.2	58	23.2	250	100
충남	천안시	11	28.2	9	23.1	13	33.3	1	2.6	1	2.6	4	10.3	39	100
	공주시	8	29.6	3	11.1	9	33.3	2	7.4	1	3.7	4	14.8	27	100
	보령시	3	13.6	10	45.5	4	18.2	3	13.6	2	9.1	-	-	22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아산시	16	34.0	12	25.5	11	23.4	1	2.1	1	2.1	6	12.8	47	100
	서산시	9	25.7	15	42.9	6	17.1	1	2.9	1	2.9	3	8.6	35	100
	논산시	3	14.3	6	28.6	7	33.3	3	14.3	-	-	2	9.5	21	100
	계룡시	-	-	1	8.3	-	-	-	-	-	-	11	91.7	12	100
	당진시	5	20.0	6	24.0	8	32.0	1	4.0	1	4.0	4	16.0	25	100
	금산군	2	100	-	-	-	-	-	-	-	-	-	-	2	100
	부여군	4	21.1	6	31.6	7	36.8	-	-	1	5.3	1	5.3	19	100
	서천군	3	33.3	3	33.3	3	33.3	-	-	-	-	-	-	9	100
	청양군	1	33.3	2	66.7	-	-	-	-	-	-	-	-	3	100
	홍성군	-	-	4	80.0	1	20.0	-	-	-	-	-	-	5	100
	예산군	1	14.3	2	28.6	1	14.3	-	-	-	-	3	42.9	7	100
	태안군	-	-	2	40.0	-	-	1	20.0	-	-	2	40.0	5	100
	소계	66	23.7	81	29.1	70	25.2	13	4.7	8	2.9	40	14.4	278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	5.4	18	48.6	9	24.3	1	2.7	3	8.1	4	10.8	37	100
	소계	2	5.4	18	48.6	9	24.3	1	2.7	3	8.1	4	10.8	37	100
전북	전주시	12	13.6	43	48.9	10	11.4	3	3.4	3	3.4	17	19.3	88	100
	군산시	9	20.5	27	61.4	6	13.6	2	4.5	-	-	-	-	44	100
	익산시	10	16.4	31	50.8	4	6.6	2	3.3	-	-	14	23.0	61	100
	정읍시	1	6.3	6	37.5	7	43.8	-	-	1	6.3	1	6.3	16	100
	남원시	2	14.3	7	50.0	4	28.6	-	-	1	7.1	-	-	14	100
	김제시	4	22.2	10	55.6	4	22.2	-	-	-	-	-	-	18	100
	완주군	3	17.6	4	23.5	2	11.8	-	-	2	11.8	6	35.3	17	100
	진안군	1	16.7	3	50.0	1	16.7	-	-	-	-	1	16.7	6	100
	무주군	-	-	-	-	-	-	-	-	-	-	-	-	-	-
	장수군	1	12.5	5	62.5	1	12.5	-	-	-	-	1	12.5	8	100
	임실군	-	-	1	25.0	2	50.0	-	-	1	25.0	-	-	4	100
	순창군	-	-	2	66.7	1	33.3	-	-	-	-	-	-	3	100
	고창군	2	18.2	8	72.7	1	9.1	-	-	-	-	-	-	11	100
	부안군	2	22.2	2	22.2	4	44.4	-	-	-	-	1	11.1	9	100
	소계	47	15.7	149	49.8	47	15.7	7	2.3	8	2.7	41	13.7	299	100
전남	목포시	20	35.1	13	22.8	16	28.1	2	3.5	2	3.5	4	7.0	57	100
	여수시	3	11.1	14	51.9	7	25.9	2	7.4	1	3.7	-	-	27	100
	순천시	4	9.1	22	50.0	13	29.5	1	2.3	2	4.5	2	4.5	44	100
	나주시	5	20.0	8	32.0	8	32.0	-	-	-	-	4	16.0	25	100
	광양시	3	16.7	8	44.4	7	38.9	-	-	-	-	-	-	18	100
	담양군	-	-	-	-	1	100	-	-	-	-	-	-	1	100
	곡성군	4	44.4	1	11.1	-	-	2	22.2	1	11.1	1	11.1	9	100
	구례군	1	16.7	2	33.3	3	50.0	-	-	-	-	-	-	6	100
	고흥군	4	18.2	7	31.8	9	40.9	1	4.5	-	-	1	4.5	22	100
	보성군	1	20.0	1	20.0	3	60.0	-	-	-	-	-	-	5	100
	화순군	1	33.3	-	-	2	66.7	-	-	-	-	-	-	3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장흥군	1	50.0	1	50.0	-	-	-	-	-	-	-	-	2	100
	강진군	1	16.7	2	33.3	2	33.3	-	-	-	-	1	16.7	6	100
	해남군	8	22.2	17	47.2	7	19.4	2	5.6	1	2.8	1	2.8	36	100
	영암군	2	40.0	1	20.0	1	20.0	-	-	-	-	1	20.0	5	100
	무안군	3	17.6	11	64.7	2	11.8	1	5.9	-	-	-	-	17	100
	함평군	1	20.0	1	20.0	2	40.0	-	-	-	-	1	20.0	5	100
	영광군	6	42.9	3	21.4	4	28.6	-	-	-	-	1	7.1	14	100
	장성군	4	28.6	5	35.7	4	28.6	1	7.1	-	-	-	-	14	100
	완도군	1	10.0	5	50.0	3	30.0	-	-	-	-	1	10.0	10	100
	진도군	4	44.4	-	-	5	55.6	-	-	-	-	-	-	9	100
	신안군	-	-	1	50.0	1	50.0	-	-	-	-	-	-	2	100
	소계	77	22.8	123	36.5	100	29.7	12	3.6	7	2.1	18	5.3	337	100
경북	포항시	27	28.1	33	34.4	30	31.3	3	3.1	-	-	3	3.1	96	100
	경주시	26	43.3	18	30.0	8	13.3	2	3.3	-	-	6	10.0	60	100
	김천시	6	8.2	16	21.9	10	13.7	3	4.1	1	1.4	37	50.7	73	100
	안동시	16	20.3	43	54.4	15	19.0	-	-	2	2.5	3	3.8	79	100
	구미시	10	25.0	15	37.5	8	20.0	3	7.5	2	5.0	2	5.0	40	100
	영주시	2	5.4	26	70.3	5	13.5	1	2.7	-	-	3	8.1	37	100
	영천시	6	23.1	6	23.1	2	7.7	-	-	-	-	12	46.2	26	100
	상주시	6	25.0	7	29.2	8	33.3	1	4.2	2	8.3	-	-	24	100
	문경시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	-	29	100
	경산시	7	13.5	20	38.5	9	17.3	1	1.9	-	-	15	28.8	52	100
	의성군	1	6.7	7	46.7	4	26.7	-	-	1	6.7	2	13.3	15	100
	청송군	-	-	3	60.0	1	20.0	1	20.0	-	-	-	-	5	100
	영양군	1	33.3	2	66.7	-	-	-	-	-	-	-	-	3	100
	영덕군	2	20.0	5	50.0	3	30.0	-	-	-	-	-	-	10	100
	청도군	4	44.4	1	11.1	3	33.3	-	-	-	-	1	11.1	9	100
	고령군	-	-	5	100	-	-	-	-	-	-	-	-	5	100
	성주군	3	25.0	4	33.3	2	16.7	-	-	-	-	3	25.0	12	100
	칠곡군	1	5.0	2	10.0	2	10.0	1	5.0	-	-	14	70.0	20	100
	예천군	2	11.1	10	55.6	5	27.8	-	-	-	-	1	5.6	18	100
	봉화군	1	12.5	1	12.5	6	75.0	-	-	-	-	-	-	8	100
	울진군	2	40.0	1	20.0	2	40.0	-	-	-	-	-	-	5	100
	울릉군	-	-	-	-	-	-	-	-	-	-	-	-	-	-
	소계	132	21.1	236	37.7	130	20.8	17	2.7	9	1.4	102	16.3	626	100
경남	창원시	21	15.7	59	44.0	40	29.9	4	3.0	7	5.2	3	2.2	134	100
	진주시	11	18.6	11	18.6	9	15.3	4	6.8	-	-	24	40.7	59	100
	통영시	3	9.4	13	40.6	15	46.9	-	-	-	-	1	3.1	32	100
	사천시	-	-	11	45.8	12	50.0	-	-	1	4.2	-	-	24	100
	김해시	8	12.7	23	36.5	21	33.3	6	9.5	4	6.3	1	1.6	63	100
	밀양시	1	25.0	-	-	1	25.0	-	-	-	-	2	50.0	4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거제시	4	23.5	7	41.2	5	29.4	1	5.9	-	-	-	-	17	100
	양산시	11	13.8	40	50.0	26	32.5	-	-	-	-	3	3.8	80	100
	의령군	-	-	-	-	-	-	-	-	-	-	-	-	-	-
	함안군	-	-	-	-	1	33.3	1	33.3	-	-	1	33.3	3	100
	창녕군	2	40.0	2	40.0	-	-	1	20.0	-	-	-	-	5	100
	고성군	1	20.0	1	20.0	2	40.0	-	-	-	-	1	20.0	5	100
	남해군	1	10.0	2	20.0	2	20.0	-	-	-	-	5	50.0	10	100
	하동군	-	-	6	75.0	2	25.0	-	-	-	-	-	-	8	100
	산청군	1	2.9	3	8.6	1	2.9	-	-	-	-	30	85.7	35	100
	함양군	1	4.8	1	4.8	3	14.3	-	-	-	-	16	76.2	21	100
	거창군	-	-	2	40.0	3	60.0	-	-	-	-	-	-	5	100
	합천군	-	-	1	33.3	2	66.7	-	-	-	-	-	-	3	100
	소계	65	12.8	182	35.8	145	28.5	17	3.3	12	2.4	87	17.1	508	100
제주	제주시	18	22.5	20	25.0	21	26.3	4	5.0	5	6.3	12	15.0	80	100
	서귀포시	17	32.7	16	30.8	16	30.8	-	-	3	5.8	-	-	52	100
	소계	35	26.5	36	27.3	37	28.0	4	3.0	8	6.1	12	9.1	132	100
계		1,057	14.7	2,886	40.3	2,057	28.7	206	2.9	196	2.7	765	10.7	7,167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표 7-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타	계
4,799	489	568	414	100	569	100	50	6	72	7,167
67.0	6.8	7.9	5.8	1.4	7.9	1.4	0.7	0.1	1.0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7-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67	1,143
	15.9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표 7-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1,404	2,421	1,259	1,733	350	7,167
19.6	33.8	17.6	24.2	4.9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표 7-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5,912	82.5
단순 노무 종사자	485	6.8
자영업자	225	3.1
서비스·판매 종사자	214	3.0
농·어·축산업 종사자	177	2.5
전문직	62	0.9
기술공 및 준전문가	28	0.4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6	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5	0.2
사무 종사자	14	0.2
종교인	13	0.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	0.1
계	7,167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표 7-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1,464	25.6
기타	1,178	20.6
당뇨병	885	15.5
관절염	724	12.6
디스크	221	3.9
골다공증	196	3.4
중풍, 뇌혈관 질환	150	2.6
신경통	150	2.6
협심증, 심근경색증	122	2.1
악성신생물(암)	105	1.8
골절, 후유증	100	1.7
요통, 좌골통	90	1.6
갑상선 질환	69	1.2
천식	51	0.9
만성신장질환	49	0.9
저혈압	29	0.5
백내장	26	0.5
피부병	26	0.5
빈혈	24	0.4
녹내장	17	0.3
소화성궤양	13	0.2
만성간염, 간경변	13	0.2
만성기관지염	12	0.2
폐결핵, 결핵	10	0.2
만성중이염	3	0.1
계	5,727	100

*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통계 수치(5,727건)에는 차이가 있음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표 7-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건,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67	11.2
2개 이상	529	88.8
계	596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596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7-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46	24.5
	청각장애	86	14.4
	시각장애	40	6.7
	뇌병변장애	32	5.4
	신장장애	15	2.5
	언어장애	7	1.2
	장루요루장애	4	0.7
	간질장애	4	0.7
	호흡기장애	3	0.5
	간장애	2	0.3
	안면장애	1	0.2
	심장장애	-	-
	소계	340	57.0
정신 장애	우울장애	184	30.9
	정신분열	35	5.9
	지적장애	24	4.0
	정동장애	13	2.2
	반사회적 인격장애	-	-
	자폐성장애	-	-
	소계	256	43.0
계		596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167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596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표 7-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전체 학대사례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7,167	1,159	562	1,721
	16.2	7.8	24.0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유형

표 7-19 학대피해노인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사례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도박중독	계
7,167	78	4	2	84
	1.1	0.1	0.0	1.2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표 7-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1,231	572	5,364	7,167
		17.2	8.0	74.8	100
	세수하기	1,220	564	5,383	7,167
		17.0	7.9	75.1	100
	양치질하기	1,221	557	5,389	7,167
		17.0	7.8	75.2	100
	목욕하기	1,236	646	5,285	7,167
		17.2	9.0	73.7	100
	식사하기	1,243	534	5,390	7,167
		17.3	7.5	75.2	100
	체위 변경하기	1,195	551	5,421	7,167
		16.7	7.7	75.6	100
	일어나 앉기	1,224	556	5,387	7,167
		17.1	7.8	75.2	100
	움거 타기	1,228	587	5,352	7,167
		17.1	8.2	74.7	100
	방밖으로 나오기	1,202	581	5,384	7,167
		16.8	8.1	75.1	100
	화장실 사용하기	1,187	585	5,395	7,167
		16.6	8.2	75.3	100
	대변 조절하기	1,175	579	5,413	7,167
		16.4	8.1	75.5	100
	소변 조절하기	1,177	574	5,416	7,167
		16.4	8.0	75.6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224	609	5,334	7,167
		17.1	8.5	74.4	100
	집안일하기	1,307	701	5,159	7,167
		18.2	9.8	72.0	100
	식사 준비하기	1,292	713	5,162	7,167
		18.0	9.9	72.0	100
	빨래하기	1,271	717	5,179	7,167
		17.7	10.0	72.3	100
	근거리 외출하기	1,349	709	5,109	7,167
		18.8	9.9	71.3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1,346	734	5,087	7,167
		18.8	10.2	71.0	100
	물건 사러가기	1,310	716	5,141	7,167
		18.3	10.0	71.7	100
	금전 관리하기	1,286	697	5,184	7,167
		17.9	9.7	72.3	100
	전화 사용하기	1,242	640	5,285	7,167
		17.3	8.9	73.7	100
	약 챙겨 먹기	1,269	644	5,254	7,167
		17.7	9.0	73.3	100

02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표 7-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54	106	285	833	939	944	2,362	5,523
	1.0	1.9	5.2	15.1	17.0	17.1	42.8	100
여성	24	52	126	365	620	799	372	2,358
	1.0	2.2	5.3	15.5	26.3	33.9	15.8	100
계	78	158	411	1,198	1,559	1,743	2,734	7,881
	1.0	2.0	5.2	15.2	19.8	22.1	34.7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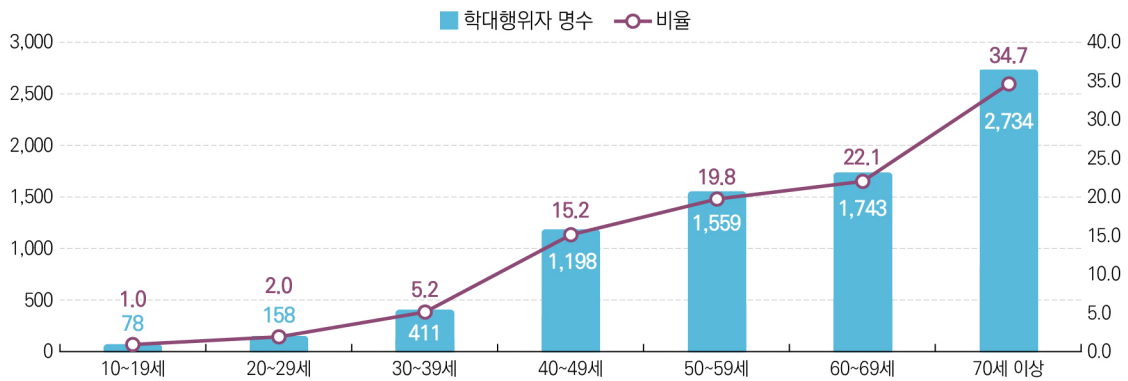


그림 7-4 학대행위자 연령대 분포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표 7-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65	69.6	72	30.4	237	100
	서울북부	131	85.1	23	14.9	154	100
	서울서부	208	79.7	53	20.3	261	100
	서울동부	109	79.0	29	21.0	138	100
	소계	613	77.6	177	22.4	790	100
부산	부산중부	204	83.3	41	16.7	245	100
	부산동부	118	72.0	46	28.0	164	100
	부산서부	198	80.8	47	19.2	245	100
	소계	520	79.5	134	20.5	654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대구	대구남부	156	83.4	31	16.6	187	100
	대구북부	168	82.4	36	17.6	204	100
	소계	324	82.9	67	17.1	391	100
인천	인천	133	69.6	58	30.4	191	100
	인천서부	253	72.9	94	27.1	347	100
	소계	386	71.7	152	28.3	538	100
	광주	170	82.5	36	17.5	206	100
	대전	56	60.9	36	39.1	92	100
	울산	135	77.6	39	22.4	174	100
경기	경기동부	235	59.0	163	41.0	398	100
	경기북부	383	71.7	151	28.3	534	100
	경기서부	197	77.6	57	22.4	254	100
	경기남부	170	73.9	60	26.1	230	100
	경기북서부	250	79.1	66	20.9	316	100
	소계	1,235	71.3	497	28.7	1,732	100
강원	강원	80	54.1	68	45.9	148	100
	강원동부	130	74.7	44	25.3	174	100
	강원남부	63	69.2	28	30.8	91	100
	소계	273	66.1	140	33.9	413	100
충북	충북	133	31.8	285	68.2	418	100
	충북북부	54	72.0	21	28.0	75	100
	소계	187	37.9	306	62.1	493	100
충남	충남	153	74.6	52	25.4	205	100
	충남남부	73	60.8	47	39.2	120	100
	소계	226	69.5	99	30.5	325	100
전북	전북	101	57.7	74	42.3	175	100
	전북서부	115	72.3	44	27.7	159	100
	소계	216	64.7	118	35.3	334	100
전남	전남동부	125	81.2	29	18.8	154	100
	전남서부	147	67.4	71	32.6	218	100
	소계	272	73.1	100	26.9	372	100
경북	경북동부	127	62.0	78	38.0	205	100
	경북북부	125	75.3	41	24.7	166	100
	경북서부	126	72.4	48	27.6	174	100
	경북남부	68	52.3	62	47.7	130	100
	소계	446	66.1	229	33.9	675	100
경남	경남	276	80.2	68	19.8	344	100
	경남서부	87	40.7	127	59.3	214	100
	소계	363	65.1	195	34.9	558	100
제주	제주시	58	70.7	24	29.3	82	100
	서귀포시	43	82.7	9	17.3	52	100
	소계	101	75.4	33	24.6	134	100
계		5,523	70.1	2,358	29.9	7,881	10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7-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인	
131	3,053	2,082	81	575	42	183	65	125	108	95	7	64	1,243	27	7,881
1.7	38.7	26.4	1.0	7.3	0.5	2.3	0.8	1.6	1.4	1.2	0.1	0.8	15.8	0.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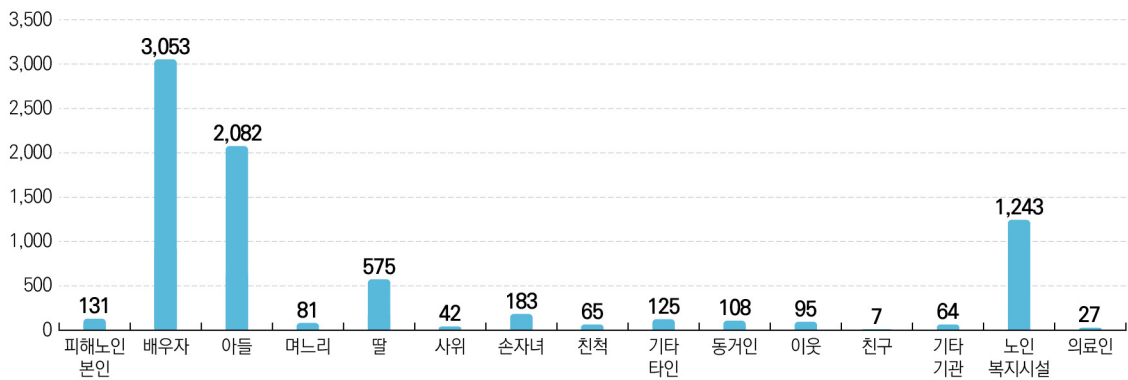


그림 7-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7-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서울	종로구	-	-	9	50.0	6	33.3	-	-	3	16.7	-	-	-	-	-	-	-	-	-	-	18	100
	중구	-	-	5	41.7	4	33.3	-	-	1	8.3	-	-	-	-	1	8.3	1	8.3	-	-	12	100
	용산구	-	-	3	50.0	2	33.3	-	-	-	-	-	-	1	16.7	-	-	-	-	-	-	6	100
	성동구	-	-	9	47.4	6	31.6	-	-	4	21.1	-	-	-	-	-	-	-	-	-	-	19	100
	광진구	-	-	12	57.1	4	19.0	1	4.8	1	4.8	-	-	-	-	-	-	-	-	3	14.3	21	100
	동대문구	-	-	21	75.0	3	10.7	-	-	4	14.3	-	-	-	-	-	-	-	-	-	-	28	100
	중랑구	-	-	18	54.5	11	33.3	-	-	3	9.1	-	-	-	-	-	-	1	3.0	-	-	33	100
	성북구	-	-	15	55.6	10	37.0	-	-	1	3.7	1	3.7	-	-	-	-	-	-	-	-	27	100
	강북구	-	-	16	57.1	8	28.6	-	-	2	7.1	-	-	1	3.6	-	-	-	-	1	3.6	28	100
	도봉구	-	-	8	28.6	14	50.0	-	-	4	14.3	-	-	1	3.6	-	-	1	3.6	-	-	28	100
	노원구	-	-	21	48.8	12	27.9	-	-	6	14.0	2	4.7	1	2.3	-	-	-	-	1	2.3	43	100
	은평구	-	-	27	50.0	19	35.2	-	-	6	11.1	-	-	-	-	-	-	-	-	2	3.7	54	100
	서대문구	-	-	9	47.4	7	36.8	-	-	3	15.8	-	-	-	-	-	-	-	-	-	-	19	100
	마포구	2	5.4	14	37.8	13	35.1	-	-	4	10.8	-	-	3	8.1	-	-	1	2.7	-	-	37	100
	양천구	-	-	26	52.0	18	36.0	-	-	4	8.0	1	2.0	-	-	-	-	-	-	1	2.0	50	100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강서구	2	2.8	27	38.0	23	32.4	-	-	10	14.1	-	-	2	2.8	-	-	3	4.2	4	5.6	71	100
	구로구	-	-	8	30.8	12	46.2	-	-	1	3.8	-	-	2	7.7	-	-	-	-	3	11.5	26	100
	금천구	-	-	13	31.0	11	26.2	-	-	4	9.5	1	2.4	1	2.4	-	-	-	-	12	28.6	42	100
	영등포구	-	-	16	61.5	3	11.5	1	3.8	2	7.7	-	-	-	-	-	-	-	-	4	15.4	26	100
	동작구	-	-	12	38.7	15	48.4	-	-	3	9.7	-	-	-	-	-	-	1	3.2	-	-	31	100
	관악구	-	-	31	39.2	16	20.3	2	2.5	11	13.9	-	-	4	5.1	2	2.5	-	-	13	16.5	79	100
	서초구	-	-	3	33.3	5	55.6	-	-	1	11.1	-	-	-	-	-	-	-	-	-	-	9	100
	강남구	1	4.2	9	37.5	7	29.2	2	8.3	-	-	-	-	1	4.2	-	-	-	-	4	16.7	24	100
	송파구	-	-	15	57.7	6	23.1	-	-	4	15.4	-	-	-	-	1	3.8	-	-	-	-	26	100
	강동구	-	-	19	57.6	9	27.3	-	-	3	9.1	-	-	2	6.1	-	-	-	-	-	-	33	100
	소계	5	0.6	366	46.3	244	30.9	6	0.8	85	10.8	5	0.6	19	2.4	4	0.5	8	1.0	48	6.1	790	100
부산	중구	-	-	2	22.2	5	55.6	-	-	-	-	-	-	-	-	-	-	-	-	2	22.2	9	100
	서구	-	-	17	65.4	5	19.2	-	-	3	11.5	-	-	1	3.8	-	-	-	-	-	-	26	100
	동구	-	-	20	54.1	11	29.7	-	-	4	10.8	-	-	-	-	-	-	2	5.4	-	-	37	100
	영도구	-	-	23	40.4	23	40.4	-	-	8	14.0	-	-	2	3.5	-	-	1	1.8	-	-	57	100
	부산진구	1	0.8	56	47.5	36	30.5	1	0.8	7	5.9	1	0.8	2	1.7	-	-	6	5.1	8	6.8	118	100
	동래구	-	-	11	44.0	5	20.0	-	-	8	32.0	-	-	1	4.0	-	-	-	-	-	-	25	100
	남구	-	-	29	69.0	9	21.4	1	2.4	1	2.4	-	-	1	2.4	-	-	1	2.4	-	-	42	100
	북구	-	-	18	56.3	10	31.3	-	-	1	3.1	-	-	1	3.1	-	-	2	6.3	-	-	32	100
	해운대구	-	-	28	51.9	12	22.2	1	1.9	10	18.5	1	1.9	-	-	-	-	2	3.7	-	-	54	100
	사하구	2	2.3	36	41.9	37	43.0	1	1.2	3	3.5	-	-	5	5.8	-	-	1	1.2	1	1.2	86	100
	금정구	1	3.3	9	30.0	14	46.7	1	3.3	2	6.7	-	-	1	3.3	-	-	1	3.3	1	3.3	30	100
	강서구	-	-	6	21.4	13	46.4	1	3.6	4	14.3	1	3.6	-	-	-	-	-	-	3	10.7	28	100
	연제구	1	5.9	6	35.3	8	47.1	-	-	-	-	-	-	-	-	-	-	2	11.8	-	-	17	100
	수영구	2	13.3	7	46.7	5	33.3	-	-	1	6.7	-	-	-	-	-	-	-	-	-	-	15	100
	사상구	-	-	32	46.4	26	37.7	-	-	6	8.7	-	-	1	1.4	-	-	1	1.4	3	4.3	69	100
	기장군	-	-	1	11.1	5	55.6	-	-	1	11.1	-	-	-	-	1	11.1	1	11.1	-	-	9	100
	소계	7	1.1	301	46.0	224	34.3	6	0.9	59	9.0	3	0.5	15	2.3	1	0.2	20	3.1	18	2.8	654	100
대구	중구	2	40.0	-	-	3	60.0	-	-	-	-	-	-	-	-	-	-	-	-	-	-	5	100
	동구	6	5.7	43	41.0	35	33.3	1	1.0	9	8.6	1	1.0	5	4.8	-	-	3	2.9	2	1.9	105	100
	서구	1	1.9	25	48.1	15	28.8	1	1.9	4	7.7	-	-	2	3.8	1	1.9	3	5.8	-	-	52	100
	남구	-	-	21	48.8	12	27.9	-	-	3	7.0	-	-	4	9.3	1	2.3	2	4.7	-	-	43	100
	북구	2	6.1	13	39.4	10	30.3	-	-	1	3.0	-	-	3	9.1	-	-	3	9.1	1	3.0	33	100
	수성구	-	-	8	34.8	8	34.8	1	4.3	3	13.0	-	-	1	4.3	-	-	-	-	2	8.7	23	100
	달서구	-	-	43	56.6	21	27.6	-	-	7	9.2	-	-	2	2.6	-	-	3	3.9	-	-	76	100
	달성군	-	-	25	55.6	12	26.7	1	2.2	3	6.7	-	-	1	2.2	-	-	-	-	3	6.7	45	100
	군위군	-	-	2	22.2	3	33.3	-	-	2	22.2	-	-	-	-	-	-	2	22.2	-	-	9	100
	소계	11	2.8	180	46.0	119	30.4	4	1.0	32	8.2	1	0.3	18	4.6	2	0.5	16	4.1	8	2.0	391	100
인천	중구	-	-	17	48.6	7	20.0	1	2.9	5	14.3	-	-	-	-	-	-	3	8.6	2	5.7	35	100
	동구	1	7.1	6	42.9	5	35.7	-	-	1	7.1	1	7.1	-	-	-	-	-	-	-	-	14	100
	미추홀구	1	2.3	9	20.5	7	15.9	-	-	7	15.9	-	-	3	6.8	1	2.3	6	13.6	10	22.7	44	100
	연수구	-	-	11	40.7	11	40.7	-	-	-	-	-	-	-	-	-	-	3	11.1	2	7.4	27	100
	남동구	2	3.0	19	28.4	17	25.4	1	1.5	10	14.9	-	-	1	1.5	-	-	5	7.5	12	17.9	67	100
	부평구	2	1.9	57	54.3	20	19.0	2	1.9	8	7.6	-	-	6	5.7	-	-	2	1.9	8	7.6	105	100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계양구	1	1.9	30	57.7	9	17.3	2	3.8	3	5.8	-	-	-	-	-	-	2	3.8	5	9.6	52	100
	서구	-	-	67	41.6	42	26.1	1	0.6	9	5.6	-	-	6	3.7	2	1.2	11	6.8	23	14.3	161	100
	강화군	1	3.4	7	24.1	8	27.6	-	-	3	10.3	1	3.4	-	-	1	3.4	-	-	8	27.6	29	100
	옹진군	-	-	1	25.0	-	-	-	-	-	-	1	25.0	1	25.0	-	-	-	-	1	25.0	4	100
	소계	8	1.5	224	41.6	126	23.4	7	1.3	46	8.6	3	0.6	17	3.2	4	0.7	32	5.9	71	13.2	538	100
광주	동구	-	-	19	63.3	6	20.0	-	-	3	10.0	-	-	-	-	-	-	1	3.3	1	3.3	30	100
	서구	1	2.4	26	61.9	9	21.4	1	2.4	2	4.8	-	-	1	2.4	-	-	2	4.8	-	-	42	100
	남구	2	4.3	28	59.6	9	19.1	-	-	3	6.4	2	4.3	-	-	-	-	3	6.4	-	-	47	100
	북구	1	1.7	29	48.3	13	21.7	1	1.7	8	13.3	-	-	4	6.7	-	-	3	5.0	1	1.7	60	100
	광산구	-	-	11	40.7	6	22.2	1	3.7	1	3.7	1	3.7	-	-	-	-	5	18.5	2	7.4	27	100
	소계	4	1.9	113	54.9	43	20.9	3	1.5	17	8.3	3	1.5	5	2.4	-	-	14	6.8	4	1.9	206	100
대전	동구	-	-	5	27.8	8	44.4	-	-	1	5.6	-	-	2	11.1	-	-	1	5.6	1	5.6	18	100
	중구	-	-	5	38.5	5	38.5	-	-	1	7.7	-	-	-	-	-	-	-	-	2	15.4	13	100
	서구	-	-	10	55.6	4	22.2	-	-	1	5.6	-	-	-	-	-	-	1	5.6	2	11.1	18	100
	유성구	1	3.0	3	9.1	3	9.1	-	-	1	3.0	-	-	1	3.0	-	-	-	-	24	72.7	33	100
	대덕구	1	12.5	1	12.5	3	37.5	-	-	-	-	-	-	-	-	1	12.5	2	25.0	-	-	8	100
	기타*	-	-	2	100	-	-	-	-	-	-	-	-	-	-	-	-	-	-	-	-	2	100
	소계	2	2.2	26	28.3	23	25.0	-	-	4	4.3	-	-	3	3.3	1	1.1	4	4.3	29	31.5	92	100
울산	중구	-	-	28	52.8	17	32.1	1	1.9	5	9.4	-	-	-	-	-	-	-	-	2	3.8	53	100
	남구	-	-	25	50.0	8	16.0	1	2.0	6	12.0	-	-	4	8.0	-	-	5	10.0	1	2.0	50	100
	동구	-	-	20	76.9	3	11.5	-	-	1	3.8	-	-	-	-	-	-	-	-	2	7.7	26	100
	북구	-	-	13	48.1	6	22.2	-	-	3	11.1	-	-	2	7.4	-	-	2	7.4	1	3.7	27	100
	울주군	-	-	10	55.6	7	38.9	-	-	-	-	-	-	-	-	-	-	-	-	1	5.6	18	100
	소계	-	-	96	55.2	41	23.6	2	1.1	15	8.6	-	-	6	3.4	-	-	7	4.0	7	4.0	174	100
경기	수원시	-	-	36	45.0	29	36.3	-	-	7	8.8	-	-	2	2.5	1	1.3	2	2.5	3	3.8	80	100
	성남시	2	1.5	61	46.6	36	27.5	3	2.3	12	9.2	1	0.8	2	1.5	2	1.5	7	5.3	5	3.8	131	100
	의정부시	5	6.1	29	35.4	30	36.6	1	1.2	4	4.9	1	1.2	2	2.4	-	-	2	2.4	8	9.8	82	100
	안양시	2	4.1	23	46.9	12	24.5	-	-	5	10.2	-	-	1	2.0	-	-	2	4.1	4	8.2	49	100
	부천시	1	1.0	50	50.0	29	29.0	1	1.0	14	14.0	-	-	2	2.0	1	1.0	-	-	2	2.0	100	100
	광명시	1	2.8	19	52.8	14	38.9	-	-	1	2.8	-	-	1	2.8	-	-	-	-	-	-	36	100
	평택시	-	-	9	30.0	9	30.0	-	-	4	13.3	-	-	-	-	-	-	1	3.3	7	23.3	30	100
	동두천시	-	-	17	50.0	13	38.2	-	-	2	5.9	-	-	-	-	-	-	-	-	2	5.9	34	100
	안산시	-	-	22	47.8	14	30.4	-	-	4	8.7	-	-	2	4.3	1	2.2	2	4.3	1	2.2	46	100
	고양시	1	0.6	72	45.3	49	30.8	1	0.6	17	10.7	-	-	4	2.5	1	0.6	4	2.5	10	6.3	159	100
	과천시	-	-	1	50.0	1	50.0	-	-	-	-	-	-	-	-	-	-	-	-	-	-	2	100
	구리시	-	-	44	62.9	16	22.9	1	1.4	7	10.0	1	1.4	-	-	1	1.4	-	-	-	-	70	100
	남양주시	-	-	89	43.2	54	26.2	-	-	28	13.6	1	0.5	7	3.4	-	-	6	2.9	21	10.2	206	100
	오산시	1	5.0	5	25.0	10	50.0	1	5.0	3	15.0	-	-	-	-	-	-	-	-	-	-	20	100
	시흥시	1	3.1	15	46.9	9	28.1	-	-	1	3.1	-	-	-	-	1	3.1	1	3.1	4	12.5	32	100
	군포시	-	-	15	57.7	5	19.2	-	-	4	15.4	1	3.8	1	3.8	-	-	-	-	-	-	26	100
	의왕시	-	-	5	55.6	4	44.4	-	-	-	-	-	-	-	-	-	-	-	-	-	-	9	100
	하남시	-	-	22	62.9	8	22.9	1	2.9	1	2.9	-	-	-	-	-	-	-	-	3	8.6	35	100
	용인시	1	0.5	34	17.3	32	16.2	1	0.5	4	2.0	-	-	1	0.5	3	1.5	2	1.0	119	60.4	197	100
	파주시	-	-	36	49.3	21	28.8	-	-	4	5.5	-	-	2	2.7	-	-	1	1.4	9	12.3	73	100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이천시	-	-	5	38.5	3	23.1	-	-	2	15.4	-	-	1	7.7	-	-	-	-	2	15.4	13	100
	안성시	-	-	11	52.4	3	14.3	-	-	5	23.8	-	-	1	4.8	-	-	-	-	1	4.8	21	100
	김포시	-	-	23	50.0	14	30.4	-	-	-	-	1	2.2	-	-	-	-	1	2.2	7	15.2	46	100
	화성시	1	3.0	16	48.5	5	15.2	-	-	2	6.1	-	-	1	3.0	-	-	1	3.0	7	21.2	33	100
	광주시	1	3.0	11	33.3	7	21.2	1	3.0	2	6.1	-	-	3	9.1	-	-	1	3.0	7	21.2	33	100
	양주시	-	-	30	39.0	21	27.3	1	1.3	5	6.5	3	3.9	4	5.2	-	-	-	-	13	16.9	77	100
	포천시	2	4.3	20	42.6	11	23.4	1	2.1	7	14.9	-	-	-	-	1	2.1	1	2.1	4	8.5	47	100
	여주시	1	20.0	-	-	3	60.0	-	-	-	-	-	-	-	-	-	-	1	20.0	-	-	5	100
	연천군	-	-	3	75.0	1	25.0	-	-	-	-	-	-	-	-	-	-	-	-	-	-	4	100
	가평군	-	-	9	52.9	7	41.2	-	-	1	5.9	-	-	-	-	-	-	-	-	-	-	17	100
	양평군	-	-	11	57.9	3	15.8	-	-	2	10.5	-	-	-	-	-	-	-	-	3	15.8	19	100
	소계	20	1.2	743	42.9	473	27.3	13	0.8	148	8.5	9	0.5	37	2.1	12	0.7	35	2.0	242	14.0	1,732	100
강원	춘천시	8	7.0	19	16.5	17	14.8	1	0.9	6	5.2	-	-	-	-	-	-	6	5.2	58	50.4	115	100
	원주시	-	-	6	10.0	28	46.7	1	1.7	9	15.0	1	1.7	2	3.3	-	-	1	1.7	12	20.0	60	100
	강릉시	6	5.2	16	13.9	15	13.0	-	-	2	1.7	1	0.9	1	0.9	-	-	1	0.9	73	63.5	115	100
	동해시	-	-	9	39.1	6	26.1	-	-	3	13.0	-	-	1	4.3	1	4.3	2	8.7	1	4.3	23	100
	태백시	-	-	2	50.0	2	50.0	-	-	-	-	-	-	-	-	-	-	-	-	-	-	4	100
	속초시	-	-	10	52.6	6	31.6	-	-	2	10.5	1	5.3	-	-	-	-	-	-	-	-	19	100
	삼척시	-	-	-	-	3	75.0	-	-	1	25.0	-	-	-	-	-	-	-	-	-	-	4	100
	홍천군	-	-	2	25.0	3	37.5	-	-	-	-	-	-	-	-	-	-	1	12.5	2	25.0	8	100
	횡성군	-	-	-	-	-	-	-	-	-	-	-	-	-	-	-	-	-	-	-	-	-	-
	영월군	-	-	-	-	1	50.0	-	-	-	-	1	50.0	-	-	-	-	-	-	-	-	2	100
	평창군	-	-	1	7.1	11	78.6	-	-	-	-	-	-	-	-	-	-	-	-	2	14.3	14	100
	정선군	-	-	4	36.4	5	45.5	-	-	-	-	-	-	-	-	1	9.1	1	9.1	-	-	11	100
	철원군	-	-	-	-	3	50.0	1	16.7	-	-	-	-	1	16.7	-	-	1	16.7	-	-	6	100
	화천군	-	-	1	25.0	1	25.0	-	-	-	-	-	-	-	-	-	-	2	50.0	-	-	4	100
	양구군	-	-	1	50.0	-	-	-	-	-	-	-	-	-	-	-	-	1	50.0	-	-	2	100
	인제군	1	7.7	8	61.5	2	15.4	-	-	2	15.4	-	-	-	-	-	-	-	-	-	-	13	100
	고성군	-	-	2	33.3	4	66.7	-	-	-	-	-	-	-	-	-	-	-	-	-	-	6	100
	양양군	-	-	-	-	6	85.7	-	-	-	-	-	-	1	14.3	-	-	-	-	-	-	7	100
	소계	15	3.6	81	19.6	113	27.4	3	0.7	25	6.1	4	1.0	6	1.5	2	0.5	16	3.9	148	35.8	413	100
충북	청주시	2	0.8	51	20.1	36	14.2	2	0.8	4	1.6	2	0.8	4	1.6	1	0.4	4	1.6	148	58.3	254	100
	충주시	2	4.8	17	40.5	11	26.2	-	-	2	4.8	-	-	-	-	-	-	-	-	10	23.8	42	100
	제천시	-	-	1	7.7	5	38.5	-	-	-	-	-	-	1	7.7	-	-	1	7.7	5	38.5	13	100
	보은군	-	-	7	87.5	1	12.5	-	-	-	-	-	-	-	-	-	-	-	-	-	-	8	100
	옥천군	-	-	1	20.0	1	20.0	-	-	2	40.0	-	-	-	-	-	-	1	20.0	-	-	5	100
	영동군	-	-	1	20.0	2	40.0	1	20.0	-	-	-	-	-	-	-	-	-	-	1	20.0	5	100
	진천군	-	-	-	-	2	1.4	-	-	1	0.7	-	-	2	1.4	1	0.7	2	1.4	133	94.3	141	100
	괴산군	-	-	1	50.0	-	-	-	-	1	50.0	-	-	-	-	-	-	-	-	-	-	2	100
	음성군	2	13.3	3	20.0	7	46.7	-	-	1	6.7	-	-	-	-	-	-	2	13.3	-	-	15	100
	단양군	1	33.3	1	33.3	1	33.3	-	-	-	-	-	-	-	-	-	-	-	-	-	-	3	100
	증평군	-	-	3	60.0	1	20.0	-	-	1	20.0	-	-	-	-	-	-	-	-	-	-	5	100
	소계	7	1.4	86	17.4	67	13.6	3	0.6	12	2.4	2	0.4	7	1.4	2	0.4	10	2.0	297	60.2	493	100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충남	천안시	2	5.0	9	22.5	14	35.0	-	-	5	12.5	-	-	1	2.5	1	2.5	6	15.0	2	5.0	40	100
	공주시	1	3.3	7	23.3	6	20.0	1	3.3	4	13.3	-	-	1	3.3	-	-	4	13.3	6	20.0	30	100
	보령시	1	4.3	11	47.8	5	21.7	1	4.3	1	4.3	1	4.3	1	4.3	-	-	-	-	2	8.7	23	100
	아산시	6	12.0	13	26.0	14	28.0	-	-	3	6.0	-	-	-	-	2	4.0	7	14.0	5	10.0	50	100
	서산시	-	-	9	25.0	7	19.4	-	-	1	2.8	-	-	-	-	-	-	19	52.8	-	-	36	100
	논산시	1	4.5	5	22.7	8	36.4	1	4.5	-	-	-	-	3	13.6	-	-	-	-	4	18.2	22	100
	계룡시	-	-	1	8.3	-	-	-	-	-	-	-	-	-	-	-	-	-	-	11	91.7	12	100
	당진시	1	4.0	8	32.0	10	40.0	1	4.0	1	4.0	-	-	-	-	1	4.0	1	4.0	2	8.0	25	100
	금산군	-	-	-	-	1	50.0	-	-	-	-	-	-	-	-	-	-	1	50.0	-	-	2	100
	부여군	-	-	8	42.1	6	31.6	2	10.5	1	5.3	-	-	1	5.3	-	-	-	-	1	5.3	19	100
	서천군	-	-	3	33.3	4	44.4	1	11.1	-	-	1	11.1	-	-	-	-	-	-	-	-	9	100
	청양군	-	-	2	66.7	1	33.3	-	-	-	-	-	-	-	-	-	-	-	-	-	-	3	100
	홍성군	-	-	3	60.0	2	40.0	-	-	-	-	-	-	-	-	-	-	-	-	-	-	5	100
	예산군	1	14.3	2	28.6	1	14.3	-	-	-	-	-	-	-	-	-	-	-	-	3	42.9	7	100
	태안군	-	-	2	40.0	1	20.0	-	-	-	-	-	-	-	-	-	-	1	20.0	1	20.0	5	100
	소계	13	4.5	83	28.8	80	27.8	7	2.4	16	5.6	2	0.7	7	2.4	4	1.4	39	13.5	37	12.8	288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14	37.8	10	27.0	1	2.7	4	10.8	-	-	1	2.7	2	5.4	4	10.8	1	2.7	37	100
	소계	-	-	14	37.8	10	27.0	1	2.7	4	10.8	-	-	1	2.7	2	5.4	4	10.8	1	2.7	37	100
전북	전주시	-	-	46	39.3	15	12.8	-	-	5	4.3	-	-	1	0.9	-	-	5	4.3	45	38.5	117	100
	군산시	1	2.3	28	63.6	9	20.5	-	-	2	4.5	-	-	2	4.5	-	-	2	4.5	-	-	44	100
	익산시	-	-	32	52.5	3	4.9	-	-	-	-	-	-	1	1.6	-	-	7	11.5	18	29.5	61	100
	정읍시	-	-	5	31.3	7	43.8	-	-	2	12.5	-	-	-	-	-	-	1	6.3	1	6.3	16	100
	남원시	-	-	8	57.1	6	42.9	-	-	-	-	-	-	-	-	-	-	-	-	-	-	14	100
	김제시	-	-	12	66.7	1	5.6	-	-	1	5.6	-	-	-	-	1	5.6	2	11.1	1	5.6	18	100
	완주군	-	-	5	21.7	5	21.7	1	4.3	2	8.7	-	-	-	-	-	-	-	-	10	43.5	23	100
	진안군	-	-	4	66.7	1	16.7	-	-	-	-	-	-	-	-	-	-	1	16.7	-	-	6	100
	무주군	-	-	-	-	-	-	-	-	-	-	-	-	-	-	-	-	-	-	-	-	-	-
	장수군	-	-	6	75.0	2	25.0	-	-	-	-	-	-	-	-	-	-	-	-	-	-	8	100
	임실군	-	-	1	25.0	2	50.0	-	-	1	25.0	-	-	-	-	-	-	-	-	-	-	4	100
	순창군	-	-	2	66.7	1	33.3	-	-	-	-	-	-	-	-	-	-	-	-	-	-	3	100
	고창군	-	-	7	63.6	2	18.2	-	-	1	9.1	-	-	-	-	-	-	1	9.1	-	-	11	100
	부안군	-	-	3	33.3	1	11.1	1	11.1	2	22.2	-	-	-	-	1	11.1	1	11.1	-	-	9	100
	소계	1	0.3	159	47.6	55	16.5	2	0.6	16	4.8	-	-	4	1.2	2	0.6	20	6.0	75	22.5	334	100
전남	목포시	6	9.5	12	19.0	20	31.7	-	-	8	12.7	-	-	1	1.6	-	-	9	14.3	7	11.1	63	100
	여수시	-	-	14	51.9	7	25.9	-	-	2	7.4	-	-	-	-	-	-	4	14.8	-	-	27	100
	순천시	-	-	20	45.5	16	36.4	-	-	3	6.8	1	2.3	1	2.3	1	2.3	2	4.5	-	-	44	100
	나주시	-	-	7	24.1	10	34.5	1	3.4	2	6.9	-	-	-	-	1	3.4	-	-	8	27.6	29	100
	광양시	1	5.3	9	47.4	8	42.1	-	-	-	-	-	-	-	-	-	-	1	5.3	-	-	19	100
	담양군	-	-	-	-	1	100	-	-	-	-	-	-	-	-	-	-	-	-	-	-	1	100
	곡성군	-	-	1	11.1	4	44.4	-	-	-	-	-	-	1	11.1	2	22.2	1	11.1	-	-	9	100
	구례군	-	-	1	16.7	4	66.7	-	-	-	-	-	-	-	-	-	-	1	16.7	-	-	6	100
	고흥군	-	-	9	40.9	10	45.5	-	-	1	4.5	-	-	-	-	-	-	2	9.1	-	-	22	100
	보성군	-	-	1	20.0	2	40.0	-	-	1	20.0	-	-	-	-	-	-	1	20.0	-	-	5	100
	화순군	-	-	-	-	2	66.7	-	-	-	-	-	-	-	-	1	33.3	-	-	-	-	3	100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장흥군	-	-	-	-	2	100	-	-	-	-	-	-	-	-	-	-	-	-	-	2	100	
	강진군	-	-	3	37.5	2	25.0	-	-	-	-	-	-	-	-	-	-	-	3	37.5	8	100	
	해남군	-	-	15	40.5	10	27.0	-	-	2	5.4	-	-	3	8.1	1	2.7	3	8.1	3	8.1	37	100
	영암군	-	-	1	8.3	2	16.7	-	-	-	-	-	-	-	-	-	-	1	8.3	8	66.7	12	100
	무안군	-	-	10	55.6	4	22.2	-	-	1	5.6	-	-	-	-	-	-	3	16.7	-	-	18	100
	함평군	-	-	1	20.0	2	40.0	-	-	-	-	-	-	-	-	1	20.0	-	-	1	20.0	5	100
	영광군	-	-	1	5.3	5	26.3	-	-	-	-	1	5.3	1	5.3	1	5.3	3	15.8	7	36.8	19	100
	장성군	-	-	5	31.3	2	12.5	2	12.5	2	12.5	1	6.3	3	18.8	-	-	1	6.3	-	-	16	100
	완도군	2	14.3	1	7.1	2	14.3	-	-	1	7.1	-	-	-	-	-	-	3	21.4	5	35.7	14	100
	진도군	-	-	1	9.1	5	45.5	-	-	-	-	-	-	-	-	-	-	5	45.5	-	-	11	100
	신안군	-	-	1	50.0	1	50.0	-	-	-	-	-	-	-	-	-	-	-	-	-	-	2	100
	소계	9	2.4	113	30.4	121	32.5	3	0.8	23	6.2	3	0.8	10	2.7	8	2.2	40	10.8	42	11.3	372	100
경북	포항시	3	3.1	33	34.0	16	16.5	-	-	6	6.2	-	-	3	3.1	7	7.2	2	2.1	27	27.8	97	100
	경주시	1	1.1	16	18.2	13	14.8	-	-	-	-	1	1.1	2	2.3	1	1.1	4	4.5	50	56.8	88	100
	김천시	2	2.5	14	17.5	13	16.3	4	5.0	1	1.3	-	-	2	2.5	-	-	2	2.5	42	52.5	80	100
	안동시	4	4.9	40	49.4	19	23.5	2	2.5	5	6.2	-	-	-	-	1	1.2	8	9.9	2	2.5	81	100
	구미시	-	-	16	38.1	13	31.0	2	4.8	3	7.1	1	2.4	1	2.4	-	-	-	-	6	14.3	42	100
	영주시	-	-	23	56.1	9	22.0	-	-	1	2.4	-	-	-	-	-	-	2	4.9	6	14.6	41	100
	영천시	-	-	8	30.8	3	11.5	-	-	2	7.7	-	-	-	-	-	-	1	3.8	12	46.2	26	100
	상주시	1	3.6	7	25.0	16	57.1	1	3.6	2	7.1	-	-	-	-	1	3.6	-	-	-	-	28	100
	문경시	-	-	14	48.3	7	24.1	1	3.4	1	3.4	1	3.4	2	6.9	-	-	3	10.3	-	-	29	100
	경산시	-	-	26	50.0	8	15.4	-	-	1	1.9	-	-	-	-	-	-	2	3.8	15	28.8	52	100
	의성군	-	-	7	46.7	5	33.3	-	-	2	13.3	-	-	-	-	-	-	-	-	1	6.7	15	100
	청송군	-	-	3	60.0	1	20.0	-	-	-	-	1	20.0	-	-	-	-	-	-	-	-	5	100
	영양군	-	-	3	100	-	-	-	-	-	-	-	-	-	-	-	-	-	-	-	-	3	100
	영덕군	1	10.0	3	30.0	2	20.0	1	10.0	-	-	-	-	-	-	-	-	3	30.0	-	-	10	100
	청도군	-	-	1	11.1	2	22.2	-	-	1	11.1	-	-	-	-	1	11.1	2	22.2	2	22.2	9	100
	고령군	-	-	3	50.0	2	33.3	-	-	-	-	-	-	-	-	-	-	1	16.7	-	-	6	100
	성주군	-	-	7	58.3	-	-	-	-	1	8.3	-	-	-	-	-	-	4	33.3	-	-	12	100
	칠곡군	-	-	3	15.0	2	10.0	-	-	-	-	-	-	1	5.0	-	-	-	-	14	70.0	20	100
	예천군	-	-	8	44.4	8	44.4	-	-	-	-	-	-	-	-	1	5.6	1	5.6	-	-	18	100
	봉화군	1	12.5	1	12.5	6	75.0	-	-	-	-	-	-	-	-	-	-	-	-	-	-	8	100
	울진군	2	40.0	1	20.0	2	40.0	-	-	-	-	-	-	-	-	-	-	-	-	-	-	5	100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15	2.2	237	35.1	147	21.8	11	1.6	26	3.9	4	0.6	11	1.6	12	1.8	35	5.2	177	26.2	675	100
경남	창원시	1	0.7	67	50.0	43	32.1	1	0.7	10	7.5	-	-	4	3.0	-	-	7	5.2	1	0.7	134	100
	진주시	5	5.8	14	16.3	12	14.0	-	-	4	4.7	2	2.3	2	2.3	1	1.2	2	2.3	44	51.2	86	100
	통영시	1	3.1	11	34.4	12	37.5	-	-	7	21.9	-	-	-	-	-	-	1	3.1	-	-	32	100
	사천시	-	-	8	33.3	12	50.0	2	8.3	1	4.2	-	-	-	-	-	-	-	-	1	4.2	24	100
	김해시	-	-	26	41.3	21	33.3	4	6.3	3	4.8	-	-	5	7.9	-	-	2	3.2	2	3.2	63	100
	밀양시	-	-	-	-	1	25.0	-	-	-	-	-	-	-	-	1	25.0	1	25.0	1	25.0	4	100
	거제시	-	-	8	47.1	6	35.3	-	-	-	-	-	-	1	5.9	-	-	2	11.8	-	-	17	100
	양산시	-	-	45	55.6	20	24.7	1	1.2	10	12.3	1	1.2	1	1.2	-	-	2	2.5	1	1.2	81	100
	의령군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시군구	피해노인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함안군	-	-	1 33.3	-	-	-	-	-	-	-	3 100
	창녕군	-	-	2 40.0	2 40.0	-	-	-	-	-	-	5 100
	고성군	-	-	-	2 40.0	-	-	-	-	2 40.0	1 20.0	5 100
	남해군	-	-	1 10.0	3 30.0	-	-	-	-	1 10.0	5 50.0	10 100
	하동군	-	-	4 50.0	3 37.5	-	1 12.5	-	-	-	-	8 100
	산청군	-	-	3 7.7	1 2.6	-	-	-	-	-	35 89.7	39 100
	함양군	-	-	1 2.7	2 5.4	-	-	-	-	-	34 91.9	37 100
	거창군	-	-	1 14.3	1 14.3	-	1 14.3	-	-	3 42.9	1 14.3	7 100
	합천군	1 33.3	1 33.3	1 33.3	-	-	-	-	-	-	-	3 100
	소계	8 1.4	193 34.6	142 25.4	8 1.4	37 6.6	3 0.5	15 2.7	3 0.5	23 4.1	126 22.6	558 100
제주	제주시	5 6.1	22 26.8	27 32.9	2 2.4	5 6.1	-	2 2.4	5 6.1	10 12.2	4 4.9	82 100
	서귀포시	1 1.9	16 30.8	27 51.9	-	5 9.6	-	-	1 1.9	2 3.8	-	52 100
	소계	6 4.5	38 28.4	54 40.3	2 1.5	10 7.5	-	2 1.5	6 4.5	12 9.0	4 3.0	134 100
	계	131 1.7	3,053 38.7	2,082 26.4	81 1.0	575 7.3	42 0.5	183 2.3	65 0.8	335 4.3	1,334 16.9	7,881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표 7-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 분	피해 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10~19세	-	-	5	-	-	-	73	-	-	-	-	-	-	-	-	78
	-	-	0.1	-	-	-	0.9	-	-	-	-	-	-	-	-	1.0
20~29세	-	-	48	4	16	-	72	1	2	-	-	-	4	11	-	158
	-	-	0.6	0.1	0.2	-	0.9	0.0	0.0	-	-	-	0.1	0.1	-	2.0
30~39세	-	1	230	6	72	2	33	6	5	-	2	-	-	51	3	411
	-	0.0	2.9	0.1	0.9	0.0	0.4	0.1	0.1	-	0.0	-	-	0.6	0.0	5.2
40~49세	-	9	793	27	225	13	5	2	11	3	4	-	2	101	3	1,198
	-	0.1	10.1	0.3	2.9	0.2	0.1	0.0	0.1	0.0	0.1	-	0.0	1.3	0.0	15.2
50~59세	-	77	773	31	200	14	-	14	23	17	12	-	18	367	13	1,559
	-	1.0	9.8	0.4	2.5	0.2	-	0.2	0.3	0.2	0.2	-	0.2	4.7	0.2	19.8
60~69세	22	651	217	11	56	8	-	18	42	42	33	2	38	599	4	1,743
	0.3	8.3	2.8	0.1	0.7	0.1	-	0.2	0.5	0.5	0.4	0.0	0.5	7.6	0.1	22.1
70세 이상	109	2,315	16	2	6	5	-	24	42	46	44	5	2	114	4	2,734
	1.4	29.4	0.2	0.0	0.1	0.1	-	0.3	0.5	0.6	0.6	0.1	0.0	1.4	0.1	34.7
계	131	3,053	2,082	81	575	42	183	65	125	108	95	7	64	1,243	27	7,881
	1.7	38.7	26.4	1.0	7.3	0.5	2.3	0.8	1.6	1.4	1.2	0.1	0.8	15.8	0.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표 7-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전체 학대행위자 계
남성	2,652	5,523
	86.9	70.1
여성	401	2,358
	13.1	29.9
계	3,053	7,881
	100	100

표 7-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 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노인 독거	110	148	350	24	161	11	18	32	76	23	69	5	14	100	5	1,146
	9.6	12.9	30.5	2.1	14.0	1.0	1.6	2.8	6.6	2.0	6.0	0.4	1.2	8.7	0.4	100
노인 부부	9	2,519	211	5	55	10	10	6	14	35	15	1	1	11	-	2,902
	0.3	86.8	7.3	0.2	1.9	0.3	0.3	0.2	0.5	1.2	0.5	0.0	0.0	0.4	-	100
손자녀 동거	1	32	45	4	15	4	105	1	-	-	1	-	-	1	-	209
	0.5	15.3	21.5	1.9	7.2	1.9	50.2	0.5	-	-	0.5	-	-	0.5	-	100
자녀·손자녀 동거	1	25	80	22	26	6	36	-	1	1	-	-	-	-	-	198
	0.5	12.6	40.4	11.1	13.1	3.0	18.2	-	0.5	0.5	-	-	-	-	-	100
자녀 동거	7	307	1,362	22	303	8	11	1	13	5	10	1	4	37	1	2,092
	0.3	14.7	65.1	1.1	14.5	0.4	0.5	0.0	0.6	0.2	0.5	0.0	0.2	1.8	0.0	100
기타	3	22	34	4	15	3	3	25	21	44	-	-	45	1,094	21	1,334
	0.2	1.6	2.5	0.3	1.1	0.2	0.2	1.9	1.6	3.3	-	-	3.4	82.0	1.6	100
계	131	3,053	2,082	81	575	42	183	65	125	108	95	7	64	1,243	27	7,881
	1.7	38.7	26.4	1.0	7.3	0.5	2.3	0.8	1.6	1.4	1.2	0.1	0.8	15.8	0.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표 7-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가정 내	78	139	352	1,073	1,150	1,063	2,567	6,422
	1.2	2.2	5.5	16.7	17.9	16.6	40.0	100
생활시설	-	12	50	100	349	562	109	1,182
	-	1.0	4.2	8.5	29.5	47.5	9.2	100
이용시설	-	-	-	1	15	36	5	57
	-	-	-	1.8	26.3	63.2	8.8	100
병원	-	1	4	5	29	40	6	85
	-	1.2	4.7	5.9	34.1	47.1	7.1	100
공공장소	-	3	2	10	11	19	19	64
	-	4.7	3.1	15.6	17.2	29.7	29.7	100
기타	-	3	3	9	5	23	28	71
	-	4.2	4.2	12.7	7.0	32.4	39.4	100
계	78	158	411	1,198	1,559	1,743	2,734	7,881
	1.0	2.0	5.2	15.2	19.8	22.1	34.7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표 7-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노인 본인	128	-	-	-	1	2	131
	2.0	-	-	-	1.6	2.8	1.7
배우자	3,019	-	-	-	17	17	3,053
	47.0	-	-	-	26.6	23.9	38.7
아들	2,057	-	-	-	14	11	2,082
	32.0	-	-	-	21.9	15.5	26.4
며느리	79	-	-	-	1	1	81
	1.2	-	-	-	1.6	1.4	1.0
딸	569	-	-	-	3	3	575
	8.9	-	-	-	4.7	4.2	7.3
사위	41	-	-	-	-	1	42
	0.6	-	-	-	-	1.4	0.5
손자녀	181	-	-	-	1	1	183
	2.8	-	-	-	1.6	1.4	2.3
친척	64	-	-	-	-	1	65
	1.0	-	-	-	-	1.4	0.8
기타 타인	95	2*	-	5*	9	14	125
	1.5	0.2	-	5.9	14.1	19.7	1.6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동거인	107	-	-	-	1	-	108
	1.7	-	-	-	1.6	-	1.4
이웃	62	-	-	-	17	16	95
	1.0	-	-	-	26.6	22.5	1.2
친구	7	-	-	-	-	-	7
	0.1	-	-	-	-	-	0.1
기타기관 종사자	7	8	-	46	-	3	64
	0.1	0.7	-	54.1	-	4.2	0.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6	1,171	57	8	-	1	1,243
	0.1	99.1	100	9.4	-	1.4	15.8
의료인	-	1	-	26	-	-	27
	-	0.1	-	30.6	-	-	0.3
계	6,422	1,182	57	85	64	71	7,88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입소노인 간 다툼 또는 간병인(개인) 등에 의한 학대에 해당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표 7-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4,499
	재혼	279
	사실혼	255
	소계	5,033
배우자 없음	미혼	1,953
	이혼	688
	사별	121
	별거	76
	가출	10
	소계	2,848
계	7,881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7-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881	794
	10.1

표 7-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 율
10~19세	15	1.9
20~29세	25	3.1
30~39세	38	4.8
40~49세	139	17.5
50~59세	198	24.9
60~69세	137	17.3
70세 이상	242	30.5
계	794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표 7-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444	1,128	1,063	3,572	1,674	7,881
5.6	14.3	13.5	45.3	21.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7-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4,758	60.4
전문직	830	10.5
단순 노무 종사자	717	9.1
서비스·판매 종사자	641	8.1
자영업자	273	3.5
사무 종사자	209	2.7
농·어·축산업 종사자	193	2.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7	1.5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71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3	0.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5	0.3
종교인	14	0.2
계	7,881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167명)와 학대행위자 수(7,881명)는 차이가 있음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가.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표 7-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36	12.1
	청각장애	72	6.4
	뇌병변장애	33	2.9
	시각장애	31	2.8
	언어장애	13	1.2
	간질장애	12	1.1
	장루요루장애	4	0.4
	신장장애	2	0.2
	호흡기장애	2	0.2
	간장애	1	0.1
	안면장애	-	-
	심장장애	-	-
	소계	306	27.2
정신 장애	정신분열	309	27.5
	우울장애	278	24.8
	지적장애	119	10.6
	정동장애	67	6.0
	반사회적 인격장애	35	3.1
	자폐성장애	9	0.8
	소계	817	72.8
계		1,123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학대행위자 통계 수치(7,881건)와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통계 수치(1,123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나.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표 7-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계
7,881	37	898	16	951
	0.5	11.4	0.2	12.1



PART 08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01 | 경제적 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4년 전체 학대유형 건수 10,932건 중 경제적 학대는 298건(2.7%)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6%,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9.0%,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	0.3	355
	서울북부	20	7.1	280
	서울서부	6	1.3	461
	서울동부	1	0.5	203
	소계	28	2.2	1,299
부산	부산중부	8	1.9	414
	부산동부	8	3.1	255
	부산서부	5	1.4	369
	소계	21	2.0	1,038
대구	대구남부	9	3.1	288
	대구북부	4	1.3	308
	소계	13	2.2	596
인천	인천	16	6.3	254
	인천서부	8	1.7	467
	소계	24	3.3	721
광주		6	2.2	268

지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대전		9	5.8	154
울산		5	1.7	289
경기	경기동부	4	1.0	420
	경기북부	10	1.6	615
	경기서부	4	1.2	341
	경기남부	1	0.3	288
	경기북서부	6	1.2	483
	소계	25	1.2	2,147
강원	강원	29	13.6	214
	강원동부	4	1.8	217
	강원남부	5	4.0	126
	소계	38	6.8	557
충북	충북	5	1.7	301
	충북북부	2	1.7	116
	소계	7	1.7	417
충남	충남	10	3.1	318
	충남남부	5	2.8	176
	소계	15	3.0	494
전북	전북	2	0.8	239
	전북서부	4	1.6	247
	소계	6	1.2	486
전남	전남동부	3	1.3	231
	전남서부	9	4.0	227
	소계	12	2.6	458
경북	경북동부	23	9.0	255
	경북북부	16	6.0	265
	경북서부	6	2.4	253
	경북남부	4	1.9	216
	소계	49	5.0	989
경남	경남	19	3.4	558
	경남서부	11	4.7	236
	소계	30	3.8	794
제주	제주시	4	3.1	127
	서귀포시	6	6.1	98
	소계	10	4.4	225
계		298	2.7	10,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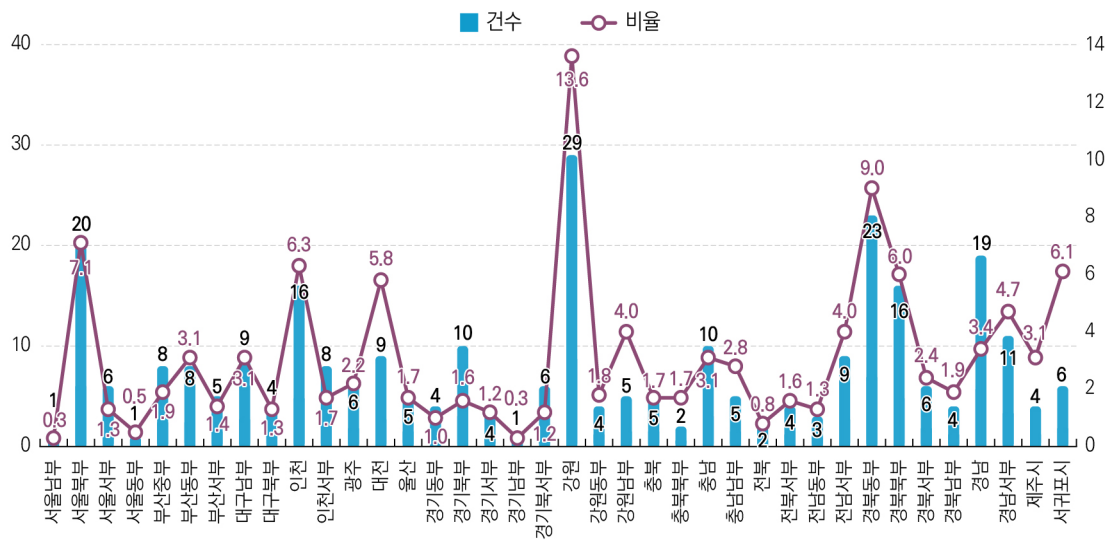


그림 8-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은 89명(29.9%), 여성은 209명(70.1%)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5~79세가 20명(22.5%), 여성의 경우 80~84세가 47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표 8-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5	19	20	15	14	6	-	-	89
	16.9	21.3	22.5	16.9	15.7	6.7	-	-	100
여성	32	42	41	47	33	10	4	-	209
	15.3	20.1	19.6	22.5	15.8	4.8	1.9	-	100
계	47	61	61	62	47	16	4	-	298
	15.8	20.5	20.5	20.8	15.8	5.4	1.3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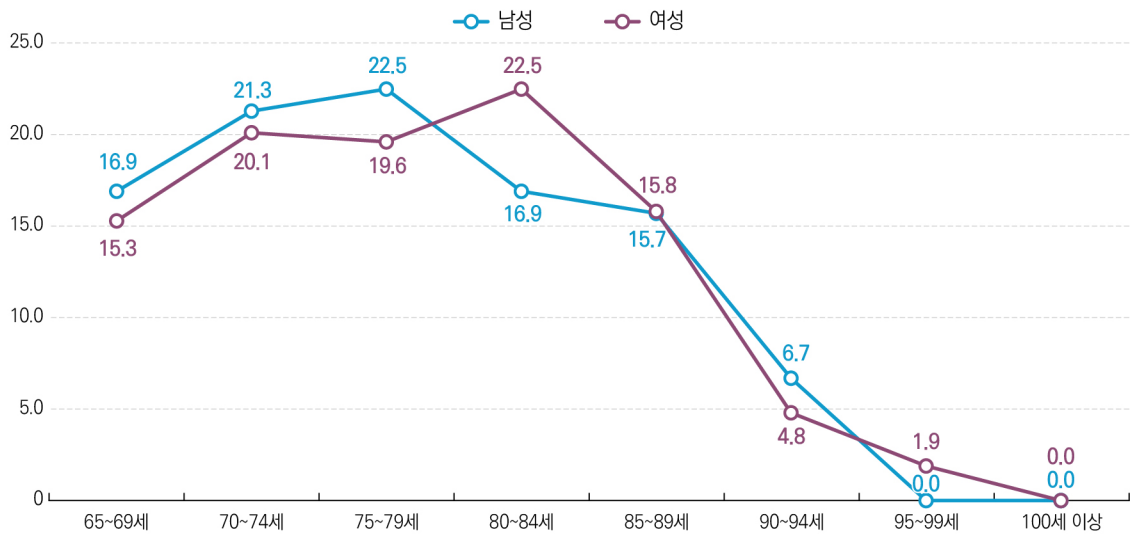


그림 8-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357명으로, 이 중 아들이 123명(34.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관 108명(30.3%), 배우자 39명(10.9%), 딸 33명(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노인 본인	친 족								타인 ²⁶⁾	기관 ²⁷⁾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1	39	123	10	33	2	15	7	229	19	108	357
0.3	10.9	34.5	2.8	9.2	0.6	4.2	2.0	64.1	5.3	30.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298명)와 학대행위자 수(357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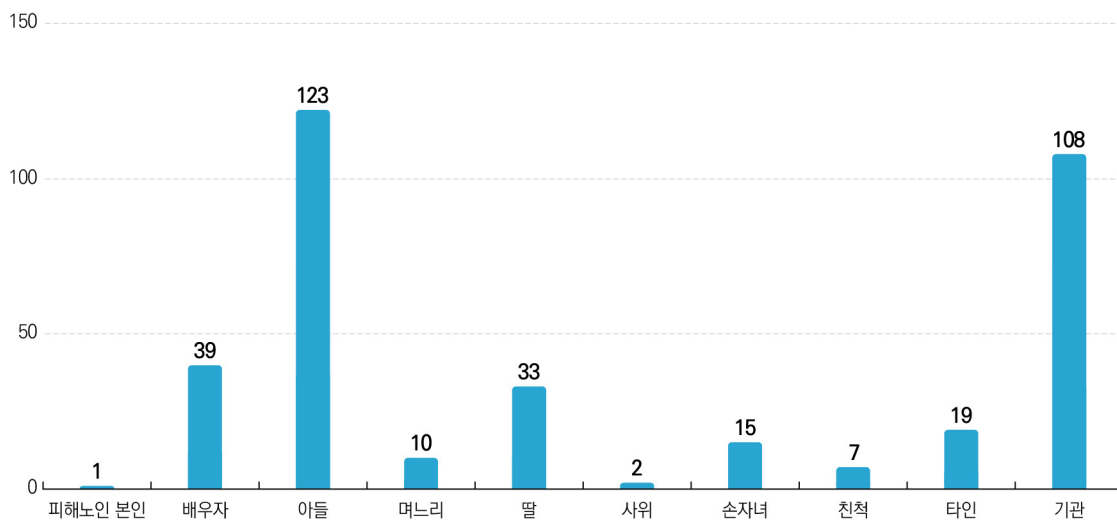


그림 8-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26)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이 해당됨

27)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이 해당됨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26명(35.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95명(26.6%), 60대 55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5	8	24	95	126	55	44	357
1.4	2.2	6.7	26.6	35.3	15.4	12.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298명)와 학대행위자 수(357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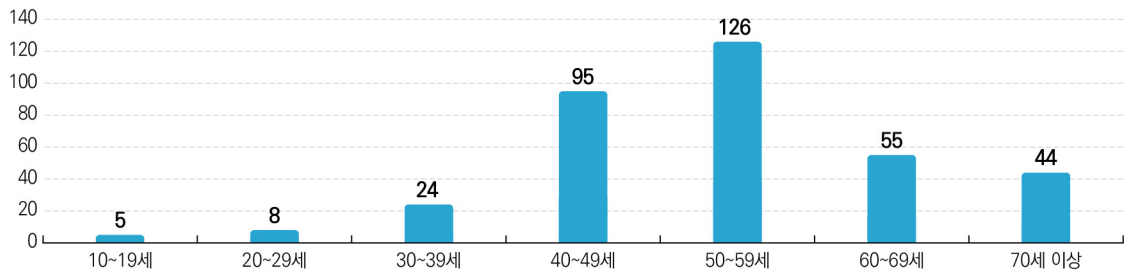


그림 8-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경제적 학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가 233건(78.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이 50건(1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8-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233	50	8	-	2	5	298
78.2	16.8	2.7	-	0.7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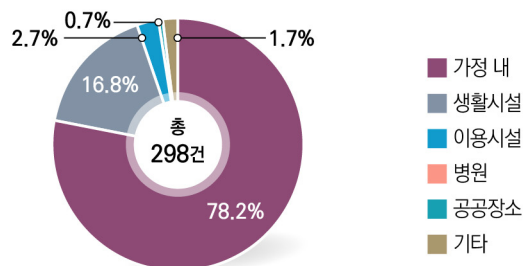


그림 8-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02건(34.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74건(24.8%), 일회성 40건(13.4%) 등의 순으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40	39	20	102	74	23	298
13.4	13.1	6.7	34.2	24.8	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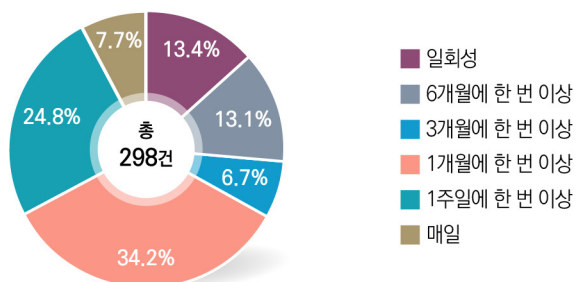


그림 8-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경제적 학대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19건(39.9%), 5년 이상이 92건(30.9%)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37	4	46	119	92	298
12.4	1.3	15.4	39.9	3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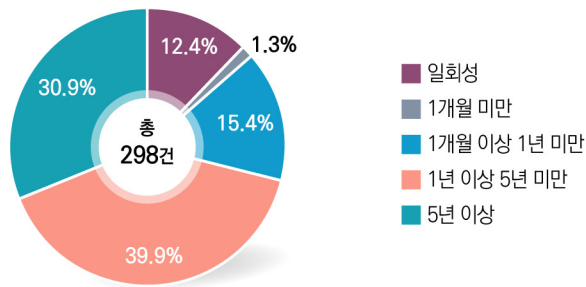


그림 8-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 298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7명(32.6%)으로 나타났다.

표 8-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경제적 학대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98	97
	32.6

02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72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4.0%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상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61.2%,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0.4%,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9.0%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노인 비율이 낮은 기관은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7%,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0.8%,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1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서울	서울남부	25	17	42	19.6	214
	서울북부	17	10	27	17.8	152
	서울서부	27	23	50	19.5	257
	서울동부	12	10	22	16.3	135
	소계	81	60	141	18.6	758
부산	부산중부	18	7	25	10.7	233
	부산동부	17	11	28	17.6	159
	부산서부	29	12	41	17.4	236
	소계	64	30	94	15.0	628
대구	대구남부	17	21	38	21.1	180
	대구북부	22	13	35	17.2	204
	소계	39	34	73	19.0	384
인천	인천	15	20	35	19.8	177
	인천서부	30	19	49	15.1	324
	소계	45	39	84	16.8	501
광주		19	7	26	12.7	204
대전		11	29	40	44.0	91
울산		16	10	26	15.6	167

지역	기관명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경기	경기동부	46	19	65	22.2	293
	경기북부	66	38	104	19.8	525
	경기서부	21	19	40	16.1	249
	경기남부	28	21	49	21.7	226
	경기북서부	39	19	58	18.7	310
	소계	200	116	316	19.7	1,603
강원	강원	46	11	57	46.0	124
	강원동부	63	11	74	49.0	151
	강원남부	17	8	25	28.1	89
	소계	126	30	156	42.9	364
충북	충북	37	33	70	38.9	180
	충북북부	16	10	26	37.1	70
	소계	53	43	96	38.4	250
충남	충남	43	28	71	35.5	200
	충남남부	32	9	41	35.7	115
	소계	75	37	112	35.6	315
전북	전북	39	7	46	32.9	140
	전북서부	34	6	40	25.2	159
	소계	73	13	86	28.8	299
전남	전남동부	14	7	21	13.9	151
	전남서부	48	20	68	36.6	186
	소계	62	27	89	26.4	337
경북	경북동부	50	16	66	37.5	176
	경북북부	25	13	38	23.8	160
	경북서부	36	10	46	28.6	161
	경북남부	60	5	65	50.4	129
	소계	171	44	215	34.3	626
경남	경남	22	15	37	10.8	343
	경남서부	89	12	101	61.2	165
	소계	111	27	138	27.2	508
제주	제주시	13	8	21	26.3	80
	서귀포시	-	8	8	15.4	52
	소계	13	16	29	22.0	132
계		1,159	562	1,721	24.0	7,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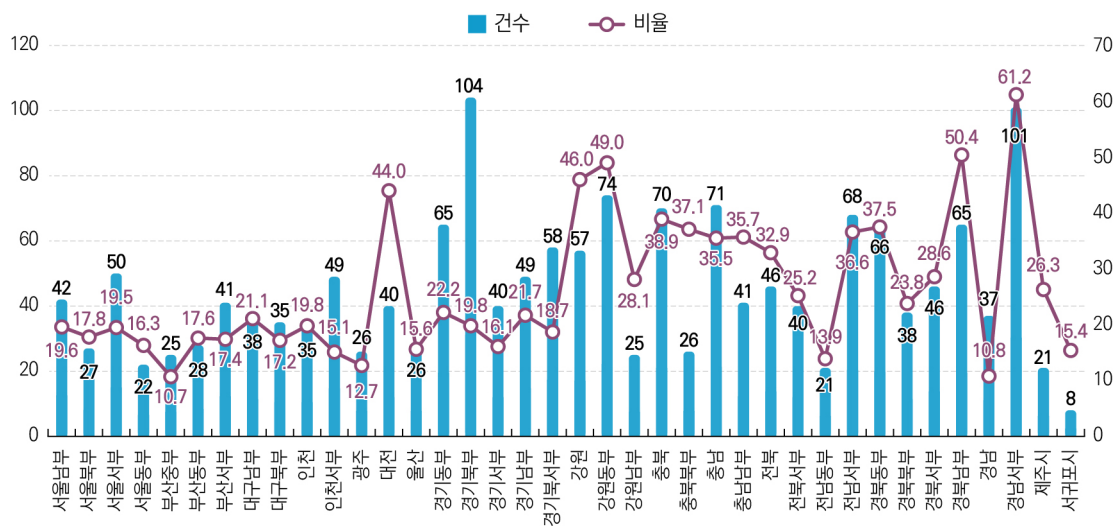


그림 8-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24년 전체 노인학대 7,167건 중 치매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1,276명(74.1%), 남성은 445명(25.9%)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구 분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남성	310	135	445
	26.7	24.0	25.9
여성	849	427	1,276
	73.3	76.0	74.1
계	1,159	562	1,721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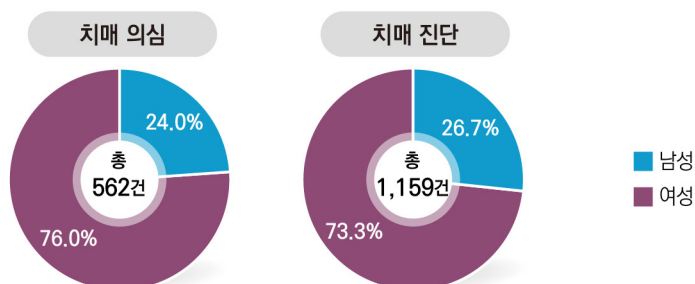


그림 8-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819명(47.6%)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500명(2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8-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진단	67	114	172	282	299	175	45	5	1,159
(치매로 진단받음)	5.8	9.8	14.8	24.3	25.8	15.1	3.9	0.4	100
치매의심	63	91	123	133	105	35	9	3	562
(치매가 의심됨)	11.2	16.2	21.9	23.7	18.7	6.2	1.6	0.5	100
계	130	205	295	415	404	210	54	8	1,721
	7.6	11.9	17.1	24.1	23.5	12.2	3.1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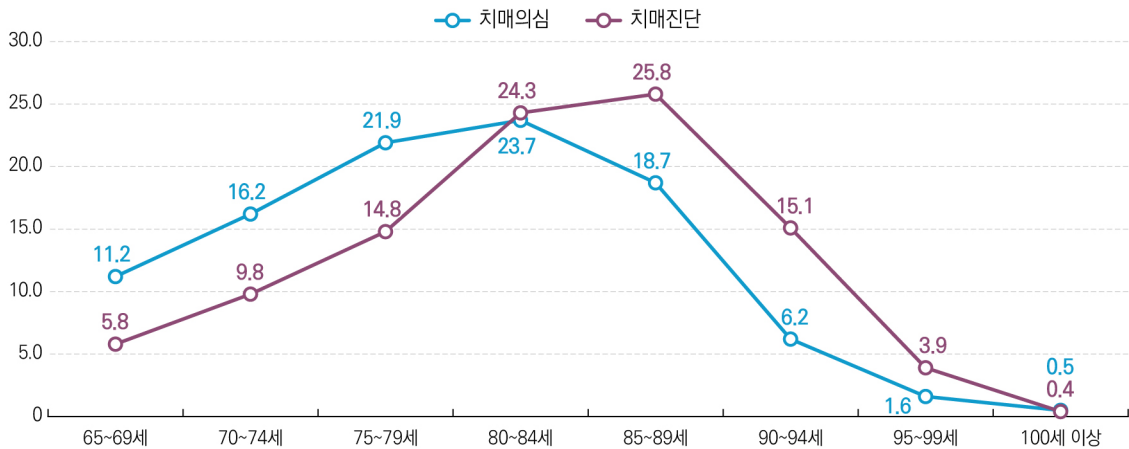


그림 8-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기관이 1,206건(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이 977명(41.9%)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45명(19.1%)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87명(12.3%), 딸 154명(6.6%) 순이었다.

표 8-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명, %)

구 분	피해 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6	149	242	19	94	5	20	13	542	49	1,040	1,657
	1.6	9.0	14.6	1.1	5.7	0.3	1.2	0.8	32.7	3.0	62.8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49	138	203	8	60	4	11	11	435	22	166	672
	7.3	20.5	30.2	1.2	8.9	0.6	1.6	1.6	64.7	3.3	24.7	100
계	75	287	445	27	154	9	31	24	977	71	1,206	2,329
	3.2	12.3	19.1	1.2	6.6	0.4	1.3	1.0	41.9	3.0	51.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수(1,721명)와 학대행위자 수(2,329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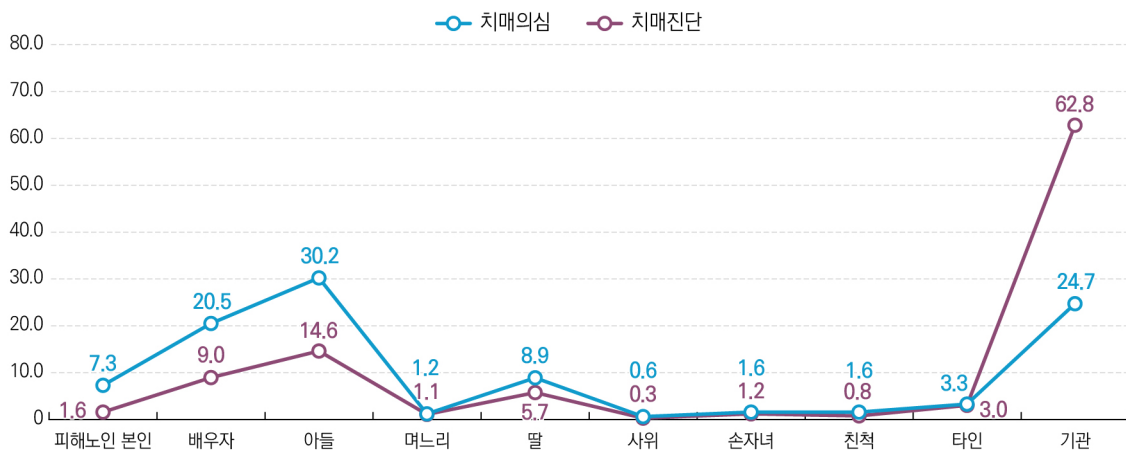


그림 8-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896건(3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676건(27.1%), 방임 501건(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학대유형 순위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의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순과 일치한다.

표 8-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602	404	155	86	410	26	20	1,703
	35.3	23.7	9.1	5.0	24.1	1.5	1.2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94	272	41	32	91	49	8	787
	37.4	34.6	5.2	4.1	11.6	6.2	1.0	100
계	896	676	196	118	501	75	28	2,490
	36.0	27.1	7.9	4.7	20.1	3.0	1.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통계 수치(1,721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2,490건)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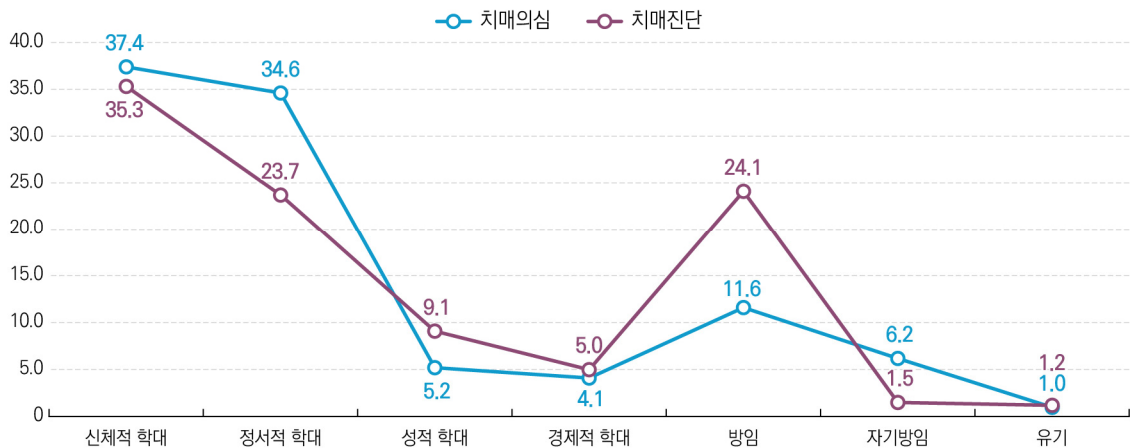


그림 8-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1,050건(61.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이 544건(3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594건(92.6%)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도의 가정 내와 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88.0%)과 비교하였을 때, 2024년도에 가정 내와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발생 비율이 4.6%p 증가하였다.

치매의심과 치매진단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485건(86.3%), 565건(4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학대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65	500	42	31	6	15	1,159
	48.7	43.1	3.6	2.7	0.5	1.3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485	44	3	23	1	6	562
	86.3	7.8	0.5	4.1	0.2	1.1	100
계	1,050	544	45	54	7	21	1,721
	61.0	31.6	2.6	3.1	0.4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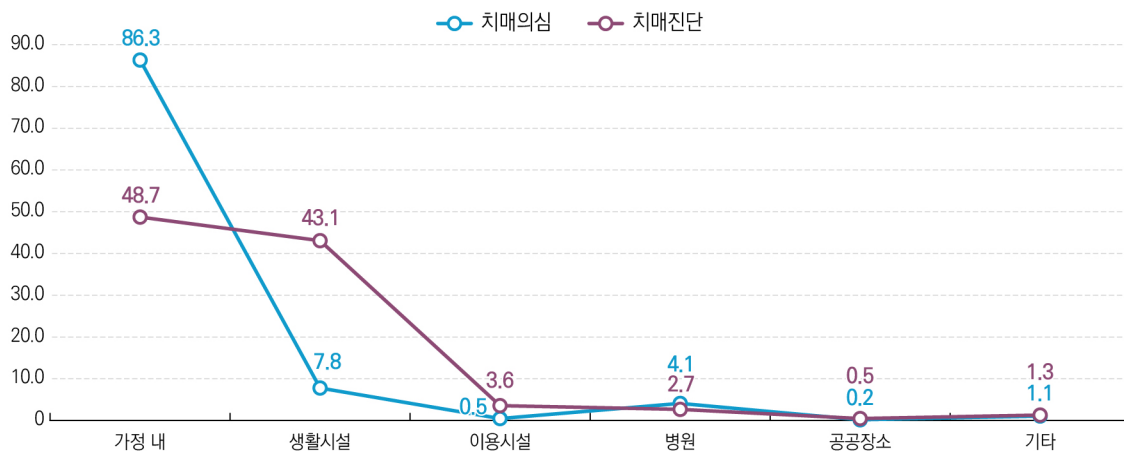


그림 8-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인 경우가 421건(24.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회성 410건(23.8%), 매일이 322건(18.7%)으로 뒤를 이었다.

표 8-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90	60	73	196	313	227	1,159
	25.0	5.2	6.3	16.9	27.0	19.6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20	65	51	123	108	95	562
	21.4	11.6	9.1	21.9	19.2	16.9	100
계	410	125	124	319	421	322	1,721
	23.8	7.3	7.2	18.5	24.5	1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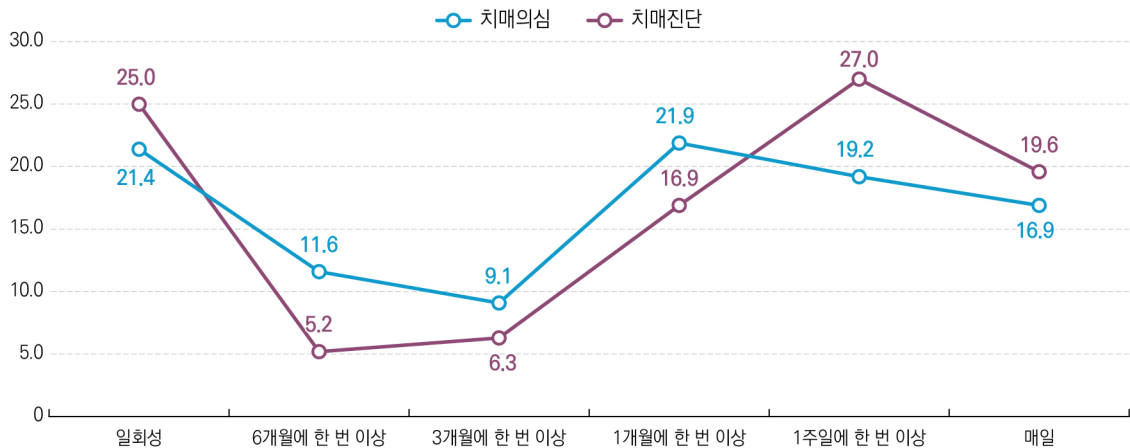


그림 8-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560건(32.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회성 407건(23.6%), 1개월 이상 1년 미만 398건(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97	79	306	345	132	1,159
	25.6	6.8	26.4	29.8	11.4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10	33	92	215	112	562
	19.6	5.9	16.4	38.3	19.9	100
계	407	112	398	560	244	1,721
	23.6	6.5	23.1	32.5	14.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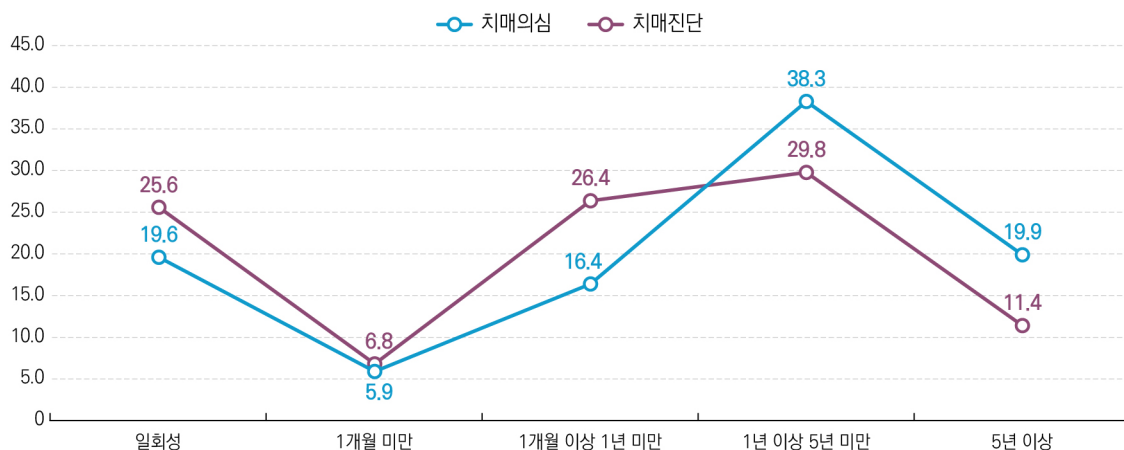


그림 8-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를 경험한 치매노인의 가구형태는 기타인 경우가 602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동거 404건(23.5%), 노인독거 338건(19.6%) 등 순이었다.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구 형태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8-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199	155	227	21	32	525	1,159
	17.2	13.4	19.6	1.8	2.8	45.3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39	141	177	9	19	77	562
	24.7	25.1	31.5	1.6	3.4	13.7	100
계	338	296	404	30	51	602	1,721
	19.6	17.2	23.5	1.7	3.0	3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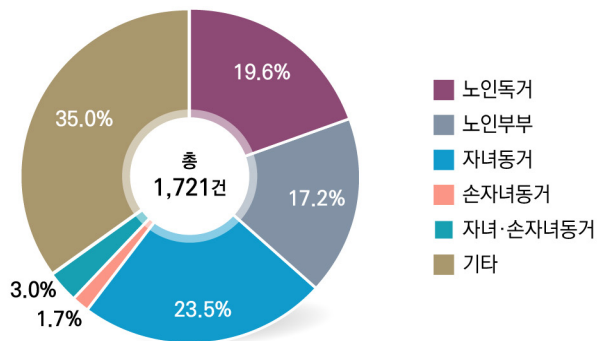


그림 8-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03 |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상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76건(46.1%)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58건(45.0%),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51건(3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214	-	11	-	-	11
			-	5.1	-	-	5.1
	서울북부	152	-	2	-	-	2
			-	1.3	-	-	1.3
	서울서부	257	-	4	-	-	4
			-	1.6	-	-	1.6
	서울동부	135	-	1	-	-	1
			-	0.7	-	-	0.7
부산	부산중부	233	-	3	-	-	3
			-	1.3	-	-	1.3
	부산동부	159	-	1	-	-	1
			-	0.6	-	-	0.6
	부산서부	236	-	3	-	-	3
			-	1.3	-	-	1.3
	소계	628	-	7	-	-	7
			-	1.1	-	-	1.1
대구	대구남부	180	-	5	-	-	5
			-	2.8	-	-	2.8
	대구북부	204	-	3	-	-	3
			-	1.5	-	-	1.5
	소계	384	-	8	-	-	8
			-	2.1	-	-	2.1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천	인천	177	-	17	-	2	19
			-	9.6	-	1.1	10.7
	인천서부	324	2	15	-	3	20
			0.6	4.6	-	0.9	6.2
	소계	501	2	32	-	5	39
			0.4	6.4	-	1.0	7.8
광주		204	-	2	-	-	2
			-	1.0	-	-	1.0
대전		91	1	3	-	1	5
			1.1	3.3	-	1.1	5.5
울산		167	-	5	-	-	5
			-	3.0	-	-	3.0
경기	경기동부	293	-	33	-	2	35
			-	11.3	-	0.7	11.9
	경기북부	525	1	32	-	4	37
			0.2	6.1	-	0.8	7.0
	경기서부	249	1	4	-	-	5
			0.4	1.6	-	-	2.0
	경기남부	226	-	15	-	2	17
			-	6.6	-	0.9	7.5
	경기북서부	310	1	23	-	1	25
			0.3	7.4	-	0.3	8.1
소계		1,603	3	107	-	9	119
			0.2	6.7	-	0.6	7.4
강원	강원	124	-	37	-	1	38
			-	29.8	-	0.8	30.6
	강원동부	151	-	51	-	-	51
			-	33.8	-	-	33.8
	강원남부	89	-	13	-	-	13
			-	14.6	-	-	14.6
	소계		364	-	101	-	1
-				27.7	-	0.3	28.0
충북	충북	180	-	41	-	-	41
			-	22.8	-	-	22.8
	충북북부	70	-	12	-	-	12
			-	17.1	-	-	17.1
	소계		250	-	53	-	-
-				21.2	-	-	21.2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충남	충남	200	-	9	1	3	13
			-	4.5	0.5	1.5	6.5
	충남남부	115	1	18	-	-	19
			0.9	15.7	-	-	16.5
	소계	315	1	27	1	3	32
			0.3	8.6	0.3	1.0	10.2
전북	전북	140	-	18	-	-	18
			-	12.9	-	-	12.9
	전북서부	159	2	16	-	-	18
			1.3	10.1	-	-	11.3
	소계	299	2	34	-	-	36
			0.7	11.4	-	-	12.0
전남	전남동부	151	-	-	-	-	-
			-	-	-	-	-
	전남서부	186	-	10	-	3	13
			-	5.4	-	1.6	7.0
	소계	337	-	10	-	3	13
			-	3.0	-	0.9	3.9
경북	경북동부	176	19	1	-	25	45
			10.8	0.6	-	14.2	25.6
	경북북부	160	-	1	-	1	2
			-	0.6	-	0.6	1.3
	경북서부	161	-	20	-	-	20
			-	12.4	-	-	12.4
	경북남부	129	1	56	-	1	58
			0.8	43.4	-	0.8	45.0
소계	626	20	78	-	27	125	
		3.2	12.5	-	4.3	20.0	
경남	경남	343	-	3	-	-	3
			-	0.9	-	-	0.9
	경남서부	165	-	74	-	2	76
			-	44.8	-	1.2	46.1
	소계	508	-	77	-	2	79
			-	15.2	-	0.4	15.6
제주	제주시	80	-	4	-	-	4
			-	5.0	-	-	5.0
	서귀포시	52	-	-	-	-	-
			-	-	-	-	-
	소계	132	-	4	-	-	4
			-	3.0	-	-	3.0
계		7,167	29	566	1	51	647
			0.4	7.9	0.0	0.7	9.0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647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에 의한 신고가 201건(31.1%),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140건(21.6%),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53건(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의무자 직군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447건(69.1%)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친족 128건(19.8%), 타인 42건(6.5%), 관련기관 30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200건(30.9%)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에 비해 38.2%p 낮았다.

표 8-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6	180	1	4	201
		2.5	27.8	0.2	0.6	31.1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	1	1
		-	-	-	0.2	0.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32	-	4	42
		0.9	4.9	-	0.6	6.5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6	-	1	7
		-	0.9	-	0.2	1.1
	119구급대의 대원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	-	-	-
		-	-	-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	52	-	-	53
		0.2	8.0	-	-	8.2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1	115	-	24	140
		0.2	17.8	-	3.7	21.6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2	-	1	3
		-	0.3	-	0.2	0.5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24	387	1	35	447
		3.7	59.8	0.2	5.4	69.1
	학대행위자 본인	-	-	-	-	-
		-	-	-	-	-
	친족	2	114	-	12	128
		0.3	17.6	-	1.9	19.8
	타인	1	40	-	1	42
		0.2	6.2	-	0.2	6.5
	관련기관 ²⁸⁾	2	25	-	3	30
		0.3	3.9	-	0.5	4.6
	소계	5	179	-	16	200
		0.8	27.7	-	2.5	30.9
계		29	566	1	51	647
		4.5	87.5	0.2	7.9	100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647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471명(72.8%), 남성노인은 176명(27.2%)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보면 남성의 경우 80대가 43.8%, 70대가 31.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80대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과 달리 90대 27.4%, 70대 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8-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3	17	39	39	38	25	4	1	176
	7.4	9.7	22.2	22.2	21.6	14.2	2.3	0.6	100
여성	22	22	47	107	139	99	30	5	471
	4.7	4.7	10.0	22.7	29.5	21.0	6.4	1.1	100
계	35	39	86	146	177	124	34	6	647
	5.4	6.0	13.3	22.6	27.4	19.2	5.3	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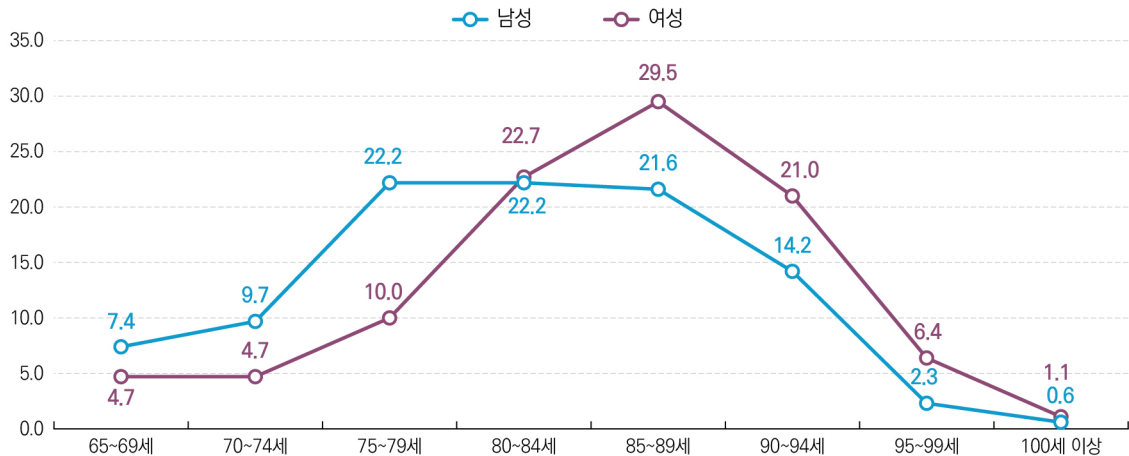


그림 8-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시설학대 학대유형

시설학대 학대유형을 보면 총 965건 중 방임이 326건(33.8%), 신체적 학대가 303건(31.4%), 성적 학대가 167건(17.3%), 정서적 학대가 110건(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시설은 ‘방임’이 54.1%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별 상세로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경제적 학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체적 학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임’이 높아 시설별 빈번한 학대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1 시설학대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7	1	4	14	9	-	-	35
		20.0	2.9	11.4	40.0	25.7	-	-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286	100	162	36	284	-	1	869
		32.9	11.5	18.6	4.1	32.7	-	0.1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	-	1
		-	100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0	8	1	8	33	-	-	60
		16.7	13.3	1.7	13.3	55.0	-	-	100
계		303	110	167	58	326	-	1	965
		31.4	11.4	17.3	6.0	33.8	-	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학대 통계 수치(64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965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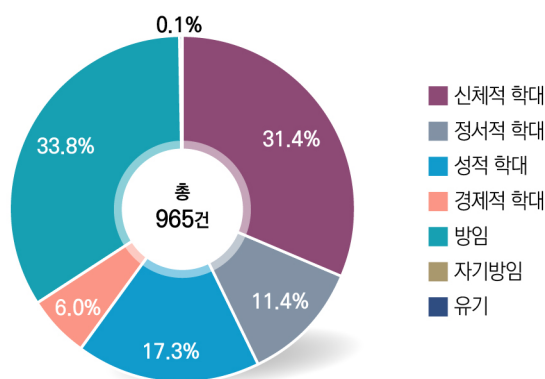


그림 8-18 시설학대 학대유형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 7,167명의 결혼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4,683건(65.3%)이며, 배우자 없음은 2,484건(34.7%)으로 나타났다.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배우자 없음이 394건(66.2%), 42건(80.8%)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2	1	-	3	9	13	4	-	-	26	29
		6.9	3.4	-	10.3	31.0	44.8	13.8	-	-	89.7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93	3	2	198	12	349	5	2	-	368	566
		34.1	0.5	0.4	35.0	2.1	61.7	0.9	0.4	-	65.0	100
	소계	195	4	2	201	21	362	9	2	-	394	595
		32.8	0.7	0.3	33.8	3.5	60.8	1.5	0.3	-	66.2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1	-	-	-	-	-	-	1
		100	-	-	100	-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7	1	1	9	1	39	1	1	-	42	51
		13.7	2.0	2.0	17.6	2.0	76.5	2.0	2.0	-	82.4	100
	소계	8	1	1	10	1	39	1	1	-	42	52
		15.4	1.9	1.9	19.2	1.9	75.0	1.9	1.9	-	80.8	100
계		203	5	3	211	22	401	10	3	-	436	647
		31.4	0.8	0.5	32.6	3.4	62.0	1.5	0.5	-	67.4	100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1주일에 한 번 이상 191건 (29.5%)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187건(28.9%), 매일 154건(23.8%), 1개월에 한 번 이상 80건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은 매일(36.7%), 일회성(31.1%), 1개월에 한 번 이상(16.2%)으로 2024년도 학대발생빈도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표 8-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4	14	-	1	4	6	29
		13.8	48.3	-	3.4	13.8	20.7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67	3	16	77	177	126	566
		29.5	0.5	2.8	13.6	31.3	22.3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	-	-	1
		100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1	1	2	10	22	51
		29.4	2.0	2.0	3.9	19.6	43.1	100
계		187	18	17	80	191	154	647
		28.9	2.8	2.6	12.4	29.5	2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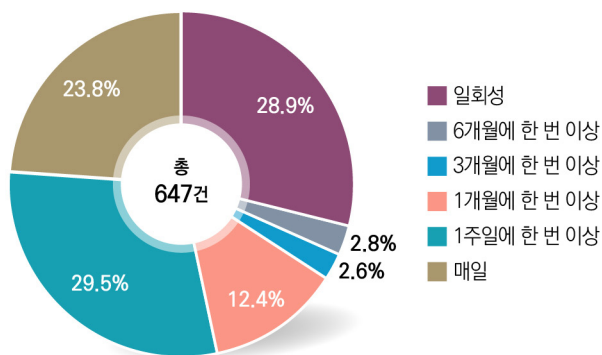


그림 8-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일회성이 204건(31.5%)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 198건(30.6%), 1년 이상 5년 미만 160건(24.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28.7%), 일회성(25.2%), 1년 이상 5년 미만(24.7%) 순으로 2024년도 학대지속기간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표 8-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5	1	2	21	-	29
		17.2	3.4	6.9	72.4	-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83	68	167	136	12	566
		32.3	12.0	29.5	24.0	2.1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	-	1
		100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3	29	3	1	51
		29.4	5.9	56.9	5.9	2.0	100
계		204	72	198	160	13	647
		31.5	11.1	30.6	24.7	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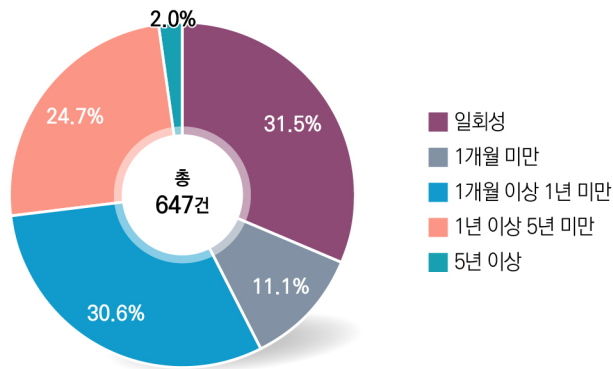


그림 8-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모두 일회성인 경우가 18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74건으로 나타났다.

표 8-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구 분		학대지속기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학 대 발 생 빈 도	일회성	180	2	3	2	-	187
	6개월에 한 번 이상	-	-	2	16	-	18
	3개월에 한 번 이상	-	1	11	5	-	17
	1개월에 한 번 이상	3	25	40	12	-	80
	1주일에 한 번 이상	21	20	74	68	8	191
	매일	-	24	68	57	5	154
	계	204	72	198	160	13	647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595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6명(22.9%)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52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명(13.5%)으로 나타났다.

시설학대 전체 피해노인 647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43명(22.1%)이다.

표 8-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29	18
			62.1
	노인의료 복지시설	566	118
			20.8
	소계	595	136
			22.9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재가노인 복지시설	51	7
			13.7
	소계	52	7
			13.5
계		647	143
			22.1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647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89명(91.0%)이다. 치매노인 589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544명(84.1%)으로 이용시설 45명(7.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피해노인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647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3	15	18
			0.5	2.3	2.8
		노인의료 복지시설	41	485	526
			6.3	75.0	81.3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3	42	45
			0.5	6.5	7.0
	계		47	542	589
			7.3	83.8	91.0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1,239명이며, 그 중 여성이 982명(79.3%), 남성이 257명(20.7%)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남성 122명(47.5%), 여성 476명(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학대 학대행위자의 50대 이상의 비율을 보면 남성 225명(87.5%), 여성 851명(86.7%)으로 행위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표 8-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3	20	9	60	122	43	257
	-	1.2	7.8	3.5	23.3	47.5	16.7	100
여성	-	9	30	92	304	476	71	982
	-	0.9	3.1	9.4	31.0	48.5	7.2	100
계	-	12	50	101	364	598	114	1,239
	-	1.0	4.0	8.2	29.4	48.3	9.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학대 피해노인 수(647명)와 학대행위자 수(1,239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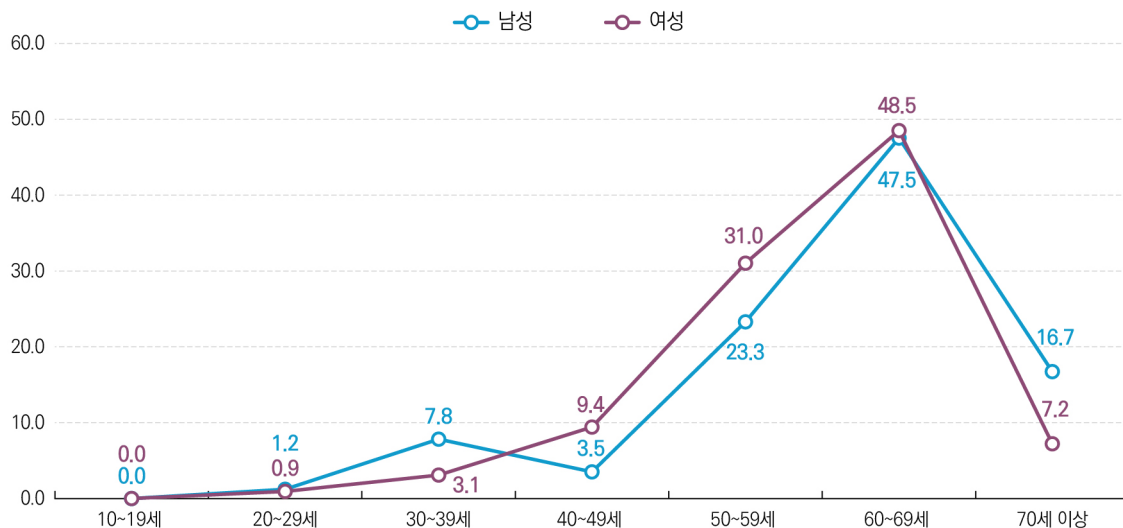


그림 8-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04 | 재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81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7,167건 중 11.3%에 해당되며,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 신고된 기관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8.3%,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22.0%,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건(0.8%)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건(1.9%)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8-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8	3.7	214
	서울북부	10	6.6	152
	서울서부	28	10.9	257
	서울동부	28	20.7	135
	소계	74	9.8	758
부산	부산중부	30	12.9	233
	부산동부	3	1.9	159
	부산서부*	-	-	236
	소계	33	5.3	628
대구	대구남부	6	3.3	180
	대구북부	14	6.9	204
	소계	20	5.2	384
인천	인천	39	22.0	177
	인천서부	63	19.4	324
	소계	102	20.4	501
광주		33	16.2	204
대전		9	9.9	91
울산		29	17.4	167
경기	경기동부	43	14.7	293
	경기북부	69	13.1	525
	경기서부	16	6.4	249
	경기남부	64	28.3	226
	경기북서부	15	4.8	310
	소계	207	12.9	1,603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강원	강원	13	10.5	124
	강원동부	9	6.0	151
	강원남부	16	18.0	89
	소계	38	10.4	364
충북	충북	14	7.8	180
	충북북부	14	20.0	70
	소계	28	11.2	250
충남	충남	41	20.5	200
	충남남부	19	16.5	115
	소계	60	19.0	315
전북	전북	15	10.7	140
	전북서부	8	5.0	159
	소계	23	7.7	299
전남	전남동부	32	21.2	151
	전남서부	26	14.0	186
	소계	58	17.2	337
경북	경북동부	16	9.1	176
	경북북부	29	18.1	160
	경북서부	21	13.0	161
	경북남부	1	0.8	129
	소계	67	10.7	626
경남	경남	10	2.9	343
	경남서부	10	6.1	165
	소계	20	3.9	508
제주	제주시	7	8.8	80
	서귀포시	4	7.7	52
	소계	11	8.3	132
계		812	11.3	7,167

*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4년 3월경에 신규 개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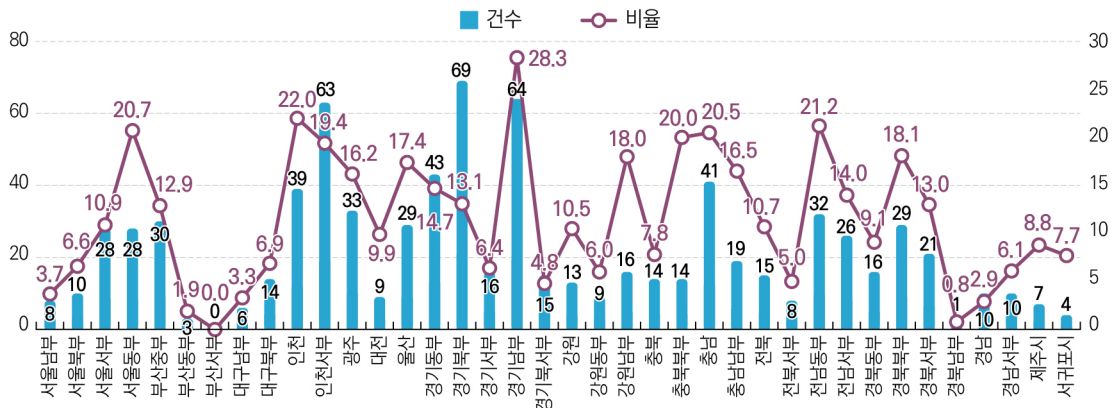


그림 8-22 기관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938건(14.8%), 재학대 사례의 경우 66건(8.1%)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322건(5.1%), 26건(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5,417건(85.2%), 재학대 사례의 경우 746건(91.9%)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기관의 경우 타 비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 사례(3.6%) 보다 재학대 사례(7.1%)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 사례 신고비율(73.0%)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78.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신 규		재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5	0.2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8	0.1	3	0.4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68	4.2	15	1.8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0.0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35	0.6	5	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9	2.7	10	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	0.6	5	0.6
	119구급대의 대원	2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1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2	0.0	-	-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8	0.1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8	0.1	1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60	0.9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322	5.1	26	3.2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3	0.0	-	-
	소계	938	14.8	66	8.1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231	3.6	58	7.1
	학대행위자 본인	1	0.0	1	0.1
	친족	404	6.4	44	5.4
	타인	140	2.2	10	1.2
	관련기관 ²⁹⁾	4,641	73.0	633	78.0
	소계	5,417	85.2	746	91.9
계		6,355	100	812	100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포함됨

29)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150명(18.5%), 여성 노인이 662명(81.5%)으로 여성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 노인에 비해 약 4.4배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 노인 23.4%, 여성 노인 76.6%)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407명(50.1%), 80대가 221명(27.2%), 60대가 144명(17.7%)으로 70대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70대의 경우 남성 노인이 68명(45.3%), 여성 노인이 339명(51.2%)로 나타나 여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8-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0	33	35	37	20	5	-	-	150
	13.3	22.0	23.3	24.7	13.3	3.3	-	-	100
여성	124	168	171	105	59	33	2	-	662
	18.7	25.4	25.8	15.9	8.9	5.0	0.3	-	100
계	144	201	206	142	79	38	2	-	812
	17.7	24.8	25.4	17.5	9.7	4.7	0.2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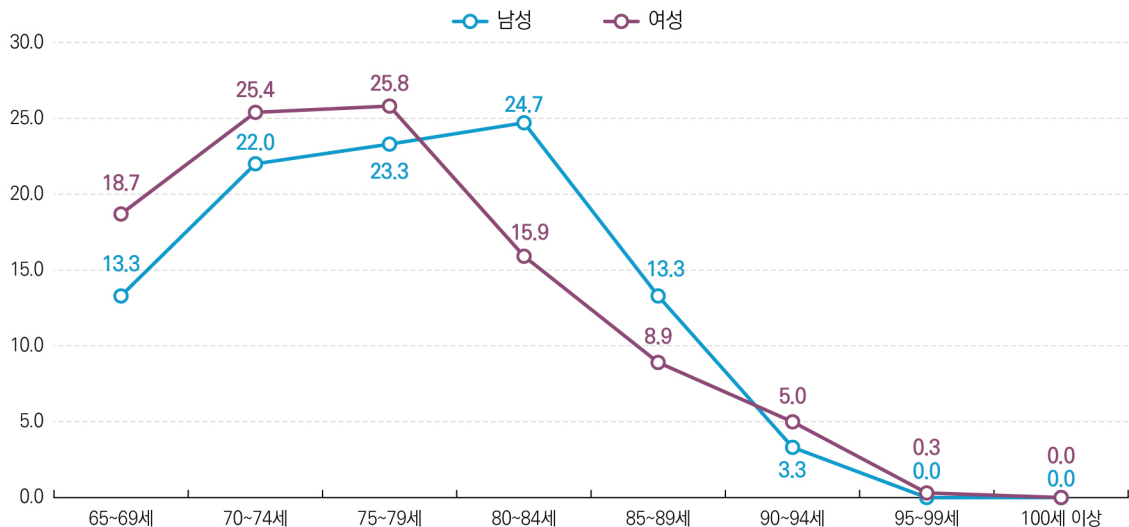


그림 8-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사례판정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525건(64.7%), 잠재 사례 259건(31.9%), 응급 사례 28건(3.4%)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4,380건(68.9%), 잠재 사례 1,889건(29.7%), 응급 사례 86건(1.4%)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비응급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잠재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응급	잠 재	계
신규	86	4,380	1,889	6,355
	1.4	68.9	29.7	100
재학대	28	525	259	812
	3.4	64.7	31.9	100
계	114	4,905	2,148	7,167
	1.6	68.4	3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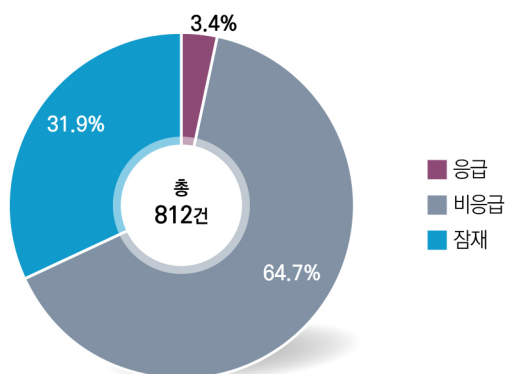


그림 8-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배우자 2,695건(38.2%), 아들 1,771건(25.1%), 기관 1,328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배우자 358건(43.7%), 아들 311건(38.0%), 딸 59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3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피해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120	2,695	1,771	74	516	37	157	57	307	1,328	7,062
	1.7	38.2	25.1	1.0	7.3	0.5	2.2	0.8	4.3	18.8	100
재학대	11	358	311	7	59	5	26	8	28	6	819
	1.3	43.7	38.0	0.9	7.2	0.6	3.2	1.0	3.4	0.7	100
계	131	3,053	2,082	81	575	42	183	65	335	1,334	7,881
	1.7	38.7	26.4	1.0	7.3	0.5	2.3	0.8	4.3	16.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2명)과 학대행위자 수(819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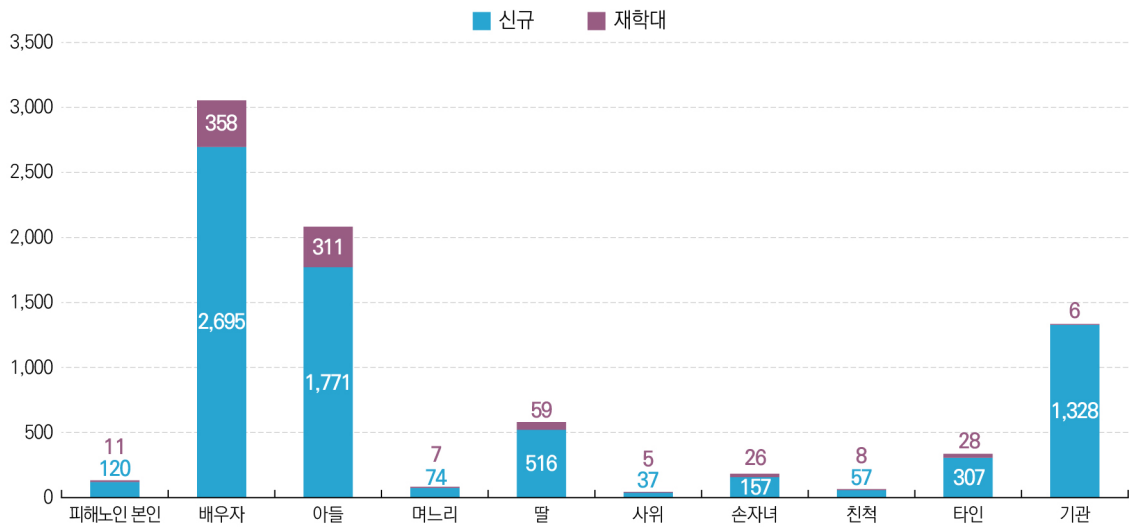


그림 8-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재학대 사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201건 중 정서적 학대가 606건(50.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학대 531건(44.2%), 경제적 학대 26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의 학대유형의 경우 신체적 학대 4,797건(43.9%), 정서적 학대 4,784건(43.8%)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순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신규와 재학대 모두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531	606	6	26	19	11	2	1,201
44.2	50.5	0.5	2.2	1.6	0.9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학대 통계 수치(812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201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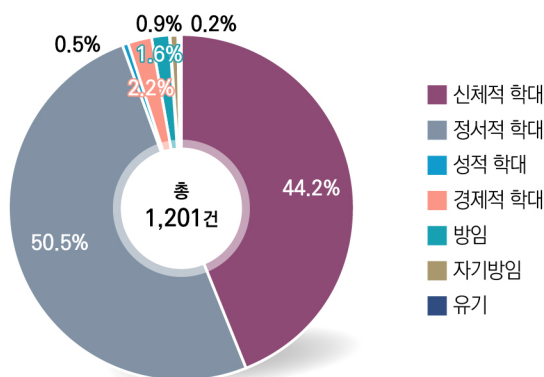


그림 8-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812건 중 가정 내 학대가 798건(98.3%)으로,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6.9%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신규	5,525	591	52	65	57	65	6,355
	86.9	9.3	0.8	1.0	0.9	1.0	100
재학대	798	4	-	1	4	5	812
	98.3	0.5	-	0.1	0.5	0.6	100
계	6,323	595	52	66	61	70	7,167
	88.2	8.3	0.7	0.9	0.9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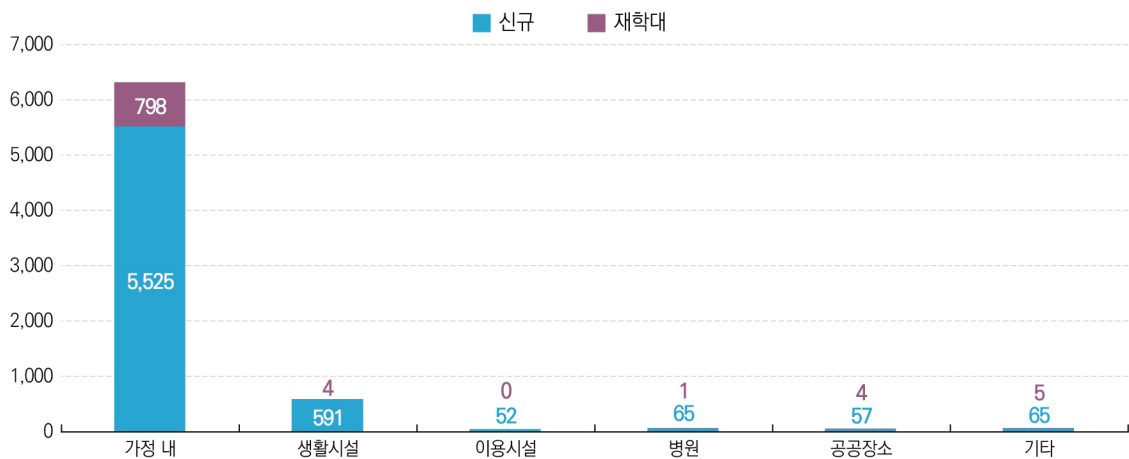


그림 8-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의 학대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819명 중 가정 내 학대의 경우 배우자가 355명(44.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이 307명(38.2%)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 내	10	355	307	7	58	5	26	8	766	28	-	804
	1.2	44.2	38.2	0.9	7.2	0.6	3.2	1.0	95.3	3.5	-	100
생활 시설	-	-	-	-	-	-	-	-	-	-	5	5
	-	-	-	-	-	-	-	-	-	-	100	100
이용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1	1
	-	-	-	-	-	-	-	-	-	-	100	100
공공 장소	-	3	1	-	-	-	-	-	4	-	-	4
	-	75.0	25.0	-	-	-	-	-	100	-	-	100
기타	1	-	3	-	1	-	-	-	4	-	-	5
	20.0	-	60.0	-	20.0	-	-	-	80.0	-	-	100
계	11	358	311	7	59	5	26	8	774	28	6	819
	1.3	43.7	38.0	0.9	7.2	0.6	3.2	1.0	94.5	3.4	0.7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2명)와 학대행위자 수(819명)는 차이가 있음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236건(29.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173건(21.3%), 1주일에 한 번 이상 172건(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비율은 신규 사례에 비해 15.2%p 낮은 반면, 6개월에 한 번 이상의 비율은 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신규	1,535	820	718	1,532	1,227	523	6,355
	24.2	12.9	11.3	24.1	19.3	8.2	100
재학대	73	173	117	236	172	41	812
	9.0	21.3	14.4	29.1	21.2	5.0	100
계	1,608	993	835	1,768	1,399	564	7,167
	22.4	13.9	11.7	24.7	19.5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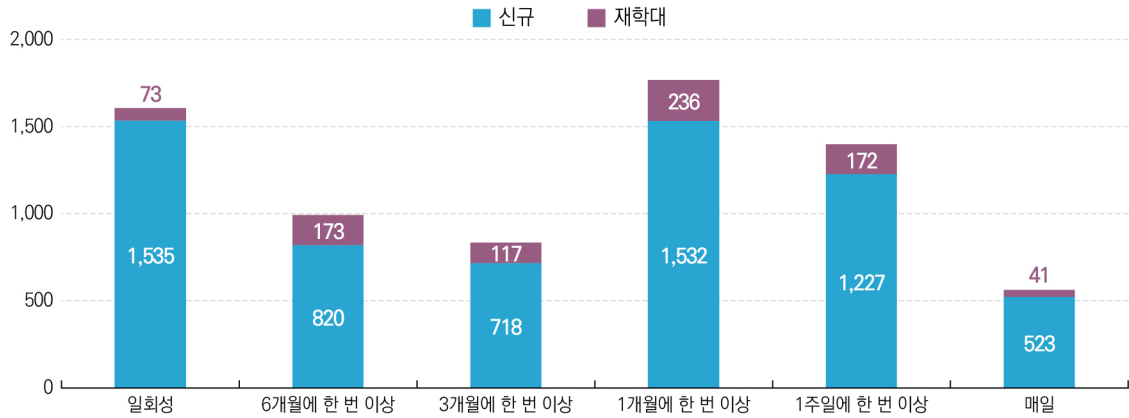


그림 8-28 신규 -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 사례가 3,639건(57.3%), 재학대 사례가 669건(82.4%)으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8-38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신규	1,482	235	999	1,867	1,772	6,355
	23.3	3.7	15.7	29.4	27.9	100
재학대	61	7	75	394	275	812
	7.5	0.9	9.2	48.5	33.9	100
계	1,543	242	1,074	2,261	2,047	7,167
	21.5	3.4	15.0	31.5	2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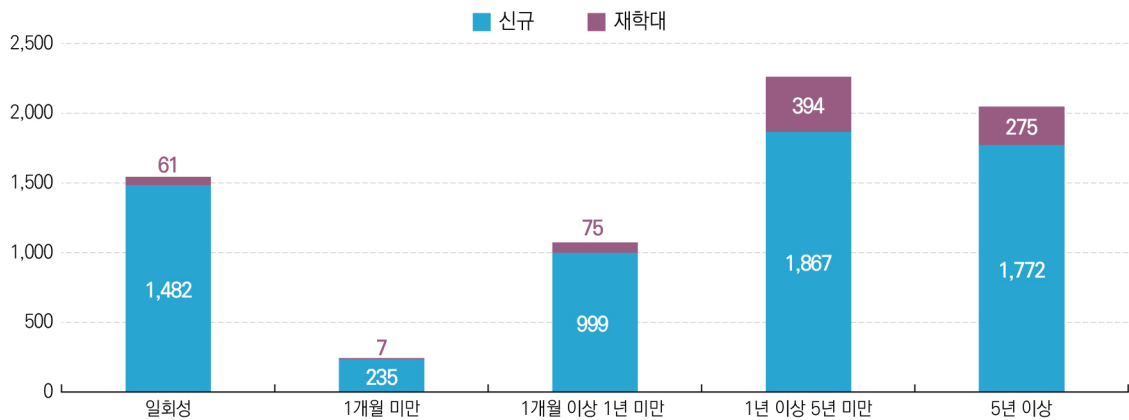


그림 8-29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812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82명(22.4%)이다. 2024년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1,143명, 15.9%)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8-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12	182
	22.4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334건(41.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312건(38.4%), 노인독거가구 76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로 2,552건(40.2%)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가 1,745건(27.5%), 노인독거가구가 981건(15.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비율은 높으나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0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신규	981	2,552	1,745	181	160	736	6,355
	15.4	40.2	27.5	2.8	2.5	11.6	100
재학대	76	334	312	25	36	29	812
	9.4	41.1	38.4	3.1	4.4	3.6	100
계	1,057	2,886	2,057	206	196	765	7,167
	14.7	40.3	28.7	2.9	2.7	1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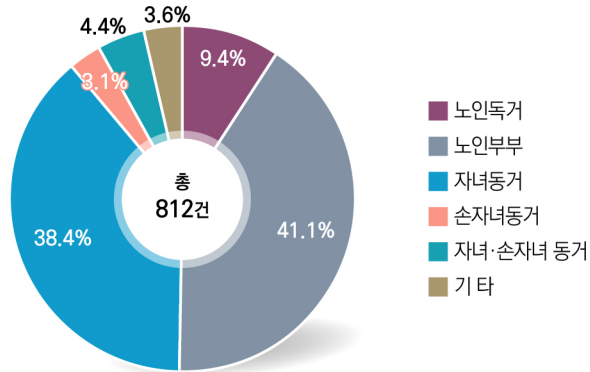


그림 8-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1,201건으로 가구 형태별로 학대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 독거의 경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자기방임”, 노인부부의 경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성적 학대-경제적학대”, 손자녀동거의 경우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 자녀·손자녀의 경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경제적학대”, 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경제적학대”, 기타의 경우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독거	29	48	-	5	5	10	2	99
	29.3	48.5	-	5.1	5.1	10.1	2.0	100
노인부부	231	259	4	4	3	-	-	501
	46.1	51.7	0.8	0.8	0.6	-	-	100
손자녀동거	21	17	-	-	-	-	-	38
	55.3	44.7	-	-	-	-	-	100
자녀·손자녀 동거	21	26	-	2	1	-	-	50
	42.0	52.0	-	4.0	2.0	-	-	100
자녀동거	207	235	1	15	7	1	-	466
	44.4	50.4	0.2	3.2	1.5	0.2	-	100
기타	22	21	1	-	3	-	-	47
	46.8	44.7	2.1	-	6.4	-	-	100
계	531	606	6	26	19	11	2	1,201
	44.2	50.5	0.5	2.2	1.6	0.9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피해노인 통계 수치(812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201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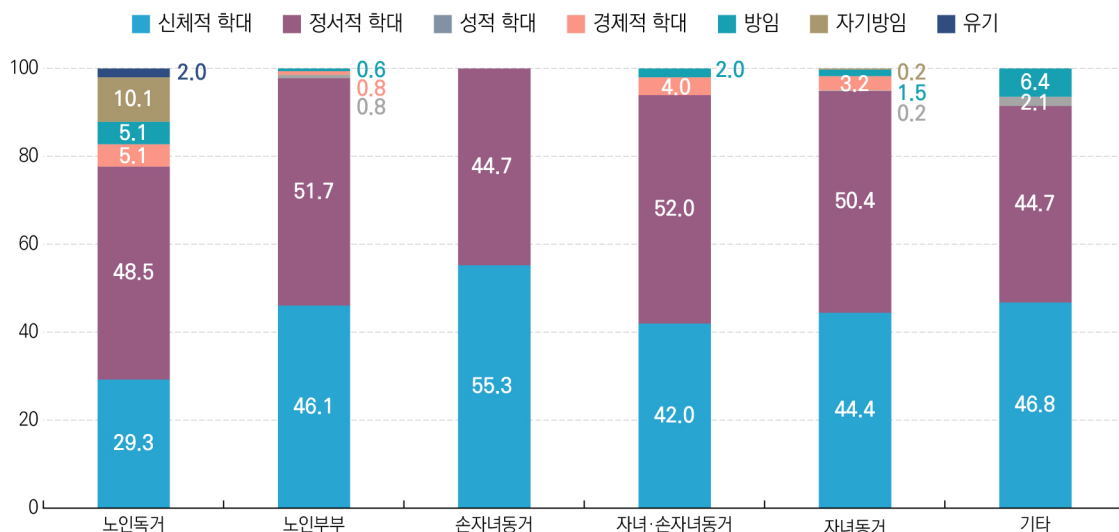


그림 8-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 학대피해노인의 812명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노인이 81명(10.0%),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진단노인이 75명(9.2%)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피해노인은 총 156명(19.2%)으로 나타났다.

표 8-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812	81	75	156
	10.0	9.2	19.2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812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704명(86.0%)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115명(14.0%)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5,223명(72.9%)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39명(48.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이 257명(36.5%)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비율(24.6%)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36.5%)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 분	피해노인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8	339	257	5	45	1	24	6	677	19	-	704
	1.1	48.2	36.5	0.7	6.4	0.1	3.4	0.9	96.2	2.7	-	100
비동거	3	19	54	2	14	4	2	2	97	9	6	115
	2.6	16.5	47.0	1.7	12.2	3.5	1.7	1.7	84.3	7.8	5.2	100
계	11	358	311	7	59	5	26	8	774	28	6	819
	1.3	43.7	38.0	0.9	7.2	0.6	3.2	1.0	94.5	3.4	0.7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2명)와 학대행위자 수(819명)는 차이가 있음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819명 중 남성이 685명(83.6%), 여성이 134명(16.4%)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학대 학대행위자는 70세 이상이 329명(40.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8-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8	16	23	129	134	81	294	685
	1.2	2.3	3.4	18.8	19.6	11.8	42.9	100
여성	1	4	5	31	30	28	35	134
	0.7	3.0	3.7	23.1	22.4	20.9	26.1	100
계	9	20	28	160	164	109	329	819
	1.1	2.4	3.4	19.5	20.0	13.3	40.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812명)와 학대행위자 수(819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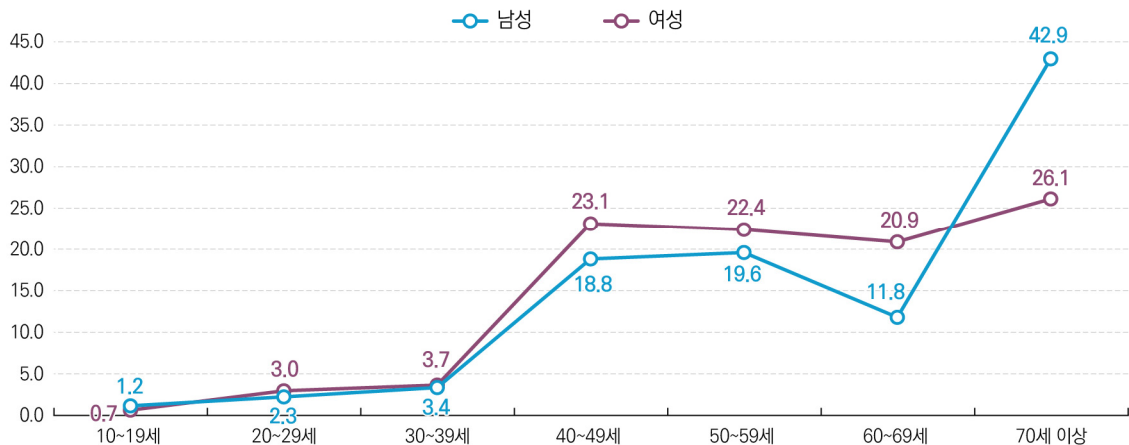


그림 8-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재학대 학대행위자 819명의 사례 중 중독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199건으로, 전체 재학대 학대행위자의 24.3%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190명(23.2%), 약물 사용장애가 5명(0.6%), 도박중독이 4명(0.5%)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 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계
819	4	190	5	199
	0.5	23.2	0.6	24.3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0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 보호노인 현황

표 9-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입소자	47	435	482
	9.8	90.2	100
이용자	101	583	684
	14.8	85.2	100
계	148	1,018	1,166
	12.7	87.3	100

표 9-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8	13	8	11	6	1	-	-	47
		17.0	27.7	17.0	23.4	12.8	2.1	-	-	100
	여성	86	103	111	87	37	11	-	-	435
		19.8	23.7	25.5	20.0	8.5	2.5	-	-	100
	계	94	116	119	98	43	12	-	-	482
		19.5	24.1	24.7	20.3	8.9	2.5	-	-	100
이용자	남성	23	12	21	26	17	1	1	-	101
		22.8	11.9	20.8	25.7	16.8	1.0	1.0	-	100
	여성	169	164	104	98	32	15	1	-	583
		29.0	28.1	17.8	16.8	5.5	2.6	0.2	-	100
	계	192	176	125	124	49	16	2	-	684
		28.1	25.7	18.3	18.1	7.2	2.3	0.3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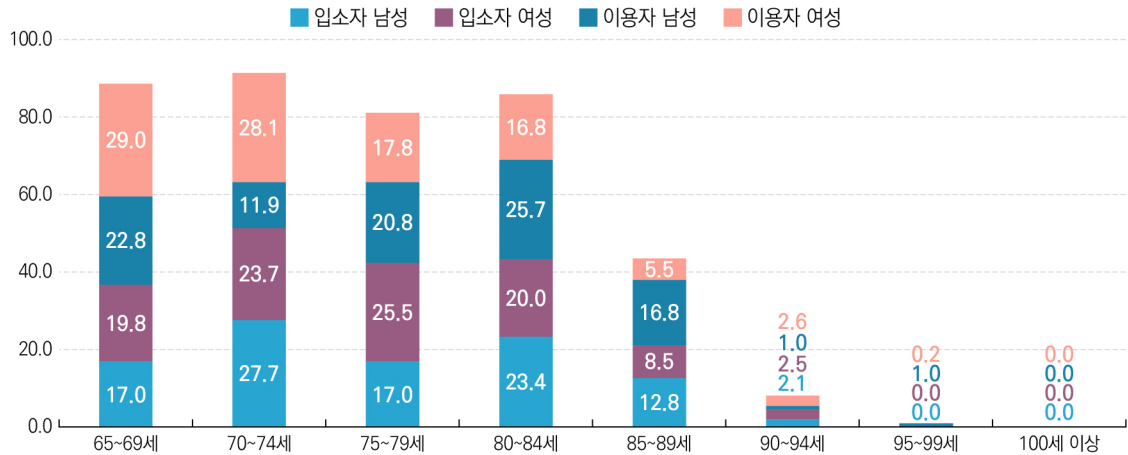


그림 9-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표 9-3 보호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60	39	21	-	320	4	123	28	7	-	-	162	482
	53.9	8.1	4.4	-	66.4	0.8	25.5	5.8	1.5	-	-	33.6	100
이용자	343	67	18	-	428	2	199	49	6	-	-	256	684
	50.1	9.8	2.6	-	62.6	0.3	29.1	7.2	0.9	-	-	37.4	100
계	603	106	39	-	748	6	322	77	13	-	-	418	1,166
	51.7	9.1	3.3	-	64.2	0.5	27.6	6.6	1.1	-	-	35.8	100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표 9-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기 타	계
입소자	283	129	15	34	5	25	4	7	-	502
	56.4	25.7	3.0	6.8	1.0	5.0	0.8	1.4	-	100
이용자	385	177	6	82	3	27	3	9	-	692
	55.6	25.6	0.9	11.8	0.4	3.9	0.4	1.3	-	100
계	668	306	21	116	8	52	7	16	-	1,194
	55.9	25.6	1.8	9.7	0.7	4.4	0.6	1.3	-	100

4) 보호노인 가구형태

표 9-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입소자	52	256	140	15	8	11	482
	10.8	53.1	29.0	3.1	1.7	2.3	100
이용자	115	298	214	25	8	24	684
	16.8	43.6	31.3	3.7	1.2	3.5	100
계	167	554	354	40	16	35	1,166
	14.3	47.5	30.4	3.4	1.4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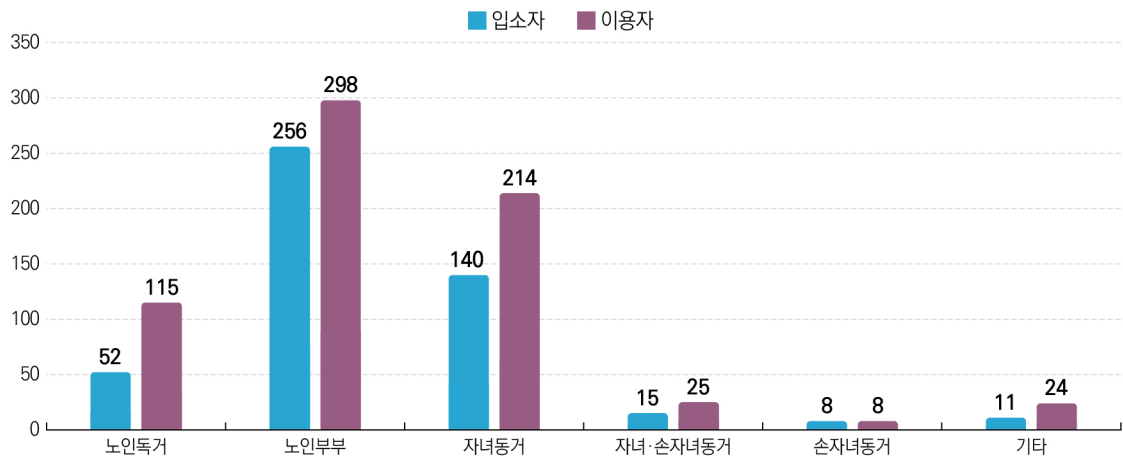


그림 9-2 보호노인 가구형태

5) 보호노인 주거형태

표 9-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아파트	무 상	의료 시설	기 타	시 설	계
입소자	338	28	49	50	10	1	6	-	482
	70.1	5.8	10.2	10.4	2.1	0.2	1.2	-	100
이용자	485	38	70	62	13	-	9	7	684
	70.9	5.6	10.2	9.1	1.9	-	1.3	1.0	100
계	823	66	119	112	23	1	15	7	1,166
	70.6	5.7	10.2	9.6	2.0	0.1	1.3	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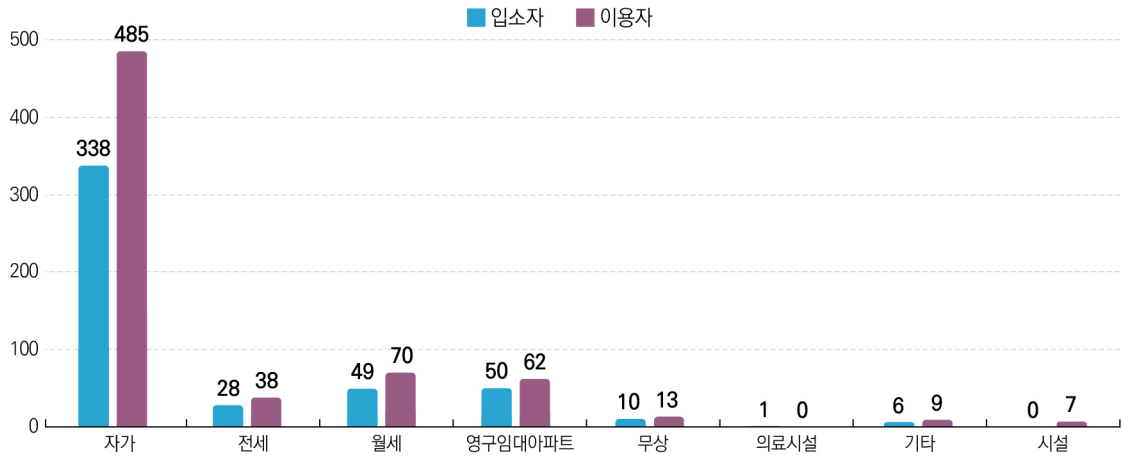


그림 9-3 보호노인 주거형태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표 9-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입소자	362	391	14	30	14	9	4	824
	43.9	47.5	1.7	3.6	1.7	1.1	0.5	100
이용자	481	609	16	38	14	9	1	1,168
	41.2	52.1	1.4	3.3	1.2	0.8	0.1	100
계	843	1,000	30	68	28	18	5	1,992
	42.3	50.2	1.5	3.4	1.4	0.9	0.3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보호노인 통계 수치(1,166건)와 보호노인 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992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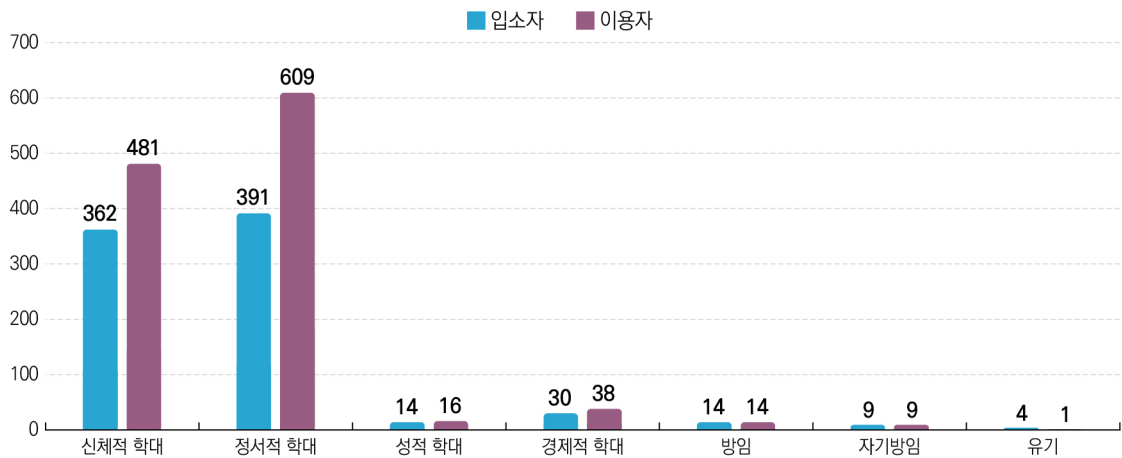


그림 9-4 보호노인 학대 유형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표 9-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명,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진단 및 의증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482	50	52	102
		10.4	10.8	21.2
이용자	684	42	29	71
		6.1	4.2	10.4
계	1,166	92	81	173
		7.9	6.9	14.8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표 9-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3	444	447
	0.7	99.3	100
이용자	2	616	618
	0.3	99.7	100
계	5	1,060	1,065
	0.5	99.5	100

* 학대피해노인의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부, 병원이송, 급작스런 퇴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수치임

9) 퇴소 후 거주 현황

표 9-10 퇴소 후 거주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 복귀 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 생활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290	3	25	45	21	59	39	482
	60.2	0.6	5.2	9.3	4.4	12.2	8.1	100
이용자	539	-	-	1	-	3	141	684
	78.8	-	-	0.1	-	0.4	20.6	100
계	829	3	25	46	21	62	180	1,166
	71.1	0.3	2.1	3.9	1.8	5.3	15.4	100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표 9-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6,205	14.3
	중식		15,029	13.3
	석식		15,973	14.1
	소계		47,207	41.8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14	0.0
	법률소송 지원		12	0.0
	소계		26	0.0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70	0.1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423	0.4
	지원	이송 및 동행	1,035	0.9
		의료비 지급	286	0.3
	기타		1,226	1.1
	소계		3,040	2.7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207	3.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719	1.5
	전문가(강사) 상담		500	0.4
	가족 상담		295	0.3
	기타		5,865	5.2
	소계		12,586	11.1
프로그램	건강증진		29,629	26.2
	문화여가		5,781	5.1
	사회기능회복		5,555	4.9
	심리치료		5,437	4.8
	기타		3,748	3.3
	소계		50,150	44.4
계			113,009	10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표 9-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85	2.6
	중식		794	24.3
	석식		194	5.9
	소계		1,073	32.9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	-
	법률소송 지원		-	-
	소계		-	-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	-
	지원	이송 및 동행	3	0.1
		의료비 지급	1	0.0
	기타		11	0.3
	소계		15	0.5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217	6.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216	6.6
	전문가(강사) 상담		221	6.8
	가족 상담		13	0.4
	기타		144	4.4
	소계		811	24.9
프로그램	건강증진		254	7.8
	문화여가		215	6.6
	사회기능회복		72	2.2
	심리치료		240	7.4
	기타		583	17.9
	소계		1,364	41.8
계			3,263	100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10

부 록





부 록

01 |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5~2024년)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10-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 사례	8,087	7,729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12,745	14,911	15,579
증감률	67.9	64.4	65.3	66.5	67.4	63.1	65.1	65.2	68.0	68.5
증감률	14.9	-4.4	12.4	18.5	5.2	-1.1	17.8	1.0	17.0	4.5
학대 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증감률	32.1	35.6	34.7	33.5	32.6	36.9	34.9	34.8	32.0	31.5
증감률	8.1	12.1	8.0	12.2	1.1	19.4	8.2	0.5	3.2	2.0
전체 사례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19,552	21,936	22,746
증감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12.6	0.9	10.8	16.3	3.8	5.6	14.2	0.8	12.2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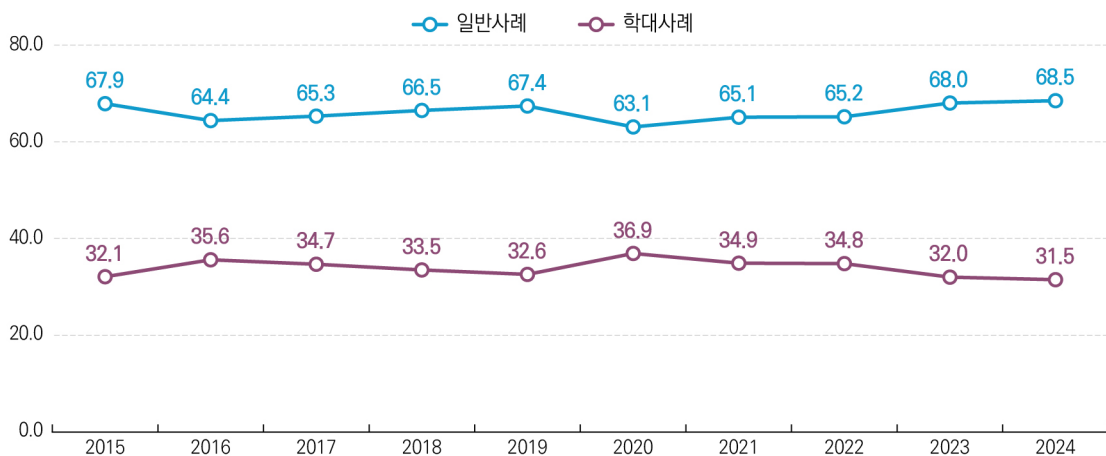


그림 10-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10-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4 1.2	27 0.6	20 0.4	26 0.5	24 0.5	35 0.6	23 0.3	18 0.3	48 0.7	15 0.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9 0.2	12 0.2	21 0.4	20 0.3	11 0.2	20 0.3	18 0.3	11 0.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78 4.7	168 3.9	153 3.3	194 3.7	225 4.3	267 4.3	246 3.6	298 4.4	282 4.0	283 3.9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0.4	2 0.0	2 0.0	1 0.0	3 0.1	4 0.1	4 0.1	6 0.1	9 0.1	2 0.0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01 2.6	79 1.8	105 2.3	72 1.4	83 1.6	92 1.5	70 1.0	59 0.9	58 0.8	40 0.6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90 7.6	382 8.9	283 6.1	398 7.7	375 7.2	246 3.9	326 4.8	211 3.1	167 2.4	179 2.5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31 0.8	44 1.0	18 0.4	12 0.2	17 0.3	25 0.4	10 0.1	9 0.1	7 0.1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8 1.0	45 1.1	34 0.7	29 0.6	24 0.5	116 1.9	45 0.7	42 0.6	48 0.7	41 0.6
	119 구급대의 대원	9 0.2	3 0.1	5 0.1	2 0.0	2 0.0	5 0.1	1 0.0	1 0.0	2 0.0	2 0.0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	1 0.0	2 0.0	- -	- -	- -	1 0.0	1 0.0	- -	1 0.0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1 0.0	1 0.0	- -	- -	- -	- -	-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4 0.1	5 0.1	9 0.2	5 0.1	7 0.1	6 0.1	4 0.1	2 0.0
	응급구조사	- -	- -	- -	- -	- -	1 0.0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 -	5 0.1	66 1.3	89 1.4	25 0.4	29 0.4	13 0.2	8 0.1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5	9	8	8	9	5	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5	18	26	83	155	64	60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0.1	0.3	0.4	1.2	2.3	0.9	0.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	-	-	-	-	-	261	313	348*
		-	-	-	-	-	-	-	3.8	4.5	4.9
		-	-	-	-	-	-	-	-	6	3
		-	-	-	-	-	-	-	-	0.1	0.0
	소계	707	751	635	767	877	939	860	1,125	1,044	1,004
		18.5	17.5	13.7	14.8	16.7	15.0	12.7	16.5	14.9	14.0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722	582	431	387	358	450	361	334	344	289
		18.9	13.6	9.3	7.5	6.8	7.2	5.3	4.9	4.9	4.0
	학대행위자 본인	8	4	6	4	5	6	8	4	7	2
		0.2	0.1	0.1	0.1	0.1	0.1	0.1	0.1	0.1	0.0
	친족	567	500	407	472	386	531	549	507	505	448
		14.9	11.7	8.8	9.1	7.4	8.5	8.1	7.4	7.2	6.3
	타인	320	236	755	156	259	216	197	118	190	150
		8.4	5.5	16.3	3.0	4.9	3.5	2.9	1.7	2.7	2.1
	관련기관 ³⁰⁾	1,494	2,207	2,388	3,402	3,358	4,117	4,799	4,719	4,935	5,274
		39.1	51.6	51.7	65.6	64.0	65.8	70.8	69.3	70.2	73.6
	소계	3,111	3,529	3,987	4,421	4,366	5,320	5,914	5,682	5,981	6,163
		81.5	82.5	86.3	85.2	83.3	85.0	87.3	83.5	85.1	86.0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임(2024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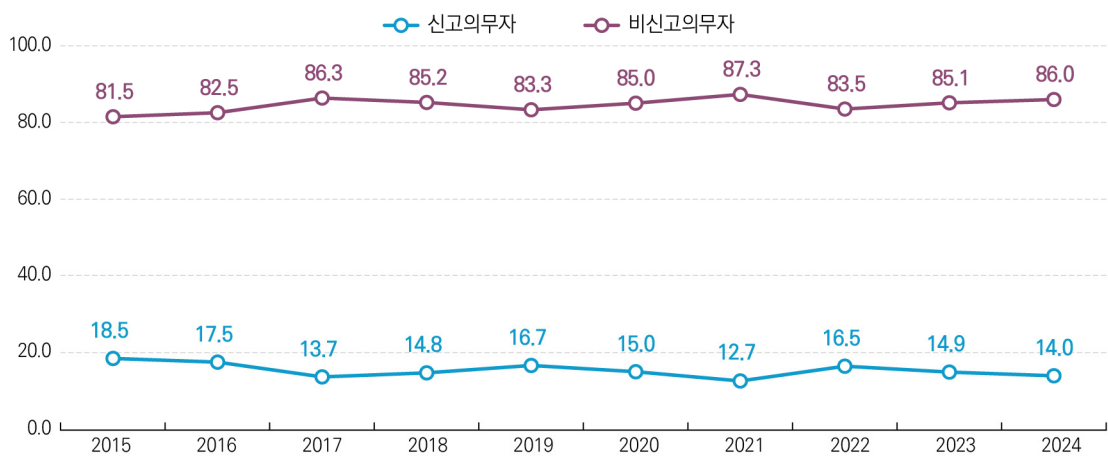


그림 10-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30)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2.3.22. 이전 기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10-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장조사 실시	3,659	3,971	4,443	4,965	5,084	6,152	6,696	6,703	6,898	7,080
	95.8	92.8	96.1	95.7	97.0	98.3	98.8	98.5	98.2	98.8
현장조사 미실시	159	309	179	223	159	107	78	104	127	87
	4.2	7.2	3.9	4.3	3.0	1.7	1.2	1.5	1.8	1.2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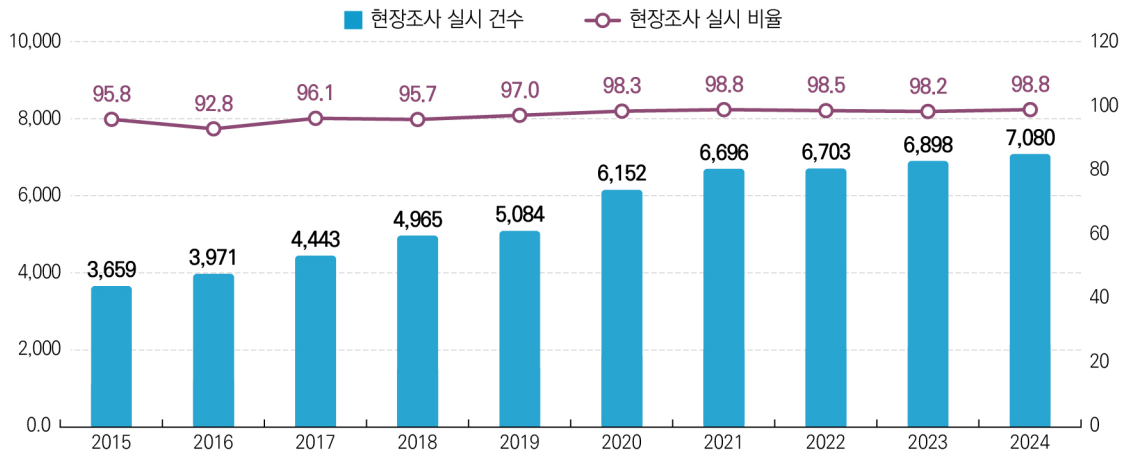


그림 10-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10-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응급	251	159	165	105	104	165	142	170	167	114
	6.6	3.7	3.6	2.0	2.0	2.6	2.1	2.5	2.4	1.6
비응급	2,271	2,472	2,803	3,221	3,322	3,923	4,445	4,157	4,561	4,905
	59.5	57.8	60.6	62.1	63.4	62.7	65.6	61.1	64.9	68.4
잠재	1,296	1,649	1,654	1,862	1,817	2,171	2,187	2,480	2,297*	2,148*
	33.9	38.5	35.8	35.9	34.7	34.7	32.3	36.4	32.7	30.0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 현황은 학대사례 기준으로 '23.7.1.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과 '24.1.1.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 결과가 "잠재"인 수치는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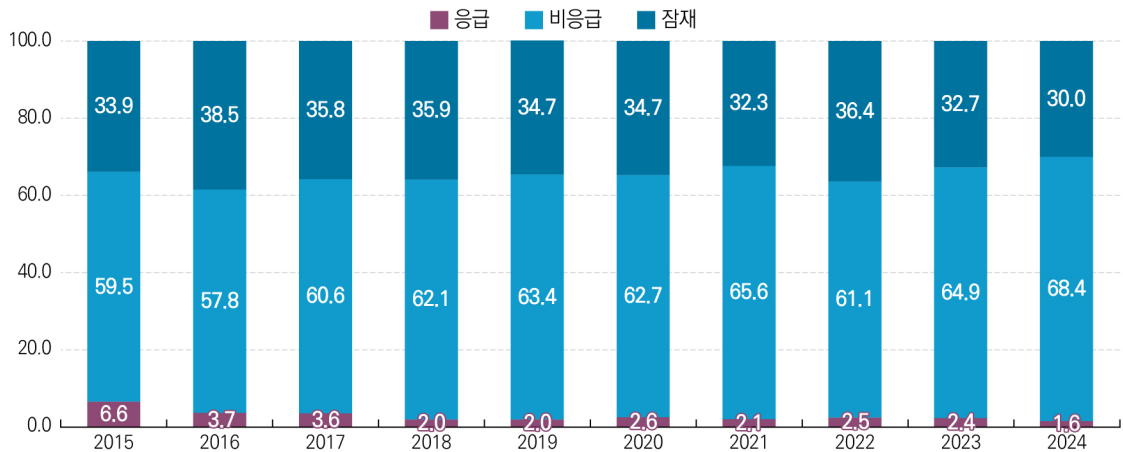


그림 10-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표 10-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대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재학대 건수	229	249	359	488	500	614	739	817	759	812
재학대 비율	6.0	5.8	7.8	9.4	9.5	9.8	10.9	12.0	10.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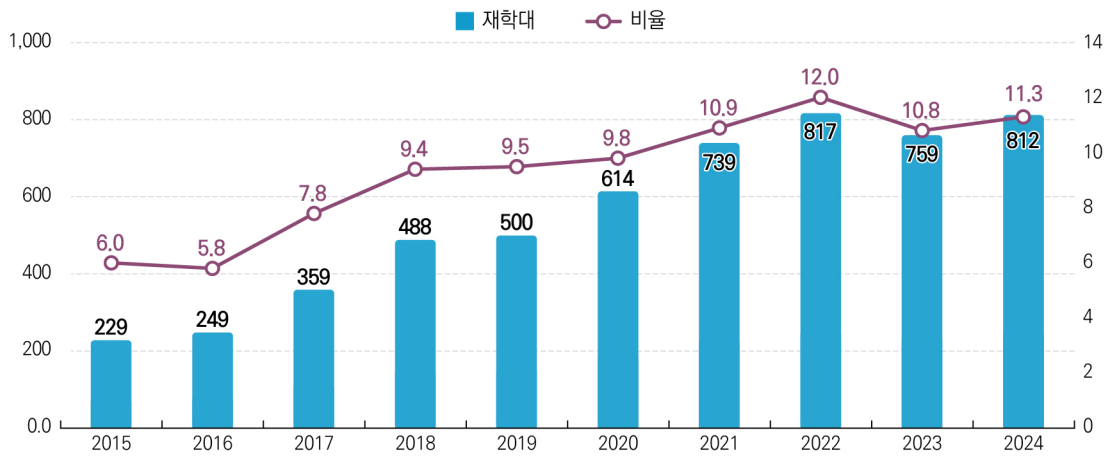


그림 10-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표 10-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체적 학대	1,591	2,132	2,651	3,046	3,138	3,917	4,390	4,431	4,541	4,797
	25.9	31.3	36.4	37.3	38.1	40.0	41.3	42.0	42.7	43.9
정서적 학대	2,330	2,730	3,064	3,508	3,465	4,188	4,627	4,561	4,531	4,784
	37.9	40.1	42.0	42.9	42.1	42.7	43.6	43.3	42.6	43.8
성적 학대	102	91	150	228	218	231	260	259	265	272
	1.7	1.3	2.1	2.8	2.6	2.4	2.4	2.5	2.5	2.5
경제적 학대	542	491	411	381	426	431	406	397	352	298
	8.8	7.2	5.6	4.7	5.2	4.4	3.8	3.8	3.3	2.7
방임	919	778	649	718	741	760	691	689	758	610
	14.9	11.4	8.9	8.8	9.0	7.8	6.5	6.5	7.1	5.6
자기방임	622	523	291	240	200	223	204	169	165	131
	10.1	7.7	4.0	2.9	2.4	2.3	1.9	1.6	1.6	1.2
유기	48	66	71	55	41	53	46	36	26	40
	0.8	1.0	1.0	0.7	0.5	0.5	0.4	0.3	0.2	0.4
계	6,154	6,811	7,287	8,176	8,229	9,803	10,624	10,542	10,638	10,9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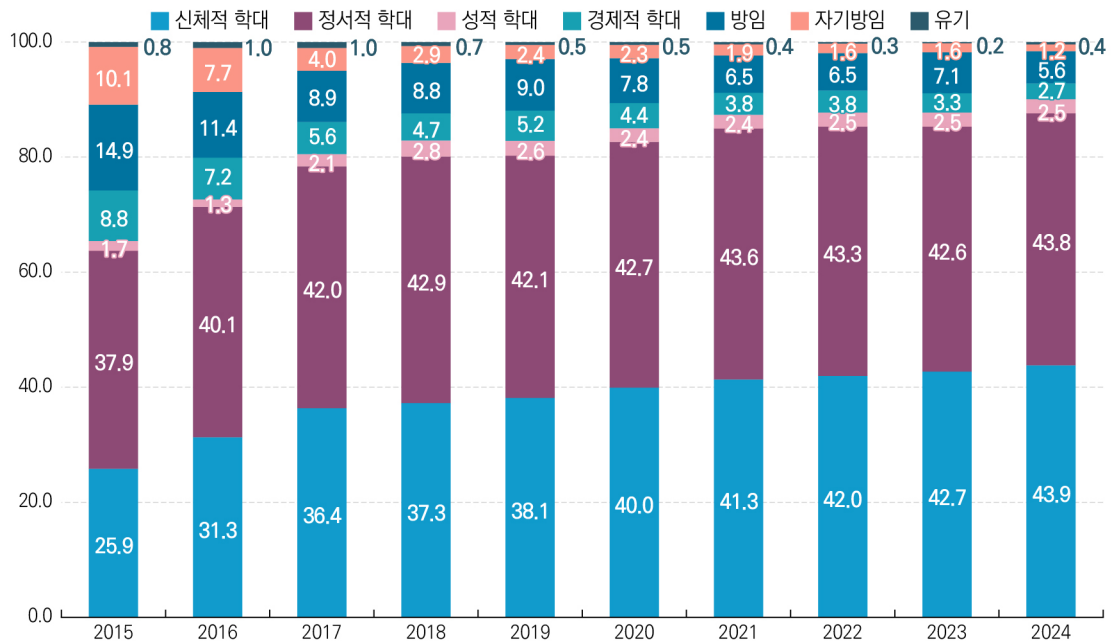


그림 10-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표 10-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 내	3,276	3,799	4,129	4,616	4,450	5,505	5,962	5,867	6,079	6,323
	85.8	88.8	89.3	89.0	84.9	88.0	88.0	86.2	86.5	88.2
생활 시설	206	238	327	380	486	521	536	662	571	595
	5.4	5.6	7.1	7.3	9.3	8.3	7.9	9.7	8.1	8.3
이용 시설	57	16	16	41	131	92	87	52	108	52
	1.5	0.4	0.3	0.8	2.5	1.5	1.3	0.8	1.5	0.7
병원	88	24	27	65	45	37	62	86	115	66*
	2.3	0.6	0.6	1.3	0.9	0.6	0.9	1.3	1.6	0.9
공공 장소	80	94	58	42	60	39	54	51	64	61
	2.1	2.2	1.3	0.8	1.1	0.6	0.8	0.7	0.9	0.9
기타	111	109	65	44	71	65	73	89	88	70
	2.9	2.5	1.4	0.8	1.4	1.0	1.1	1.3	1.3	1.0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 현황은 학대발생장소 기준으로 분류한 수치이며, 학대행위자가 병원 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 수치임(예: 개인 간병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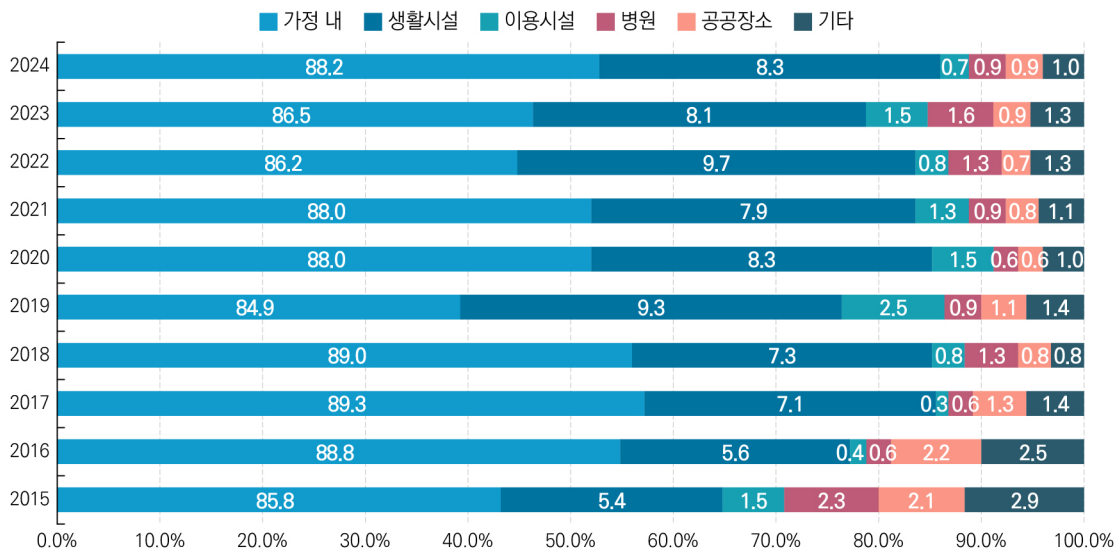


그림 10-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표 10-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 상담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41,067	44,482	56,166	58,739
	14.7	16.6	20.1	20.2	21.5	17.5	20.5	21.8	24.9	24.7
증감률	24.0	22.3	35.6	15.5	16.8	6.2	28.3	8.3	26.3	4.6
학대 상담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159,446	159,402	169,423	178,780
	85.3	83.4	79.9	79.8	78.5	82.5	79.5	78.2	75.1	75.3
증감률	9.0	5.2	7.8	14.9	7.9	36.9	5.7	-0.03	6.3	5.5
계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200,513	203,884	225,589	237,51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11.0	7.7	12.4	15.0	9.7	30.3	9.7	1.7	10.6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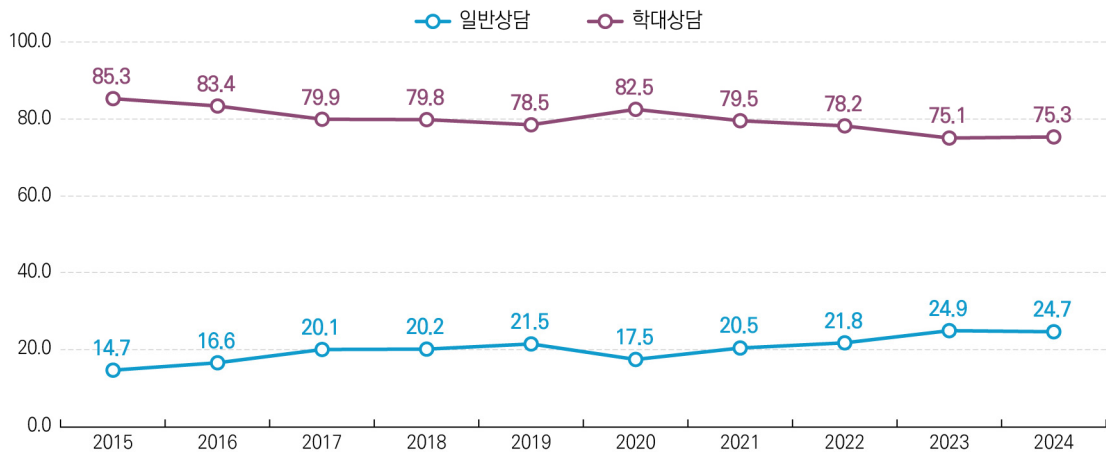


그림 10-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표 10-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9세 이하	3 0.1	5 0.1	4 0.1	- -	- -	- -	- -	- -	- -	- -
60~64세	204 5.3	213 5.0	141 3.1	- -	- -	- -	- -	- -	- -	- -
65~69세	524 13.7	589 13.8	740 16.0	819 15.8	919 17.5	1,240 19.8	1,428 21.1	1,467 21.6	1,655 23.6	1,812 25.3
70~74세	771 20.2	852 19.9	969 21.0	1,193 23.0	1,189 22.7	1,385 22.1	1,505 22.2	1,439 21.1	1,576 22.4	1,559 21.8
75~79세	865 22.7	978 22.9	1,071 23.2	1,250 24.1	1,157 22.1	1,339 21.4	1,394 20.6	1,371 20.1	1,354 19.3	1,425 19.9
80~84세	770 20.2	881 20.6	900 19.5	1,020 19.7	1,031 19.7	1,218 19.5	1,269 18.7	1,272 18.7	1,244 17.7	1,213 16.9
85~89세	456 11.9	499 11.7	525 11.4	588 11.3	586 11.2	690 11.0	769 11.4	804 11.8	786 11.2	759 10.6
90~94세	163 4.3	206 4.8	204 4.4	245 4.7	289 5.5	283 4.5	308 4.5	337 5.0	327 4.7	321 4.5
95~99세	56 1.5	53 1.2	58 1.3	61 1.2	63 1.2	92 1.5	92 1.4	103 1.5	76 1.1	69 1.0
100세 이상	6 0.2	4 0.1	10 0.2	12 0.2	9 0.2	12 0.2	9 0.1	14 0.2	7 0.1	9 0.1
계	3,818 100	4,280 100	4,622 100	5,188 100	5,243 100	6,259 100	6,774 100	6,807 100	7,025 100	7,1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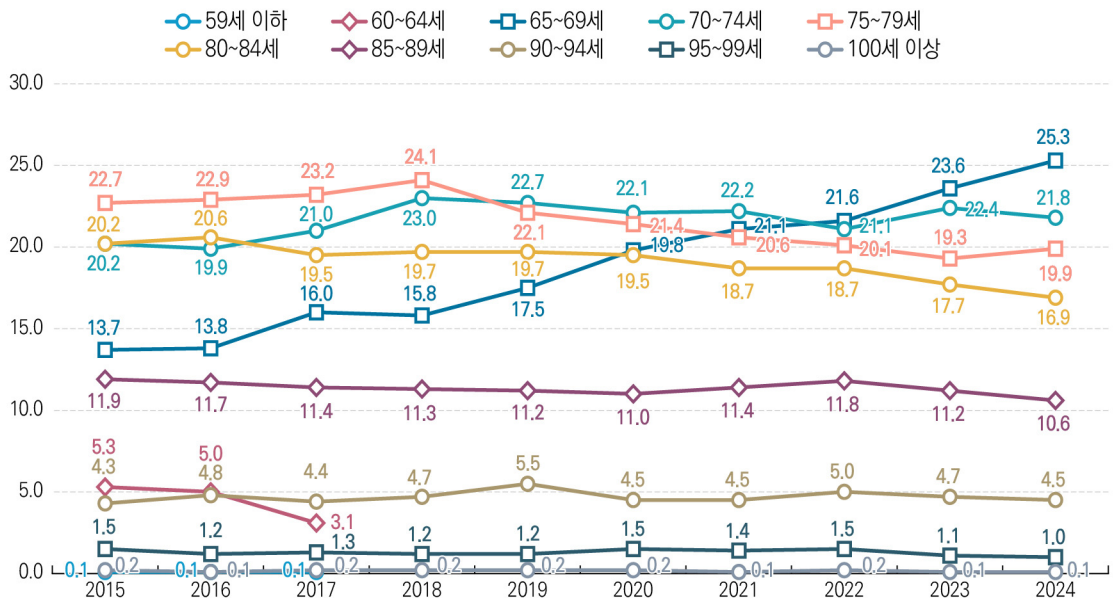


그림 10-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표 10-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세 미만	-	-	-	-	-	-	-	-	3	-
	-	-	-	-	-	-	-	-	0.0	-
10~19세	18	33	46	50	42	62	67	65	87	78
	0.4	0.7	0.9	0.9	0.7	0.9	0.8	0.9	1.1	1.0
20~29세	46	76	115	105	81	117	138	138	93	158
	1.1	1.6	2.3	1.9	1.4	1.7	1.6	1.8	1.2	2.0
30~39세	372	296	325	318	306	389	405	394	386	411
	8.8	6.4	6.4	5.6	5.3	5.8	4.8	5.3	4.9	5.2
40~49세	870	1,040	1,150	1,253	1,184	1,352	1,393	1,269	1,209	1,198
	20.6	22.4	22.5	22.1	20.5	20.2	16.5	16.9	15.3	15.2
50~59세	1,156	1,166	1,275	1,414	1,465	1,634	2,486	1,763	2,034	1,559
	27.4	25.1	25.0	25.0	25.4	24.4	29.5	23.5	25.7	19.8
60~69세	622	687	827	824	940	1,110	1,557	1,407	1,523	1,743
	14.7	14.8	16.2	14.5	16.3	16.6	18.5	18.8	19.3	22.1
70세 이상	1,140	1,339	1,363	1,701	1,759	2,034	2,377	2,458	2,565	2,734
	27.0	28.9	26.7	30.0	30.4	30.4	28.2	32.8	32.5	34.7
계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7,88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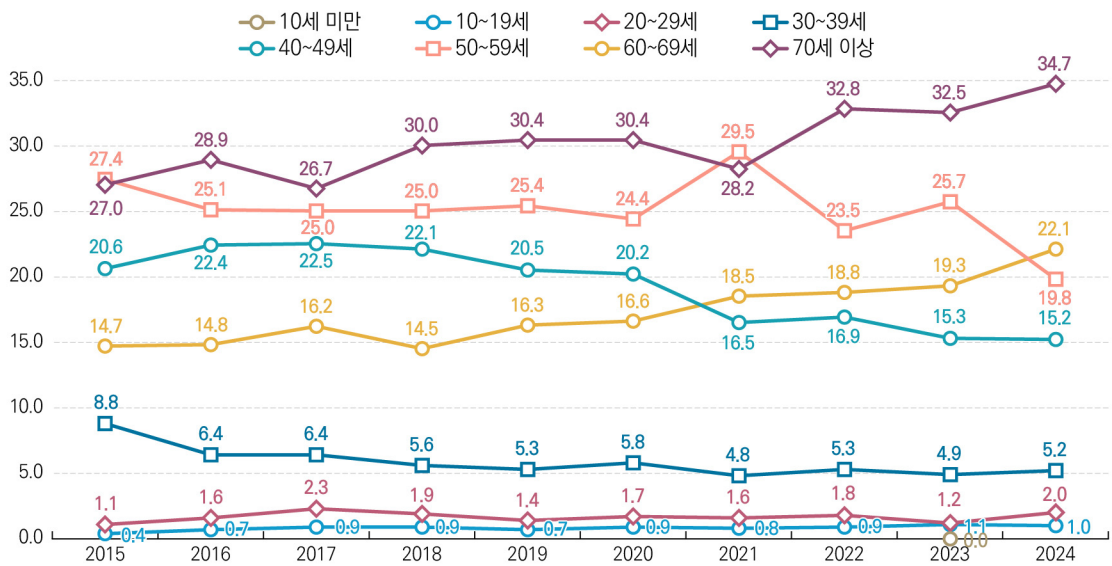


그림 10-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10-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노인 독거	1,318	1,140	1,007	999	1,039	1,073	1,195	1,127	1,118	1,057
	34.5	26.6	21.8	19.3	19.8	17.1	17.6	16.6	15.9	14.7
노인 부부	808	1,023	1,216	1,512	1,669	2,046	2,332	2,467	2,741	2,886
	21.2	23.9	26.3	29.1	31.8	32.7	34.4	36.2	39.0	40.3
자녀 동거	1,021	1,328	1,536	1,738	1,588	2,060	2,111	2,034	1,982	2,057
	26.7	31.0	33.2	33.5	30.3	32.9	31.2	29.9	28.2	28.7
손자녀 동거	139	154	178	187	182	199	217	205	203	206
	3.6	3.6	3.9	3.6	3.5	3.2	3.2	3.0	2.9	2.9
자녀·손자녀 동거	185	234	245	252	195	253	235	228	191	196
	4.8	5.5	5.3	4.9	3.7	4.0	3.5	3.3	2.7	2.7
기타	347	401	440	500	570	628	684	746	790	765
	9.1	9.4	9.5	9.6	10.9	10.0	10.1	11.0	11.2	10.7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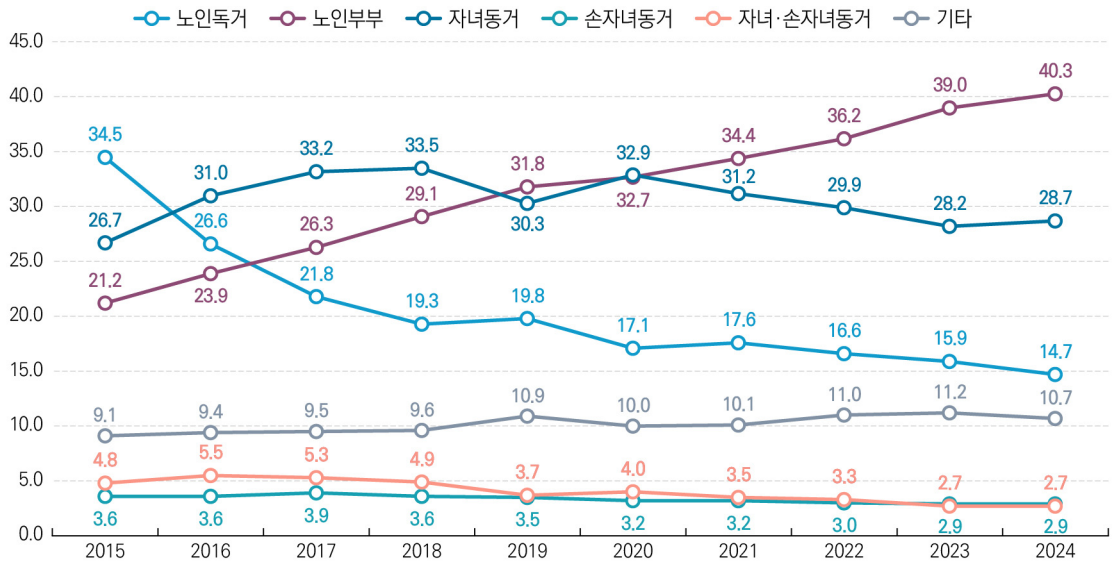


그림 10-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10-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인	622	522	290	240	200	221	204	169	165	131
	14.7	11.3	5.7	4.2	3.5	3.3	2.4	2.3	2.1	1.7
배우자	652	952	1,263	1,557	1,749	2,120	2,455	2,615	2,830	3,053
	15.4	20.5	24.8	27.5	30.3	31.7	29.1	34.9	35.8	38.7
아들	1,523	1,729	1,913	2,106	1,803	2,288	2,287	2,092	2,080	2,082
	36.1	37.3	37.5	37.2	31.2	34.2	27.2	27.9	26.3	26.4
며느리	183	157	131	143	109	123	119	106	88	81
	4.3	3.4	2.6	2.5	1.9	1.8	1.4	1.4	1.1	1.0
딸	451	475	424	436	438	589	627	620	607	575
	10.7	10.2	8.3	7.7	7.6	8.8	7.4	8.3	7.7	7.3
사위	21	23	27	34	27	28	42	38	45	42
	0.5	0.5	0.5	0.6	0.5	0.4	0.5	0.5	0.6	0.5
손자녀	64	103	124	134	112	168	172	179	168	183
	1.5	2.2	2.4	2.4	1.9	2.5	2.0	2.4	2.1	2.3
친척	46	63	49	59	50	64	90	49	76	65
	1.1	1.4	1.0	1.0	0.9	1.0	1.1	0.7	1.0	0.8
타인	283	221	176	168	222	223	257	264	277	335
	6.7	4.8	3.5	3.0	3.8	3.3	3.1	3.5	3.5	4.3
기관	379	392	704	788	1,067	874	2,170	1,362	1,564	1,334
	9.0	8.5	13.8	13.9	18.5	13.0	25.8	18.2	19.8	16.9
계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7,88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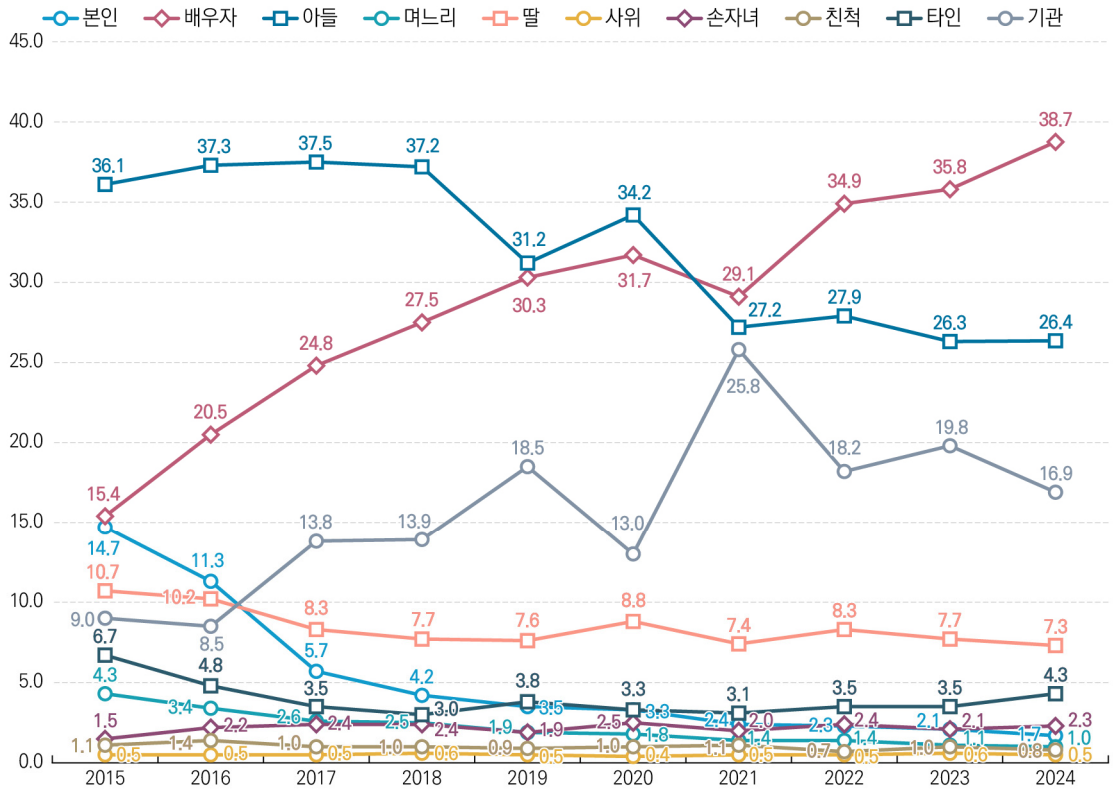


그림 10-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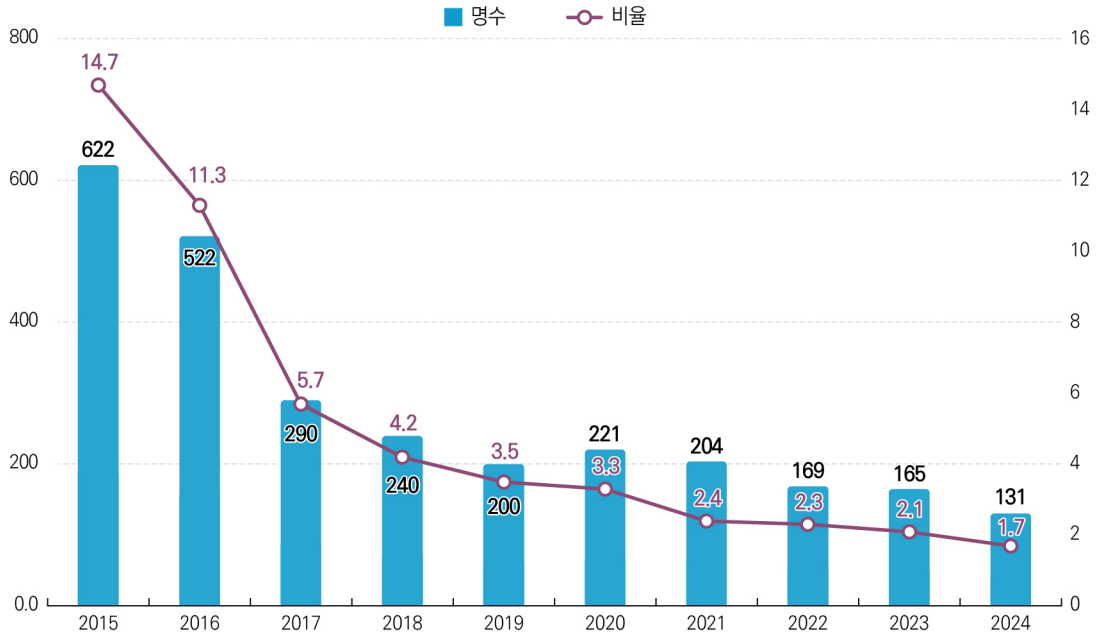


그림 10-13 연도별 학대행위자(학대피해노인 본인) 제외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10-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870	871	785	851	810	992	1,165	1,157	1,067	1,143
	22.8	20.4	17.0	16.4	15.4	15.8	17.2	17.0	15.2	15.9
전체 학대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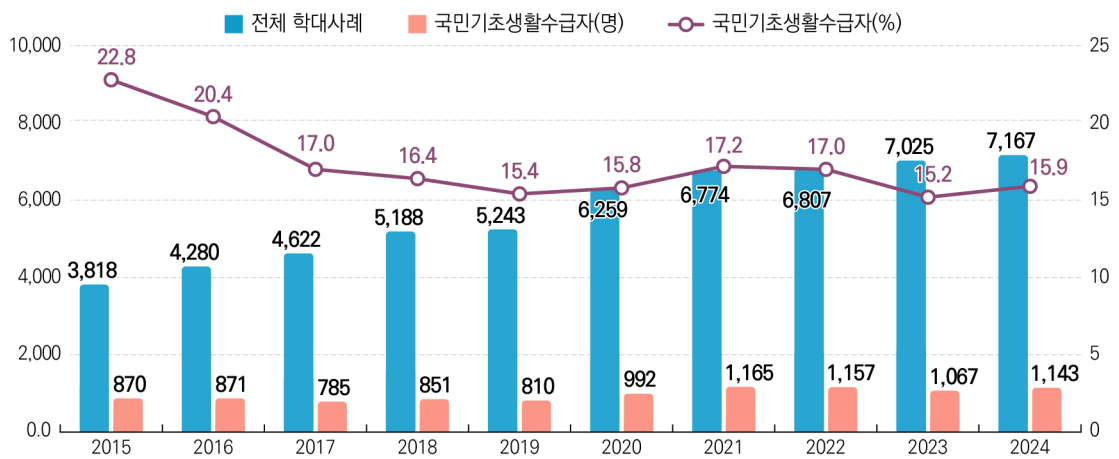


그림 10-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10-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546	947	575	591	544	719	799	786	747	794
	12.9	20.4	11.3	10.4	9.4	10.7	9.5	10.5	9.5	10.1
전체 학대 행위자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7,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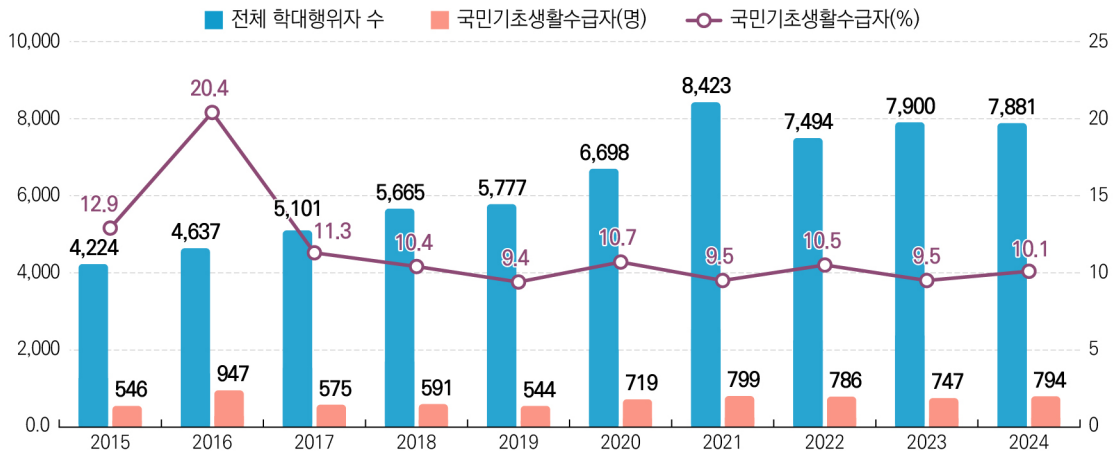


그림 10-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표 10-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학대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7,167
치매 정도	치매 의심	561	593	488	507	550	608	607	597	608
	치매 진단	469	521	634	700	831	927	1,092	1,170	1,214
	계	1,030	1,114	1,122	1,207	1,381	1,535	1,699	1,767	1,721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7.0	26.0	24.3	23.3	26.3	24.5	25.1	26.0	25.9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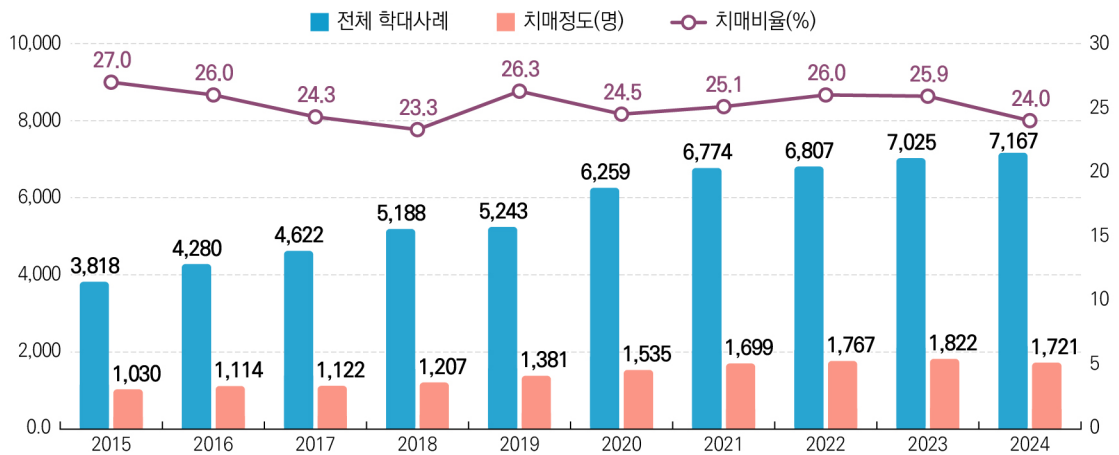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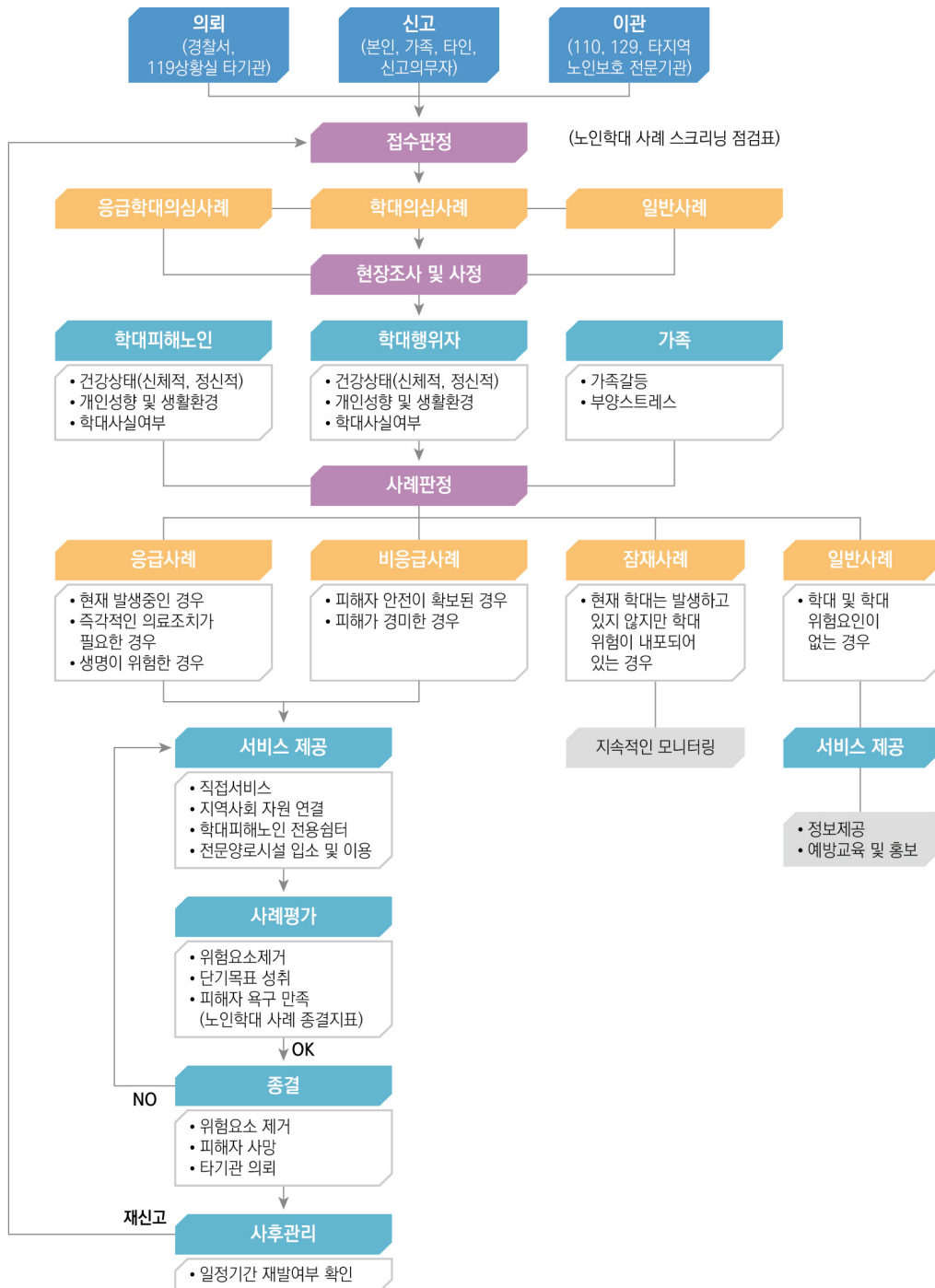


그림 10-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02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03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5.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A동 205~206호(생각공장 당산)	02)3667-1389	www.noinboho1389.or.kr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4층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 (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중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54, 협동빌딩 2층	051)867-9119	www.1389.bulgukto.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140, 신평역사 2층(신평동 646)	051)206-1389	www.bsw1389.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원대동 3가)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인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inobo.or.kr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1층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번길 2, 5008호(정자동, 한솔프라자)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3-4, 한도빌딩 304호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23, 예성프라자 703호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북동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203호	031)593-1389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남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서2길25	033-344-1389	www.gwn1389.or.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5, 6층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특별자치도서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93,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전남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89	www.gbwn1389.or.kr
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064)763-1999	http://sgpnoin.org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25년 6월

발 행 일 : 2025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